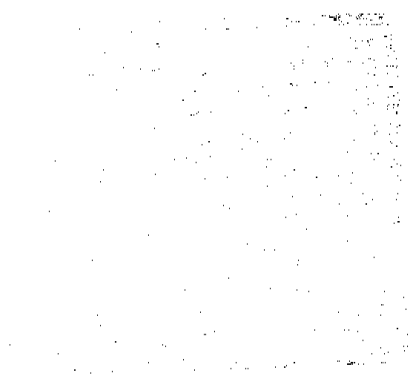


北韓・統一研究論文集(Ⅱ)

— 南北交流協力 分野 —

1991



1022

統 一 院

이 論文集은 當院이 年例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北韓 및 統一問題에 관한 新進學者들의 '91年度 研究 結果를 綜合한 것입
니다.

금년에는 45個의 課題를 設定하여 研究委囑을 하였는바 便宜
上 報告書를 ① 南北韓 統合 및 統一政策 ② 南北交流協力 ③ 北
韓의 體制變化 ④ 北韓의 政策 및 社會 變化 趨勢 ⑤ 韓半島 軍
事問題 및 北韓의 行政·法制 ⑥ 北韓의 經濟·社會·人權實態
分野 등 6卷으로 나누어 發刊하였습니다.

여기에 收錄된 論文들은 蕪新한 아이디어와 銳利한 論證 등
力作들이 많았다고 評價되나 그 內容들이 모두 當院의 見解와
一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冊子가 北韓 및 統一問題를 理解하고 研究하거나 政策을
樹立하는데 參考資料로 널리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1991年 12月

統 一 院 情 報 分 析 室

目 次

◆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 研究

洪 升 基

〈要約文〉	11
I. 序 論	16
1. 研究目的 및 必要性	16
2. 研究範圍 및 方法	17
3. 先行研究의 檢討	18
II.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19
1. 南北韓 經濟의 特性	19
2. 南北韓 經濟의 現況	22
3.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25
III. 南北韓 共同開發協力の 基本方向과 推進模型	28
1. 共同開發을 통한 經濟協力 推進方向	28
2. 分斷國의 經濟協力模型	29
3. 域內에서의 南北韓 共同開發模型	32
4. 第3國에서의 南北韓 共同開發模型	44
IV. 南北韓 共同開發에 따른 問題點 및 對應方案	51
1. 法的未備의 問題點	51
2. 法的·制度的 對應方案	53
V. 要約 및 結論	54

◆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 方案 研究

尹勇晚·李甲泳

〈要約文〉	63
I. 序 論	68
II.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南北韓의 基本立場	70
1. 韓半島 周邊與件의 變化	70
2. 韓國의 敵對的 協力政策	72
3. 北韓 經濟의 現況과 伸縮的 對外政策	77
III. 分斷國間의 經濟交流 形態와 南北韓 現況	81
1. 東西獨의 經濟交流 形態	81
2. 中國과 臺灣의 經濟交流 形態	86
3. 南北韓의 經濟交易 現況과 問題點	88
IV. 南北韓 經濟協力 方案	93
1. 直交易 增大 方案	93
2. 合作投資 方案	97
3. 技術協力 方案	102
V. 南北韓의 天然資源 共同開發 方案	105
1. 鑛物資源 共同開發	105
2. 水資源 共同開發	110
3. 林山資源 共同開發	113
VI. 南北韓 地域의 共同開發 方案	116
1. 觀光地 共同開發	116
2. 干拓地 共同開發	118
3. 大陸棚 共同開發	122
VII. 南北韓 經濟의 共同開發에 관한 展望	124
1. 共同開發의 展望	124
2. 南韓 經濟에 미치는 影響	128
3. 北韓 經濟에 미치는 影響	131

VIII. 要約 및 結論	134
---------------	-----

◆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에 관한 研究

— 求償貿易을 中心으로 —

黃 善 大

〈要約文〉	141
I. 序 論	144
II. 社會主義 經濟 및 北韓 經濟의 問題點	146
1. 社會主義 經濟의 문제점	146
2. 北韓經濟의 문제점	148
III. 南北韓 經濟協力の 成功條件과 求償貿易의 必要性	151
1. 경제교류 및 협력의 성공조건	152
2. 남북한 求償貿易의 필요성	154
IV. 求償貿易의 定義 및 形態	155
1. 바터(Barter)	155
2. 對應購買(Counterpurchase)	156
3. 製品還買(Buy-back, Compensation)	157
4. 相計貿易(Offset)	158
5. 스위치(Switch)	159
V. 南北韓 求償貿易 現況	159
VI. 南北韓간의 求償貿易 추진 방향	163
VII. 結 論	165

◆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南北交流 方案 研究

金 康 鉉

〈要約文〉	171
I. 序 論	174
II. 北韓의 컴퓨터 産業 및 南北交流 現況	176
1. 北韓의 컴퓨터 産業	177
2. 南北 표준화 교류 現況	179
III. 短期 標準化 課題	182
1. 한글, 한자코드 문제	182
2. 글자판의 統一	193
IV. 中長期 標準化 課題	200
1. 한글 文書化의 표준화	200
2. 한글 字形에 관한 標準	202
3. 情報處理 용어의 標準化	203
4. 個人用 컴퓨터의 規格	206
5. 情報通信網 설치에 관한 標準化	208
V. 結 論	211

◆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的 問題點과 解決方案

諸 成 鎬

〈要約文〉	215
I. 序 論	219
II. 南北離散家族의 意義와 類型	219
1. 南北離散家族의 意義	219
2. 殘留者 및 不在者의 關係	227
3. 南北離散家族의 類型	227
III.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의 法的 根據	229

1. 停戰協定	229
2. Geneva 第4 協約	230
3. Geneva 協約 第1 追加議定書	231
4.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議書	231
IV.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과 法的 問題의 解決方案	232
1.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	232
2. 分斷狀況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234
3. 國家聯合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247
4. 聯邦制 統一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249
5. 單一國家로의 統一後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250
V. 結 論	254

◆ 南北韓鐵道(京義線)를 利用한 國際複合輸送에 관한 研究

車 重 坤

〈要約文〉	259
I. 序 論	265
II. 우리나라의 對北方·歐洲 輸出入貨物 輸送現況과 問題點	267
1. 對北方·歐洲交易推移	267
2. 國內輸送方法과 問題點	268
3. 港灣施設現況과 問題點	270
III. TKR의 利用과 問題點	275
1. TKR의 利用可能性	275
2. TKR 關聯國의 鐵道施設現況과 輸送體制	276
3. TKR의 長點	281
4. TKR 利用上의 問題點	283
IV. TKR에 의한 複合輸送	284
1. TKR의 基本概念	284

2. 運送組織과 運送責任	287
3. 運送手段과 運送節次	304
4. 運賃體系와 費用構造	313
5. TKR 運送上의 問題點	317
V. 要約 및 結論	319

◆ 國內外 情勢가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에 미친 影響

曹 喜 善

〈要約文〉	327
I. 머리말	331
II. 南北高位級會談의 展開와 雙方의 立場	333
1. 南北高位級會談 以前의 南北對話 成立과 展開	333
2. 南北高位級會談 提議의 背景과 成事	335
3.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의 經過	338
4. 南北高位級會談 本會談의 進展狀況	341
III.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에 미친 國內外 情勢의 影響	347
1. 國內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	347
2. 國際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	355
IV. 맺음말 : 會談進展의 障碍要因과 對應策	364

◆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 研究

홍 승 기(동국대)

〈要約文〉

본 연구는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 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點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한 先行研究들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한된 발표문헌과 관련기관이나 인사들과의 討議資料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제 I 장 研究目的 및 方法 등의 서론에 이어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그리고 쌍방의 經濟交流現況을 제 II 장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은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開放經濟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내지향적인 閉鎖經濟를 고수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경제는 1차→2차→3차산업 중심으로 產業構造가 전환되어 왔고, 특히 2차산업은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 尖端產業으로 高度化되어 왔다. 최근 들어 남한경제의 量的膨脹이 加速化되고 交易量이 세계 10 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國際化·開放化 趨勢가 급진전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이래 計劃經濟의 경직성이 드러나고,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生産性이 저하되었으며 質보다는 量을 우선하는 經濟目標의 조기달성운동 등으로 인해 產業高度化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經濟沈滯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

경제력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1990년 기준 國民總生産, 1인당 國民所得, 交易量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각각 10.3배, 5.2배, 28.9배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國際情勢急變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점진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南北韓 物資交流에도 응하고 있는데 지난 1988년 10월 南北韓 物資交易指針이 남한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 제 3국을 경유한 間接交易方式을 통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1991년 들어 물자교역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월 27일에는 남한 쌀 5천톤이 북한에 직송됨으로써 분단 이후 첫 直交易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韓 直交易 추세가 본격화 되고 최근 소련사태 등 國際情勢까지急變하여, 南北韓 共同開發協力の 필요성이 漸增하고 있다.

따라서 제Ⅲ장에서는 南北韓 共同開發協力の 基本方向과 推進模型에 대해 폭넓게 고찰해 보았다. 우선 南北韓 共同開發協力の 基本推進方向은 그간의 소극적인 物資交流次元에서 적극적이고도 生産的인 經濟協力形態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을 채택하여 域內外에서 共同開發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合作生産方式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값싼 원자재 조달원가 등을 활용하여 動的인 比較優位를 재창출 할 수 있고, 북한은 남한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제공받음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면서 外貨獲得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와 같은 南北韓 合作生産은 우선 역내에서 段階的·漸進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제 1 단계로서 최근 북한이 제시한 「豆滿江流域 經濟特區 開發計劃」에 남한측은 多角的인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 개발 계획에의 참여는 당장의 經濟的 利益보다는 향후 남북한 經濟交流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의 계획이 실현가능토록 유엔산하기구를 통한 外交的 支援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投資資金은 남한정부의 보증하에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南北韓-日本-中國-蘇聯間 합작도 가능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經濟特區」 주변지역의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에 있어서 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육·해 복합운송 전진기지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남한의 지원책으로서는 소요자금조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동구, 소련,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기업의 現地法人의 참여방안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 2 단계에서는 在外 한국계 민간기업을 통해 觀光, 海運 등 서비스分野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그간 남한의 民間企業들이 북한측에 대해 서비스분야 협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다. 어쨌든 북한과 在外韓國系 民間企業들과의 합작을 통해 금강산 및 인근지역개발, 그리고 濟州道-雪嶽山-金剛山の 관광코스 연계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모두 觀光誘發效果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外貨收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물자교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釜山-元山-興南, 東海-元山-興南 등의 동해안 직항로와 仁川-南浦, 仁川-海州, 群山-海州-南浦 등의 서해안 直航路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합작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③ 앞서 언급한 제 1 단계, 제 2 단계가 원만히 진행되어 南北韓間 相互信賴가 어느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제 3 단계로서 南北韓 合作으로 북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地下資源 및 水資源의 共同開發을 추진하고 통일에 대비한 國土整地作業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북한의 실상과 입장을 고려하여 다소 立地條件이 불리할지라도 합작초기에는 中·蘇 국경부근 개발에 주력하다가 점차 북한 내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나을 듯하며, 國土整地作業은 남북한간 사전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원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편 남북한 合作生産方式은 域外地域인 제 3 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측은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勞動力을 공급하는 合作方式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대상국으로는 蘇聯, 中國, 베트남, 東歐圈 및 中東諸國이 손꼽히고 있다.

① 이미 남한기업들은 蘇聯의 極東,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소련정부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勞動力確保에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력

을 제공하는 合作方法을 취한다면 南北韓雙方經濟에 필요한 天然資源이나 값싼 原資材를 확보할 수 있어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남한은 중국의 삼강평원개발에도 合作進出이 가능한데 동 개발계획은 저렴한 개발비, 비옥한 토지, 확보된 시장,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구비 등 유리한 여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북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남북한은 食糧市場開拓에 따른 利潤을 分配하고, 중국내 여타사업 진출시 우선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등 實益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③ 베트남은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天然資源 및 각종 投資誘引政策 등으로 인해 유망한 海外進出對象地域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共同進出이 필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남한이 외교적 限界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協力可能한 분야는 1次加工產品, 社會間接資本施設 등이며 베트남 자체를 對美, 對아세안 諸國에 대한 迂廻輸出基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東歐圈은 남북한의 共同進出地域 중 소련, 중국, 베트남처럼 資源確保나 新市場開拓의 이점은 없지만 觀光産業開發參與가 유망하며 EC진출의 橋頭堡 役割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中東地域은 특수한 政治·社會的 慣習 및 氣候條件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制約要件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한 合作진출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중동정세 등을 고려하여 合作의 주체는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북한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建設工事에 合作진출한 후 漸進的으로 대규모 建設工事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추진하는데 따른 法的·制度的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法規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金法 등이 있으나 남북한의 域內外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外國換 管理法과 諸규정들도 이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위해서는 기존법규의 보완 이외에도 ①

이를 직접 관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 關聯專擔機構의 設立·運營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③ 主要 交易對象國들과의 外交的인 노력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해야 하고 ④ 남북한 中央銀行間 清算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⑤ 企業들의 過當競爭과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연구참여 : 유호봉(동국대 무역학과 강사)

이찬도(동국대 무역학과 조교)

I. 序 論

1. 研究目的 및 必要性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中·蘇 및 東歐圈의 개방화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對北方政策으로 政治, 經濟 및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社會主義圈과의 상호접촉 및 교류가 活性化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開放이나 閉鎖냐의 사이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다가 결국 閉鎖쪽을 선택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개방조짐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南北韓 關係改善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經濟分野의 交流와 協力方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을 開放과 改革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對北韓 정책 방법을 택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國際情勢로 보아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休戰以後 최악의 경제난국에 빠지게 됨으로써 부분적인 開放措置의 하나로 소위 “豆滿江流域開發計劃”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對外的으로는 남한의 단독유엔가입이 확실시 되자 북한도 가입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최근 소련에서 共産黨 沒落이라는 대정변이 발생하게 되자 북한은 기존의 對南, 對西方에 대한 정치, 경제적 노선수정의 압력을 對內外的으로 받게 되었다. 이에 남한도 기존의 소극적 대북한 정책일변도에서 漸進的이고 적극적인 對北韓 정책으로 修正, 轉換함으로써 국제정세의 흐름에 편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 쌍방은 理念的 論理下에서 非現實的, 受容不可能한 경제교류 및 각종 회담을 제의해 왔었지만 이제는 보다 現實的이고 受容可能한 제의만이 脫理念的 화해의 분위기에 역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남북한간 각종 學術會議나 物資交流 그리고 북한의 부분적 開放措置 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며 단순한 經濟的 補完關係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南北統一課業達成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政策轉換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남북한이 經濟的 交流를 발전, 확대시켜 나간다면 쌍방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분단에서 오는 이질화를 극복함은 물론 民族同質性回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은 같은 분단국가인 東西獨의 經濟交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東西獨間의 교류에서는 西獨의 政治的 利益과 東獨의 經濟的 利益을 가능케함으로써, 결국 통일을 달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남북한 경제관계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經濟分野 및 共同開發·協力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北韓의 開放·改革促進

둘째, 南北韓內에서의 相互經濟交流와 資源開發의 조속한 기회마련

셋째, 民族經濟統合의 점진적 실현에 따르는 相互經濟協力の 필요성 인식

넷째, 國際經濟秩序變化에 따른 南北韓 共同對應方案 마련

다섯째, 統一國家 형성을 위한 첫단계로써 緊張緩和 및 統一與件造成

그러므로 本 研究는 남북한내에서는 물론 제 3국에서의 經濟協力 및 共同開發에 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政策的 意味와 合理的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南北韓 經濟分野共同開發方案에 관한 연구를 미시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현재 남북한의 間接交易이 점차 확대일로에 있고 直交易까지 실현됨으로써 相互交流가 다양화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부분적이고도 점진적인 개방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前向的인 배경과 향후의 남북한 경제 交流方向을 전망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경제분야 공동개발에 대한 對內的인 與件과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諸般支援方案을 분석한 후 제 3국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제 I章 研究目的 및 方法 등의 서론에 이어 南北韓 經濟的 特性과 現況 및 南

北韓經濟交流關係를 第Ⅱ章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인 第Ⅲ章에서는 南北韓 經濟分野共同開發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공동개발을 통한 南北韓의 經濟協力推進方向을 고찰한 뒤 통일전 東西獨 經濟交流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노력하였다. 이어 域內에서의 南北韓 經濟協力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이 제시한 “豆滿江流域開發計劃”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남한측의 參與 및 支援方案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域外에서의 南北韓 經濟協力 및 共同進出方案을 중, 소, 동구,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第Ⅳ章에서는 南北韓 經濟分野共同開發에 따른 法的, 制度的 問題點과 이에 대한 補完點 및 對應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第Ⅴ章에서 結論을 맺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資料蒐集과 蒐集된 資料의 分類에 있었다. 최근에 남북한 경제협력을 다룬 연구자료들이 상당수 발표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자료들이 斷片的이고 主觀的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 남북한간 제 3국에서의 경제협력을 다룬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主觀性을 배제하고 客觀的이고 심도있게 研究·分析하고자 각 關聯研究機關 및 有關機關, 學者들의 연구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는 한편 각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실무담당자들의 意見과 討議內容을 자료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文獻研究와 調查研究를 절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객관성 있는 방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先行研究의 檢討

최근 북한의 부분적인 開放化政策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수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政策代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들은 북한경제와 관련된 논문들로서 거의가 북한의 經濟體制나 社會主義圈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에만 편중

되어 있을 뿐 域内外에서의 南北韓間經濟分野共同開發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經濟分野共同開發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남북한 역내외에서의 經濟協力 및 交流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問題點 및 對應戰略까지 분석함으로써 實用性있는 政策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II.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1. 南北韓 經濟의 特性

韓國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政治理念下에서 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對外指向的인 開放經濟로 발전하여 왔는데 반해, 북한은 맑스-레닌 共產主義 政治理念下에서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對內指向的인 封鎖經濟로 발전하여 왔다.¹⁾ 8·15해방 당시 남북한 산업입지는 南農北工 즉 北韓地域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자원을 이용한 電力, 金屬工業 등이 산재해 있었던 반면, 남한지역은 약간의 輕工業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업지대였다. 남한은 6·25동란 이전에도 북한보다 약 3배의 인구밀도를 가졌지만, 전쟁중 피난민이 南韓地域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인구는 과밀해진 반면에,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²⁾ 戰後 美國원조에 의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했지만 1950년대 후반에는 매년 經濟成長率이 2~5%에 불과하여 1인당 國民所得도 60~8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³⁾

그러나 60년대 이후에는 정부주도에 의한 적극적인 輸出主導型 工業化政策

1) 黃仁模,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 건설연구사, 1989, pp. 42-44.

2)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9. 12, pp. 21-23.

3) 李泰旭 외 1명, 남·북한경제의 상극성과 상보성 연구, 동아연구 제 5 집; 서강대 동북아연구, 1988. 2, p. 3.

되어 있을 뿐 域内外에서의 南北韓間經濟分野共同開發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經濟分野共同開發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남북한 역내외에서의 經濟協力 및 交流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問題點 및 對應戰略까지 분석함으로써 實用性있는 政策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II.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1. 南北韓 經濟의 特性

韓國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政治理念下에서 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對外指向的인 開放經濟로 발전하여 왔는데 반해, 북한은 맑스-레닌 共產主義 政治理念下에서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對內指向的인 封鎖經濟로 발전하여 왔다.¹⁾ 8·15해방 당시 남북한 산업입지는 南農北工 즉 北韓地域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자원을 이용한 電力, 金屬工業 등이 산재해 있었던 반면, 남한지역은 약간의 輕工業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업지대였다. 남한은 6·25동란 이전에도 북한보다 약 3배의 인구밀도를 가졌지만, 전쟁중 피난민이 南韓地域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인구는 과밀해진 반면에,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²⁾ 戰後 美國원조에 의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했지만 1950년대 후반에는 매년 經濟成長率이 2~5%에 불과하여 1인당 國民所得도 60~8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³⁾

그러나 60년대 이후에는 정부주도에 의한 적극적인 輸出主導型 工業化政策

1) 黃仁模,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 건설연구사, 1989, pp. 42-44.

2)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9. 12, pp. 21-23.

3) 李泰旭 외 1명, 남·북한경제의 상극성과 상보성 연구, 동아연구 제 5 집; 서강대 동북아연구, 1988. 2, p. 3.

이 실시되고 산업구조가 조정되면서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였다. 남한은 1962년부터 네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서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출촉진정책에 의한 開發戰略을 채택하였으며, 그 이후 1981년부터는 경제정책의 基本目標을 성장지상주의에서 國民福祉의 향상과 자립경제의 달성으로 전환하였다.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라 南韓經濟는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에 의한 시장체제로 점차 이행하였고, 開放化·國際化趨勢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產業構造는 1차→2차→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전되었으며 특히 2차 製造業部門에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고도화되어 왔다⁴⁾

반면 북한은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한 重工業優先政策에 개발역점을 두었다. 同 政策은 경제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식 擴大再生産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의 物質的·技術的 토대가 되는 대규모 기계적 생산방식에 부합되는 것이며, 政治 및 軍事的으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 유지 및 증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⁵⁾

또한 북한경제는 自立化經濟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은 매우 對外 依存的이다.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기간 중에 도입한 借款을 보면 重工業 部門投資에 대한 借款導入額의 비중이 1971년에 64.5%, 1972년에 56.0%, 1973년에 47.6%, 1974년에 34.1%로서 북한경제의 對外 依存性を 입증해 주고 있다. 북한은 6개년계획초기부터 서방으로부터의 借款導入에 역점을 두었고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하여 外國資本을 유치하려고 시도하였고, 7개년 계획기간중에는 輸出增加에 역점을 두었다. 즉 1989년 6월 제 6기 16차 당중앙위원회에서 ① 既存輸出産業의 施設現代化, ② 海外市場構造, 國際經濟實態 및 科學, 技術發展趨勢 등에 대한 조사, ③ 對外契約의 철저한 이행 ④ 地方貿易과 國境貿易의 증대를 추진하는 결정을 하는 등 多角的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⁶⁾

4) 홍승기 외 2인, 남북한 경제협력과 해외합작투자방안 연구,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V)교류·협력분야-1991. p. 202.

5) 박춘산, 한소경협에 따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앞날, 季刊 북한연구, 1991봄호, p. 61.

6) 상계서, pp. 61-62.

일반적으로 한 國民經濟의 개발전략에 있어서 國內市場이 협소하고 賦存資源이 빈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對外指向的 成長, 開發戰略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韓國, 싱가포르, 臺灣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아시아 NIEs와 같은 經濟成長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成長은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은 정치에 있다는 古典的 社會主義의 한 특징에 충실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양호한 경제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최근까지 왜 北韓經濟가 파국의 양상으로 보이게 되었는가는 다음과 같은 北韓社會의 內部的 矛盾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 1970년대 전반부터 당이 經濟法則을 무시하고 絕對優位의 힘으로 經濟計劃에 마음대로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중도변경함으로써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極大化되었기 때문이다.

(2) 생산의 沈滯現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직 新規, 大規模設備建設計劃을 수립하여 강제적으로 추진하였고 기념비적 건조물 건설에 자금·기기·자재·노동력 등을 집중 투입함에 따라 既存 生産施設의 가동률 저하와 商品不足現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경제전체가 마비 혹은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1950년대 후반의 ‘천리마 운동’, 1960년대의 ‘청산리 방법’ 및 ‘분조관리제’, 1970년대의 ‘속도전’, ‘전격전’, ‘섬별전’, 1980년대의 ‘속도 창출운동’과 같은 강제동원방식에 의한 경제목표의 早期達成運動은 건물대상과 상품의 物量的 規模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반면에 製品의 品質을 경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勞動意慾을 저하시키고 勞動生産性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4) ‘주체사상’과 ‘우리식’의 독선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와의 비교 및 교류도 허용될 수 없었고 사회주의국가의 經濟改革과 開放政策도 용인될 수 없는 閉鎖社會를 자초함으로써 국제적으로 孤立化되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최근 中, 蘇, 東歐諸國들이 改革·開放措置를 단행한데다 북한도 더 이상의 고립화 내지 經濟沈滯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자 조심스럽게 문

7) 임양택, 북한경제의 현상과 대외무역구조, 1991. pp. 25-26.

호를 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對外的 開放이란 북한경제의 國際化를 겨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고도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南北韓 經濟協力도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南北韓 統一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2. 南北韓 經濟의 現況

북한의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成長率을 기록하면서 휴전 이후 최악의 침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말 현재 남북한의 주요경제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Ⅱ-1〉, 〈표Ⅱ-2〉 참조).

〈표Ⅱ-1〉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

〈1990년 12월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기본지표			
인구	천명	42,793	21,720
인구증가율	%	0.97	1.61
GNP	억불	2,379	231
1인당GNP	불	5,569	1,064
경제성장률	%	9.0	-3.7
군사비/GNP	%	4.1	21.5
對美환율	원	707.97	2.14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재 정			
재정규모	억불	388	166
예산/GNP	%	16.3	71.6
군사비지출	억불	97.3	49.8
군사비/재정규모	%	25.1	29.9
재정증가율	%	26.7	6.4
공업생산능력			
철광석	만톤	29.8	1,030
製 銑	〃	1,797.7	517
製 鋼	〃	2,540.6	594
자동차	만대	190.2	3.3
造 船	만G/T	342.2	21.4
공작기계	만대	26.3	3.5
화학비료	만톤	403.2	351.4
시멘트	〃	4,210.4	1,202

資料：統一院, 1990년도 北韓經濟綜合評價, 1991.8, p. 27.

大陸研究所, 季刊 北韓研究, 1991년 봄호, p. 31.

〈표 II-2〉

南北韓 貿易 및 外債現況

〈1990년 12월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무역총액	억불	1,348.6	46.4
수 출	〃	650.2	20.2
수 입	〃	698.4	26.2
외채(순외채)	억불	317(48.5)	78.6

資料：大陸研究所, 季刊 北韓研究, 1991년 봄호, p. 34.

GNP면에서 南韓은 1990년말 현재 2천3백79억달러, 1인당 GNP는 5천5백69달러였는데 반해 北韓은 각각 2백31억달러, 1천64달러로서 1989년말 GNP 2백

40억달러보다 3.75%나 줄어들었으며 1인당 GNP도 전년도의 1천1백23달러에서 5.2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經濟成長率은 1989년도의 2.4%에서 1990년도에는 마이너스 3.7%를 기록했다.⁸⁾

貿易規模面에서는 남한은 1990년말 현재 1천3백48억6천만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46억4천달러로서 前年對比 4% 감소된 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⁹⁾ 또한 북한의 外債規模도 1989년도의 67억8천만 달러에서 1990년말에는 78억6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침체는 본질적으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비능률성 및 정치, 군사 우선의 非合理的 經濟政策에 기인한 것이나 최근에는 資金不足, 技術落後, 設備老朽 그리고 生産意慾低下 현상까지 가세됨으로써 經濟沈滯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89년 "평축" 개최이후 재정난과 東歐의 自由化 등 국제환경의 급변으로 대내외 經濟與件이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난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불순에 따른 흉작까지 겹치게 되어 景氣沈滯가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어려운 經濟環境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軍事費가 49억6천달러로 對GNP比率面에서 남한의 4.1%보다 훨씬 많은 21.5%를 기록하였으며 總財政 支出規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 달하였다.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식량사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1989년 穀物生産은 4백81만2천톤으로 이 가운데 쌀은 1백93만2천톤에 불과하며 옥수수 2백38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추수까지 1백만톤이상의 食糧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¹⁰⁾

한편 남북한의 工業生産能力을 비교해 보면 국력과 공업화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鐵鋼의 경우 지난 1973년을 고비로 南北韓生産能力이 역전된 이후 점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남한의 製鋼能力은 1990년말 현재 2천5백4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북한은 5백94만톤으로

8) 統一院, 1990년도 北韓經濟綜合評價, 1991. 8, p. 23.

9) 상계서, p. 24.

10) 윤여창, 북한의 농림수산업의 실태와 남북한 농림수산물의 교역가능성에 관한 연구, 1991. p. 148.

11) 상계서, p. 27.

남한이 북한을 4배이상 앞지르고 있다.¹²⁾ 機械工業分野의 경우 남한의 自動車生産은 1백90만대인데 반해 북한은 불과 3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造船部門에 있어서는 지난해 남한은 3백42만톤을, 북한은 21만톤을 건조해 무려 1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電子工業의 수준은 그 격차가 더욱 커 남한이 지난해 1천4백50만대의 TV를 생산한데 비해 북한은 겨우 24만대를 생산했을 뿐이다.

또 에너지分野의 경우 남한의 發電設備容量은 2천1백2만kw, 북한은 7백14만kw이며 정유능력은 남한이 1백84만배럴, 북한이 7만배럴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같은 열악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세탁비누, 신발, 작업복 등 基礎生産必需品를 감량 지급하고 있어 주민소비품의 暗去來 時勢는 공정가격의 20~40배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經濟成長目標을 연평균 7.9%로 잡아놓고 있으나 지난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21%에 불과해 목표달성이 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經濟沈滯의 본질적 요인을 제거할 경제개혁에 노력하기 보다는 經濟特區의 설치를 통해 先進國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 부분개방을 모색하고 있어 북한경제의 침체는 長期化될 것으로 보인다.¹³⁾

3.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南北韓間의 物資交易은 1991년 상반기 현재까지 2백건이 넘어서 交易金額도 1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러한 物資交易은 올들어 급속도로 증가하여 지난해年間 交易規模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10월 南北韓物資交易指針이 制定, 施行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 제 3국을 경유한 間接交易方式을 통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7월 27일 쌀 5천톤이 북한에 직송됨으로써 분단 이후 첫 直交易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남한측이 搬入한 北韓產 物資는 1988년의 1백3만7천달러에서 1989년 57건에

12) 상계서, p. 27.

13) 이학규, 제 3국에서의 남북합작투자방안 연구, 1991. p. 285.

2천2백23만5천달러, 1990년 75건에 2천35만4천달러, 그리고 1991년 8개월동안 204건에 1억1천1백47만2천달러 등 모두 3백40건에 1억5천5백9만8천달러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반해 북한으로 搬出된 남한측 불자는 1989년 1건에 6만9천달러, 1990년 4건에 4백73만1천달러, 1991년 8개월동안 5건에 1천2백57만달러 등 모두 10건에 1천7백37만달러 상당의 물자가 거래되었다. 品目別로는 북한으로부터의 搬入이 공예품, 아연괴, 무연탄, 철강재, 시멘트, 명태, 오징어 등이며, 북한으로 搬出된 품목은 설탕, 양말면직기, 가전제품 등이다. 남한측이 들여온 품목이 鐵鋼類와 시멘트 및 農水産物이 대부분인 반면 북한측에 들어간 품목은 工産品과 一部 消費財였다(〈표 II-3〉 참조).¹⁴⁾

〈표 II-3〉

南北韓 交易現況

(단위: 천달러)

구분	반			입			반			출			
	연도	건수	금 액	품	목	건수	금 액	품	목	건수	금 액	품	목
88	4	1,037	모시조개 등	-	-	-	-	-	-	-	-	-	-
89	57	22,235	술 연괴 니켈 공예품 아연괴 무연탄 등	1	69	점퍼							
90	75	20,354	감자 철강재 아연괴 시멘트 열연코일 등	4	4,731	설탕 담배필터 양말면직기 테트론술							

14) 매일경제신문, 1991. 9. 12.

구분	반 입			반 출		
	건수	금 액	품 목	건수	금 액	품 목
91.8 현재	204	111,472	명태 오징어 아연괴 철강석 무연탄 등	5	12,570	쌀 종이 직물류 냉장고 컬러TV 세탁비누 비닐박막 고유황디젤유 고밀도폴리에틸렌
총계	340	155,098		10	17,317	

資料：統一院，北韓·統一研究論文集，1990.7.

統一院，1990年度 北韓經濟綜合評價，1991.8.

이시용，南北直交易 本래도 進入，〈每日經濟新聞〉，1991.9.12.

특히 1991년 들어서 지난 8월말까지 南北韓 物資搬出入實績은 약 1억2천4백 만달러로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부려 13배나 늘었으나 북한의 搬入은 1991년 4월 이후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南北韓間의 경제인 접촉을 통해 남한측 物資搬入意思를 적극 표시하였는데 이는 남북한 經濟交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南北韓 直交易이 本格化 될 경우 현재와 같은 物物交換方式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南北清算協定」을 체결, 兩側銀行間에 清算計定을 설치해 놓고 수출입에 따른 差額만을 상호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¹⁵⁾

15) 한국경제신문, 1991.9.12.

Ⅲ. 南北韓 共同開發協力の 基本方向과 推進模型

1. 共同開發을 통한 經濟協力 推進方向

최근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포기로 말미암아 短期的으로는 북한이 소극적인 開放姿勢 내지는 閉鎖體制로 일관할 우려도 있기는 하나, 長期的으로 볼 때 對外開放 내지는 體制變化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經濟協력도 그간의 미미하고도 消極的인 次元에서 벗어나 實質的이고 生産的인 經濟協力形態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窮極的으로는 統一을 위한 신뢰구축의 유익한 첫 단계라고 누차 제기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만약 쌍방간의 接觸과 對話를 통한 자주적인 問題解決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政治的인 대화보다는 經濟的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現實的이고 基本的인 代案일 것이기 때문이다.

1) 韓國의 競爭力確保 및 北韓의 外貨獲得

최근 들어 南韓政府는 北韓의 특정지역에 合作工場을 건설하거나 觀光, 地下資源의 共同開發, 그리고 제 3국에서의 共同事業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은 남북한 直交易上의 諸般 問題點 또는 交易擴大의 한계성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인 것 같다.¹⁶⁾

구체적으로, 南韓政府는 현재 교역단계에 머물러 있는 經濟交流를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南北韓의 交易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해도 10억달러이상의 규모로 확대되기가 어려운데다 南韓이 高貨金·땅값 上昇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은 纖維, 電子 등의 일부분을 북한에 이전하면 南北韓 모두에 상당한 經濟的 利益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

16) 송회원, 동북아 경제협력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전략, 1991. p. 10.

이다. 南韓의 입장에서는 北韓이 言語障壁이 없는 熟練勞動力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동남아시아 이상의 투자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北韓도 또한 外貨獲得, 先進技術習得效果 등 相互 經濟的 利益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經濟協力이 가능하도록 合作生産支援體制를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向後 經濟統合에의 對備

南北韓의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은 당장의 經濟的 利益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經濟統合에 대비한다는 차원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合作生産이 본격화 될 경우 南北韓 전체의 共同市場形成으로 인구 7천만에 이르는 大規模의 經濟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國內産業의 당면과제인 産業構造調整과도 맞물려 南北韓의 經濟體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은 현재 南北韓의 直交易 등 經濟交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78억달러에 이르는 外債壓力과 앞으로 더욱 심화될 外貨不足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改革, 開放政策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中國과 蘇聯은 각각 1992년, 1993년부터 북한과의 貿易去來를 달러위주의 硬化決濟方式으로 바꿀 것을 북한측에 통보해 놓고 있다.

2. 分斷國의 經濟協力模型

南北韓의 經濟交流와 協력이 최근 들어 直交易의 실현에서부터 共同開發에 이르기까지 가시화됨으로써 같은 分斷國으로서 통일을 이룩한 과거 東西獨의 經濟交流 모델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한의 대북한 經濟的 接近이 西獨이 東獨에 접근하여 經濟統合을 달성한 모형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법적근거 마련

南北韓 兩側은 國內法的·政策的 側面에서 상대방을 國家로서 인정치 않거나 무시하여 왔다. 과거 東西獨의 경우도 이와 같은 상황은 있었으나 經濟交流

가 시작됨으로써 國家承認에 대한 公式的인 의사표시 보다는 默示的인 승인하에 經濟交流의 諸般 法的根據를 마련하였다. 東西獨은 國際法的 裝置下에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默示的 承認이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양측간에 國家間 혹은 政府部處間的 조약형태의 문서가 작성되어 지속적으로 이 문서에 의한 法的 規制下에서 物資交流를 실시하였다. 특히 양독은 物資交易에 있어서 철저히 對外貿易性을 배제하고, 베를린 협정 등 양독간의 交易關係에 基本的 指針을 제공했던 문서들을 통화구역간 합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交易을 전담하는 기구도 국가기관성을 배제하였다. 또한 EC도 양독간의 物資交易을 國內交易으로 인정하고 他會員國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獨逸內 貿易과 그와 關聯된 問題들에 관한 協定(Protokoll über den innerdeutschen Handel und die damit zusammenhangenden Fragen)”이 1957년 3월에 締結되었다.¹⁷⁾ 同 協定은 유럽공동체 조약 제239조에 의하여 동 조약의 일부분이 되며 모든 會員國의 동의하에서만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獨逸內 貿易은 각종 國際法的 規律을 받지 아니하며 關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내 교역에서 東獨產 商品을 서독을 原產地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하지만 유럽공동체내에서는 自由交易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공동체 會員國에게도 搬出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양독간의 交易上 問題가 발생할 경우 공동체위원회보다는 獨自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또한 분단초기인 1950년초부터 西獨은 東獨商品에 대한 관세 및 농지부과금 면제 등 物品搬入에 대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인정한 것과, 공상신탁관리소를 신설하여 경제교류의 活性化를 꾀하였다. 그뒤 1967년에 대동독상품 送狀申請義務를 폐지하여 교역절차를 簡素化하였고 산업설비공사를 세워 동독의 設備資金을 支援해 왔다.

東西獨 經濟協力の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73년 6월 “基本條約”에서는 貿易去來外에 郵便, 電信, 電話, 交通, 通信, 旅行, 文化, 스포츠, 保健, 衛生, 言

17) 이재곤·박덕영, 남북한 경제분야의 국제법적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소고, 1991. pp. 30-31.

18) 상계서, 1990. p. 31.

論, 政府部門에서의 교류협력방안을 구체화시킴으로써 本格的인 동서독 동반 시대의 길을 열었다.¹⁹⁾

2) 代金決濟方式

동서독간의 代金支給去來는 국가기관에 의한 중앙집중적형태였다.²⁰⁾ 즉, 양독 중앙은행간의 決濟通貨는 VE(Verrechnungseinheit)를 사용하였으며 物品搬出入契約에서도 이 決濟手段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동독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화를 창출한 것으로 양측의 代金決濟用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다른 서방국가의 通貨와는 交換될 수 없었다. 양측의 중앙은행은 상대방 은행의 명의로된 清算計定을 設置, 運營하였고 또한 프랑크푸르트협정에 의하여 소위 스윙(swing)제도를 도입하여 동서독간의 物品 交易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잔액부족을 해결하는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자동대출을 허용하였다.²¹⁾

3) 西獨의 對東獨 援助 및 兩獨의 交易規模

서독은 이같은 交流 節次上의 장애요인 제거와 함께 동독에 대해 연간 40억~50억 도이치마르크 규모의 막대한 經濟援助를 제공해 왔다. 1990년 3월 서독 의회가 통과시킨 68억 도이치마르크 규모의 추경예산 중 58억 도이치마르크가 대동독에 財政支援으로 충당되었다. 政府借款 이외에도 동독내 道路使用料와 베를린 출입통로 改善費, 港灣使用料, 商品保管料, 免許使用料 등으로 지불하는 순수한 자금이전이 1980년대 이후 연간 10억 도이치마르크 내외에 이르렀고, 초과인출권(swing)형식을 빌려 매년 8억5천만 도이치마르크 수준까지 貿易決濟代金의 청산을 연기해 주었다.²²⁾ 이외에도 서독정부는 동독시민의 西獨 訪問과 동독의 政治犯 釋放에 대한 몸값 등 지난 1963년 이래 통일직전까지 약 60억 도이치마르크를 지불하였으며, 특히 양독간의 交易規模는 해마다 증가하

19) 홍승기 외 2인, 전계서, 1991. pp.218-219.

20) 상계서, p.45.

21) 이재관·박덕용, 전계서, 1990. p.35.

22) 홍승기 외 2인, 전계서, 1991. p.219.

여 1989년에는 150억 도이치마르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이와 같이 동서독은 漸進的인 經濟交流를 거쳐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南北韓 經濟交流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남한도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對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을 해야할 長期的인 戰略樹立이 필요로 하며, 특히 동서독과 같이 實質的이고 機能的인 經濟交流와 協力을 추진하기 위해 法的·制度的 장치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 域內에서의 南北韓 共同開發模型

북한은 그동안 南北韓 直交易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더욱이 自給自足 經濟體制下에서 연간 對外輸出入規模가 40억-50억달러에 불과한 데다 가중되는 外債壓力 등을 미루어 볼 때 南北韓間의 직교역은 한계가 있다. 이에 남한정부도 대북한 經濟交流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物資交易을 維持·擴大시키면서도 合作投資내지 共同開發을 적극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北韓은 豆滿江 流域을 중심으로 “東北亞 經濟圈開發計劃”을 발표하여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經濟協力方案과 그 체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이러한 經濟協力은 단기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최근의 蘇聯事態 등 國際環境이 북한을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으로 기울고 있기는 하나 南北韓內部에 큰 제약 要因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制約要因은 북한이 政治的 目的을 위해 對外經濟交流를 추진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南北韓 經濟協力は 곧 開放을 뜻하는 것이며 經濟的 利益보다는 政治的 불안가중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표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 구조면에서도 남한은 고도화된 반면에 북한은 비교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표Ⅲ-1> 참조).

23) 상계서, p. 220.

〈표Ⅲ-1〉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1990년)

〈단위 : %〉

구 분	남 한	북 한
1차산업	11.1	26.8
2차산업	45.6	56.0
3차산업	43.3	17.2

자료 : 산업연구원, 동북아 경제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1991.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가 결합될 경우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상호 經濟協力으로 物資供給이 확대되면 民生安定과 體制維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積極的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표Ⅲ-2〉 참조).

〈표Ⅲ-2〉 남북한 생산요소 부존상태

구 분	자 원	노동력	기 술	자 본	경영노하우
남 한	×	×	○	○	○
북 한	○	○	×	×	×

자료 : Ding, Shi-Cheng, The Golden Delta of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Delta of Tuman River, 1990.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세미나 발표논문 발췌.

주) ○ : 여유, × : 부족

1) 合作投資 및 共同事業의 利點

합작투자측면에서 볼 때, 北韓은 良質의 값싼 勞動力이 풍부한데다 原資材調達原價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價格 및 品質 競爭力 確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活路를 줄 수 있는 投資適地이다. 북한으로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先進技術과 資本을 남한측으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경제난 타개의 활로를 열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은 그동안 각기 쌓아온 주요 국가와의 協力關係 및 海外販賣網을 그대로 활용될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표Ⅲ-3〉 참조).

〈표Ⅲ-3〉 南北韓 合作投資의 利點

남한 : 자본 · 기술 및 유통체제	북한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설비투자자 및 설비투자 환경 충분	양질의 노동력
풍부한 공산품	저렴한 인건비
대외협력 및 판매망 충분	원자재 조달 용이 및 저원가

이와 같은 經濟協力을 통해 북한은 外貨獲得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재 등 物資供給을 원활히 하여 民生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2) 合作投資 및 共同事業의 段階的 接近方法

南北韓의 경제협력방안을 각 단계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는 國際機構나 周邊國家와의 相互補完的인 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經濟協力の 한계성을 극복하고, 북한의 開放을 가속화시키며 東北亞地域의 政治, 經濟的 안정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제 2 단계는 在外 韓國系 民間企業을 통한 협력으로서 事業 및 投資規模를 고려하여 觀光 및 海運 등 서비스분야협력을 모색하자는 방안이다.

제 3 단계는 이와 같은 協力을 통해 쌓아온 신뢰 속에서 南北韓間의 直接的인 經濟協力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즉, 地下資源, 水資源 등을 비롯한 국토 전반에 걸친 共同開發參與段階이다.

가. 제 1 단계 : 多角的인 協力을 통한 對北韓 經濟協力 및 合作投資

여기서 多角的인 協力方案이란 최근 북한이 제시한 “豆滿江流域開發計劃”에 남한의 다양한 外交的 支援과 南韓企業들의 참여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타진해 본 協力方案임을 뜻한다. 즉 國際機構 및 周邊國家와의 협력에 의한 對北韓 支援 및 參與方案, 民間次元에서의 協力 및 參與方案, 東南亞 등 海外現地法人을 통한 協力 및 參與方案 등을 구상해 보았다.

최근 北韓, 中國, 蘇聯이 豆滿江流域을 중심으로 한 국경지대에서 東北亞의

東海沿岸圈開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豆滿江流域 개발에 따른 참여국의 利害問題는 장춘, 훈춘, 우란바토르 회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中國과 北韓이 개발역점지구를 어디에 두느냐의 분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 개발중심지역에 대해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中國쪽의 훈춘(敬信과 防川)에 중점을 둘 경우 15~18km에 달하는 豆滿江下流의 준설에 따른 추가적 投資로 인해 300억 달러라는 엄청난 費用이 소요되며 北韓의 선봉(웅기), 나진의 기존시설의 現代化에 중점을 둘 경우 投資費 節減이나 效率性은 높으나 北韓의 政治的, 國際的 信賴性이 문제로 남는다. 蘇聯은 그동안 國內政治問題 및 나훗카, 보드토니치니 등의 開發問題로 포시에트 地域開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財政확보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다. 日本은 장차 재정지원을 담보로 3국을 한곳으로 묶되 막대한 자원이 매장된 中國, 蘇聯쪽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²⁴⁾ 구체적으로 北韓, 中國, 蘇聯의 입장과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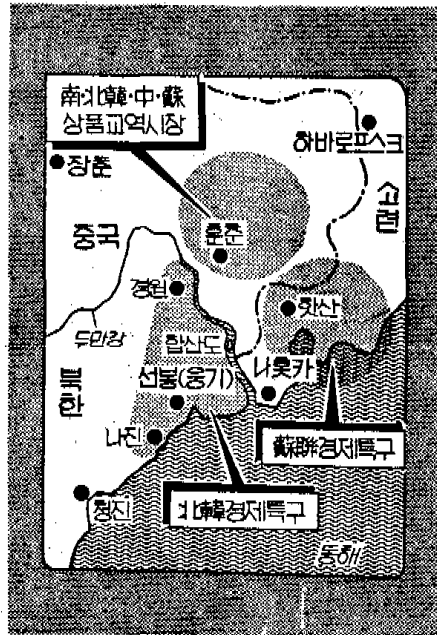
최근 북한은 유엔국제개발계획기구(UNDP)회의에서 豆滿江流域(북한의 선봉, 중국의 훈춘, 소련의 나훗카, 포시에트) 經濟特區開發을 제의하고 여기에 南韓企業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南北韓經濟協力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北韓은 경제특구 개발대상지역으로 한때 哈山島가 거론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先鋒과 羅津지역에 經濟貿易地區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계획은 나뉘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즉 중국의 계획대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豆滿江 沿岸의 항구, 항로, 철도 등을 개발하기 보다는 圖門-先鋒-羅津間의 기존 철도와 도로를 보강, 개선하여 활용하면 開發費用 節減과 時間節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훈춘-長嶺子-포시에트간에 철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圖門-豆滿江-포시에트간을 연결하는 기존의 北韓-蘇聯간의 철도 등 주변 社會間接資本施設을 보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현재 中國의 걸림성과 흑룡강성이 기존의 圖門-清津間 철도를 이용하여 상당량의 穀物을 수출하고 있으나

24) 김성훈, 누만상하구 삼각주개발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대응전략과 남북한경제협력, 한국무역협회, 1991.10, p.45.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物動量이 늘어난다 해도 淸津, 羅津, 先鋒港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측의 주장이다.²⁵⁾

또한 淸津, 羅津港은 中國 동북 3성의 農産物, 蘇聯 沿海州와 중앙아시아의 石炭과 肥料를 대량 수송할 수 있으며, 반대로 日本이나 東南亞, 太平洋 沿岸國들의 生産品도 이 항구를 통해 소련, 중국, 몽고 등지로 수송할 수 있는 仲介港으로서도 적지이기 때문에 소련, 중국, 몽고, 동남아, 태평양 연안국 등 여러 나라가 共同惠澤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은 내세우고 있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北韓·中國·蘇聯의 東北亞 經濟特區 開發計劃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北韓의 豆滿江經濟特區는 투자규모면에서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北韓의 經濟規模로 보아 대단위 투자사업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두만강 개발 5개년계획(1992~1996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은 北韓의 선봉, 中國의 방천, 그리고 소련의 포시에트를 잇는 “小三角

25) 김태홍, 훈춘 및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과 전망, 한국무역협회, 1991. 10, p. 31.

自由經濟區”²⁶⁾開發과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그리고 소련의 나훛카를 연결하는 “大三角經濟特區”開發, 中國 東北地域과 蘇聯 沿海州 經濟特區區域, 北韓의 자강도, 咸鏡北道를 “開放區域”으로 설정해 개발전략을 수립하자는 3개의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小三角地域”에 인구 1백만명의 新興都市를 건설하고 自由經濟區域은 홍콩과 비슷한 방법으로 국경을 초월한 經濟活動을 보장하자는 제안도 했다.

中國의 제안은 北韓, 蘇聯의 구상보다는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同 構想의 제안자인 중국은 아직까지 기본적인 제안이외에 具體的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南韓과 日本의 態度變化에 따라 流動的인 措置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中國의 구상에 대해서 蘇聯은 지금까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北韓 역시 이미 살펴본 것처럼 競爭的인 姿勢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南韓은 北韓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구상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그 實現可能性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듯하다. 經濟性面에서는 북한이나 중국 구상안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 안이 성사된다 해도 南北韓 經濟協力關係進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南北韓 關係進展이 다소 늦어지거나 미온적인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南韓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蘇聯은 極東地域綜合開發計劃을 확정하여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나훛카에 經濟特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시에트, 블라디보스토크 등 蘇聯經濟發展의 戰略地域을 먼저 開發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의 개발안을 非現實的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東北亞協力の 주무대를 자국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 中國, 蘇聯이 각기 경제개발지역으로서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각기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南韓과 日本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소위 “環日本海經濟圈”을 활발히 논의

26) 두만강 하구 지역인 북한의 웅기, 중국의 방천, 소련의 포시에트를 잇는 약 8백km²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일명 “黃金의 三角地帶”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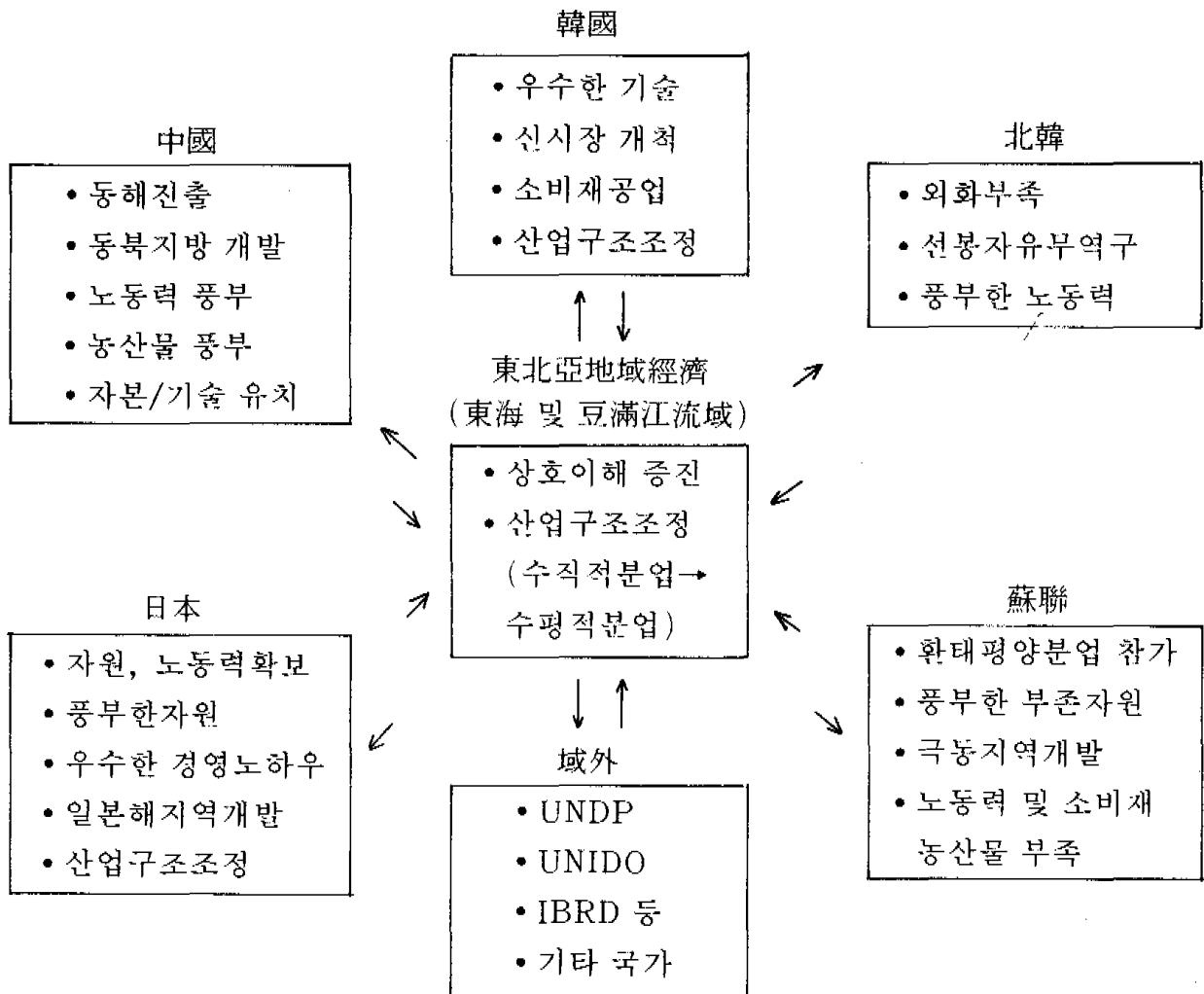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南韓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南韓은 北韓과 經濟協力 및 共同開發의 기회를 모색하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경제협력을 擴大, 發展시켜 民族和合에 기여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政治, 經濟的 關係改善이 되지 않고서는 東北亞의 어떤 진전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南韓은 현재 北韓이 구상하고 있는 東北亞 經濟圈의 開發計劃을 지원함은 물론 同 構想에 대한 주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표면은 북한과 그 맥락을 같이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具體的인 支援方案은 다음과 같다.

(1) 國際機構 및 周邊國家와의 協力에 의한 對北韓 支援 및 參與方案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東北亞經濟協力圈構想은 관련 당사국들의 生産要素가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大規模協力の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북한의 구상이 실현가능토록 유엔국제개발계획기구(UNDP)나 國際聯合 工業開發機構(UNIDO) 등 관련 국제연합산하기구 및 주변국가를 통한 多角的인 經濟協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 世界經濟의 多極化 趨勢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地域內 協力擴大가 커다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南北韓이 위치한 이 지역에서도 地域經濟圈의 한 형태로 東北亞經濟圈이 대두되어 關聯國家間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실상 北韓은 南韓의 技術, 資本을 필요로 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援助 내지는 支援보다는 多者間 協력을 통한 대북한 支援方式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北韓의 政治, 經濟, 社會的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먼저 북한의 經濟開放과 改革을 보다 진전시키고 南北韓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投資危險度나 현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日本이나 東南亞, 太平洋沿岸國家와의 合作投資形態를 모색하든지 또는 南韓-日本의 資本과 技術에 北韓의 勞動力, 蘇聯-中國의 地下資源 및 天然資源을 결합하는 合作投資方式을 택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現實化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多角的인 外交努力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III-2>에서처럼 多者間 經濟協력을 통한 對北韓 支援 및 現 北韓 構想에 대한 參與方案이 필요한 것으로 사

〈그림Ⅲ-2〉 對北韓 多者間 經濟協力 支援 및 南韓의 參與方案



료된다.

따라서 남한 당국은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南北韓 經濟協力 및 經濟 交流를 통해서 短期的으로는 북한개발에 남한이 참여하고 長期的으로는 남북 한 관계정립과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周邊社會間接資本 擴充 및 所要資本 支援方案

먼저 北韓은 同 構想을 실현시키기 위해 陸·海上輸送路를 확보한다는 계획 이다. 따라서 圖門-先鋒-羅津間의 기존철도와 도로확충과, 淸津, 羅津, 先鋒 港의 시설확충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첫째, 陸上運送施設 擴充면에서, 동북아지역 內陸運送體制 연계를 위한 鐵

道와 道路建設이 필요하다. 그동안 南北韓의 분단으로 海洋과 大陸의 橋梁이라는 半島가 갖는 천혜의 지정학적 역할이 차단되었다. 분단 이후 단절된 京義線과 京元線 및 錦江線을 연결시켜 南北縱斷鐵道를 건설하고 이를 다시 기존의 中國의 橫斷鐵道(Trans China Railroad : TCR), 蘇聯 시베리아 橫斷鐵道(Trans Siberian Railroad : TSR)와 연계시켜 보자는 것이다. 京義線과 TCR을 연결하고, 京元線과 TSR을 연결하면 한반도와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鐵道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南北韓 縱斷鐵道는 기존의 海上루트 또는 TSR 심지어 TCR보다는 運賃面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鐵道運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즉 海運이 갖고 있는 태풍과 같은 自然的 制限條件에 취약한 것과는 달리 거의 전천후 運送手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東北亞地域의 物量輸送과 經濟發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海上運送面에서 청진, 나진, 선봉항의 항구는 중국의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 3개지역의 農產物, 土產物은 물론 蘇聯 極東地域의 石油, 중앙아시아의 石炭과 肥料 등의 수송과 日本이나 東南亞, 太平洋沿岸國들의 物資輸送能力도 갖추는 등 육상과 해상을 잇는 複合運送의 前進基地로 확충되어 物流의 迅速성과 正確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貨物의 保管, 在庫管理, 包裝, 情報, 通信, 金融, 保險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綜合貨物流通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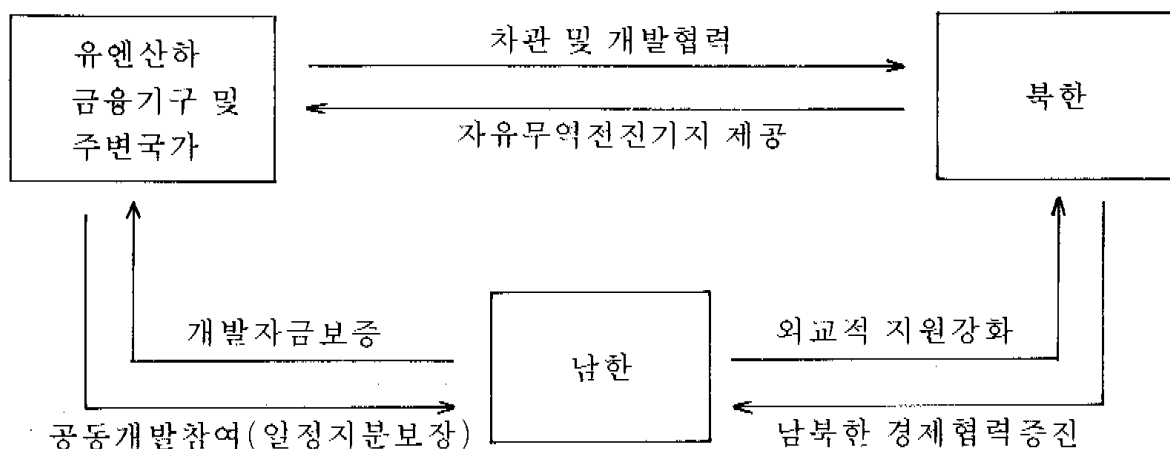
이와 같이 社會間接資本의 Hard Ware 부문 건설과 Soft Ware 부문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投資함으로써 投資와 物流面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²⁷⁾ 이에 南韓이 참여함으로써 北韓의 豆滿江流域開發計劃을 直·間接적으로 지원하자는 方案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서 北韓이 구상하고 있는 周邊地域의 社會間接資本 施設擴充에 南韓企業의 技術과 資本을 투입하는 방안과 南北交流協力 基金(1992년에 약 500억원 정도로 확충할 계획)중 일부를 북한에 지원하는 直接的인 方案이 있다. 또한 남한의 國際적인 信用도와 信賴성을 활용하여 개발에 所 要되는 資金은 남한이 保證하는 형태의 차관을 도입하여 충당하는 間接적인 對

27) 송희원, 동북아경제협력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전략, 한국무역협회, 1991. p. 31.

北韓 資本支援方案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北韓의 對內外的인 問題와 南韓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間接的인 支援方案이 보다 實現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同 支援方案에 대한 구상을 다음과 같이 摸索해 보았다(〈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對北韓 社會間接資本 支援構想



(3) 東南亞 등 海外現地法人을 통한 協力 및 參與方案

東北亞 經濟圈開發 參與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서 동남아, 유럽, 동구권, 소련 및 중국 등에 진출해 있는 韓國系 企業의 現地法人을 이용한 對北韓 支援策 및 參與方案도 강구해 볼 만하다. 특히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現地法人은 同 經濟圈 開發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타지역보다 전자 및 섬유, 신발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고 일부 업체는 先進國과의 競爭深化, 賃金上昇 등 머지않아 比較優位가 상실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新 市場開拓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東南亞 企業들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南韓의 東北亞 經濟圈 開發參與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南北經濟交流의 基盤構築과 民族同質性回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協力주체간 인적교류 즉 各國 研究機關間 研究院 交流, 生産人力의 技術研修, 相互補完的인 賦存資源의 效率的인 結合 등, 持續的인 交流擴大에 노력하여 協力の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北韓이나 中國의 開發計劃 실현여부는 南韓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있고, 특히 北韓의 제안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남한의 多角的 支援 與否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제 2 단계 : 在外 韓國系 民間企業을 통한 觀光 및 海運의 共同協力 및 開發
 觀光 및 海運 등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國內 民間企業 등에서 북한측에 수차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쌍방간의 協力限界性을 보여준 것으로써 앞서 제시한 제 1 단계가 어느 정도 擴大, 發展한 상태에서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在美, 在日 등 在外 韓國系 民間企業을 통한 공동개발이 상황에 따라서는 國內 民間企業에 의한 對北韓 接近보다 그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은 풍부한 觀光資源의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어 南北韓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수입국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명산인 金剛山 및 隣近地域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1989년초 국내 기업인의 방문으로 可視化된데다가 북한의 外貨不足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金剛山 開發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濟州道-雪嶽山-金剛山의 관광 코스를 連繫 開發하거나 원산과 명사십리 등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자는 정부 측 기존 제의도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協力可能性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南韓을 찾는 外國觀光客(89년 기준 2백73만명) 중 상당수를 北韓도 연계코스를 이용하여 유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南北韓 모두 觀光誘發效果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南北韓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 物資交易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南北韓의 定期海運航路開設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南北韓 交易의 대부분이 중국, 홍콩 등 제 3 국으로 경유하는 迂迴輸送路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輸送費와 入出港手續이 번잡하여 費用負擔의 가중은 물론 남북한 경제협력의 主要 障礙要因이 되어왔다. 海運直航路로서 가장 유망한 항로는 釜山-元山-興南, 東海-元山-興南 등의 동해안 직항로와 仁川-南浦, 仁川-海州, 群山-海州-南浦 등의 서해안 직항로 등인데 이곳들은 既存의 港灣施設과 產業施設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항만확충을 위한 追加費用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 3 단계 : 南北韓間의 直接的인 經濟協力으로서 地下資源 및 水資源 共同開發과 國土開發

만약 앞서 언급한 제1, 2단계가 원만히 진행되어 南北韓間의 상호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이제까지의 迂廻的이고 間接的인 經濟協力보다는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經濟協力과 共同開發은 물론 나아가 제 3 국 共同 進出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地下資源 및 水資源 등의 共同開發과 社會間接 資本을 비롯한 國土開發에 대한 共同開發을 모색하고자 한다.

北韓의 鑛物資源은 남한보다 埋藏量이 훨씬 풍부한 편이다. 主要 賦存資源을 보면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중정석, 형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에 속한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100% 북한에 매장되어 있으며, 철, 석회석, 무연탄, 유연탄 등은 각각 93.8%, 98.5%, 89.0%, 99.8%씩 북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²⁸⁾

北韓은 石炭에 대한 에너지 依存度가 총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産業用 燃料의 거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化學工業도 石炭系 列 化學工業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工業發展은 石炭의 수급여하에 달려 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많은 埋藏量에도 불구하고 地下資源의 生産量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北韓의 産業生産性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측은 地下資源開發에 많은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同 部門에 대한 進出方案도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현 정치, 사회적 여건하에서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개방속도에 따라 段階的 進出戰略을 세워야 할 것이며 北韓의 實相과 立場을 고려하여 다소 입지조건이 불리할지라도 초기에는 중, 소 국정부근개발에 주력하다가 점차 북한 내륙쪽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南韓企業의 진출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제 3 차 國土綜合開發計劃(1992년~2001년)에서 南北交流의 活性化 및 統一에 대비하여 段階的인 國土整地作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8) 한국무역협회, 남북한 경제교류촉진을 위한 발전안(안), 1989. 4, p. 73.

29) 상계서, pp. 72-74.

현재 南北韓間에 존재하는 국토공간의 이질성을 段階的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南北韓共同開發에 대해 基本方向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實踐方向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인지는 모르나 周邊情勢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事前的이고도 事後的인 對策樹立이 요구된다.

첫째, 南北韓 國土整地作業은 쌍방간의 與件造成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도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즉, 이미 언급한 제1, 2단계하에서 相互 和解雰圍氣造成이 선결조건이며 교류의 분위기가 일단 성숙되어 있다면 周邊情勢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國土整地作業案의 전체 예산이 약 2백56조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民間負擔이 1백40조원으로서 전체 5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으로부터 연평균 14조원(10년간)의 國土開發投資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各種 投資誘引策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特惠是非가 일어날 소지도 있고, 同 計劃의 성사여부도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이런 막대한 資金은 南北韓間 事前的인 合意에 의해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앞서 말한 남북한의 연계관광코스 등 서비스分野 協력이 먼저 실현된다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第3國에서의 南北韓 共同開發 模型

南北韓의 제3국진출은 南韓의 資本과 技術에 北韓의 勞動力을 결합시키는 형태로서 蘇聯의 시베리아 森林開發 및 水資源開發, 中國의 農地開墾參與, 東歐圈 등 기존 북방지역에 대한 經濟協力, 그리고 中東建設 現場進出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은 南北共同進出은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으로서는 遊休勞動力活用과 海外進出經驗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서 南北韓 兩側間의 交流, 協力次元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며 이에 대한 協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Ⅲ-4〉 韓國企業의 對蘇 投資現況(1991년 7월말 현재)

〈단위 : %, 천달러〉

업 체	업 종	비 율	금 액
진도	무역업	10	80
〃	모피의류, 제조업	50	400
현대종합상사	산림개발	50	8,063
홍충물산	소프트웨어개발 및 무역업	51	418
삼성물산	호텔업	51	2,400
이기	위생젓가락, 제조업	50	300
남성조선	선박수리 및 조선기자재	50	239

資料 : 每日經濟, 1991. 8. 20.

〈표Ⅲ-5〉 韓·蘇 合作投資推進現況(1991년 7월말 현재)

업 체	지 역 및 업 종
현 대	나훗카 : 무역센터건설 및 운영, 연해주 : 펄프공장, 블라디보스토크 : PC생산공장, 파르티잔스크 : 석탄개발, 엔긴스코 : 석탄개발, 토볼스크 : 석유화학단지, 나훗카 : 비누공장, 슬라비양카 : 수리조선소
삼 성	전자부품공장, 원피가공공장, 어업합작사, CA-TV기술설비
력 키 금 성	레닌그라드 종합개발, 냉장고공장, 비누 및 치약공장, 탄광개발, 석유화학단지 건설
대 우	전자레이저부품공장, 흑해연안 방적 봉재공장
삼 환	하마로프스크 호텔건설, 건축자재공장
롯데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알마아타 백화점 건설
홍 창 물 산	계측분석기기 제조

資料 : 每日經濟, 1991. 8. 20.

1) 蘇聯

1990년 2월 南韓政府는 蘇聯의 極東,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제 3 국에서의 南北韓 合作投資 및 共同開發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아직

까지 구체적인 협력사례는 없는 것 같다. 다만 남한의 단독투자로 森林開發, 호텔개보수 및 운영, 船舶修理, 貿易業, 소프트개발 등을 비롯하여, 30여개에 달하는 合作事業이 추진중에 있다(〈표Ⅲ-4〉, 〈표Ⅲ-5〉 참조)³⁰⁾

그러나 최근 北韓의 유엔가입, 蘇聯의 開放, 改革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협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南北韓間 第3國에서의 협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南北韓 合作投資의 유망지로는 시베리아의 야쿠츠크 天然가스田, 사할린 가스田, 칼릭자치공화국의 가스田, 파르티잔스크지역의 石炭開發事業(연산 60만톤), 우루갈 炭鑛, 우다칸 炭鑛, 치타우르탄 銅鑛開發(매장량 7억톤), 사할린 및 시베리아 原木開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이미 南韓企業들이 소련정부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도 수립한 상태로 보이나 가장 큰 문제는 勞動力確保가 어렵다는 점이다. 北韓도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 森林開發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南北韓이 이들 지역에서 共同開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南北韓이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天然資源이나 값싼 原資材를 획득하여 輸出戰略品을 생산한다면 안정적인 製品供給源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價格競爭, 市場多變化 등 比較優位效果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中國

中國과의 修交를 앞두고 있는 南韓은 중국과 大規模 農業開發投資契約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中國 東北 3省(滿洲) 3억평의 三江평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우리의 북방경제진출에 획을 긋는 대역사로서, 製造業이 아닌 農業進出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三江평원은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등 동북 3성의 흑룡강-우수리강-송화강 등 3곳이 맞닿는 만주 벌판으로 약 10만9천km²에 해당하는 평원이며 이중 남한이 1차로 開發할 지역은 후진(富錦)시의 약 1억1천4백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림 Ⅲ-4〉 참조)³¹⁾

30) 국제민간경제협의회, 북방경제, 1991.6, p. 20.

3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1991. p. 5.

〈그림 III-4〉

中國의 三江平原 開發地



삼강평원에 대한 南北韓의 共同進出 妥當性を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렴한 開發費를 들 수 있다. 總開發費가 약 4천만달러(약 3백억원)로서 平당 3백원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저렴한 人件費이다. 그곳 勞働者들의 월 인건비가 약 2백원(약 3만원)선으로서 월 3~4백원 정도의 조건하에서도 事業妥當性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땅이 매우 肥沃하다는 점이다.

넷째, 시장이 確保되어 있다는 점이다. 中國의 農業生産은 한계가 있는데 반해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어 販路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개발예정지에 이미 電氣와 鐵道가 들어와 있어 社會間接施設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이곳에 農業投資를 함으로써 다른 업종에 참여할 때 中國측에서 남한에 대해 優先權을 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東北 3省은 우리동포가 많이 살고 있어 言語障壁이 없고 文化가 같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같은 조건하에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人力需給問題가 대두되고 있다. 中國 國民의 대다수가 江북이남에 거주함으로써 심한 인구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월 3~4백원을 지불하는 條件에서도 現地 雇傭事情은 量的, 質的으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遊休勞動이 많은 北韓 現地勞動者를 투입할 수 있도록 南北韓間 協調體制가 성립된다면 北韓으로서는 外貨獲得과 勞動力活用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韓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食糧市場開拓에 따른 利潤을 分配하고 北韓의 不足한 食糧사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이 이미 확보한 타사업진출시에 우선권을 북한도 공유함으로써 약초, 응답 등이 풍부한 三江平原周邊에 製藥會社設立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北韓은 동북 3성에서 이미 食堂이나 호텔 등을 소규모로 경영하고 있다(〈표Ⅲ-6〉 참조). 그러나 南韓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結合하여 경영을 한다면 중국내에서의 사업도 확대될 것이다.

넷째, 北韓이 참여한다면 동북 3성과 한반도를 잇는 하나의 經濟圈이 탄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동북 3성에 9천5백만명, 남북한 7천만명등 1억7천만명의 거대한 시장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표Ⅲ-6〉 北韓·中國의 主要合作投資 實績

〈단위 : 만달러〉

업 체	기 업	규모	설립	사 업 내 용
북경평양냉면관	—		1987	—
도문강식당	연길시와 함격북도	80	1988	—
연길-두만강호텔	함경북도 두만강 회사 연길시 운수 총공사	93	1988	연길시내에 총건평 3,300m ² 규모
연진합영해산물 주식회사	북한대성 무역상사 연변조선인 자치의 대 외무역회사	100	1989	연 4,500톤 규모의 해산물가공판매를 위해 청진에 설립

資料 : 産業研究院, 季刊 共產圈經濟, 1990.12, p.49.

3) 베트남

최근 베트남은 東歐圈의 改革, 開放과 맞추어 對外指向的인 政策을 추구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民間經濟活性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제국과의 경제교류를 구체화하고 있고 對美關係改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위치한 지정학적 利點, 풍부한 天然資源, 각종 投資誘引政策 등으로 말미암아 각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南北韓의 대베트남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國家라는 점이며 南韓의 外交的 限界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美-베트남과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지면 美國-北韓과의 關係改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相互補完的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南北韓이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加工產品에 대한 進出: 풍부한 天然資源을 바탕으로 한 鑛物加工業, 農水產物加工業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측은 이러한 산업을 輸出產業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北韓 또한 同 分野에 대한 기존의 경험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진출한다면 食糧補充과 外貨獲得의 利點이 있을 것이다.

둘째,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進出: 베트남측은 호텔과 觀光產業, 通信, 空港, 港灣, 交通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에 외국인 기업의 진출을 유치·권장하고 있다. 北韓도 이미 同 分野에서는 상당한 技術과 經驗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迂廻輸出基地로서의 進出: 美國이 베트남에 대한 經濟制裁措置를 해제하고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은 미국의 特惠關稅 受惠國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南北韓이 이곳에 진출한다면 對美, 對아세안諸國, 東歐諸國 등에 대한 迂廻輸出基地로도 활용할 수 있어 남북한 쌍방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共同協力體를 구상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東歐圈

최근 東歐圈에서의 이데올로기 종식과 西方 資本主義的인 市場改革으로 同地域에 대한 진출전망이 가일층 밝다. 그러나 南北韓의 對東歐圈進出은 시장개

척이라든가 또는 소련, 중국, 베트남처럼 資源確保市場으로서 큰 매력은 없다. 대신 1992년에 예정된 EC통합에 대비한 對應策의 일환으로서 EC진출의 橋頭堡役割을 할 수 있는 적지로 생각된다.

또한 同地域은 경제가 개선되고 對外交流가 활성화되면 觀光産業이 번창할 것으로 보여 南北韓 共同進出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同地域은 觀光産業의 기반이 되는 文化遺産과 自然資源이 豊富하고, 觀光産業이 外貨獲得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각국은 觀光産業을 1990년대 主要 成長産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국이 공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호텔建設, 觀光品 販賣店, 空港建設, 港灣建設, 通信網 構築 등이며 동 분야의 개발을 위해 西方資本을 필요로하고 있다.

(1) 蘇聯: 蘇聯의 기존 관광개발은 유럽지역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였으나 현재는 고대 실크로드지역의 文化遺跡地 中心地域과 그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 이 두 국가의 觀光産業이 가장 유망하며, 비교적 觀光産業이 활성화될 수 있는 諸般與件이 풍부하다. 그러나 政治, 社會的 불안으로 국가 시책만큼 성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3) 폴란드,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觀光資源은 풍부하나 政治, 社會的 불안과 國家財政難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中東地域

최근 南韓政府는 北韓이 동의한다면 中東建設現場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고 이것이 실현되면 그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南北韓의 外貨獲得과 共同協力이라는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공동협력은 蘇聯이나 中國 등지에서 많은 經驗과 技術을 축적한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수한 政治, 社會的 慣習과 氣候條件 등 남북한간의 조화의 바탕없이 극복할 수 없는 制約要件이 수없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西方資本을 유치함으로써 先進諸國과의 競爭도 치열한데다 서방자본에 대한 偏見도 심하여 진출기업의 資産, 沒收, 押收 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對中東進出은 첫째, 여타 지역에서의 충분한 經驗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北韓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社會間接資本 및 一般建物에 투자한 후 점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적절한 듯 하다.

셋째, 西方資本에 대한 偏見, 排他的인 宗教的 特性 및 不安定한 中東情勢를 고려하여 政府는 가급적 中立的인 姿勢를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合作投資의 주체는 남북한 공동인 만큼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일 것이다.

IV. 南北韓 共同開發에 따른 問題點 및 對應方案

지금까지 南北韓의 經濟分野 共同開發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摸索하고 基本方向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法的, 制度的인 지원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先決要件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現行 關聯法規를 검토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미비된 점은 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등 多角的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法的未備의 問題點

지금까지 南北韓 兩側은 상호간 국가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양측은 政治, 經濟, 社會的 側面에서 공식적인 國際協約이나 交流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이 經濟交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關聯法規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南北物資交流의 대부분을 홍콩 등 제 3국을 통한 間接交易方式으로 추진해 온데다 여기에 既存 關聯法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최근 들어 南韓은 南北韓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對外交流 및 投資關聯法인 外國換 管理法을 준용해 오다가 지난 1989년에 民間企業의 對

따라서 南北韓의 對中東進出은 첫째, 여타 지역에서의 충분한 經驗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北韓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社會間接資本 및 一般建物에 투자한 후 점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적절한 듯 하다.

셋째, 西方資本에 대한 偏見, 排他的인 宗教的 特性 및 不安定한 中東情勢를 고려하여 政府는 가급적 中立的인 姿勢를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合作投資의 주체는 남북한 공동인 만큼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일 것이다.

IV. 南北韓 共同開發에 따른 問題點 및 對應方案

지금까지 南北韓의 經濟分野 共同開發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摸索하고 基本方向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法的, 制度的인 지원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先決要件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現行 關聯法規를 검토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미비된 점은 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등 多角的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法的未備의 問題點

지금까지 南北韓 兩側은 상호간 국가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양측은 政治, 經濟, 社會的 側面에서 공식적인 國際協約이나 交流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이 經濟交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關聯法規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南北物資交流의 대부분을 홍콩 등 제 3국을 통한 間接交易方式으로 추진해 온데다 여기에 既存 關聯法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최근 들어 南韓은 南北韓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對外交流 및 投資關聯法인 外國換 管理法을 준용해 오다가 지난 1989년에 民間企業의 對

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1989.3)을 제정한 바 있고, 다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1990.8) 및 南北協力基金法(1990.8)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에서 종종 제기되어 온 제3국에서의 南北韓 經濟協力 및 共同進出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아직까지도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關聯法規에 의한 支援方案만 마련해 놓고 있다.

外國換管理法은 법제정시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先進國 및 開途國을 대상으로 한 법으로서 南北韓 直交易이나 海外合作投資를 支援할 수 있는 外換管理規定을 별도로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南北交流에 관한 特別法도 그 목적이 物資交流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서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南北協力基金法도 1990년 당시 단순한 南北韓物資交流만 고려한 순수한 經濟交流支援策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1996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物資交易에 따른 손실을 補填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단순한 물자교역차원인지 혹은 對北韓 경제협력전반에 걸친 사항인지가 불투명하며, 주변정세변화에 따른 所要支援範圍와 책정상의 問題點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내부의 法的未備點 이외에도 周邊情勢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外交上의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

특히 南北韓 經濟交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北韓의 合營法 등 기존의 合作投資關聯法들이 果實送金, 자유로운 資本移動을 보장해 줄 수 있으나 하는 문제점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南北韓 中央銀行間의 清算計定設置問題 등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國際法的 장치하에서 남북한 경제교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法的規制가 없는데다가 주변국들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國內交易으로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諸般 國際的 法律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國內外的으로 南北韓 經濟交流 및 第3國 共同進出을 위한 法的·制度的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法的·制度的 對應方案

南北韓의 經濟分野 共同開發에 관한 法的·制度的 對應方案으로서는 우선 相關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外換管理法과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金法 등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南北韓의 經濟分野 共同開發에는 기존의 海外投資關聯法보다 우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의 경제분야 공동개발에 관한 政策, 審議, 調整 및 基本原則, 認·許可, 進出分野 및 範圍, 各種 支援策, 南北韓 出資 및 持分率, 送金 등의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요구된다.

둘째, 이러한 特別法은 당장은 실현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당국과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²⁾

셋째, 과거 獨逸의 경우처럼 南北韓 交易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하여 關稅問題나 通關問題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교역 당사국들과 外交的인 合意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南北韓 共同特別法案은 域內투자자와 제 3국투자를 별도의 細部事項으로 규정해야 하며, 關聯 專擔機構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南北韓 經濟交流關聯專擔機構가 설립되면 모든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業務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國內에 있는 각 相關부서와는 獨立的인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이와 같은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南北韓이 공동으로 域內外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며, 아직까지 南北交流가 시작에 불과한 상태하에서는 남한내부의 法的問題나 企業의 問題點들을 改善·發展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南北協力基金法의 적용 대상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단순한 物資交易에 관한 支援 즉,

32) 獨逸의 경우 國際的인 協約下에 양독간의 非關稅 協定, 독일내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협정(1957.3) 등을 체결하여 국가기관의 교역전담을 배제하고, 외국의 양해하에 양독간의 교역을 國內交易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外國의 干涉을 배제하는 등 東西獨間 經濟交流를 淸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對北韓 交易時 발생할지도 모를 危險 및 損失分에 대해서는 同 基金으로 보충 하겠다는 것과 들쭉, 北韓內에 투자할 경우, 低金利 融資惠澤³³⁾과 投資 損失에 대한 補塡를 해주겠다는 것 등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3국에서의 共同 事業에 따른 支援 및 損失補塡를 추진하는 것도 南北韓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1년 7월 정부는 南北韓 中央銀行間 清算協定締結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外交的인 努力을 多角的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同 協定이 締結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南北韓物資交流는 물론 國內企業의 참여 욕구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협정하에서는 南北韓 交易當事者들은 일정기간의 바터방식에 의한 物資交易을 金額으로 換算하거나 서로 相計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差額을 상대방 清算計定決濟銀行에 지급한 후 다시 物資交易을 재개함으로써 대규모 거래 대금없이도 물자의 搬出, 搬入을 통해 交易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南北經濟交流가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시점에서 一部企業들이 對北韓 進出에 지나친 競争을 하거나 타기업의 對北韓 接觸을 견제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함으로써 南北韓 經濟協力 및 交流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 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 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點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

33) 南韓企業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南北協力基金에서 投資金額의 90%까지 年利 5%의 낮은 金利로 融資해주고 投資損失에 대해서도 최고 90%까지 補塡해 주도록 되어 있음.

對北韓 交易時 발생할지도 모를 危險 및 損失分에 대해서는 同 基金으로 보충 하겠다는 것과 들쭉, 北韓內에 투자할 경우, 低金利 融資惠澤³³⁾과 投資 損失에 대한 補填을 해주겠다는 것 등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3국에서의 共同 事業에 따른 支援 및 損失補填을 추진하는 것도 南北韓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1년 7월 정부는 南北韓 中央銀行間 清算協定締結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外交的인 努力을 多角的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同 協定이 締結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南北韓物資交流는 물론 國內企業의 참여 욕구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협정하에서는 南北韓 交易當事者들은 일정기간의 바터방식에 의한 物資交易을 金額으로 換算하거나 서로 相計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差額을 상대방 清算計定決濟銀行에 지급한 후 다시 物資交易을 재개함으로써 대규모 거래 대금없이도 물자의 搬出, 搬入을 통해 交易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南北經濟交流가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시점에서 一部企業들이 對北韓 進出에 지나친 競爭을 하거나 타기업의 對北韓 接觸을 견제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함으로써 南北韓 經濟協力 및 交流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 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 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點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

33) 南韓企業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南北協力基金에서 投資金額의 90%까지 年利 5%의 낮은 金利로 融資해주고 投資損失에 대해서도 최고 90%까지 補填해 주도록 되어 있음.

新市場開拓의 이점은 없지만 觀光産業開發參與가 유망하며 EC진출의 橋頭堡 役割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中東地域은 특수한 政治·社會的 慣習 및 氣候條件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制約要件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한 合作진출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中東情勢 등을 고려하여 合作의 주체는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북한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建設공사에 合作진출한 후 漸進的으로 대규모 建設工事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추진하는데 따른 法的·制度的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法規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金法 등이 있으나 남북한의 역내외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外國換管理法과 諸규정들도 이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위해서는 기존법규의 보완 이외에도 ① 이를 직접 관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 關聯專擔機構의 設立·運營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③ 主要 交易對象國들과의 外交的인 노력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해야 하고 ④ 남북한 中央銀行間 清算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⑤ 企業들의 過當競爭과 不公正 去來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 김덕배, 『중국의 개방정책의 현실과 미래』, 통일로 3, 1988.
- 김성훈, 『두만강하구 삼각주개발에 대한 동북아각국의 대응전략과 한국경제협력』, 한국무역협회, 1991.
- 김세원, 「남북한 경제협력방안과 그 제약」, 통일정책 제 6 권, 제3,4호, 1980.
- 김영규, 『통일경제의 편익비용 분석』, 1988.
- 김영배, 「한과의 교류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통일 4, 1988.
- 김재경, 『동·서독교역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1986.
- 김태홍, 『훈춘 및 두만강 개발계획의 내용과 전망』, 한국무역협회, 1991.
- 김학준, 『김정일체제 등장시기에 있어서 동북아 국제정치 전망』, 국토통일원, 1983.
- 박동호, 『소련의 극동개발전략』, 공산권연구 115, 1988.
- 박재규 편, 『북한의 대외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 박제훈,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박춘삼, 『한소경협에 따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앞날』, 계간 북한연구, 1991.
- 송희원, 『동북아경제협력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전략』, 1991.
- 심정변, 『소련의 아시아정책과 한소경제협력가능성』, 1988.
- 안택원, 『소련의 시베리아 극동개발정책과 아국의 대응전략』, 정책연구 90, 1988.
- 연하청, 『동북아 경제환경 변화와 남·북한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1991.
- 유석열, 『북한정책론』, 법문사, 1988.
- 윤여창, 『북한의 농림수산업의 실태와 남북한농림수산물의 교역가능성에 관한 연구』, 1991.

- 이범찬, 『소련의 극동경제 현황과 개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공산권연구 112, 1988.
- 이상호, 『남북한 산업별 교역 및 합작가능성 검토』, 1989.
- 이원준, 『한중소간의 경제교류와 북한의 경제전망』, 북한학보 12, 1988.
- 이재곤·박덕영, 『남북한경제분야의 국제법적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소고』, 1991.
- 이태욱,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상논총 16집, 1988.
- 이태욱·이상우, 「남북한 경제의 상극성과 상보성연구」, 서강대 동아연구 5집, 1988.
- 이학규, 『제 3 국에서의 남북한합작투자방안연구』, 1991.
- 이흥구, 스칼라피노 편, 『북한과 오늘 세계』, 법문사, 1986.
- 임양택, 「남북한 경제특구의 개발전략과 적정지역의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1.
- 임양택, 『북한경제의 현황과 대외무역구조』, 1991.
- 정현률, 『중국의 경제개혁을 알아본다』, 공작기계 24, 1988.
- 한창수, 『소련의 경제개혁정책과 한소교역전망』, 1988.
- 홍승기·유호중·이찬도, 『남북한 경제협력과 해외합작투자 방안연구』, 북한·통일 연구논문집-(IV) 교류·협력분야-, 1991.
- 경제기획원,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1989.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경제개혁』, 1991.
- 국제민간경제협의회, 『대북방 경제협력 및 투자절차 설명회 자료』, 1989.
- _____, 『19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990.
- _____, 『198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 1990.
- _____, 『북방경제』, 2월~5월, 1991.
-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교류추진방안에 관한 제 2 차연구』, 1982.
- _____, 『남북한 경제분야 교류협력 실천방안 연구』, 1984.
- _____, 『남북한 관계개선 여건조성방안 연구』, 1985.
- _____, 『북한경제통계집』, 1986.
- _____, 『북한자료』, 제 1 호~제68호, 1986.

- 국토통일원, 『북한 및 공산권동향』, 제69호~제93호, 1987.
 _____, 『남북한 경제현황』, 1988.
 _____, 『북한 경제개관』, 1988
 _____, 『북한GNP추계방법해설』, 1988.
 _____, 『남북한비교총서』, 1988
 _____, 『북한의 자원경제』, 1988.
 _____,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1989.
 _____, 『1988년도 기준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9.
 _____, 『1988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9.
 _____,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모색』, 1989.
 _____,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안)』, 1989.
 통일원,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1990.
 _____,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_____,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
 대륙연구소, 『季刊 북한연구』, 1991년 봄호. 199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태평양연안국 진출방안』, 1988.
 덕산정치경제연구소, 『북방동향』, Vol.1 No.7, 1990.
 산업연구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의 활성화방안』, 1986.
 _____, 『공산권 경제』, 산업연구원, 1990.
 _____, 『동북아경제협력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1991.
 상공부, 『남북한 경제관련자료』, 1985.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7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국제협력』, 1991.
 한국무역협회, 『세계각국의 해외투자동향과 외자도입정책』, 1988.
 _____,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안)』, 1989.
 한국재향군인회, 『대북 경제개방조치와 동서독교류의 교류, 총력안보(1983)』,
 1988.

(2) 外國文獻

小牧輝夫, “北朝鮮 經濟現況展望”, 1988.

_____, 北韓 經濟 實態로 是 南北韓 經濟交流 協力, 1989.

玉城素, 北朝鮮 開放政策本物, 1985.

稻恒 清, 中國 投資環境, 1988.

JETRO, [北朝鮮 經濟貿易展望], 1988.

_____, [日朝貿易], 1987.

Bornstein, M., Comparative Economic System : Models and Cases, Hoome-wood : Richard D. Irwin, 1979.

Chung, Sang-Hoon, The North Korea Economy : Structure and Development, California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Ding, Shi-Cheng, The Golden Delta of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Delta of Tuman River, 1990.

Harding, H., China and Northeast Asi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Knight, P. T.,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1983.

Leptin, Gert,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mocratic Republic”, 1985.

Levin, N. D.,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anta Monica : RAND, 1982.

Severgin, S., USSR-DPRK, “New Forms of Cooperation”, Foreign Trade, No.4, 1989.

◆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 方案 研究

윤용만 · 이갑영(인천대)

〈要 約 文〉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世界史的 變革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입각한 中國式 社會主義 路線 그리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脫冷戰과 平和體制 構築을 통해 東西는 하나의 場으로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的 新秩序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冷笑的 民族主義와 地域主義를 強制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 양측에 각각 신축성 있는 대외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民族共同體 부활을 모색할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東西冷戰體制의 崩壞라는 객관적 정세변화는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과 공존적 협력이 라는 주체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한은 능동적인 北方政策을 추진함으로써 89년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소련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91년 6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5% 증가한 37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對北韓 敵對的 協力政策을 통해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교류를 계획·실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主體'에 입각한 정치·경제 건설 노선을 지향해 왔으나 국제정치적인 고립과 함께 장기적 경제침체에 직면해 있다. 즉 90년 현재 49.6억 달러에 달하는 과중한 국방비 부담, 160만톤으로 추정되는 식량난 그리고 71년의 人民經濟發展 6個年計劃 추진 이후 누적된 외채(90년 현재 78.6억 달러)문제는

북한을 Country risk가 큰 나라로 국제적인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곤란은 91년 들어 UN가입과 함께 남북한 직교역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對外開放政策에 입각한 제 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는 각기 고유한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남한의 경우를 보면 대북한 '적대적 협력정책'은 對南赤化統一戰略에 활용될 수 있다는 冷戰的·消極的 見解가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中央統制的 經濟秩序를 流通經濟的인 貨幣經濟의 시각으로 분석·비교하는 경향이 주목될 수 있다. 또한 89년초 종합상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무연탄의 경우 처럼 국내의 각산업 부문과의 마찰이 예상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주로 體制的·政治的 制約에 의해 장애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간의 남북한 접촉에서도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양측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추진·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남한의 대북한·북방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민족공동체의 부활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의 相互補完性 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相互獨自性이 유지될 수 있는 물자, 자본, 기술의 단순교류 단계로 부터 출발하여 그 성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 2단계 즉 합작투자, 경제적 공동개발 등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서로 하나되게 하는 和合性의 단계에 이어 同質性 확보를 위한 상호 평준화와 의존성의 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가'라는 논리적 전환을 통해 60년대 후반이후 활성화된 東西獨間的 經濟交易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바 있으나 북한의 경제력 규모(90년 현재 GNP 231억 달러)와 90년 현재 46.4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대외교역량 그리고 북한경제의 현황, 특히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단순물자교류의 단계를 단기에 극복하고 南北韓間的 域內·海外 合作投資에 의한 경제적 공동개발의 가능성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는 합산도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 經濟特區'는 공동개발의 실현성 제고와 함께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북한측에 의해 비록 우회적인 방식일지라도 남한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UNDP주도하에 91년 8월 29일 중국 장춘 시에서 개최된 '東北亞經濟技術協力' 국제회의는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남북한, 중·소 그리고 미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여 東北亞經濟圈의 핵심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적극 참여를 결정하여 예상분담금 120만 달러를 92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공동개발이 주는 경제적 실익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측의 국민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게는 현재의 해외직접투자선만을 전환하더라도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歴史的·文化的 慣習을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선 天然資源 공동개발의 경제적 실익을 보면 鑛物資源의 경우는 북한에 地下資源 埋藏量과 남한의 輸入鑛種을 비교할 때 공동개발 가능분야는 단기적으로 아연광, 금광, 그리고 철광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220여종의 각종 광물자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남한내의 고단백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공동개발 가능분야로 제기될 수 있는 水資源 部門은 연근해의 共同漁路區域設定과 함께 遠洋漁業 그리고 養殖業 部門의 협력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며 북한의 貨物運送(주로 철도운송) 특성상 동북아경제권의 활성화에 대비한 해운협력도 적극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60% 이상의 산림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85%의 목재를 전적으로 해외개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간의 林山資源 공동개발은 시베리아 산림개발의 합작투자 진출 검토와 함께 적극 제기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광물자원과 수자원 공동개발은 남북한 경제회담을 통해서도 쌍방의 공통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 공동개발은 우선 정부의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92-2001)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설악산 중심의 관광지 공동개발이 고려될 수 있다. 관광지 공동개발은 관광산업의 세계적 흐름인 '광역관광·참여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질적·양적 도약이 가능하다. 또한 干拓地·大陸棚 共同開發은 대형 플랜트 건설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대륙붕이 발달해 있는 서해개발의 본격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한편 외채난과 식량난으로 규정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의 북한경제에 공동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통해 90년 현재 49.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절감하여 일반 산업부분으로의 투자전환이 가능하며 가중되고 있는 대외채무의 해소와 중·소의 硬貨決濟 要求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극좌적 쿠데타 실패 이후 經濟改革과 體制變革을 가속화하고 있는 소련의 경제적 지원 중단을 고려할 때 북한의 對外經濟開放化政策은 단기적인 위축기를 극복하고 필연적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국제정치적 고립은 신축적 대외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에 기초한 南北韓 直交易의 實現과 經濟的 共同開發은 상당 부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경제적 공동개발 부문별로 보면 광물자원, 수자원, 임산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수출상품구조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물·수산물 등의 자원산업에서 미개발 자원의 적극개발, 생산력증대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150만 정보의 산림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제지산업의 경우는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 공동개발 사업은 직접적인 외화획득이 가능하며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금강산·설악산 지역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자본주의적 오염'으로 부터 인민들을 격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척지 공동개발을 통해서도 30만 정보의 간척지 확보사업과 알곡 1500만톤 생산목표 달성을 유효하게 할 것이며 大陸棚 開發 특히 ESCAP에 의해 부존 가능성이 제기된 석유탐사·개발은 막대한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이상과 같은 남북한 양측에 대한 經濟的 實益 이외에도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民族共同體 復活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아직도 남북한 쌍방에게 정치·경제적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南·北方 3角關係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한반도를 環太平洋 經濟圈의 中樞地域化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당연히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양측은 결코 서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利己的이 아닌 利他的 目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남

북한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앞서 민족공동체의 부활이라는 역사적·민족적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I. 序 論

오늘날의 세계사적 變革은 90년대의 남북한 관계에 전환기적 상황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즉 80년대말 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 움직임과 함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질서는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동서간의 유일 경제시장이 전개되는 한편 냉소적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新秩序의 태동은 동서냉전 체제의 최후 증인인 한반도의 대립적 상황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며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民族共同體 復活'의 토대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다자간 협력을 통한 동북아경제권의 가시화는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교류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동북아경제권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간의 경제적 협력 속에서만 그 구체화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이 91년 9월 17일 제 46차 UN총회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북한은 신속적 대외정책의 추진과 함께 경제 개방정책을 통해 대남한 직교역을 실현하고 나아가 '두만강 경제특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7·7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그 정책화·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交易의 획기적 증대와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共同開發 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부존자원이나 산업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양측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선행적 작업이 될 것이다.

즉 남북한 經濟共同體의 형성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및 경쟁제고에 따른 기술진보 유발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북한 공히 군사비의 경제용도 전환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와 부존자원 및 인력의 공동이용에 따

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동북아에서 강력한 경제단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공동개발은 남북한 쌍방에게 정치·경제적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南·北方 3角關係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분야 공동개발은 우선 남북한 경제회담을 통해 쌍방에 의해 제기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을 비롯하여 수자원·임산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남한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대륙붕·간척지 등의 분야가 검토될 수 있다. 물론 경제분야의 공동개발은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리고 남북한 상호간에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 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소련에서의 극좌 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경제위기는 남한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共存的 協力政策’이라는 탄력적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인 공세적 자세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현상적인 분석 단계에 머물러 구체화·정책화에는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에 관한 선행적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본 연구 수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세계사적 전환을 통한 한반도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시화 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남한의 ‘敵對的 協力政策’과 북한의 신축적 대외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남북한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전후 분단국간의 경제교역 모형으로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동서독간의 교류모형은 근본적으로 서독의 일방적인 대동독 경제협력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특히 Swing정책의 추진은 남한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대만간의 경제교역은 정치적·이념적 대립구조하의 교류라는 점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그동안에 남북한 경제현황을 정리하고 현시된 장애요인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주도국인 남한의 전향적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최근 부활된 남북한간의 직교역 증대 방안 및 생산요소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域內·海外合作投資 방안과 특히 91년 8월 29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UNDP)주최의 동북아경제기술협력 국제회의로 가시화된 두만강 경제특구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중국 연길시에서 '91한민족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로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발 부문은 구체적으로 천연자원 부문과 지역 공동개발 부문으로 대별하여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남북한 경제회담에서 제시된 양측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 수자원 공동개발과 함께 제외되고 있는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즉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해외개발·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공동개발 분야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남북한 공동의 수산합영회사 설립 등 수자원 공동개발을 정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60% 이상 산림률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과 85%의 원목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임산자원 공동개발을 모색했다.

그리고 地域 공동개발 분야로는 남한측이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으로 적극 추진중인 금강산·설악산 관광지 공동개발 그리고 지형적 특성과 함께 만성적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간척지 공동개발은 의도적 차원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또한 서해안 대륙붕개발은 ESCAP보고서를 기점으로 연안국의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해외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남북한의 공동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경제분야 공동개발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자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플랜트 사업추진이라는 남한의 경제적 실익 그리고 외채·식량난 등 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분야 공동개발의 전망과 함께 부문별로 정리하고 결론을 맺었다.

II.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南北韓의 基本立場

1. 韓半島 주변여건의 變化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구축된 동서냉전 체제의 와해는 남북한 양측에 신축성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UNDP)주최의 동북아경제기술협력 국제회의로 가시화된 두만강 경제특구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중국 연길시에서 '91한민족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로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발 부문은 구체적으로 천연자원 부문과 지역 공동개발 부문으로 대별하여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남북한 경제회담에서 제시된 양측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 수자원 공동개발과 함께 제외되고 있는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즉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해외개발·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공동개발 분야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남북한 공동의 수산합영회사 설립 등 수자원 공동개발을 정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60% 이상 산림률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과 85%의 원목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임산자원 공동개발을 모색했다.

그리고 地域 공동개발 분야로는 남한측이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으로 적극 추진중인 금강산·설악산 관광지 공동개발 그리고 지형적 특성과 함께 만성적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간척지 공동개발은 의도적 차원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또한 서해안 대륙붕개발은 ESCAP보고서를 기점으로 연안국의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해외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남북한의 공동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경제분야 공동개발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자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플랜트 사업추진이라는 남한의 경제적 실익 그리고 외채·식량난 등 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분야 공동개발의 전망과 함께 부문별로 정리하고 결론을 맺었다.

II.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南北韓의 基本立場

1. 韓半島 주변여건의 變化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구축된 동서냉전 체제의 와해는 남북한 양측에 신축성

있는 대외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후 냉전체제하의 세계구도에서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남북한을 각각 축으로 하는 '남방 3각관계(남한-미국-일본)'와 '북방 3각관계(북한-중국-소련)'에 편입되어 동북아의 전략적 대결구도 속에서 '핵심적 안보고리'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냉전적 구도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북한 각각의 대외교역에서 나타난 지역적 편중구조에서도- 기본적인 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는 국제 정치·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탈냉전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한 민족공동체 부활과 多者間 협력을 통한 동북아경제권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측이 적극적인 대북방정책을 추진하여 對中·蘇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가속화 하면서 관계개선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북한은 일본·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한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추구, 신시장개척, 자원확보 그리고 해외생산 기반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90년 현재 북방국가와의 무역액은 남한 전체 무역중 4%(89년 3.4%)에 해당되는 약 55억 달러로 추정되며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비중도 88년의 1.0%에서 90년에는 4.5%로 증대되어 향후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의 對日·美 관계개선 시도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깊게 관련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무역액 절대량이 중·소와의 교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내적 경제개혁을 앞세운 중국·소련이 각각 91년, 92년 부터 대환성 硬貨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分斷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할 때 국제성과 민족성이라는 2중적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4강(미·일·중·소)의 남북한 현상인정 및 평화보장이라는 國際的 성격과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통일의 달성이라는 民族的 성격을 갖는 것이다.¹⁾

1) 임양택, 북한경제의 현황과 대외무역구조, 북한연구 1991. 봄호, 대륙연구소, 43쪽.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東西和解와 중·소 개혁 등의 국제질서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개혁과 개방 그리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세계는 공산권·비공산권 2개 시장에서 이제는 동서 하나의 시장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구축과 상호공존을 통한 민족통일의 실현이라는 주체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主·客體的 정세 전환요구는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환태평양지역 경제협력 관계에서 남북한의 핵심적 역할로 가시화 될 것임에 따라 양측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韓國의 敵對的 協力政策

종래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에 대한 남한내부의 견해는 적극적 견해와 소극적 견해라고 볼 수 있는 상반된 두 흐름이 형성되어 왔다. 즉 적극적 견해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을 민족통일의 실질적 토대화하여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불식하고 경제공동체 부활의 차원에서 남한의 역량과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전면적인 협력을 해야한다는 견해이다.

그 반면에 소극적 견해는 북한이 중국·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전반적인 변혁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체제개혁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외개방정책에도 매우 제한적이며 불투명한 점을 볼 때 북한은 종래의 대남적 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대북한 경제협력 중대는 필연적으로 軍事力 강화를 초래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당분간 경제사정 파악을 위해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대응하고 특히 군사관련부문의 기술 및 정보유출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극적인 견해에도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북한경제의 개방화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도 적극적인 적대적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경제력은 <표-1>에 나타나듯이 GNP규모는 88년에 8.2:1이었던 것이 90년에는 10:1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소극적 견해에 입각해 북한경

〈표-1〉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90년말 기준)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인 구	천명	42793	21720
G N P	억달러	2379	231
1 인 당 G N P	달러	5569	1064
경 제 성 장 륜	%	9.0	-3.7
군 사 비/G N P	%	4.1	21.5
군 사 비 지 출	억달러	97.3	49.6
재 정 규 모	억달러	388	166
무 역 총 액	억달러	1348.6	46.4
수 출	억달러	650.2	20.2
수 입	억달러	698.4	26.2
외 채(순 외 채)	억달러	317(48.5)	78.6
곡 물 생 산 량 (쌀)	만톤 (만톤)	663.5 (560.6)	481.2 (193.2)
수 산 물 생 산 량	만톤	327.5	145.5
석 탄 생 산 능 력	만톤	1722	4330
발 전 량	억Kwh	1076.7	277.4
원 유 도 입 량	천톤	42639.4	2520
제 강 생 산 능 력	만톤	2540.6	594
자 동 차 생 산 능 력	만대	190.2	3.3
조 선 생 산 능 력	만G/T	342.2	21.4
시 멘 트 생 산 능 력	만톤	4210.4	1202
T V 생 산 능 력	만대	1450	24
섬 유 생 산 능 력	천톤	1800	176.8
철 도 총 연 장	Km	6435	5045
도 로 연 장	Km	56715	23000
자 동 차 보 유 대 수	천대	3395	264
항 만 하 역 능 력	천톤/년	224353	34900

자료 : 통일원

제의 발전이 남침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냉전적 시각에 불과하며 북한경제의 성장은 곧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필요 충분조건이며 민족공동체 부활의 선행적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구체화는 북한의 정치적·호전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적대적 협력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접근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 6공화국 출범 이후 현실적인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대북한 접촉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會談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후 몇번에 걸친 대북경제제의²⁾를 통해 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시작된 남북한경제회담은 제 5차회담을 끝으로 중단 상태에 있으나 비정치적 부문에서 정부간 대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곧 재개될 전망이다.

남북한경제회담은 그 동안 북한측이 정치적 측면과의 연계를 통해 결렬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이 회담의 구체화를 통한 경제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간의 제안은 정치적 성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고 경제교류 방법이나 협력 형태에서는 <표-2>에 요약된 것처럼 견해 차이가 있으나 실현 가능한 공통점이 상당수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수산자원, 지하자원 공동개발·이용 그리고 남북한 상호우위 부문의 경제합작에 의한 제3국 진출 등에서 공통적인 교류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정치·사회적 제약이 남북한간의 대화중단을 초래하고 있으나 ‘7·7선언(88년 7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전향된 방안을 제기하였다. 즉 첫째, 남북한간 교역을 民族內部 交易으로 간주하며 둘째, 남북한 동포의 삶을 진보시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셋째, 우방국가에 의해 대북한 비군사적 물자교역을 권유함으로써 경제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2) 주요한 것은 77년 1월 대북식량무상원조제의, 78년 6월 남북한교역과 자본협력을 위한 민간경제 협력기구 구성 및 각료회담제의, 82년 2월 설악산·금강산 지역의 자유관광지로의 개발제의, 남북자유어로 지역 설정 그리고 자연자원의 공동개발제의 등임.

하고 있다.

이러한 7·7선언은 남한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상대적인 경제적 우위에 기초하여 대북한 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균형적 발전과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양측 합의서 초안의 주요 차이점

구 분	남 한	북 한
합 의 서 명 칭	*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 및 상품교류의 실현
사업추진 원칙명기	* 합의서 전문에 순수경제원칙 명시-호혜평등, 민족번영, 복지증진, 평화통일 기여	*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포함하여 합의서 첫장에 독립조항으로 설정
교류대상 품 목	* 1,2차 회담시 합의품목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합의품목부터 교류시작 -남측판매가능품목 :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 -북측판매가능품목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 1차 회담시 쌍방 제안품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거래방식 및 결제 업무취급 은행	*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협정 체결전까지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 발행 신용장 방식을 적용 *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의 은행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 이용	* 청산결제방식 *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의 은행
경제협력 대상	* 1,2차 회담시 의견이 일치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합의서에 명시	* 부존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부터 시작(원칙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결정)

구 분	남 한	북 한
공동위원회 기능	* 기 합의사항(교류품목 등)의 이행기능을 공동위원회 기능속에 명시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기능 명시 불필요
분과위원회 수	* 2개분과위 우선발족(물자교류, 경제협력) * 사업확대에 따라 특별분과위, 소위원회 설치	* 6개분과위 발족(자원개발, 공업 및 기술, 농수산, 상품교류, 운수 및 체신, 금융재정 등) * 될수록 부분별로 세분화
서명자의 권한위임 명시	* 합의서 서명자가 최고당국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명시	* 쌍방 단장의 서명으로 충분(최고 당국자로부터 권한 위임 명시 불필요)
서명란의 호칭명기	* 합의서 서명란에 국호명기	* 북측대표단, 남측대표단 방식으로 명기(국호표기 불필요)

자료 : 국토 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288-9쪽.

특히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것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혁신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교역은 실현 가능부문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정부는 남북한간의 교역확대·협력을 위해 같은 해 10월 7일 남북한간 물자 및 경제인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발표했으며 계속해서 '남북한 물자교역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방문 및 접촉절차를 마련하여 '남북경제인 상호 교류제도'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7선언 이후 남북한간 인적·물적 交流는 증대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교류·협력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한간 교류·협력 요구의 구체화와 함께 추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설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즉 남북한간 원활한 접촉 환경을 조성하고자 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각종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실현한 것이 '남북협력기금법'인데 이것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

원도 이것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남북 협력기금 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9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3. 북한경제의 現況과 신축적 對外政策

북한의 경제건설은 日帝하의 식민지적 과행구조로 부터의 탈피와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전환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主體'라는 독특한 노선으로 정치·사회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다.³⁾ 따라서 북한의 경제건설 전략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을 기본노선으로 한 대내지향적 공업전략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제의 자급자족 확보를 그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표-3〉 남북한의 경제효율성 비교(1990년)

(단위 : 달러, 倍)

항 목	단 위	남 한	북 한	남한/북한
노동생산성	GNP/취업인구	13,190	2,079 ¹⁾	6.3
투입생산성				
에너지	GNP/TOE	2,563.8	974.7	2.6
전 력	GNP/천 Kwh	2,209.5	832.7	2.7
강 철	GNP/톤	10,280.9	6,875.0	1.5
시 멘 트	GNP/톤	7,086.7	3,768.4	1.9
화 학 비 료	GNP/톤	61,953.1	14,564.9	4.3
경제성장율 ²⁾ (1981-'90)	연평균/%	9.6	1.3	7.4

주 : 1) 북한의 취업인구는 1990년의 노동가능인구(16-64세)에 80%의 노동 참가율을 적용하였음.

2) 1985년 불변가격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91 :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1.

3) Macdonald. D. S., The Koreans, U. S. A. : Webster Press, 1988, 179-222쪽.

이러한 경제건설전략을 통한 외연적 성장의 결과는 70년대 초까지 1인당 GNP에서 남한을 상회하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노동인구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한 노동력의 증가, 소비수요 억제를 통한 자본재 생산량의 증대 그리고 황무지 개간을 통한 경지면적의 확대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북한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운용은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엄격한 정치적 통제에 입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구조적 개혁없이는 <표-3>에 나타나듯이 경제적 비효율성과 경직성의 증폭으로 경제체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自力更生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폐쇄적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이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전산업부문에 걸친 생산설비 및 기술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운영으로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노선으로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셋째, 군수산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구한 결과 소비재 생산과 농업부분의 발전이 지연되고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왜곡과 침체현상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구조의 개선, 인민 생활의 향상 그리고 경제관리제도의 개혁이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84년 3.9%, 89년 2.4%를 기록하였으나 90년 현재 -3.7%까지 하락하여 낮은 성장과 함께 경제곤란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 87-88년에 '평양축전'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한 기아수출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89-90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량은 89년 1.4%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율에도 미달하는 것이며 특히 주곡인 쌀·옥수수 등은 1%내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여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건설에서 핵심산업으로 전개된 중공업과 광물 생산도 한계

4) 연하철·김형원, 북한의 경제계획, 한국개발연구원, 1990.46-7쪽

에 달해 있으며 경공업과 소비재 생산에 있어서도 수요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경제이다. 더욱이 1992년부터 소련의 경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고 내부동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미 84년 제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南南協助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임을 천명하고 9월 8일 외국인의 합작투자 유치를 위한 '합작회사운영법(일명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표-4>를 보면 合營法에 의한 합작투자 유치는 주로 조총련계와 중국·소련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주목한 서방국가의 자본, 선진 설비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경제관계 설정이나 합작실적은 부진하다. 서방국가들의 합작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이 서방기업들이 투자수익성 보장의 불확실, 제반법규 등 투자 여건의 불비⁵⁾, 외채상환 지연문제, 북한경제관리 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내수시장의 협소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속에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기본적 과업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조성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개방화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 운동에 의한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자력갱생원칙에 의거한 폐쇄적 경제체제의 공식적 변화이며 실용주의적인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책 전환은 경제가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서만 당면한 경제침체 상태의 극복,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인민에게 향상된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화 意志는 중국·소련의 수정주의 노선과 궤를

5) Chin Kim, North Korean Joint Venture Law,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 2, 1988-9, 206쪽.

〈표-4〉

합영법 추진실태

합영년도	합영상대국	합 영 내 용
1985년	일 본	낙원백화점(지방에 31개 분점)
85년	프 랑 스	양각도 국제호텔
85년	일 본	창광커피숍
85년	일 본	대동강 자동차 종합수리공장
86년	일 본	조일우호의료사업회사(김만유병원)
86년	일 본	평양골프장
86년	일 본	조선국제합영총회사(합영중개회사)
86년	일 본	운산금광개발주식회사
86년	일 본	은하수식당
86년	일 본	모란봉합영회사(피복생산)
87년	일 본	남산합영회사(전기, 전자제품 판매점)
87년	일 본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1천만불 규모)
87년	일 본	원산애국편직물유한책임회사
87년	일 본	동해관(식당)
87년	일 본	대동강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자회사)
87년	소 련	공작기계공장(회천공작기계공장과 고리끼공작기계 공장간)
87년	소 련	천해양식공동생산기업소
87년	소 련	어업공동기업소
87년	중 국	평양냉면관(북경)
88년	중 국	도문강식당(연길시)
88년	일 본	평양실크합영회사
88년	일 본	청천강합영회사 회천제사공장
88년	일 본	동대원합영회사(모란봉합영회사 자회사)
89년	일 본	신흥합영회사(전자제품)
89년	일 본	조선합영은행(20억엔 규모)
88년	일 본	함흥화학공장

자료 : 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1991, p. 257.

같이 하는 것이며 탈냉전과 함께 북방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에 의한 가시적 성과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개방화를 통해 서방국가의 자본·기술을 도입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탈이념적 다변적 외교의 추구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서구, 동남아, 호주, 대만 등 서방권과의 관계노선 노력이 현저화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관계정상화 추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종래 냉전적 대결구조 인식에 의해 스스로 좁혀왔던 북한의 대외정책이 이념을 초월한 실리추구에 따라 신속적으로 확대·심화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형평성과 시장 경제의 효율성간의 trade-off관계를 인식하여 양체제의 결합모형을 추구하면서 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Ⅲ. 分斷國間의 經濟交流 형태와 南北韓 현황

1. 東西獨의 經濟交流 形態

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접근방식 논의 과정에서 특히 과거 동서독간의 모형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후 분단국 가운데 동서독간의 경제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제교류·협력으로 시작하여 경제통합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통일까지 달성했기 때문이다.

동서독 교역은 '전후 민주독일국가 건설을 위한 점령 지역간의 경제적 통일 체결성'⁶⁾을 위해 46년초부터 4개국 점령지역간의 공식협정에 기초한 물물교환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점령지역간 교역'이 본격적인 동서독 교역으로

6) Siegler, H.,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Bonn 1967, Band I, 6-7쪽.

같이 하는 것이며 탈냉전과 함께 북방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에 의한 가시적 성과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개방화를 통해 서방국가의 자본·기술을 도입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탈이념적 다변적 외교의 추구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서구, 동남아, 호주, 대만 등 서방권과의 관계노선 노력이 현저화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관계정상화 추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종래 냉전적 대결구조 인식에 의해 스스로 좁혀왔던 북한의 대외정책이 이념을 초월한 실리추구에 따라 신속적으로 확대·심화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형평성과 시장 경제의 효율성간의 trade-off관계를 인식하여 양체제의 결합모형을 추구하면서 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Ⅲ. 分斷國間의 經濟交流 형태와 南北韓 현황

1. 東西獨의 經濟交流 形態

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접근방식 논의 과정에서 특히 과거 동서독간의 모형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후 분단국 가운데 동서독간의 경제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제교류·협력으로 시작하여 경제통합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통일까지 달성했기 때문이다.

동서독 교역은 '전후 민주독일국가 건설을 위한 점령 지역간의 경제적 통일 체결성'⁶⁾을 위해 46년초부터 4개국 점령지역간의 공식협정에 기초한 물물교환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점령지역간 교역'이 본격적인 동서독 교역으로

6) Siegler, H.,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Bonn 1967, Band I, 6-7쪽.

전환하게 된 것은 ‘프랑크푸르트 협정’⁷⁾을 거쳐 51년 7월 6일 체결된 ‘內獨交易을 위한 베를린협정’부터이다. 이 ‘베를린협정’은 60년 8월 6일 수정된 후 통일전까지 동서독간의 내독교역 협정으로 유효하고 있다.

이 베를린협정 즉 ‘서독 마르크 화폐지역과 동독 마르크 화폐지역 간의 교역을 위한 협정’에서는 첫째, 내독교역은 61년 이후 무기한 유효하며, 둘째, 내독교역은 쌍방이 합의한 교역품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반드시 동·서독 생산품이어야 하나 특수한 외국상품에 관해서는 특별합의를 할 수 있고 셋째, 교환조건이나 보상조건에 의한 내독교역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내독교역상 필요한 대금결제는 양측의 발권은행인 서독의 독일연방은행과 동독의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에 설치된 계정을 통한 청산거래방식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동서독 마르크를 1대 1로 환산하고 있다. 동서독 화폐의 공식환율은 4:1이나 실질환율은 10배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독은 결국 利他的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서독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독정부는 67년 ‘내독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시설 재정회사’를 설립하여 산업재정원조 즉 ‘Swing’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기본조약’에서는 상품교역 이외에 통신·교통·관광·문화·스포츠·환경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 교류·협력방안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같은 다각적인 경제교류 형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동서독간에는 본격적인 ‘공존적 협력’시대를 구체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서독 교역의 역사는 순수한 경제교역이 아닌 서독정부에 의한 대동독 경제 협력이었다는 사실에서 해방 이후 49년 4월까지 남북한간에 이루어졌던 ‘지역적 교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⁸⁾ 동서독 교역의 성격을 그 경제적 내용만으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대외무역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서독의 일관된 공식입장은 대외교역이 아니라 ‘내독교역(Interdeutscher Handel)’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서독

7) 49년 10월 8일 미·영·프 점령지역을 일방으로 하고 소련 점령지역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청산결제계정설치와 무이자 외상거래제도로서의 Swing제도가 채택됨.

8) 김연수, 남북한 신외교정책, 대왕사, 1984, 111쪽.

교역을 대외무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과의 기본조약 체결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독 교역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民族問題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서 연유하고 있다. 즉 서독은 69년 10월 28일 독일사회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통해 종래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와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Doktrin)’을 탄력적으로 수정하여 ‘동서 양독일의 조화된 공존을 위한 노력’⁹⁾의 일환으로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가’로 논리적 전환을 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토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동독은 민족문제에 관하여 ‘두개의 민족, 두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서독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서독은 동서독 교류를 통일 정책에 기초한 경제적 압력 수단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은 교역을 통한 경제적 실리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와 같이 내독교역의 성격에 대해 동서독간에는 일정한 견해 차이가 있으나 내독교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서독간에 표면적으로는 대립관계가 상존한 가운데서의 협력임을 서로가 명백히 이해하는 ‘적대적 협력원칙’이라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내독교역은 순수한 경제정책일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정책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외교역과는 다른 몇가지 특수한 경제적 혜택을 동독에게 시혜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동서독간의 관세지역 폐지이다. 즉 서독은 51년 GATT에 가입할 때 ‘Troquay 의정서’를 수정하여 ‘동독산 상품에 대한 내독교역 특혜원칙’을 공인 받음으로써 동독의 무관세 서독수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57년 3월 서독이 EEC회원 국가로부터 ‘서독이 가입한 후에도 동서독간의 무관세 원칙을 확인(로마협정)’받음으로써 사실상 동독에게-내독교역을 통해서-서구시장을 개방시킨 것이다. 따라서 동독의 대서구 교역은 단기간내에 급증하게 되었다.

둘째, 서독이 동독에게 주는 또다른 경제적 협력은 서독의 사실상 대동독 재

9) Brant. W., Friedenspolitik in Europa, Frankfurt am Main 1968. 182쪽.

10)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 196-7쪽.

정원조인 내독교역 용역비와 동서독 관계정상화를 위한 서독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다. 이 외에도 서독과 서베를린간 도로사용료, 서독 국민의 동독방문 사증료, 서베를린 시민의 생활보장비, 동독의 전신·전화 그리고 우편 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동독의 정치범 인도비용 등을 지불하고 있다.

셋째, 서독이 동독에게 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경제협력은 서독의 '대동독 Swing정책'이다. 즉 서독은 67년 이후 동독의 대서독 수입능력을 증대시켜 내독교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동독이 전년도에 공급한 물품 총액의 25% 상당금액을 무이자 산업재정차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Swing재정원조는 68년 현재 2억 DM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합의를 거쳐 74년부터는 매년 8억5천만 DM상당의 Swing을 동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독교역의 특수한 형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는 동독이 내독교역을 통해 얻은 자금을 해외 정치활동, 파괴적 공작 그리고 서독내의 공산당 지원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동서독 교역의 긴장완화 효과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던 점은 주목되고 있다.¹¹⁾

내독교역은 동서독간의 시각 차이나 국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물론 이 과정속에서 정치적 요인, 베를린 문제 그리고 내독교역의 절차·규정 문제로 몇 차례의 곤란은 경험하였다. 그러나 <표-5>에 의하면 내독교역량은 50년 현재 8억1천만 DM에서 80년에는 115억3천 DM으로 비약적인 증대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직전인 89년 현재 153억9백만 DM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위의 책, 198쪽.

〈표-5〉

과거 동서독간의 교역

(단위 : 백만DM)

년도/구분	서독의 대동독 매출*	서독의 대동독 매입*	수 지
1950년	359	451	-92
60년	1030	1007	23
70년	2484	2064	420
80년	5875	5855	20
85년	5586	8157	429
86년	7837	7344	156
87년	7366	7118	248
88년	6838	7333	-495
89년	8104	7205	896

자료 : 외무부, 독일연방공화국 개황, 1991.

* 내독교역으로 간주하기에 서독에서는 수출입이란 용어대신 매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동서독간의 상품교역은 代替的인 교역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교환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동서독의 반출구조를 보면 서독의 매출품은 화학제품, 기계, 전자제품, 광산물, 철강제품 등 기초자재, 생산재 그리고 투자재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입품은 정유가공제품, 섬유류·의류·화학제품 등 최종소비재와 생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의 개혁정책과 탈냉전이 동서독의 경제통합 그리고 민족 통일의 결정적 요소를 작용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서독이 내독교역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동독에게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내독교역의 전개와 통일의 실현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들어 독일식의 흡수통합 방식에 한층 더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유의해야 한다. 즉 남북한간 경제교

역의 주도적 수행이 요구되는 남한이 '가진자의 만용'을 부린다면 경제교류는 커녕 오히려 상호불신의 벽을 더욱 거칠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과 대만의 經濟交流 형태

49년 국민당이 대륙에서 축출된 후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으로 현재까지 대립적 구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양측의 직접적·경제적 접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다변적인 외교관계를 전개하면서 경제의 개혁·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79년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통해서 '3通(通航·通郵·通商)'과 '4流(經濟·體育·文化·科學技術)'를 제기하면서 80년대에 들어 1국가 2제도에 기초한 제3차 국·공합작을 적극화하고 있다.¹²⁾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정치적 평화공세와 함께 대만 상공계의 중국내 투자환영, 해운 및 항공로 개설, 은행 업무 교류, 석탄·원유·한약재의 특혜공급 그리고 대만상품의 수입절차 간소화 등 경제적 교류를 제안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 태도에 대하여 대만은 80년 '3不政策(不妥協·不協商·不接觸)'을 선언하면서도 경제적 실리 때문에 사회주의 중국의 대서방 통로인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묵인해 오고 있다. 특히 대만은 87년 7월 국민당의 제13기 전국대회를 통해 이등휘시대를 전개하면서 대륙과의 간접교역 및 대륙원자재 수입확대 그리고 정부와 黨 산하에 대륙관계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즉 이것은 정치와 경제문제를 분리시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며 더욱이 대륙과의 인적교류 허용방침을 발표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대만의 정책적 변화에 의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은 급증하고 있다. 중국·대만의 간접교역 규모는 지난 79년 7천7백만 달러에서 90년에는 40억4천3백만 달러로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만동포접대소'를 통한 양측 어민들간의 불법적인 직교역(물물교환)을 합하면 전체 규모는 연간

12) 장공자, 대만·중공간의 교류현황과 전망, 북한연구소, 북한, 1989.5, 88쪽.

6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과의 교역확대를 통일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반입되는 대만 상품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조품, 기계·운송장비 그리고 화학제품 등이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반출하는 것들 중에는 연료용 원료, 야채, 한약재 그리고 식품, 식용동물이므로 상호보완적인 수요충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교역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 내부의 부동산 가격급등과 임금상승으로 신발, 봉제 그리고 가전제품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더욱이 중국은 본토에 투자하는 대만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 89년 현재 2천여건에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의 투자액은 8-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올해도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만 내에서는 산업공동화의 우려조차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만기업의 대륙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산 대만제품이 역수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전제품의 생산원가는 대만에서보다 30%이상 절감되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의류, 전자부품, 건자재 그리고 공업원료 등이 역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만은 '對大陸間接投資 및 技術合作管理法'를 제정하여 대만기업들의 무분별한 본토투자를 규제하는 한편 중국에서 대만기업에 의해 생산된 반제품의 간접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대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대만의 교류 형태는 그 동안의 간접교역에서 직교역 위주로 전환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본토투자 또한 기술집약산업으로 고도화되면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중국·대만은 동서독간의 내독교역과는 또 다른 분단국가의 경제교류 형태로 정치적·이념적 대립구조하의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양측의 경제교류·협력관계에서는 국제정치적 비교우위의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의 욕구 충족이란 측면에서는 현재 2차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3. 南北韓의 經濟交易 現狀과 문제점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해방직후부터 '3.8 密貿易'과 '軍政貿易'¹³⁾의 형태로 시작되어 물자교류와 함께 제한적인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간 무역은 49년 4월 공포된 '남북교역 정치에 관한 건'과 함께 일체의 경제·정치적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다만 78년말 영국상사를 통한 중개무역의 형식으로 석탄공사가 무연탄 1만톤을 도입하면서 재개되었다. 이 교류는 83년 까지 계속되어 총 120만 톤의 무연탄이 반입되었으며 84년에는 북한의 수재지원물자(쌀, 시멘트, 옷감, 의약품 등)가 인도된 바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공식적인 남북경제회담이 휴전직후인 54년에 제기된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다각적인 교류·협력방안을 상호 제의·접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치적·선전적 제안에 그치고 실질적인 남북경제회담은 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제의하고 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88년 7·7선언과 후속조치를 계기로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재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적대적 협력정책을 기초로 원자재공급원 확보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경제적 욕구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표-6〉을 통해 남북한간의 物資교역량을 보면 88년에는 4건 103만 7천달러 89년에는 57건 2,230만 4천 달러로 급증했으며 90년 현재 76건 2,561만 달러였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북한의 신축적 대외정책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91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7월말 현재 남북한간 물자반출입 실적은 북한으로 부터의 반입이 8,138만 달러이며 반출은 1,257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반출이 지난 5월 이후 격감한 것은 북한의 극심한 외환부족 상태의 반영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 북한은 대남한 경제교역에

13) 미군정은 45년 11월 3일 '바터제'에 의한 대북한 물자교류를 허용하였으며 11월 13일 북조선인민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여 실현됨.

〈표-6〉

남북한 반출입 현황

(단위 : 개, 만달러)

반출입 기 간	반 입				반 출			
	건 수	상사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상사수	품목수	금 액
1988년	4	4	16	103.7	-	-	-	-
89년	57	47	53	2223.5	1	1	1	6.9
90년	76	61	89	2087.9	4	4	4	473.1
91년	78	62	59	4549.1	5	5	10	1194.1
(1-4)								
누 계	215	174	217	8964.2	10	10	15	1674.1

자료 : 상공부

있어 구상무역방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역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표-7〉에 나타난 것처럼 주요 반입품목은 열연코일, 아연괴, 무연탄, 철강재 등의 중간원자재와 감자, 병태·오징어 등 농수산물에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5%의 관세가 없는 금괴와 한약재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반입 품목이었던 아연괴와 수산물은 국제시세의 하락과 계절적 요인으로 반입불량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반출품목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데트론솜, 양말직조기 등 최종소비재 관련 경공업제품과 컬러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남북한간 경제교역에 나타난 특징적인 성격을 보면 현재까지 중국·홍콩·일본 등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초기에 3개국 현금결제에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불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이 91년 1~6월 현재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반출입 품목의 내용을 보면 초기의 단순상품에서 반제품으로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건당·품목당 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남한내 참여기업은 종합상사 위주에서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 91년 1~7월 현재 참여업체는 모두 80개 사에 달하고 있으며 반출품은 대부분 OEM방식이거나 중국·홍콩 기업의 상표가 부착되고 있다.

〈표-7〉

남북한 반출입 승인 품목 현황*

(단위 : 만달러)

반		입		반		출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열	연	코	일	H	D	P	E
			1047.1				625.0
아	연	괴		데	트	론	숍
			935.8				245.0
무	연	탄		양	말	직	조
			574.0				기
철	강	제		고	유	황	경
			549.5				유
시	멘	트		세	탁	비	누
			413.2				
감		자		직	물(작	업	복
			402.1				용)
냉	동	명	태	직			물
			322.0				
전	기	동		컬	러	T	V
			304.0				
건	오	징	어	냉	장	고	
			240.0				
생		사		비	닐	박	막
			186.1				
기		타		기		타	
			2806.3				22.4
누		계		누		계	
			7780.1				1499.1

자료 : 상공부

*1988-91년 3월까지임.

즉 현재까지의 남북한 경제교역은 반입위주의 소규모 간접교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에 나타난 기업홍보 차원의 전시용품(일용품)중심으로 최근에는 광산물, 농수산물 등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더욱이 91년 들어 남북교역이 급속한 증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북한사회의 開放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의 對南戰略과의 연계문제 등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의 남북교역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협력의 공고화는 남북한간의 공존·통합관계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民族共同體 부활을 목표로

한다면 현 단계에서 표출된 남북한 交易의 특징과 장애요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주로 물자교류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다. 즉 간헐적인 인적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물자교류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반입품목의 직접 검사와 정보수집에 난점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산업발전 수준에 기인된 낮은 상품가치와 국내 산업구조적인 한계(예를 들어 농어민이나 광산근로자 보호)로 인해 반입가능 품목은 한정될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반입된 대부분의 북한산 물자는 직교역이 아닌 제 3국인이나 해외교포가 중개하는 간접교역방식의 물자교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기업측에서 보면 반출입 비용부담이 증대되며 하자 발생시 구제장치가 없고 또한 북한이 국제적 상관습에 익숙해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최근 북한산 명태에 대한 클레임제기에 대해 700톤을 현물배상한 것은 주목되고 있다.

셋째, 경제외적 요인이 남북한 경제교역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남북한의 교역이 단순한 물자교류 그것도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기본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심각한 대외채무(90년 현재 78.6억 달러)문제는 硬貨결제 능력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또한 민간기업 입장에서 보면 국제시세에 따른 가격조정이 없어 경제성이 약화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남한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보완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된다.

다섯째, 초기단계에 있는 남북한 교역에서 남한의 민간기업간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즉 민족공동체 부활이라는 남북한간 경제교역의 궁극적 지향을 고려하면 부분별하게 이윤동기에 기초한 기업간의 과열경쟁은 반드시 사전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남북한 당국간의 공식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 즉 남북한간의 무역협정체결과 함께 남한이 부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남북교류특별법 등 양측의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심화를

위한 대내적 政策方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경제권 국가들과의 교류증대를 통해 화해적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군사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요구—주한미군, 팀스피리트 훈련 등—에 대해 보다 신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분단 이후 일방적 시각으로 고정된 대북한 연구를 다원화·활성화 시켜야 한다. 즉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대미관계의 재정립과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요구 수용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민주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비경제적 분야의 관계 진전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교류는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즉 정부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의견차이나 체제간의 이질감과 상이한 교역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주도국인 남한은 내부적으로 북한 교역담당자 접촉의 전향적 허용, 사전신고제의 폐지, 북한지역 여행허용, 남북한 직통선 실현 등 몇가지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되며 남북한 교역이 내국간 거래임을 인지시켜 GATT, COCOM, FAO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수직적 분업에 의한 교류로 일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상호 신뢰회복에 기초한 남북경제통합을 상정하여 장기적인 교류·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북한 경제의 대내외적 곤란에 따른 신속적인 대외경제 개방화정책 그리고 남한의 ‘남북간 교역은 민족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적대적 협력정책은 마침내 남북한 직교역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현실에서 이상과 같은 장단기적 과제는 적극적인 해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IV. 南北韓의 經濟協力 方案

1. 直交易 增大 方案

남북한은 49년 4월 이후 중단되었던 直交易을 40여년 만에 극적으로 재개하였다. 현재에도 간접교역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직교역의 실현은 일단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한간의 직교역은 2건이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남북한의 민간기업(남한의 천지부역상사와 북한 합작회사인 금강산국제무역회사)이 남한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시멘트를 직교역하기로 합의·공개되고 있다. 또한 건은 90년 12월 20일 남한의 두성통산과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에 남한의 직물·냉장고·컬러TV와 북한의 공예품·시멘트·아연괴를 물물교환(130만 달러 규모)하기로 비공개·비보도 원칙하에 합의하여 1차분인 북한 미술품이 반입되었다.

남북한간의 직교역합의 자체도 획기적인 일이지만 쌀과 무연탄·시멘트교역의 경우에는 물자선적 이전 보도에 북한이 동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남북한간의 간접교역 사실조차 부인해온 것이 사실이며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 아예 교류 자체를 무산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북한 교역의 사실공개에 과민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이번에 사전공개를 합의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북한 경제가 직면한 곤란성이다. 북한의 90년도 곡물 생산량은 80년 이래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481.2만 톤(쌀은 193.2만 톤)에 불과했다. 이러한 산출량 수준은 북한의 성인 1인 배급기준인 700g을 감안하면 160만톤이라는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잠곡을 포함해서 이 정도 수준인데 쌀의 정상적 수요를 고려한다면 그 심각성을 익히 알수 있다.

또한 이것은 대남정책의 신축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실용주의적인 대외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북한이 대남한 직교역의 합의·공개를 실현시킨 것은 가중되는 식량난과 함께 소련·중국이 그 동안의 구상무역방식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그리고 탈냉전화의 국제적 신질서에 기초하여 북한의 잉여물자교환이 스스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 인식에서 출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함께 직교역의 부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남한은 상호간의 교역 가능품목을 최대한 개발하고 직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협력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남한은 단기적인 이윤추구 보다는 상호신뢰 회복을 통한 민족정서의 공감대 확인에 역점을 두고 남북한 직교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즉 접근이 용이한 민간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당국간 합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한 직교역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우선 상호보완적인 반출입 가능품목에 대한 분석조사와 함께 교역 가능상품의 개발확대가 요청된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상품구조에 대한 자료제약으로 대일수출입상품구조를 중심으로한 분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84년 11월 15일 개최된 제 1차 남북경제회담에서 양측이 제의한 <표-8>의 반출입 희망품목과 협력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회담 합의서 초안에 나타난 바와같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을 희망하는 품목은 무연탄, 철광석, 선철, 아연괴 등 광산물과 명태, 누에고치, 팥 등의 농수산물 그리고 한약재 등을 제기했다. 또한 남한이 반출가능품목으로 제시한 것은 철강, 동, 알루미늄 등 금속제품, 재봉틀, 경운기, 승용차, 등의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 섬유류 그리고 의약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한은 거래방식으로 제 3국 은행이 발행한 L/C에 의해 거래하며 가격은 국제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결제통화로는 달러화, 마르크화, 파운드화로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이외는 공동어로사업,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과 남북한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였다.

〈표-8〉 남북한이 제의한 교역 대상품목

남	한	북	한
반입희망품목	반출가능품목	반입희망품목	반출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등 공업원료 * 명태, 누에고치팔,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 기타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철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루미늄제품 등 금속제품 * 가정용·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 기계류 * 시계, 천연색 TV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그리세린 및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제품 * 남해어족,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 석탄, 마그네슘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제품 *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방안 연구. 1989.

한편 북한은 반출 가능품목으로 철광석, 석탄, 마그네슘크링카, 채취설비 등 공업제품과 명태, 쌀, 옥수수 등 농수산물을 제시하였다. 남한으로부터의 반입희망품목으로는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제품과 남해어족,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을 제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거래형태로 물물교환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하자원, 어업, 농업분야 등에서의 합작을 제의하고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제기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가운데 공통된 것으로 남한이 반입을 희망하고 북한이 반출 가능 품목으로 제시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슘크링카, 옥수수, 명태가 있으며 반대로 북한이 반입을 희망하고 남한이 반

출가능 품목으로 제의한 철강재와 섬유가 있다. 그 외에도 자연자원의 개발협력,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의 설정, 남북한 철도망의 연결(경의선),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제외가 공통적인 안이었다.

이와같은 공통적인 반출입 희망품목은 앞의 <표-7>에 나타난 품목별 남북한 반출입 승인 현황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2건의 직교역 품목 가운데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은 분단 40여년간 체제와 이데올로기 경쟁에 막대한 민족적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비례적으로 높아진 상호 불신의 벽을 고려할 때 직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도 상호공존에 입각한 독자성·공통성에 기초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상호간의 수출입구조 분석에 의한 반출입 유망품목 확대에 대한 연구조사¹⁴⁾가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국제정치·경제적 정세 변화는 북한의 직교역 수용과 UN동시가입 등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환시켰는데 이는 향후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발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직교역을 계기로 남북한 잉여물자 교환협정체결, 중앙은행간 청산결제방식 도입 등의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즉 정부는 이번 직교역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단기간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으나 북한의 정책전환을 인식하면서 직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경우 정치·군사적 의제와는 별도로 북한측에 경제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여 직교역 활성화 방안을 거론할 계획이며 민간기업들도 현재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직교역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은 틀림없으나 현단계에서 직교역 및 물자교류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차 경제회담을 통해 남북한 반출입 희망품목을 기준으로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소련·중국·일본과의 무역에서 나타난 수출입구조분석으로 교류 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외환수지에

14) 한국무역협회,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안), 1989, 138-56쪽 참조.

타격을 주지않고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물물교환 내지 바터제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결제단위는 반출입 차액을 제 3국 화폐로 상호 정산하되 북한화의 경우는 결제은행을 남한은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으로 북한은 무역은행이나 대성은행으로 하는 협정체결이 요구된다. 셋째, 중개무역 가능지역 홍콩·중국에 구상무역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북한의 무역회사지사 또는 합작회사와 적극적인 접촉을 갖는다. 끝으로 북한상품의 위탁 판매·대북한 위탁가공과 당해제품의 남한내 반입, 제 3국 수출 그리고 연불수출제도의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

2. 合作投資 方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직교역의 실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총무역 규모는 <표-1>에 나타나듯이 90년 현재 46.4억 달러(수출 20.2억 달러, 수입 26.2억 달러)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외환사정 악화와 자력 갱생에 기초한 경제 건설전략을 고려한다면 직교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더라도 연간 교역량은 2억달러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합작투자 방안에 대한 적극적 조사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즉 域內합작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교역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남북한간 海外합작투자이다. 즉 남북한간의 합작을 통한 제 3국 진출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구상 단계에 있는데 시베리아의 산림개발, 만주와 동구권 공동진출 등이 유망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남북한간의 역내합작투자 방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와 수출입구조에 기초한 주요 품목별 합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북한의 대남한 경제교류·협력 제의는 54년 4월 27일 '전조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면서 남북한 합작투자에 대한 제의는 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과업으로 제기되었다. '남북이 경제합작을 실현한다면 끊어진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회복하고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⁵⁾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한 본격적 제안은 80년 10월 제 6차 노동당대회에서 '고려연방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경제합작 및 교류의 필요성을 인적 자원의 유용한 활용,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농업부분의 보완효과와 근해어업의 발전을 들고 있다. 특히 경제합작의 형태로는 지하·바다자원 등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방식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는 82년 2월 국토통일원 장관을 통해 '20개 시범실천 사업제의' 가운데 자연자원의 공동개발·이용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남북한간 합작투자 제의는 84년 11월의 제 1차 남북한경제회담을 통해 양측은 다각적인 분야를 제의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북한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내부적인 경제개혁 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외개방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즉 개방화의 전개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87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에서는 제 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 무역규모를 3.2배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¹⁶⁾ 북한경제 개방화의 또다른 측면은 외국 자본과의 합작투자유치 협력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지하자원개발 그리고 소비재산업에 대한 외국인 합작투자유치 목적은 합영법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합영법에 의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앞의 <표-4>에 나타난 바와같이 예상 수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영사업의 적극적 추진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적인 북한의 경제체제로서는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 주요 합작투자 가능품목을 양측의 수출입구조와 남북한간 직·간접교역 품목을 중심으로 현실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직·간접교역 품목이 의미하듯이 화학섬유의 경우 북한은 상당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남한은 충분한 기술수준,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의류수입은 낮은 실정이나 잠재적 수요는 클 것으로 기대되어 섬유산업 분야의

15) 노동신문, 1979. 11. 9.

16) 노동신문, 1988. 10. 13.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산업설비 이전을 통한 합작투자 가능성은 타당성이 높다.

공작기계부문에서 북한은 저급·범용공작기계는 일정량 생산하고 있으나 전자기술수준의 낙후로 정밀가공공작기계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의 자동화, 정밀도의 제고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해 이 부분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공업의 경우 북한은 주로 산업용 화물차 생산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버스나 승용차의 생산은 부품수입·조립 단계에 있는 반면 남한은 중·소형승용차의 경우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어 생산기술, 판매망, 자본의 제공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제공은 이상적인 결합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조선공업의 경우 북한은 선박 건조 자금도가 40%에 불과하나 남한은 제 2의 조선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합작투자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¹⁷⁾

끝으로 전자제품·부품공업은 북한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의 하나로 향후 이 부문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컬러 TV, 냉장고, VTR 등 가전제품 <표-7>에 의하면 직·간접교역을 통한 대북한 반출품목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제 3차 7개년 계획은 경제협력부문에서 기계공업, 전자공업 그리고 자동차공업에 대한 합작과 합영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간 海外합작투자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즉 남북한간의 역내합작투자는 양측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할 때 체제와 정권 붕괴라는 북한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 북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해외합작투자 분야이다.

더욱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정치·경제 그리고 군사적 관계를 맺어온 중국, 소련 그리고 동구제국은 경제개혁과 개방화 과정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은 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기점으로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적인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남한은 그동안 현지진출기업의 출현과 함께 대기업 중심으로 대소련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17) 한국무역협회, 앞의 책, 410-24쪽

한편 중국의 경우도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노선 채택 이후 추진된 경제특구와 해안개방지역의 확대 속에 지난 79년 부터 가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비록 소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지만 85년 이후 90년도 까지 78건 (예비 승인건수 13건 포함) 1억 686만 7천 달러가 투자되고 있다. 투자진출지역도 중국 동남아지역의 4개성, 발해만지역의 5개성 그리고 동북지역의 3개성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면서 전기·전자기기, 약기류, 그리고 운동장비 등의 사업도 천안문 사태 진정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남한의 대동구제국 진출은 대폭적인 90년도 관계정상화 이후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대동구 교류는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는 저조한 상태로 호텔건설,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 그리고 CTV제조 공장 등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동구 진출은 새로운 사회주의권 시장개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이후에는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남북한간의 공동합작을 통해 북방국가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경제개혁과 대외무역을 강조하는 신축적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에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합작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분야로는 해외 지하자원, 수자원 개발 그리고 해외간접자본시설물의 건설 등이 유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문은 남북한간의 역할 분담이 용이하며 특히 소련·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작투자 부문을 기초로 對象地域을 살펴보면 우선 소련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들 수 있다. 즉 이지역은 지하자원, 연료, 산림 그리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인근에 공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남북한 해외합작투자의 최적지로 지목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합작으로 중국에 진출하면 대소련 진출에 서와 같은 자원확보 효과나 즉각적인 시장확대효과 등은 기대할 수 없으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신규시장 개척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공동합작 투자지역을 예상하면 삼강평원 등의 평지개발과 함께 흑룡강성·길림성의 사회간접시설물 건설사업이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련·중국에

서 노하우를 축적한 남북한은 동구제국, 중동지역 그리고 서북부 아프리카 지역에도 공동진출하여 경제적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합작투자방식을 구체화하면 우선 역내합작투자는 양측의 비교우위 생산요소를 토대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외합작투자 방식으로는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상대국의 노동력·임지제공과 남북한 공동출자의 형태가 유용하다.

남북한간의 역내합작투자는 이미 89년도에 남한의 현대측과 수리조선소, 철도·차량기지산업, 시베리아 공동개발 그리고 금강산 개발 등이 합의된 바 있다. 또한 해외합작투자는 남한의 동아제약이 소련내 북한·소련 합작기업과의 합작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두만강 경제특구'는 남북한간 합작투자는 물론 경제교류·협력의 전환기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다. 즉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는¹⁸⁾ 두만강 하구의 남북한 공동진출 문제는 최근에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인 나진, 선봉(웅기), 셋별(경원)을 연결하는 140km²에 건설될 예정인 '두만강 경제특구'는 북한이 제 3국 국적형태-UN기구나 외국현지법인 형태-이지만 남한기업의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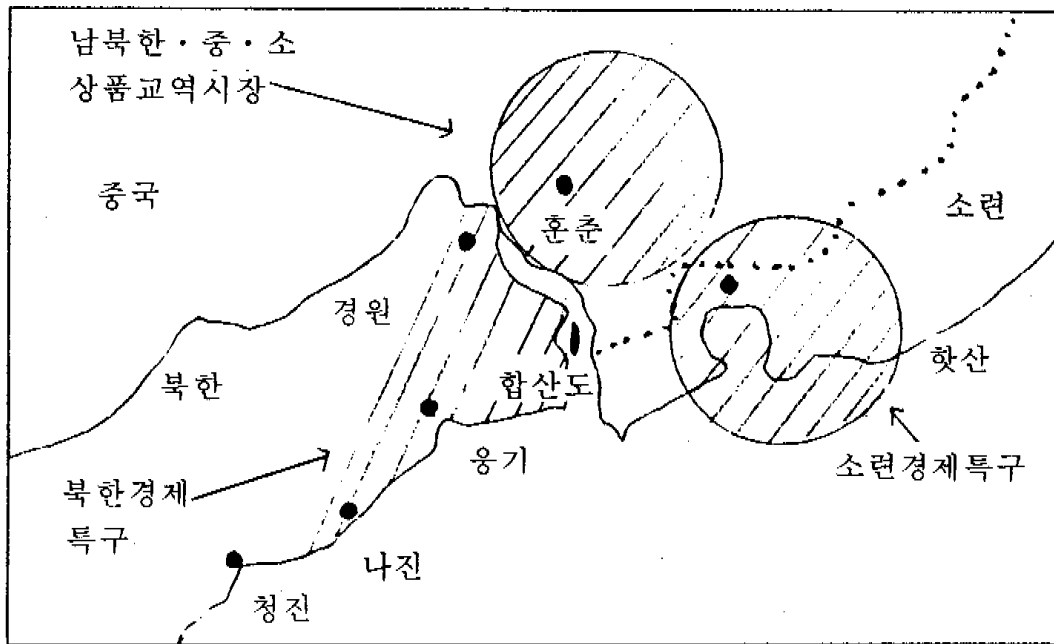
특히 '두만강 경제특구'지역은 UNDP의 두만강 유역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다. UNDP는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합산도를 중심으로 북한·중국·소련 등이 공동 참여하는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자본조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두만강 유역 준설공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中國은 89년 경제특구로 지정 개발하고 있는 훈춘에 남북한과 중국·소련의 상품교역시장 개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소련 또한 역시 최근 방한한 로가초프 외무차관을 통해 4개국 공동으로 연해주 개발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핫산과 88년 개방한 나훛카 항을 중심으로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18) 김성훈, 금강산·황해의 남북한 공동개발 전망, 내륙연구소, 북한연구, 1991. 봄호, 138쪽.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두만강 하구에 가까운 블라디보스톡과 포시에트 역시 개발할 추세이다. 따라서 북한·중국·소련이 각각 추진중인 경제특구 건설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동북아경제권의 본격적인 경제 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1〉 두만강 경제특구



즉 지난 8월 29일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는 ‘동북아경제기술협력’이라는 주제로 두만강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남북한과 중국, 소련, 미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여 구체화·현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예상분담금 120만 달러를 92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技術協力 方案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종전처럼 물자교류에 비중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정치적 분야의 하나인 기술협력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들어 한층 과학기술의 향상을 주창하여 '오늘날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현시기 세계경제 발전의 기본 과제'¹⁹⁾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는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제 3차 7개년 계획 속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생산관계의 향상을 달성함에 있다고 밝히고 전경제 분야에 걸친 설비 현대화를 통해 생산공정을 기계화·자동화·전산화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남한은 89년 과학기술처를 통한 대북한 과학기술교류 촉진을 제기하고 남북한 공동학술회의 개최, 기상정보교환용 직통신망 설치, 과학기술용어사전 공동편찬,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 그리고 漁族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제 3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에서 남북한 학자들에 의한 학문적 교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중국 연길시에서 '91한민족 국제 과학기술 학술회'가 개최되어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표-1>에 나타난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는 특히 技術水準의 격차에서 연유한 면이 적지 않으므로 남북한간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격차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남한은 기술협력에 앞서 여타의 협력 분야에서처럼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을 비교하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일부 군수산업기술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앞서고 있으므로 기술협력을 경제교류·협력과 연계하여 고려하면 상호보완적인 분야임에 틀림없다. 즉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의 부진으로 80년대에 들어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를 노출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과학기술의 도입·흡수기를 지나 소화완료단계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단계에 들어선 부문이 있는 것이다.

19)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87년도 시정연설), 1986. 12. 30.

특히 북한은 제 3 차 7개년계획 기간중 세계적 기술수준으로 기술을 개조·혁신하는데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하여 원자력발전소와 태양열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기술자에게 1인 1기술 개발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기술협력방안은 크게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인력교류에는 과학자를 중심으로한 학술교류, 산업기술교류를 위한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력의 교류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인적교류 방안 가운데는 남북한간의 현실적인 제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산업기술인력의 교류보다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 학문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학술회의의 학술논문 발표 사례를 통해보면 북한의 기초과학 부문은 남한보다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유전공학 등 첨단과학 분야의 학문수준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용어의 한글화 작업진척과 함께 수학 및 화학 등의 순수과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즉 전체적으로 북한의 과학은 기초이론에서 강한 편이며 실용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고층빌딩의 건설 그리고 농라도 경기장의 건설을 볼 때 토목공학 및 기계공학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과학 부문에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서 남북한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된다면 이어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장단기 교환방문과 유학생 파견 등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자의 상호교환·현장기술지도 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92년도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 2 회 한민족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는 주목되고 있다.

다음으로 물적교류를 보면 기술정보교류, 산업기술이전(know-how 교류), 생산기계 및 설비의 반출입 그리고 공동연구의 수행 등은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기술정보의 교류와 생산기계 및 설비의 매매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정보의 체계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

한 공동의 교환센터 설립·운영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기초과학 분야의 기술정보 및 기상정보 등 비상업적인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점진적으로 산업기술정보 교류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기술 이전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남북한 합작투자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두만강 경제특구의 출현조짐은 이와같은 문제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연구의 수행 등은 남북한학자들의 교환방문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환 등이 가시화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투자가 소요될 것이며 특히 남북한간의 기술협력에는 COCOM 규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과학기술 교류·협력과는 별도로 민족적·인도적 견지에서 남한은 축적된 농업생산기술²⁰⁾, 특히 육종기술의 이전 그리고 의약품·의료기술 이전을 통해 북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질적개선을 도모할 전향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V. 南北韓의 天然資源 共同開發 方案

1. 鑛物資源 共同開發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이 고려될 수 있다. 즉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한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교류·협력 제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문이며 제 1차 남북경제회담에 제시된 양측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서도 수자원 공동개발과 함께 공통적으로 제의되고 있는 것이다.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광물자원의 매장과 분포에서 남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광업이 발달하였다. 즉 북한에는 현재 90

20) 특히 87년 현재 탄보당 쌀생산량은 남한 436Kg, 북한 316Kg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한 공동의 교환센터 설립·운영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기초과학 분야의 기술정보 및 기상정보 등 비상업적인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점진적으로 산업기술정보 교류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기술 이전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남북한 합작투자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두만강 경제특구의 출현조짐은 이와같은 문제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연구의 수행 등은 남북한학자들의 교환방문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환 등이 가시화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투자가 소요될 것이며 특히 남북한간의 기술협력에는 COCOM 규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과학기술 교류·협력과는 별도로 민족적·인도적 견지에서 남한은 축적된 농업생산기술²⁰⁾, 특히 육종기술의 이전 그리고 의약품·의료기술 이전을 통해 북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질적개선을 도모할 전향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V. 南北韓의 天然資源 共同開發 方案

1. 鑛物資源 共同開發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이 고려될 수 있다. 즉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한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교류·협력 제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문이며 제 1차 남북경제회담에 제시된 양측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서도 수자원 공동개발과 함께 공통적으로 제의되고 있는 것이다.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광물자원의 매장과 분포에서 남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광업이 발달하였다. 즉 북한에는 현재 90

20) 특히 87년 현재 탄보당 쌀생산량은 남한 436Kg, 북한 316Kg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여개의 대형 탄광 및 일반광산 90여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총 360여종의 광물 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그 중에서 마그네사이트, 중석, 흑연, 중정석 등 세계 10위 이내의 매장량을 가진 광물을 포함하여 약 220여종의 경제성 있는 광물로 평가되고 있다.

〈표-9〉

남북한 자원매장량비교

(단위 : 천%)

광물명	단 위	잠 재 매 장 량		부 존 비 율(%)	
	성분 %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철	Fe 20-50	20000	3000000	6.2	93.8
중석	WO ₃ 65	185	232	44.3	55.7
몰리브덴	MoS ₂ 90	32.5	2	94.2	5.8
니켈	Ni 3	217	1200	15.3	84.7
망간	Mn 40	1250	200	86.2	13.8
금	Au 100	0.5	1	33.3	66.7
은	Ag 100	2.5	5	33.3	66.7
동	Cu 100	80	75	51.6	48.4
연	Pb 100	-	29		
아연	Zn 100	640	12000	5.1	94.9
인상흑연	FC 100	1600	2000	44.4	55.6
토상흑연	FC 75	3000	3000	50.0	
형석	CaF 70	2450	200	92.5	7.5
활석	MgO 30	600	600	50.0	50.0
납석	sk 32	10000	125	98.9	1.1
석면	-	30	13	69.8	30.2
석회석	CaO 50	1490000	100000000	1.5	98.5
규석	SiO ₂ 98	10000	-		
규사	SiO ₂ 93	31613	6600	82.7	17.3
마그네사이트	MgO 45	-	6500000		

광물명	단 위	잠 재 매 장 량		부 존 비 율(%)	
	성분 %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고령토	sk 32	40000	2000	95.2	4.8
중정석	BaSO ₄ 90	217	500	30.3	69.7
모나자이트	RpO 60	20	46	30.3	69.7
베릴륨	ReO 10	0.5	0.6	45.5	54.5
지르코늄	ZrO 50	20	50	28.6	71.4
안트모니	Sb 1-5	100			
유화철	S 10-25	16000			
우라늄	UO 0.3-0.5	56000	26000	68.3	31.7
무연탄	Kcal 6450	1450000	11740000	11.0	89.0
유연탄	Kcal 6450	5000	3000000	0.2	99.8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

주요광물의 남북한 부존비율을 <표-9>를 통해서 보면 마그네사이트는 100% 북한에 매장되어 있고, 철광, 석회석, 무연탄, 중정석, 유연탄 등은 각각 93.8%, 98.5%, 69.7%, 99.8%씩 북한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한편 몰리브덴, 납석, 고령토, 망간, 우라늄 등은 남한지역에 부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자원정책은 비교적 풍부한 광물자원을 토대로 50년대부터 국가 산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중요한 경제정책 사항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초까지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자력갱생의 경제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던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71년 이후 86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에너지 내수증가율은 2.8%인데 반해 석탄·수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증가율은 연평균 2.2%에 머물러 석탄·석유의 수입증가율은 평균적으로 10.2%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86년의 경우 7억 달러 내외의 에너지 수입은 경직적인 북한 경제구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0년 현재 78.6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수입 부담은 85년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근본적 이유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소련, 중국,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마그네샤크링카, 압연강재, 석탄, 코크스, 철광석, 금 등의 광물자원은 87년 현재 6억2,955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87년도 현재 석유를 제외한 지하자원 원광의 수입총액이 1,784,662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유·무연탄을 합한 석탄이 802,519백만원 기타 일반광물이 982,143백만원으로 각각 45%와 5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백억원 이상 수입하고 있는 광물자원은 석탄을 비롯하여 철광, 동광, 금, 아연광 등 11개 광종에 이르고 있다.²¹⁾

여기서 <표-9>를 통한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과 남한의 수입광종을 비교해 볼 때 남북한간의 광물자원 공동개발 가능분야는 단기적으로 보면 아연광, 금광, 철광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아연광의 남한 수입량은 88년 현재 445,660㎏이며 북한의 수출량은 87년도 기준으로 36,487㎏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북한의 낙연, 검덕, 성천, 용운, 승창 등을 남북간 합작으로 공동개발하면 연간 20만톤 정도를 남한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동개발에 의한 생산증가는 제3국의 수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88년 현재 남한의 금 수입량은 7,397kg이며 87년도 북한 수출량은 2,633kg으로 금광은 상호보완적인 공동개발이 유망한 자원의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성흥, 대안, 운산, 대유동 등의 금광을 공동개발하여 생산을 확대한다면 연간 5,000-6,000kg을 남한이 수입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시장으로의 수출도 고려될 수 있다.

철광석은 남한의 석탄 다음가는 주요 수입광종으로 88년 기준 18,695천 ㎏이며 87년 북한의 철광석 생산량 9,800천 ㎏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철광석이 풍부한 무산, 은율, 하성, 재령광산을 공동개발하면 연간 500만톤의 철광석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은 82년에 서독·프랑스와 아연광산 및 석유탐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와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유색금속광산을 개발키로 합의하고 있다. 또한 <표-7>에 의하면 남북한의 직·간접교역을 통한 반입품목에는

21) 동력자원부, 1987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1988.

아연과 무연탄이 압도적인 광물자원이며 최근 들어서는 금괴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한의 석탄수입량이 88년 기준 2,707천㎏·유연탄 21,913천㎏로 총 24,620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유보한 것은 북한산 유연탄의 주종은 갈탄으로 남한의 주요 수입상품이 역청탄의 공급이 불가능한 면과 함께 남한은 87년을 고비로 청정에너지 선호현상으로 국내 무연탄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절대량의 광물자원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은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카리만탄 등에서 개발수입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생산 가능한 천연자원의 직교역과 함께 개발·미개발상태에 있는 북한지역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수송비 면에서도 대폭적인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자원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함께 외화가득을 증가로 경제적 곤란의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동안 침체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산을 개건·확장하고 특히 새로운 탄광을 집중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석탄의 증산을 위해 북한내 탄광조건에 맞는 굴진설비, 채탄설비, 운반설비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은 남한측에게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 그리고 연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다. 공동개발 형태는 북한의 합영법을 바탕으로 남북한간 합작법인의 설립으로 현지 합작개발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남한측 참여기업은 광업회사, 종합무역상사 그리고 수요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광산기술개발 및 생산물의 유통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정책변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외국기업과의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북한과 합작으로 공동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에서도 몇가지 제약요인을 예상할 수 있는데 먼저 북한의 광물자원 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차단이 제기될 수 있으며 둘째, 북한내 부존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 즉 광물자원 공동개발이 필요로 하는 자본의 규모와 회전기간이 20년 내외가 소요되는 문제, 경영참가문제, 외환리스크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셋째, 북한산 광물자원의 남한내 유입에 따라 유발될 수도 있는 국내광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89년초 경쟁적으로 유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국내 석탄업계에 우려를 낳았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水資源 공동개발

북한은 수산물을 주요한 인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고 있으며 70년대 이후에는 주요 수출산업 품목으로 설정하여 생산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남한 역시 86년 현재 국민 총단백질 공급량 가운데 동물성 식품이 34.4%를 담당하고 이 가운데 수산물의 비중은 57.3%를 점유하고 있다.²²⁾ 더욱이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고단백질 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연안 수산자원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원양어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수산물 공급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남한 원양어업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북양어장의 어획 쿼터량은 미국의 연안어민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정책으로 84년도 이후 쿼터량이 급속히 감소하다가 88년 이후에는 쿼터량 배정이 전무하게 되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제 2 차 7개년계획기간(1978-84)동안 '20일 출어전투' '300일 출어전투'를 통해 연간 360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제 3 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93년에는 1,100만톤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산물의 수출자원화를 위해 원양어업과 양식업에 적극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기간 동안 제 3 세계 국가들과의 원양어업 협력사업추진과 함께 냉장운반선을 원양어장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기술지원을 통한 양식어업의 생산증대에 주력하여 양식면적 10만정보 확대계획을 추진하면서 종전의 '잡는 어업'에서 '기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C를 향한 수산업 발전과 바다이용전략, 1988. 24쪽.

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상품구조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魚介類 및 調整品의 대 중국 수출이 87년 현재 6,735만 중국원이며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합, 대구알 그리고 연어, 송어를 일본에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회담 합의서 초안과 함께 <표-7>의 남한내 반입품목에서도 명태, 오징어 등의 수산물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10> 수산물의 대북한 반입가능품목(1984)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남한의 대일본수입		북한의 대일본수출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청 어	285	56	233	197
대 구	528	472	1046	188
연 어 · 송 어	737	887	1661	2169
성 계	-	-		2120
대 합	-	-		7198
대 구 알	-	-		6480
합 계				18352

자료 : 연하청 경제정책과 운용, KDI, 1986.

북한의 수산자원은 물고기만 650여종이나 되며 그 가운데 연해안에 53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담수어가 120여종 있다. 최근 통일원 발표에 의하면 90년 수산물 생산량은 145.5만톤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동해의 어획고는 북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봉(웅기), 나진, 단천, 원산을 중심으로 명태, 대구, 청어 그리고 하계회유성의 정어리, 멸치, 오징어, 꼼치 등 50여종에 이른다. 서해에는 남포, 신의주, 광산, 해주를 중심으로 조기, 갈치, 농어, 대구, 왕새우, 백새우 등의 어획량이 많다.

원양어업은 신포, 청진, 양화의 수산기지로부터 오후츠크해와 태평양 북서부에서 청어, 넙치, 대구를 잡고 있으며 연간어획고는 對蘇水産協定에 명시된

연간 20만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²³⁾ 양식어업은 동해의 나진, 낙원, 사포와 서해의 강령에서 다시마를 양식하고 문천과 동면에서는 굴양식이 번성하고 있으며 서해의 웅진은 김, 굴, 조개류 양식이 이름난 곳이다.

북한의 어선보유현황은 88년 현재 30.6천척(남한 99.0척)이며 동해에서의 트롤(저인망)어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서해는 주로 안강망 어업이 주로 활용되고 규모나 기술도 낙후된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일찍부터 북양어업을 중심으로 소련과 수산협력을 이루어 왔으며 소련측의 200해리 경제수역선 포로 77년 7월 쌍방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도 그해 9월 朝日漁業協力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82년 6월 이후 유보된 상태에 있다.

한편 남한의 1일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은 62년 5.3g에서 86년 현재 17.7g으로 증가하여 수산업은 식품소비의 질적 향상과 동물성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60년대 중반이후 원양어업의 급격한 신장과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수산물 수출은 큰 폭으로 증대되었으나 80년대 이후 원양어업의 침체와 연근해어업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85년 현재에는 562,489천 달러 수산물 수출량의 63.1%를 점유하게 되었다.

세계 어획고는 89년 기준 약 1억톤으로 85년 이후 연평균 10%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한, 태국, 대만 등 개발도상국이 대선진국 수산물 수출로 획득한 외화는 85년 5,200백만 달러에서 89년 현재 10,500백만 달러로 주요한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다.²⁴⁾

이러한 남북한 수산업의 현황은 수자원 공동개발의 가능성 확보로 귀결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남북한 어업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한 공동개발 방안을 검토하면 먼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들 수 있다. 즉 북위 37°-39°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36°-41°, 35°-41°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공동어로 작업을 위하여 옹기, 나진, 연천, 어대진, 김책 등의 어항은 확대개발이 가능하며 발전적으로 보면 청진, 신포, 원산 남포 등 조선

2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730쪽.

24) FAO한국협회, 국제식량농업 1990.1. 67쪽.

소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어선을 건조하고 기술적 교류도 실현 가능하다.

둘째로 남북한 공동의 수산합영회사, 수산물 가공처리공장의 설립을 제의할 수 있는데 이를 공동운영하면서 최신 어로장비의 상호교환은 물론 인적교류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며 냉동식품과 맛살 등 수산물 가공품의 기술이전과 설비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공동양식장의 설립이다. 남한은 김, 미역, 굴 등의 양식 수산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사용하여 북한의 웅진 양식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공동양식 생산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공동어로망을 통한 원양어업 협력과 어선건조의 기술협력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오호츠크, 캅차카만 일대에 공동진출하여 남한내 수요가 큰 생선인 명태, 청어 그리고 가자미 등을 반입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어선건조와 수리기술 등 수산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 또한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직교역 실현을 통해 보면 남한의 반출품목은 대부분 소형 최종소비재 및 잡제품목인데 반해 북한의 반출품목은 벌크화물이 주가되고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화물운송 수단으로는 해상운송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 즉 남북한 쌍방은 교역 대상국별·품목별·지리적 차이로 인하여 대외교역에서 남한은 주로 해상운송에, 북한은 철도운송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운협력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한측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항만을 대중국의 동북 3성 및 소련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중계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은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부문별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이 실현된다면 상이한 체제 속에서 전개해온 남북한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상호보완성·공존성을 실질적으로 확대·심화시킬 것이다.

3. 林山資源 공동개발

세계 총목재 생산량은 86년 현재 32억6천만 m^3 이며 이 가운데 用材는 15억8천만 m^3 이고 나머지 16억8천만 m^3 는 연료재로 소비되었다. 용재수요를 구체화하면 파티클로보드, 합판 그리고 펄프제지 등의 수요가 크게 신장되었다. 특히

세계의 목재수요는 지역적 특성을 달리하는데 선진지역은 용재수요 비용이 높아 製材品, 합판, 펄프 등 다양한 주요 목재생산지인 열대지에서는 연료재료의 사용 비중이 85%를 점유하고 있다.

FAO 88년 발간자료인 '2000년의 세계농업'에 의하면 용재소비량은 85년에 비해 33%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반면에 세계 목재의 주요 공급원인 열대지역에서는 산림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원목수출 제한과 함께 수출용 목재 가공품화가 증대됨으로써 향후 원목의 확보는 대단히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의 장기적인 목재수급전망은 커다란 불균형 상태가 예상되며 특히 열대산림자원의 감소는 연료재의 부족, 식량생산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의 목재가격 폭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²⁵⁾

북한은 남한보다 질·양적으로 풍부한 임산자원을 넓은 지역(총면적의 약 3/4인 9백만ha) 걸쳐 보유하고 있다. 즉 도별 산림률을 보면 자강도·양강도는 90%, 함경남·북도는 80% 이상으로 평양시(40%)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60% 이상의 산림률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 분포된 주요수종과 용도를 보면 펄프용재인 분비나무, 황철나무, 가문비나무, 합판과 가구용재로 사용되는 왕느릅나무, 오동나무 그리고 목각용으로 일본에 수출되는 다릅나무와 고급 화장합판에 사용되는 들메나무 등이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목재는 주요한 산업용재의 하나로 그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 남한의 목재생산은 78년 1,100천 m^3 였으며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여 87년 현재 1,388천 m^3 이나 목재 자급률은 17.7%로서 82% 이상의 목재수요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91년 목재수급계획량을 10,295천 m^3 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국내생산이 1,582천 m^3 로 총 수급량의 15%이며 나머지 85%인 8,713 m^3 는 말레이시아, 솔로몬, 미국 그리고 소련 등지에서 수입계획을 밝히고 있다. 남한의 91년 목재수요량 10,295천 m^3 는 내수용재가 9,974천 m^3 (96%)로 이 가운데 일반용재 65%, 합판용재

25) 유병일, 세계의 목재수급동향과 산림자원의 전망, 한국독립가협회, 산림경영, 1990.5, 17-8쪽.

22%, 펄프용재 6% 그리고 항목이 5%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용재 321천m³(4%)는 제재목 3%와 합판 1%이다.

특히 남한의 제지공업은 60년대초 수입대체산업으로 출발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60년대 후반에는 이미 90%의 자급률을 실현하여 내수산업으로서 기반을 확보했고 70년대 이후에는 부분적인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제지공업은 원료 공급산업인 펄프공업과 불균형 상태에서 급성장하여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의 목재 부족현상은 소득증대와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2000년에는 15,100천m³의 목재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지가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동되고 있어 임산자원의 안정적 육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투기성 자본의 비임업 산지장악은 투자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산지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이는 곧 임업의 재생산 구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업생산의 기회와 투기화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지적했듯이 장백산맥, 낭림산맥, 개마고원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유역 일대에 상당량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 기술의 부족으로 그 개발과 활용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의 제지공업은 관련기술의 미발달 및 고수율 펄프·쇄목펄프에 대한 노하우 등이 부족하여 83년 현재 연간 7,200톤의 제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이러한 가운데서 남북한간의 임산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더욱이 FAO와 UNDP의 열대림 자원평가에 의하면 열대지역의 천연림은 81년부터 85년 사이에 1,130만ha(남한 면적의 1.1배)가 감소되었다. 목재생산, 水源涵養, 녹지공간 그리고 농업생활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의 대규모감소는 기후변화, 種의 소멸 그리고 사막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산림관계 학술교류와 공동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북한도 제 3차 7개년계획동안 150만정보의 산림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70년대 이후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은 남한의 산지개발 기술이전·교환

26) 한국부역협회, 앞의 책, 387쪽.

이 이 부문 공동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국토의 종합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제지공업의 원자재인 원목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생산설비를 통해 공동개발될 경우 경쟁력있는 제지산업을 건설할 수 있으며 남한은 해외의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베리아 산림개발에도 남북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해외공동개발 사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 南北韓 地域의 共同開發 방안

1. 觀光地 공동개발

관광지의 남북한 공동개발 계획은 1982년 2월 통일원이 설악산·금강산지역을 자유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제의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90년 총리회담을 통해서도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89년 1월 남한의 현대그룹과 대성은행간에 금강산 개발계획을 협의했으나 현재는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금강산의 남북한 공동개발계획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맥을 함께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⁷⁾ 즉 당시 남한의 건설부는 통일 촉진을 위한 경제합작 제안으로 금강산 공동개발계획을 입안하여 금강산 72 즉 ‘금강산·설악산지역 관광도로 구상’이라는 연구결과를 작성한 것이다.

금강산·설악산지역 관광도로 구상에 의하면 그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리지역은 온천중심의 휴양지구화를 위해 숙박시설과 민속촌을 조성하며 둘째, 양진리지역은 외금강 진입을 주요기지화 하여 등산객·탐방객을 위한 토산품 판매점과 <그림-2>에 나타난 순환도로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하고 셋째, 장전·고성지역은 외금강과 해금강으로의 시종착지로서 민속풍의 유희

27) 김성훈, 앞의 글, 132쪽.

이 이 부문 공동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국토의 종합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제지공업의 원자재인 원목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생산설비를 통해 공동개발될 경우 경쟁력있는 제지산업을 건설할 수 있으며 남한은 해외의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베리아 산림개발에도 남북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해외공동개발 사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 南北韓 地域의 共同開發 방안

1. 觀光地 공동개발

관광지의 남북한 공동개발 계획은 1982년 2월 통일원이 설악산·금강산지역을 자유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제의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90년 총리회담을 통해서도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89년 1월 남한의 현대그룹과 대성은행간에 금강산 개발계획을 협의했으나 현재는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금강산의 남북한 공동개발계획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맥을 함께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⁷⁾ 즉 당시 남한의 건설부는 통일 촉진을 위한 경제합작 제안으로 금강산 공동개발계획을 입안하여 금강산 72 즉 ‘금강산·설악산지역 관광도로 구상’이라는 연구결과를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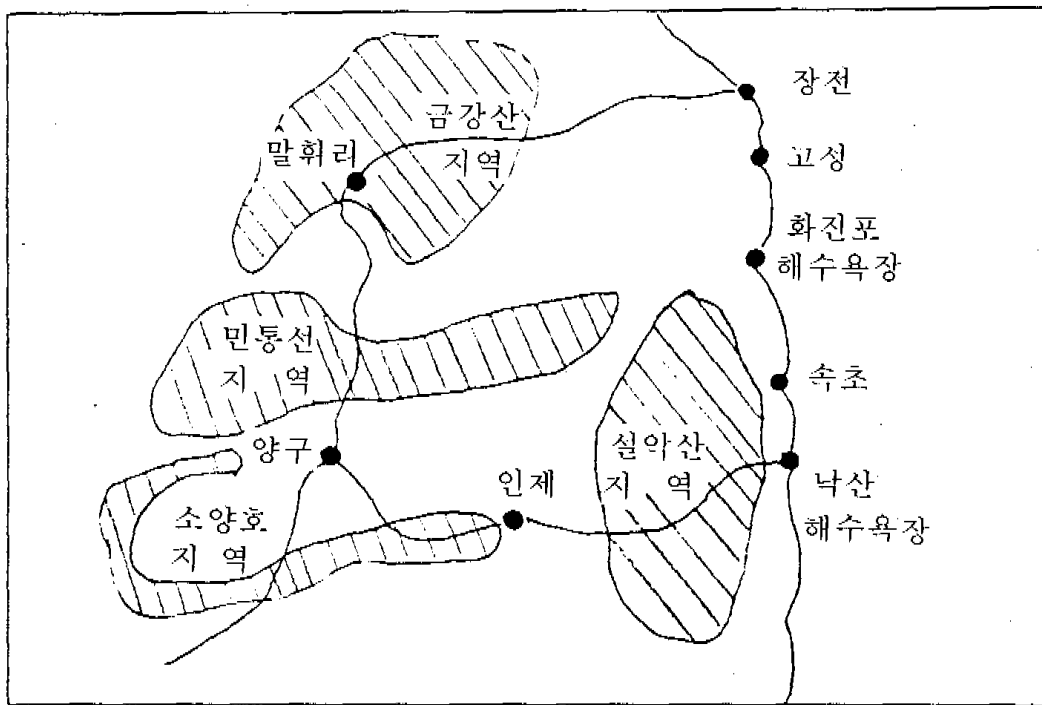
금강산·설악산지역 관광도로 구상에 의하면 그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리지역은 온천중심의 휴양지구화를 위해 숙박시설과 민속촌을 조성하며 둘째, 양진리지역은 외금강 진입을 주요기지화 하여 등산객·탐방객을 위한 토산품 판매점과 <그림-2>에 나타난 순환도로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하고 셋째, 장전·고성지역은 외금강과 해금강으로의 시종착지로서 민속풍의 유희

27) 김성훈, 앞의 글, 132쪽.

시설을 건설하며 넷째, 말회리지역은 내금강으로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하고 다섯째, 화진포지역은 금강산관광의 국제성에 비추어 이 지역을 국제적 규모의 리조트센터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정리지역은 북한에 의해 휴양시설이 개발되고 있으며 남한은 화진포지역 개발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림-2〉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북한은 90년에 약 1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불 목표로 종래의 사회주의국가 중심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서방국가로 유치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원산-금강산 휴양지 국토종합건설'을 세우고 금강산지역의 국제적인 대규모 관광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금강·해금강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관광호텔·위락시설 그리고 점변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89년 1월의 금강산 공동개발 계획은 원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하여 명사십리로부터 봉천의 시중호 그리고 총석정, 금란지구 그리고 금강산을 잇는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더욱이 정부는 금강산-설악산 일대의 공동관광코스 및 서울-평양 연계관광코스 개발, 공동관광회사 설립 그리고 합작호텔건설 등을 제의할 예정이며 또한 서울-속초간 동서고속전철

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을 북한의 동해 북부선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72년 건설부에 의한 '금강산·설악지역의 관광도로 구상'은 남북한간의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廣域觀光 계획이었다. 즉 광역종합관광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실익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약 6,400만평으로 각종 식·생물이 보존되어 있어 세계적 관심과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곳의 남쪽에 위치한 설악산·소양호지역은 동해안지역과 함께 하나의 순환관광권을 형성할 수 있다. 금강산을 축으로 하는 이 광역관광권은 그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이상적인 조화로 인해 상호보완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91년 8월 제 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1992-2001) 중에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시키는 관광지 공동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철도·도로 등 교통망 복원사업을 휴전선 남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구체안을 발표하였다.

관광지 공동개발은 일반적인 합작투자 사업과는 달리 인적교류를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므로 여타의 경제협력분야 보다도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개발 형태에서도 남북한간의 쌍무적인 협력으로 착수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참여 희망기업을 포함하는 다자간공동개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낙후되어 있는 해상관광자원을 주목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육지관광자원의 한계성과 함께 '보는 관광'에서 '움직이는 관광'으로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금강산·설악산지역의 공동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정치·군사적 장벽의 해결이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와 민족교류의 의지로서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전향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2. 干拓地 공동개발

북한의 총경지 면적은 88년 현재 214만 정보이며(남한은 214만3천 정보) 이 가운데 논은 30.0%인 64만 정보이고 밭은 70.0%인 150만 정보이다. 46년부터

최근까지의 변화추세를 보면 46년의 논면적은 388천 정보로 이후 연평균 1.33%씩 증가하여 67년 현재 572.5천 정보로 확장되었으며 70년대 후반에는 자연개조사업에 의한 농경지 확장정책으로 88년 현재 640천 정보에 이르고 있다. 한편 밭은 46년의 1,471.9천 정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88년 현재 1,500천 정보로 총경지 면적은 46년의 1,859.9천 정보에서 연평균 0.3%씩 증가하여 88년 현재 2,140천 정보에 이르고 있다.

87년 현재 북한의 농업인구는 310만명(남한은 3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총인구에 대한 농업인구비율은 38.0%(남한은 18.5%)이다. 농업기술면에서 남한은 국제적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育種이론과 농업기술면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기상조건도 불리하다. 따라서 곡물생산량은 90년 현재 남한은 663.5만톤, 북한은 481.2만톤이며 단보당 쌀생산량은 87년 기준으로 남한은 436kg, 북한이 316kg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植付面積과 경지이용률은 46년 현재 1,934천 정보로 그 이용률이 104%에 불과했으나 67년 현재 3,350천 정보로 이용률은 166.4%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4년에는 경지이용률이 137.5%로 저하되고 있다. 그러한 경지이용률의 감소원인은 70년대 중반 이후 농경지 면적의 확장이 한계에 달했고 영농기술수준이 낮으며 자연조건의 불리함(거의 매년 냉해)과 농작물 생육기간이 짧은데 연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양곡수입현황을 보면 86년 현재 쌀 182천톤, 밀 195천톤, 옥수수 62천톤 그리고 콩이 21천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87년은 쌀 70천톤, 밀 525천톤, 옥수수 177천톤의 수입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쌀은 199천톤의 수출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고가의 쌀을 수출하고 저렴한 밀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90년 곡물 작황은 481.2만톤(쌀은 193.2만톤)은 총수요량은 640만톤 보다도 160만톤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지면적의 제약과 자연기후 조건의 불리함으로 곡물증산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지면적의 확장을 위해 간석지²⁸⁾와 간척지의 개간사업을 일

28) 학술적 정의는 대략 최저 간조위에서 최고 만조위 사이의 갯벌을 의미함.

찍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서해안 지역은 압록강 하구에서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총 30만 정보에 달하는 간석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심이 얇고 간만의 차(5-8m)가 크며 압록강, 청천강, 예성강 및 기타 하천으로부터 토사와 기타 물질이 운반·퇴적되고 半島(천산, 장산곶, 웅기)와 灣(서한, 광양, 대동, 해주)이 발달해 있으며 또한 지반이 단단하여 구축이 용이하여 간석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52년 4월 간석지 개간사업을 강조한 이래 56년 3월 까지 간석지 조사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61년 5월 간석지에 5만 정보의 농경지와 1만 정보 이상의 갈밭 및 염전을 신규로 조성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리고 6개년 계획기간(1971-76)동안 3만 정보, 2차 7개년 계획기간(1978-84)에는 10만 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간척사업은 절대면적을 조성하고 농경지를 확장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면서 담수에 의한 용수개발, 도서간의 육로개설, 해안보전 및 개량, 수산증식, 염전, 입해공업단지 조성 그리고 해안도시개발 등 다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간된 간척지를 주로 농경지(평남운천), 갈밭(평북운천), 염전(평남숙천), 양어장(평북염주) 그리고 저수지(황해남도 청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²⁹⁾

우리나라 간척지 개발은 이미 1248년 고려 고종 35년에 안북부(안주) 용도에 제방을 건립하여 백성들에게 경작시킨데서 기원하고 있다. 남한은 서해안에 간척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으로만이 발달해 있어 매립·간척을 위한 지리적 조건이 유리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해안간척사업을 전개하여 농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업용지로도 간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간척사업은 60년대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대단위 농업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조성된 8개 서남해안 간척·매립 면적은 89년 현재 총 80,262ha이며 이 가운데 농경지 확장면적은 약 40%인 32,050ha이다.³⁰⁾

북한은 3차 7개년 계획기간 동안 농업부문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을 통한 농업

29) 북한연구소, 앞의 책, 716쪽.

30) 21C를 향한 수산업 발전과 바다이용전략, 앞의 책, 18-9쪽.

의 공업화와 함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업생산 토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서호, 은월, 강령의 간척지 개간과 새 땅찾기 운동을 통하여 농지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3차 7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93년까지 1,500만톤의 알곡생산(벼는 700만톤)을 목표로 설정하고 30만 정보의 간척지 개발과 20만 정보의 새 땅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절대 경작지 면적의 확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식량사정은 극단적인 구조적 불균형 상태하에 있다. 즉 7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적으로 잉여생산이 존재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식량안전보장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88년 세계 주요곡물(쌀은 제외) 교역량은 1988/89년 현재 1억9,440만톤이었으며 쌀의 교역량은 88년 현재 1,190만톤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했으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불안정한 상황이다.³¹⁾

그러나 간척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간척지의 熟畝化에는 상기간이 소요되는 점이다. 즉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82년 현재 남한의 간척사업은 1ha의 농지를 개발하는데 약 34만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평당 약 1만원의 개발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생산성에서도 除鹽 및 비옥도가 향상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간척·매립의 적합지는 대부분 양식장의 적지 혹은 경제성이 높은 어종의 산란 서식장으로서 일단 간척·매립이 이루어지면 인위적인 대체가 곤란하여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은 도시화·공업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농지전용 문제와 공업용지 부족에서, 또한 북한은 수전개발 가능지역이 한정되어 간척지 개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절대 경작지의 부족에 의한 식량난으로 70년대 후반부터 간척지·간척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81년 현재 3.4만 정보를 확보했으나 자본·기술면에서 많은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간척·간척지 개간사업은 6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인력에 의존하

31) FAO한국협회, 앞의 책, 60-1쪽.

여 추진하였으며 현재에는 자체생산이 가능한 불도저, 트랙터, 전동기 등은 자체 조달하고 있으나 포크레인, 페이로다, 콘크리트 믹서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은 이미 건설부문 해외 수주량에서 세계 10위권을 점유하고 있어 건설 능력, 특히 플랜트 건설은 남북한간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남한은 간척지 공동개발에 필요한 최신예 건설 중장비와 공법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서해안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의 경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은 절대농지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불상식에 의한 발주를 통해 자본 압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부문의 공동개발을 통한 남한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세계적인 곡물 무기화 경향을 고려할 때 경제성 이전에 북한의 식량확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간척지 공동개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대륙붕 공동개발

동해와 서해는 남북한 모두에게 생명의 원천이다. 동해의 면적은 약 100만 km^2 이며 용적은 약 175km^3 로 평균심도는 1,752m(최심 3,668m), 평균간조차는 1m이다. 한편 서해는 압록강 하구에서 해남곶까지 4,050km에 면적은 약 43.73km^2 , 용적은 $17,200\text{km}^3$ 이고 평균심도는 39.3m(최대심도 118m)로써 전 지역이 대륙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륙붕 공동개발의 단기적 추진은 서해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서해는 수심이 얕고 해저지형이 평탄하며 어류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으로 생물자원에 관한한 천혜의 보고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 특히 서해의 석유자원에 대한 관심은 20여년전 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80년 들어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함께 서해를 사이에 둔 남북한과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남한은 87년 6공화국 출범이후 대대적인 서해안 개발에 착수하여 99년까지 총126건의 사업에 22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북한 역시 일찍부터 에너지 자원의 수입증대에 대처

하기 위해 서해의 해저유전개발 등을 진척시키면서 신의주, 남포, 해주를 비롯한 공업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78년 이후 경제개혁·개방정책 추진 속에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동해안의 개발·개방에 임하고 있다.

서해의 해저유전에 대한 초보적 탐사가 시도된 것은 68년 ESCAP(유엔 극동 경제위원회)가 주관한 공동탐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69년초에 제출된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인 서해·동지나해의 대륙붕 석유논쟁이 전개되었다. 즉 남북한과 중국 등 3국간에 분쟁이 시작되어 대만과 일본이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ESCAP보고서에 석유부존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제시된 해역까지 영유권을 연장하고 석유메이저들과 경쟁적으로 탐사·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남한·대만·일본이 각기 일방적으로 주장한 영유권은 다양하게 중복되어 이들 국가에 의해 설정된 17개 해저광구 중 중복되지 않은 것은 4개에 불과하다.

중국은 70년대 남한, 대만, 일본간에 소위 3자 공동개발 문제가 제의되어 민간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자 그해 12월 북경방송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으며 미국의 석유재벌 등은 연안국들과의 탐사·개발 계획을 포기·철회하였다.

한편 북한은 동해의 경우 이미 85년에 소련과 두만강 및 영해경계협정협약을 했으며 86년에는 동해 중심까지의 대륙붕·경제수역경계협정을 체결·발효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북부에서 중국과도 유사한 경계협정을 체결해야 할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북부에서 중국과 압록강 입구로부터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해도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해의 경우와 함께 남북한간의 경계 역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83년 3월 국제해양법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200해리 경제수역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연안국 관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양경계 확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긴장과 서해해역을 비롯한 남북한 경계선 설정의 처리가 어려운 기술적인면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서해 5도의 관할해역에 대한 어로작업의 북한경계선도 68년 12월 이후 스스로 3차에 걸쳐 남하시켜 백령도·대청도와 소청도의 북방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의 연안국들인 남북한과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대륙붕개발, 특

히 석유자원개발을 지체할 수 없는 외적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간 대륙붕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남북한 양측의 원유 도입은 각각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향후 쉽게 완화될 수 없는 여건하에 있다. 특히 북한은 87년 현재 2,212만 배럴의 원유 수입으로 인한 외채 부담이 최근 중국·소련의 경화결제 요구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남한은 7천 해리 길을 헤엄쳐 87년 현재 21,6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82년 UN해양법 협약에는 남북한과 중국이 모두 서명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 협약의 주요조항은 서해연안 3개국에 이미 국내법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서해 대륙붕 경제획정 및 남북한 공동개발에 관한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90년 중국의 이붕 총리는 남지나해 연안국들과 대륙붕 공동개발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후 중국은 남한을 포함한 서해, 동지나해, 남지나해의 연안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하고 있다. 넷째, 석유탐사·개발에는 상당한 자본·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단독 수행보다는 연안국들의 공동참여에 의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부담도 경감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따라서 서해의 석유탐사는 남북한 공동개발 또는 남북한과 중국의 공동참여를 통한 개발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또는 남북한과 중국에 의한 서해의 대륙붕 공동개발에서 유의할 것은 급속한 경제개발로 특히 서해의 자연자원과 환경생태계는 위험수위에 도달할만큼 고갈·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Ⅶ. 南北韓 經濟의 共同開發에 關한 展望

1. 共同開發의 전망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7·4 공동성명 채택에 이어 84년 이후 5차례에 걸친 경제회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의에 최대한 접근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은 부존자원이나 산업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의 공동개발은 쌍방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히 석유자원개발을 지체할 수 없는 외적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간 대륙붕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남북한 양측의 원유 도입은 각각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향후 쉽게 완화될 수 없는 여건하에 있다. 특히 북한은 87년 현재 2,212만 배럴의 원유 수입으로 인한 외채 부담이 최근 중국·소련의 경화결제 요구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남한은 7천 해리 길을 헤엄쳐 87년 현재 21,6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82년 UN해양법 협약에는 남북한과 중국이 모두 서명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 협약의 주요조항은 서해연안 3개국에 이미 국내법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서해 대륙붕 경제획정 및 남북한 공동개발에 관한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90년 중국의 이붕 총리는 남지나해 연안국들과 대륙붕 공동개발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후 중국은 남한을 포함한 서해, 동지나해, 남지나해의 연안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하고 있다. 넷째, 석유탐사·개발에는 상당한 자본·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단독 수행보다는 연안국들의 공동참여에 의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부담도 경감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따라서 서해의 석유탐사는 남북한 공동개발 또는 남북한과 중국의 공동참여를 통한 개발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또는 남북한과 중국에 의한 서해의 대륙붕 공동개발에서 유의할 것은 급속한 경제개발로 특히 서해의 자연자원과 환경생태계는 위험수위에 도달할만큼 고갈·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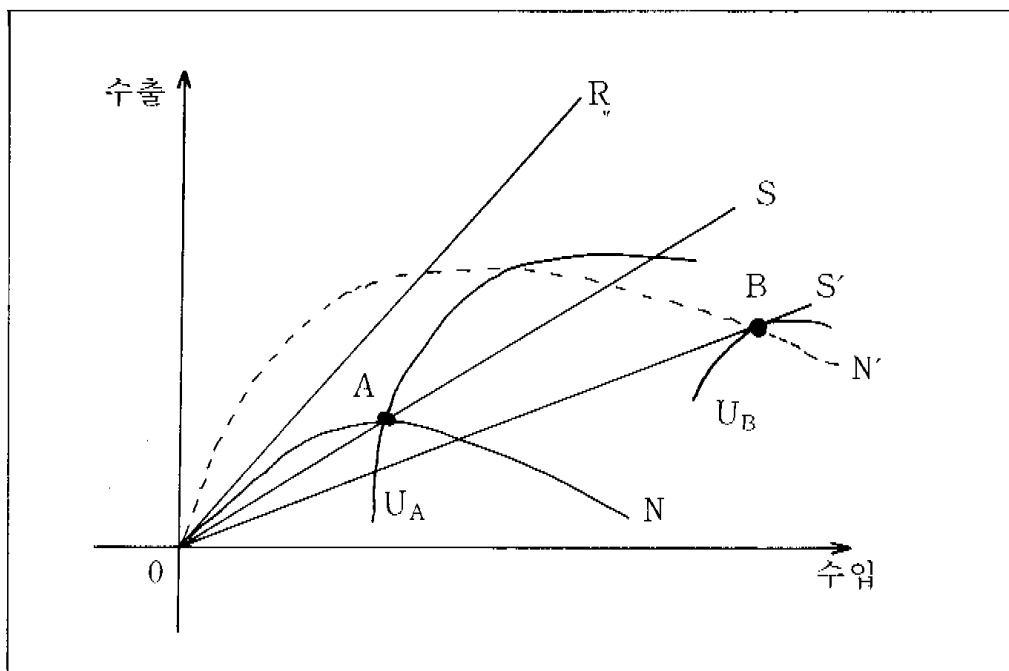
Ⅶ. 南北韓 經濟의 共同開發에 關한 展望

1. 共同開發의 전망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7·4 공동성명 채택에 이어 84년 이후 5차례에 걸친 경제회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의에 최대한 접근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은 부존자원이나 산업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의 공동개발은 쌍방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3〉을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경제적 厚生效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림에서 OR과 OS는 북한이 접하고 있는 관세가 부과된 세계시장(R)과 남한(S)의 오퍼곡선을 의미하며 OAN은 북한의 관세부과 후 오퍼곡선을 나타낸다. 그리고 OS'은 남한의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상대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경우 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은 A점에서 실현되며 북한의 사회무차별 곡선은 U_A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그림-3〉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



그러나 남북한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위 지역경제통합(경제공동체 창출)을 이루게 되면 북한의 오퍼곡선은 OBN'가 될 것이고 북한은 남한의 국내상대가격(OS') 수준에서 남한과 B점에서 교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무차별 곡선은 U_B 수준으로 향상되어 경제적 후생효과가 크게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즉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창출을 통해 북한의 사회적 후생효과는 당연히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남한의 경우도 위와 같이 분석하면 동일한 결과가 유도된다.

이것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창출의 이론적 배경이다.

즉 남북한은 경제체제·발전전략 그리고 정책방향을 달리하면서 발전해온 결과 오늘날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격한 경제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의 차이를 보면 북한은 기계공업을 위시한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으며 농수산업의 비중은 높으나 서비스산업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고 공업구조도 고도화되어 선진국형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분야는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으나 북한 경제체제의 경직성·폐쇄성과 함께 90년 현재 213억 달러의 GNP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부활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역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남한은 탈냉전과 중·소의 정치·경제적 개혁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다각적·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즉 북방국가는 잠재적 시장, 풍부한 자원 그리고 비상품화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관 주도형의 경제개발 경험, 소비재 공급능력 그리고 산업기술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목표는 첫째, 노동생산성 향상·자본의 효율성 제고·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경제효율의 근본적인 향상 둘째, 산출품의 품질향상 셋째, 국제경쟁력의 향상 그리고 기술혁신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상호의존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³²⁾ 북한의 경우에도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북한은 제 3차 7개년계획을 통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 토대 마련을 제시하고 10대 사회주의 전망 목표의 달성, 의식주 문제의 해결, 과학 기술개발의 적극 추진 그리고 노동계급과 농민계급간의 문제해결을 경제 계획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건설 계획은 현재의 경제적 능력, 개발의지, 과학기술의 향상 그리고 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현재 대내외적인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남한 경제교역의 출발점으로써 적교역을 실현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同民族 異體制

32) 平泉公雄, ソ聯·東歐諸國における 經濟改革の 新たなるねり, アジア經濟, Vol. 26, No. 8, アジア經濟研究所, 1985. 5쪽.

간의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우선 상호 독자성에 기초한 물자·자본·기술의 단순 교류단계와 그 성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 2 단계, 즉 합작투자·경제적 공동개발 등 서로 섞이는 화합성의 단계를 통해 동질성 확보를 위한 상호 평균화와 의존성의 단계로 추진³³⁾ 되어야 민족공동체의 부활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 40여년간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체제경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여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對立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반목·대결의식은 90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즉 남북한 대표들은 서로를 분체해결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 속에서 공존·협력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기 상대방을 스스로의 체제에 편입하거나 심지어 민족공동체의 부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양측의 기초연설을 포함한 도처에서 노골화 되고 있는 것이다.³⁴⁾

더욱이 북한은 그동안의 각종 남북한간 접촉에서 정치적·정책적 급전환을 노출하여 돌발적인 행동으로 신뢰성이 의문시되게 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변수는 안보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 남한의 국내정세, 북한의 경제적인 성과, 북한 내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변수는 분단상황과 대내적인 정치적 차원에서 연유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특히 공동개발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84년 9월 8일 합영법을 공포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는 인식에서 80년대 이후 경공업혁명을 제기하고 각 郡마다 평균 20개 이상의 지방산업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경제개혁의 필연성과 함께 새로운 개방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3) 신승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추진의 기본방향, 국토통일원, 1989, 119-29쪽.

34) 한광수,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산업연구원, 공산권경제, 1990. 9, 3-4쪽.

더욱이 최근의 대외적 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UN가입을 강제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길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영법 공포 이후 실현된 대부분의 합작투자가 호텔, 백화점 등 특수관광사업과 소비재산업에 집중되어 향후 중화학공업 및 첨단과학·선진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두만강 경제특구의 가시화는 대내적·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 전망을 한층 밝게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특히 상호화합성에 기초한 공동개발은 아직도 남북한 쌍방에게 정치·경제적 굴레로 작동하고 있는 남·북방 3각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강제되어야 한다.

2. 南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경제적 규모와 산업구조의 차별에서 오는 상호보완성이 기대되나 91년부터 실현된 직교역은 북한의 경제적 침체, 외환사정 그리고 대외교역량 및 <표-11>에 나타난 북한의 소비·후생수준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90년현재 대외교역량을 46.6달러(수출 20.2, 수입 26.2억 달러)이며 90년 78.6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는 북한을 대외채무 불이행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현황은 오히려 상호 독자성 유지에 기초한 단순 물자교류를 추월하여 남북한 경제의 공동개발을 급속히 강제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서독간의 교류형태를 보면 상품교역단계를 거쳐 상호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한 인적교류가 실천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관공여와 각종 협정체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절대적 단절에서 오는 비인도성에 연유하여 최근들어 제한적인 인적교류가 직교역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 더욱이 남한은 북한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88년 8월 현재 총해외투자의 37%인 4억6,300만 달러 이상을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 직접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전자분야 등 모든 부문의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제 3차 7개년계획을 2년동안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곤

란을 겪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10%이상의 성장률을 공표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평균성장률보다 낮은 3-4%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과거에도 북한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획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정기간의 조정기를 거쳤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명확해지는 것이다.

〈표-11〉 남북한의 소비·후생수준 비교

항 목	단 위	남 한	북 한
1인당 개인소비(1990) ¹⁾	달러	2,965	324
1인당 사회적소비(1990) ¹⁾	달러	298	147
1인당 개인 총소비(1990) ¹⁾	달러	3,263	471
의무교육 기간(1990)	연	6	11
6~16세 취학률 ²⁾	%	97.3	97.9
전문대학 이상 학생비중	% (對 전체인구)	3.2	2.6
(대학생비중)	% (對 전체인구)	(2.5)	(1.5)
영아 사망률(1990)	1,000명 출생당	10.6	31.3
기대수명(1990)	연	71.3	69.0

주 : 1) 한국개발연구원추계치.

2) 남한은 1989년 수치, 북한은 1986년 수치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UNESCO ; 통일원.

즉 오늘의 북한경제는 도덕적 보상제도를 탈피하여 實用主義的 노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합영법 공포 이후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기업과의 합작이 아닌 단독투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88년 11월의 재미동포 중심의 고려상업은행, 금강산국제관광회사 그리

고 89년 2월의 재일교포(조총련계)들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기회사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 외자유치정책이 그 초기적 형태로 적대적 관계의 남한에 대한 직교역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의 공동개발에 대한 적극적 추진·활성화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실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는 해외직접투자선의 전환만을 통해서도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역사적·문화적 관습을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천혜의 지하광물자원이 미개발 상태에 있는 북한의 아연광, 금광 그리고 철광 등의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 그리고 연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가 기대될 수 있다. 또한 연근해의 수자원 공동개발을 통해 남한 내의 고단백질 식품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원양어업의 공동출어를 통해 제한되고 있는 북양어장을 탈피할 수도 있으며 상호비교우위에 있는 양식업부문의 합작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임산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91년 현재 8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목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한편 관광지 공동개발은 자연스러운 인적교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을 연계한 광역관광권을 형성하여 세계적 흐름인 '보는 관광(예를 들면 경주, 민속촌)'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정체된 관광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간척지 공동개발 사업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이라는 차원과 함께 감소추세에 있는 해외건설 수주를 보완하여 대형플랜트 건설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과 원자재의 활용은 남한내 사정을 고려할 때 기업의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대륙붕의 공동개발은 양측의 해양경계선확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긴장의 해소와 함께 연안국들과의 석유탐사·개발협상력을 절대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며 경제성이 확보된 석유부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남북한 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한·북방정책의 기본목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부수적 요인일 수 있다. 즉 언젠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민족분단의 지

양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협상·타협에 선행하여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3. 北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경제건설의 기본목표를 그들 특유의 社會主義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두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의 원칙하에서만 공업화가 촉진될 수 있으며 또한 공업화가 완성되어야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혁명을 완수하는 물질적 생활기반을 보유한 참다운 사회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³⁵⁾

그러나 북한경제는 제 1 차 7개년계획(1961-67)을 3년간 연장했으며 특히 기술혁명을 강조한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1-76)은 결과적으로 대서방 외채상환연기 사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제 2 차 7개년계획(1978-84)의 기본노선을 자력갱생으로 복귀시켰으나 2년간의 조정기를 통해 87년부터 본격적인 대외개방정책에 입각한 제 3 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의 평양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국제원조기구인 UNDP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경제의 침체상태를 지적하면서 생산성·생산물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선진 자본·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차관도입으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작투자를 통한 자본·기술 유치방안으로 함영법을 통해 경제건설의 전략적 전환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차별되는 점은 있으나 남한의 공업화 과정속에서도 70년대 초반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에서도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자급자족 경제체제로부터 대외지향적 경제건설전략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경제의 개방화는 정치적 조건에 의해 제약될 수 있는데 체제의 개혁과 개방화는 체제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가들과 이데올로기주의자들이 경제개혁을 억제하는 역할

35) 연하정·김형원, 앞의 책, 1쪽.

을 담당하며 또한 경제개방화 정책이 경제에 대한 黨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경제부문의 자유화가 정치·문화·사회분야까지 파급되어 자유화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지적했듯이 장기화된 경제적 침체, 외채문제 그리고 식량난 등의 위기에 직면하여 최근 들어 합영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의욕적인 대외경제개방은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을 통해 상당부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상호화합성이 전제되므로 구시대적인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을 완화하며 막대한 군사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0년 현재 남한 97.3억 달러(88년은 78.4억 달러)이며 북한은 49.6억 달러(88년은 44.2억 달러)로 남북한 양측의 국민경제에 커다란 경직성 경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86년 현재 7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수입문제와 함께 과중한 군사비가 경제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경제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개발을 통한 정치적 긴장완화는 군사비의 일반제조업 투자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 양측에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90년 현재 78.6억 달러의 外債문제로 대외채무 불이행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외경제 개방화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공동개발과 함께 남한과의 협의를 통해 동서독 교류에서 나타난 Swing정책도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적 개방이 직면하게 될 세계경제·시장은 미국을 축으로 한 유일시장권을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제적 신용의 추락은 소위 Country risk가 큰 나라로 인식되어 세계경제·시장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절대적인 교역상대국인 중국·소련은 각각 91년, 92년부터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외화부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거듭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발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분야 공동개발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통해 아연광과 금광의 본격적 개발

은 물론 대중·소 교역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광, 마르네샤크링카의 생산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석탄을 공동개발하는 경우 남한내 반입하는 난점이 있으나 북한의 대체에너지 활용과 함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공동개발, 특히 제 3차 7개년계획의 중요 대외협력사업의 하나인 원양어업과 양식업의 공동개발을 통해 북한내의 단백질 식품공급은 물론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 가공처리기술, 어선건조기술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해운협력을 통해 육상운송과 함께 새로운 해상운송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임산자원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150만 정보의 산림조성사업과 산지개발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제지부문을 수입대체할 수 있으며 시베리아 산림개발 등 해외공동합작투자 사업도 적극 검토될 수 있는 부문이다.

그리고 관광지 공동개발사업은 북한의 국내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면서 가장 손쉽고 가득물이 높은 외화 획득자원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에 절대 유리할 것이다. 특히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 연계개발은 지리적 여건으로 북한 주민을 '자본주의적 오염'으로부터도 격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간척지·간석지 공동개발은 대단원 경작지의 확대를 통해 93년 1,500만톤의 알곡생산 목표달성을 추진하여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서해안과 지리적으로 유사한 남한의 서남해안 간척사업 경험과 플랜트건설에 필요한 자본·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30만 정보 간척지 확보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의 대륙붕개발 특히 석유탐사·개발은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측면에 적극 제기될 수 있으나 막대한 자본·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한 남북한 모두 서해의 영유·개발권을 둘러싼 대중국 협상능력제고를 위해서도 공동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북한에게 외채극복,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보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정치적 장애요인에 대한 전향적 자세와 함께 과거의 동서독 그리고 중국·대만의 분단국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정치·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 국민 경제규모가 큰

쪽이 항상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쪽이 경제적 이해에 먼저 주목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Ⅷ. 要約 및 結論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적 변혁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입각한 中國式 社會主義 노선 그리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서는 하나의 場으로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신질서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冷笑的 民族主義와 地域主義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 양측에 각각 신축성있는 대외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民族共同體 復活을 모색할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객관적 정세변화는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과 공존적 협력이라는 주체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韓國은 능동적인 北方政策을 추진함으로써 89년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소련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91년 6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37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북한 적대적 협력정책을 통해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교류를 계획·실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主體'에 입각한 정치·경제건설 노선을 지향해 왔으나 국제정치적인 고립과 함께 장기적 경제침체에 직면해 있다. 즉 90년 현재 49.6억 달러에 달하는 과중한 국방비 부담, 160만톤으로 추정되는 식량난 그리고 71년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추진 이후 누적된 외채(90년 현재 78.6억 달러)문제는 북한을 Country risk가 큰 나라로 국제적인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곤란은 91년 들어 UN가입과 함께 남북한 직교역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외개방정책에 입각한 제 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쪽이 항상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쪽이 경제적 이해에 먼저 주목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Ⅷ. 要約 및 結論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적 변혁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입각한 中國式 社會主義 노선 그리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서는 하나의 場으로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신질서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冷笑的 民族主義와 地域主義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 양측에 각각 신축성있는 대외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民族共同體 復活을 모색할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객관적 정세변화는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과 공존적 협력이라는 주체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韓國은 능동적인 北方政策을 추진함으로써 89년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소련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91년 6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37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북한 적대적 협력정책을 통해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교류를 계획·실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主體'에 입각한 정치·경제건설 노선을 지향해 왔으나 국제정치적인 고립과 함께 장기적 경제침체에 직면해 있다. 즉 90년 현재 49.6억 달러에 달하는 과중한 국방비 부담, 160만톤으로 추정되는 식량난 그리고 71년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추진 이후 누적된 외채(90년 현재 78.6억 달러)문제는 북한을 Country risk가 큰 나라로 국제적인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곤란은 91년 들어 UN가입과 함께 남북한 직교역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외개방정책에 입각한 제 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는 각기 고유한 障礙要因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남한의 경우를 보면 대북한 '적대적 협력정책'은 대남적화통일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냉전적·소극적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中央統制的 經濟秩序를 유통경제적인 화폐경제의 시각으로 분석·비교하는 경향이 주목될 수 있다. 또한 89년초 종합상사들이 경제적으로 도입한 무연탄의 경우처럼 국내의 각산업 부분과의 마찰이 예상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주로 體制的·政治的 制約에 의해 장애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간의 남북한 접촉에서도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양측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추진·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남한의 대북한·북방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민족공동체의 부활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의 相互補完性 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相互獨自性이 유지될 수 있는 물자, 자본, 기술의 단순교류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그 성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 2 단계 즉 합작투자, 경제적 공동개발 등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서로 하나되게 하는 和合性의 단계에 이어 同質性 확보를 위한 상호 평준화와 의존성의 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접근방식은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가'라는 논리적 전환을 통해 60년대 후반이후 활성화된 동서독간의 경제교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나 있으나 북한의 경제력 규모(90년 현재 GNP 231억 달러)와 90년 현재 46.4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대외교역량 그리고 북한경제의 현황, 특히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단순불자교류의 단계를 단기에 극복하고 남북한간의 域內·海外合作投資에 의한 경제적 공동개발의 가능성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체화되고 있는 함산도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 經濟特區'는 공동개발의 실현성 제고와 함께 동북아 경제적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측에 의해 비록 우회적인 방식일지라도 남한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UNDP 주도하에 91년 8월 29일 중국 장춘 시에서 개최된 '東北亞經濟技術協力' 국제회의는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남북한, 중·소 그리고 미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여 東北

亞經濟圈의 핵심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적극 참여를 결정하고 예상분담금 120만 달러를 92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공동개발이 주는 경제적 실익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측의 국민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게는 현재의 해외직접투자선만을 전환하더라도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역사적·문화적 관습을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선 천연자원 공동개발의 경제적 실익을 보면 광물자원의 경우는 북한에 지하자원 매장량과 남한의 輸入鑛種을 비교할 때 공동개발 가능분야는 단기적으로 아연광, 금광 그리고 철광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220여종의 각종 광물자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남한내의 고단백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공동개발 가능분야로 제기될 수 있는 수자원 부문은 연근해의 공동어로구역설정과 함께 원양어업 그리고 양식업 부문의 협력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며 북한의 화물운송(주로 철도운송) 특성상 동북아경제권의 활성화에 대비한 해운협력도 적극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60% 이상의 산림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85%의 목재를 전적으로 해외개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간의 임산자원 공동개발은 시베리아 산림개발의 합작투자 진출 검토와 함께 적극 제기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광물자원과 수자원 공동개발은 남북한 경제회담을 통해서도 쌍방의 공통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개발은 우선 정부의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설악산 중심의 관광지 공동개발이 고려될 수 있다. 관광지 공동개발은 관광사업의 세계적 흐름인 '광역관광·참여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질적·양적 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척지·대륙붕 공동개발은 대형 플랜트 건설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대륙붕이 발달해 있는 서해개발의 본격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한편 외채난과 식량난으로 집약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의 北韓經濟에 공동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통해 90년 현재 49.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절감하여 일반 산업부문으로의 투자전환이 가능하며 가중되고 있는 대외채무의 해소와 중·소의 硬貨결제 요구에 적극 대처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극좌 쿠데타 실패 이후 경제개혁과 체제변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소련의 경제적 지원 중단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외경제개방화 정책은 단기적인 위축기를 극복하고 필연적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국제정치적 고립은 신속적 대외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에 기초한 남북한 직교역의 실현과 경제적 공동개발은 상당 부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경제적 공동개발을 부문별로 보면 광물자원, 수자원, 임산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수출상품구조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물·수산물 등의 자원산업에서 미개발자원의 적극개발, 생산력증대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150만 정보의 산림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제지산업의 경우는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 공동개발 사업은 직접적인 외화획득이 가능하며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금강산·설악산 지역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자본주의적 오염’으로부터 인민들을 격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척지 공동개발을 통해서 30만 정보의 간척지 확보사업과 알곡 1,500만톤 생산목표 달성을 유효하게 할 것이며 대륙붕 개발 특히 ESCAP에 의해 부존 가능성이 제기된 석유탐사·개발은 막대한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이상과 같은 남북한 양측에 대한 경제적 실익 이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공동체 부활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아직도 남북한 쌍방에게 정치·경제적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南·北方 3角關係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한반도를 環太平洋 經濟圈의 中樞地域化 시킬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공동개발은 당연히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양측은 결코 서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이 아닌 利他的 目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앞서 민족공동체의 부활이라는 역사적·민족적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토통일원, 북한의 경제개관, 1988.
-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통계집, 1986.
- 국토통일원, 한국 대사회주의권 경제진출과 통일여건 전망, 1990.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방안 연구, 1989.
- 국토통일원, 1988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9.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 김광수, 남북한 경제협력 및 전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987.
- 김성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역, 북한연구소, 북한, 1991.6.
- 김성훈, 금강산·황해의 남북한 공동개발전망,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1991. 봄호.
- 김수철, 남북한 경제비교 분석과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83.
- 김연수, 남북한 신외교정책, 대왕사, 1984.
- 김용재, 남북교역의 전망과 유의사항, 북한연구소, 1991.6.
- 김용환,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화에 따른 경제교류 증대방안, 국토통일원, 1989.
- 김운근, 북한의 농업현황과 농산물 남북한 교류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13권 2호, 1990.
- 동력자원부, 1987년도 광산물수급현황, 1988.
- 김학기, 정경분리 문제로 원칙조정 어려운 남북물자 직교역, 대륙연구소, 전망, 1991.6.
- 박동철, 북한의 3차 7개년 경제계획과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공산권경제, 1988. 봄호.
- 박정식,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방안, 평화문제 연구소, 통일한국, 1991. 7.

- 박준호, 황해해양자원 개발과 남북한 관계, 대륙연구소, 전망, 1991.6.
- 백권호, 동북아 경제권 형성 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산정연구, 1991.5.
- 변병문,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1.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9.
- 서석태, 통일평화시의 경제특구로서의 역할, 통일원, 1990.
- 신승철, 남북한 합작투자의 정치적 효과, 통일원, 1990.
- 연하청·김형원, 북한의 경제계획,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유병일, 세계의 목재수급동향과 산림자원의 전망, 한국독립가협회, 산림경영, 1990.5.
- 윤기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대북한 무역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국토통일원, 1989.
- 이태욱,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상논총 16집, 1988.
- 이학규, 제 3국에서의 남북합작 투자방안연구, 통일원, 1990.
- 이 호, 북한의 합영법 채택배경과 전망, 국토통일원, 1984.
- 임양택, 북한경제의 현황과 대외무역구조,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1991, 봄호.
- 장공자, 대만·중공간의 교류현황과 전망, 북한연구소, 북한, 1989.5.
- 정필수, 북한의 해운·항만 현황과 남북해운협력 가능성, 해운산업연구원, 해운산업동향, 1990.1.
- 정창영,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0.
- 통일원, 통일백서, 1990.
- 한광수,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산업연구원, 공산권경제, 1990. 가을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C를 향한 수산업발전과 바다이용 전략, 198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C를 향한 임업발전과 산지이용 전략, 1989.
- 한국무역협회, 남북한 경제교류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안), 1989.
- 홍승기외, 남북한 경제협력과 해외합작투자 방안 연구, 통일원, 1990.

- Brandt, W., Friedenspolitik in Europa, Frankfurt am Main 1968.
- Chin kim,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2, 1988-9.
- Macdonald, D. S., The Koreans, U. S. A. : Webster Press, 1988.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 December, 1987.
- IEA, World Energy Statistics & Balances, 1988.
- Knight, P. T.,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1983.
- Siegler, W.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Bonn 1967.
- 平泉公雄, ソ連・東欧諸国における経済改革の新たなろねり, アジア経済, Vol. 26, No. 8, アジア経済研究所, 1985.

◆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에 관한 研究 — 求償貿易을 中心으로 —

황 선 대(전국대)

〈要 約 文〉

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對內外的으로 엄청난 변화를 經驗하며 그야말로 激動的 시대를 걸어오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蘇聯을 위시한 東歐社會主義國家의 대변혁, 유럽공동체의 結成 可視化, 中國의 점진적 改革과 開放, 美國 등 선진국 주도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自由貿易 및 市場開放 壓力, 또 한편으로는 地域別 保護貿易主義의 팽배 등 실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對內的으로는 權威主義로 상징되던 제 5 공화국 정부가 물러나고 民主化를 표방한 제 6 공화국 정부가 탄생하여 우리 사회 각 부분에 民主化, 分權化의 물결을 트기 시작하였고, 經濟적으로 이 시기 중반에는 소위 3저 현상의 良好한 환경 전개에 힘입어 높은 經濟成長 및 輸出伸張을 達成하였고 우리 經濟의 오랜 바람이었던 貿易收支 및 國際收支黑字를 짧은 기간이나마 經驗했으며 또한 전세계인의 주시속에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곧이어 勞使間 葛藤, 임금의 상승, 기업의 투자억욕 감퇴, 기술부진, 後發開途國의 추격, 국제 경쟁력 약화, 수출부진 그리고 또다시 국제수지 적자로의 反轉을 經驗한 것도 또한 이 시기였다. 이제 우리는 악화된 對內外 經濟與件을 타파하고 양호한 시장환경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北韓과의 經濟協力은 민족의 대과업인 통일을 위해 꼭 성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東歐 社會主義國家의 급속한 변모, 蘇聯 및 中國의 부분적인 資本主義 도입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경제적 環境을 조성하고 있으며 南北

韓 UN 가입을 기점으로 北韓 사회도 改革과 開放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보아 南北韓의 經濟協力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종전보다는 훨씬 더 가시적으로 발전되리라 전망된다.

이제 改革과 開放의 거센 회오리는 마침내 社會主義 종주국인 蘇聯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이제 마르크스·레닌의 이념은 그 역사적 종말을 고하고 있다. 北韓은 이 대변혁의 물길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北韓 변화의 조짐은 UN동시가입신청, 핵사찰 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 日本과의 급속한 국교정상화 노력, 美國과의 접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의 몰락과 함께 우리는 中國과는 준외교관계를, 그리고 蘇聯과는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 정치적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없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슬기롭게 포착하고 우리의 북방정책을 민족의 대통합으로 결실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 北韓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北韓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西方世界 특히 한반도 문제와 利害가 걸린 日本 및 美國과의 국교 정상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UN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그들의 입지를 확보내지 강화하려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日本 및 美國과의 접촉에는 이들로부터 蘇聯에 대신할 經濟 원조선을 확보하려는 실리적 계산도 있을 것이다.

한편 北韓은 南韓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겠는가? 최근 蘇聯의 쿠데타 실패 이후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北韓은 南韓과의 交流가 빈번해질 경우 내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露出되어 내부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로인해 체제유지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에 不安해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韓과의 접촉에서 2중적방법, 즉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분리시켜 가능한한 이념이 논쟁될 수 있는 정부부문의 접촉은 回避하려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접근은 대외적으로 명분을 살리기 위한 소극적 내지 형식적으로 응하고 따라서 南北韓間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컨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해 올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접촉으로부터는 經濟的 실리를 얻는 한편 南韓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마찰을 유도해 내려고 할 것이다.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및 協力은 이제 겨우 직교역이 성사된 단계이다. 성급

하거나 파격적인 經濟交流 및 協力提議는 北韓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민족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經濟的 공동체로서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및 協力は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南北韓間의 經濟交流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민간부문이 우선 주도해가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오는 南北韓 극한대결구도의 현실에서 北韓으로 하여금 經濟交流에 응하게 함인 동시에 우리가 소원하는 민족대통합의 과업을 혼란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민간부문 주도의 점진적 經濟交流로 상호이익을 얻고 수평적 보완구조에서 점차 수직적 분업구조로 발전시켜가면 공동체로서의 필요성은 상호간 인식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외환사정, 市場經濟의 未經驗 등 社會主義 國家로서의 北韓이 안고 있는 經濟的 어려움과 문제점을 考慮, 구상무역의 여러형태를 이용한 3단계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차원에서 간접·직접 바터거래와 대응구매를 활용하여 현재의 南北韓 상호 보완적 經濟構造의 利點을 살리고, 다음으로 민간기업의 은행간 혹은 기업간 소규모 청산협정과 이를 활용하는 제 3국이 개입하는 스윗치거래를 행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민간기업의 제품환매를 통한 北韓과의 經濟交流를 강화하여 남북의 기업이 각각의 비교우위에 입각 점차 수직적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정부부문이 資源 및 에너지개발, 관광, 운송, 환경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산업간 協力を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 序 論

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對內外的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며 그야말로 激動의 시대를 걸어오고 있다. 對外的으로 蘇聯을 위시한 東歐社會主義國家의 대변혁, 유럽공동체의 결성가시화, 中國의 점진적 개혁과 개방, 美國 등 선진국 주도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GATT體制에 바탕한 自由貿易의 확대 움직임과 시장개방압력 또 한편으로는 保護貿易主義가 배경이 된 지역별 국가경제의 블럭화 움직임 등 실로 많은 政治的, 經濟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對內的으로는 權威主義로 상징되던 제 5 공화국 정부가 물러서고 民主化를 표방한 제 6 공화국 정부가 탄생하여 사회 각 부분에 民主化, 分權化의 물결을 트기 시작하였고, 經濟的으로 이 시기 중반에는 소위 3저 현상의 양호한 환경전개에 힘입어 높은 經濟成長 및 輸出伸張을 達成하였고 우리 經濟의 오랜 바람이었던 貿易收支 및 國際收支의 黑字를 짚은 기간이나마 경험했으며 또한 세계인의 주시속에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뒤이어 勞使間의 갈등, 賃金의 상승, 기술부진, 企業의 投資意慾감퇴, 製造企業의 國際競爭力 弱化, 後發開途國의 추격, 이에 따른 수출부진, 또다시 國際收支 赤字로의 反轉을 경험한 것도 또한 이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화된 對內外 經濟 與件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양호한 市場環境을 창출해 가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北韓과의 經濟協力은 民族의 대 과업인 統一을 위해 꼭 성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추구되어 온 우리의 北方政策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할 時代의 分水嶺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창조적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인 祖國의 統一을 달성하고 그 위에서 民主福祉國家의 지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東歐圈 國家들의 市場經濟 體制로의 移行 및 東·西獨統合등으로 표출된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成長 能力 및 發展에 대한 스스로의 懷疑와 矛盾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西歐와 東歐로 대별되던 이데올로기의 가치는 퇴조하고 각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國家政策으로 우선시키는 現實主義的, 實用主義的 政策을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이 모색되고 특히 蘇聯과의 관계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訪韓 以後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각 분야에 걸쳐 相互理解와 協력이 增進되고 있으며 또한 中國과의 關係는 정식 국교수립을 눈앞에 두고 經濟交流와 協력이 강화되고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美國을 주축으로 한 우리의 傳統的 友邦과의 關係는 이데올로기의 연대감에 의해 양해 또는 양보되었던 經濟的인 문제점들이 冷戰이 종식되어 감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美國은 걸프戰 이후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美國을 代表로 하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輸出市場에서는 摩擦이 점차 더 거세어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의 經濟的 位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相互主義(reciprocalism)에 근거한 貿易 및 經濟協力の 요청은 더해갈 것으로 쉽게 豫見할 수 있다. 앞으로의 國際經濟秩序는 美國 캐나다 및 멕시코를 포함하는 北美經濟共同體, EC를 주축으로 하여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및 과거 COMECON(共產圈相互援助會議) 국가 일부까지를 흡수한 대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1980년대에 눈부신 활약을 보인 아시아·太平洋經濟圈, 南北韓, 蘇聯, 中國, 日本이 참여하는 環東海經濟圈, 그리고 현재 막 제기되고 있는 中南美經濟圈 움직임등 地域的 保護主義의 구도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急變하는 國際政治的, 經濟的 環境속 에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技術開發努力과 產業構造調整을 통하여 比較優位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經濟交流 및 協力は 우리에게 이를 통하여 國際經濟環境속에서 比較優位를 확보하고 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민족의 성업인 統一은 우리의 힘으로 기필코 달성되어야만 한다는 民族共同體로서 시대적 소명의식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엄숙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국가간의 經濟協力 및 무역거래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情報·通信의 發達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한 점과 비전통적인 교역방법 즉 求償貿易(Countertrade)이 활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폐를 매개

로 한 交換制度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批判에도 불구하고 동서 유럽국가들 사이의 교역에서 입증되듯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사이의 교역에서 求償貿易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기업의 활동이 商品去來뿐만 아니라 部品の生産과 購買, 資本調達, 人事, R & D 活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화해감에 따라 求償貿易은 기업의 經營戰略으로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南北韓의 經濟協力이라는 대명제속에 求償貿易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를 巨視的·微視的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資本主義 經濟體制間의 經濟交流에 있어서 求償貿易의 當爲性을 설명하기 위하여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北韓經濟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 3 장에서는 南北韓 經濟交流 및 협력의 성공조건과 求償貿易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 4 장에서는 求償貿易의 여러형태에 대해 논한다. 제 5 장에서는 南北韓 求償貿易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제 6 장에서는 제 3 장, 제 4 장, 그리고 제 5 장을 기초로 하여 南北韓間의 求償貿易을 통한 經濟交流 및 협력의 추진 방향에 대해 論하고 제 7 장에서는 結論을 맺는다.

Ⅱ. 社會主義 經濟 및 北韓經濟의 問題點

1. 社會主義 經濟의 문제점

北韓經濟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社會主義 國家의 計劃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北韓經濟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수 있는데 하나는 產業間의 불균형으로 인한 經濟成長 둔화와 다른 하나는 國際收支 調節能力의 결여로 볼 수 있겠다.

社會主義 經濟의 發展戰略은 농업보다는 공업 우선,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우선, 消費財 生産보다는 生産財 生産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마르크스에 의해 초안되고 레닌에 의해 발전된 擴大 再生産의 理論이었다. 그리고 이 발전

로 한 交換制度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批判에도 불구하고 동서 유럽국가들 사이의 교역에서 입증되듯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사이의 교역에서 求償貿易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기업의 활동이 商品去來뿐만 아니라 部品の生産과 購買, 資本調達, 人事, R & D 活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화해감에 따라 求償貿易은 기업의 經營戰略으로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南北韓의 經濟協力이라는 대명제속에 求償貿易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를 巨視的·微視的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資本主義 經濟體制間의 經濟交流에 있어서 求償貿易의 當爲性을 설명하기 위하여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北韓經濟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 3 장에서는 南北韓 經濟交流 및 협력의 성공조건과 求償貿易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 4 장에서는 求償貿易의 여러형태에 대해 논한다. 제 5 장에서는 南北韓 求償貿易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제 6 장에서는 제 3 장, 제 4 장, 그리고 제 5 장을 기초로 하여 南北韓間의 求償貿易을 통한 經濟交流 및 협력의 추진 방향에 대해 論하고 제 7 장에서는 結論을 맺는다.

II. 社會主義 經濟 및 北韓經濟의 問題點

1. 社會主義 經濟의 문제점

北韓經濟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社會主義 國家의 計劃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北韓經濟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수 있는데 하나는 産業間의 불균형으로 인한 經濟成長 둔화와 다른 하나는 國際收支 調節能力의 결여로 볼 수 있겠다.

社會主義 經濟의 發展戰略은 농업보다는 공업 우선,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우선, 消費財 生産보다는 生産財 生産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마르크스에 의해 초안되고 레닌에 의해 발전된 擴大 再生産의 理論이었다. 그리고 이 발전

전략은 스탈린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확인된 理論이기도 했다.¹⁾ 따라서 근본적으로 農業부문, 경공업, 그리고 消費財 生産部分이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취약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중공업위주의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정책은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蘇聯·東歐社會主義 國家 및 北韓의 經濟成長에 어느정도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공업 부분의 집중투자에 따른 農業部門 및 消費財 生産部門의 취약, 閉鎖的 經濟運用에 따른 기술의 낙후등으로 經濟成長은 限界에 부딪히게 되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 成長率은 서방세계 및 개발도상국의 經濟成長率에 못미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경제가 기록한 13.0%, 12.4%, 6.8%, 9.0%에는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참조>

<표 1> 實質 GNP 成長率 比較

	1987	1988	1989	1990
세 계	3.2	3.6	3.2	1.9
선 진 국	3.3	4.0	3.3	2.6
개 도 국	3.4	2.7	4.0	2.3
공 산 국	0.7	1.2	1.5	-2.4

資料：産業研究院「世界經濟動向」1990, 1991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社會主義 經濟의 문제점은 國際收支 조절능력의 결여이다. 社會主義 國家가 국제수지의 어려움 및 만성적인 硬貨의 부족을 겪는 이유는 결국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는 生産單位간에 경쟁이 배제되고 각 生産單位의 활동은 質的인 것보다는 量的인 것에 生産의 목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販賣者市場(seller's market)이 형성되어 生産單位가 製品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거나

1) 이태욱,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40년」 을유문화사 pp.161-162.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는 그들이 生産해 낸 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의 낮은 질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社會主義 國家의 製品이 서방세계의 제품과 경쟁하지 못하는 이유는 價格때문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과 질이 낮거나, 포장·인도방법, 광고의 미숙, 신용판매조건의 부족, 판매후 서비스 결여등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둘째, 새로운 製品, 技術, 製造工程, 그리고 經營方法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창의적 의욕을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生産單位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배제되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채택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상쇄하는 반대급부 및 이윤동기의 미비, 이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결여가 이유가 될 것이다.

셋째, 社會主義 國家가 資本主義 國家와 혹은 다른 社會主義 國家와 거래를 행할 때에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製品의 價格을 기준으로 交易製品의 價格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價格은 社會主義 國家內에서 통용되는 價格과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社會主義 國家의 換率は 단지 會計 및 計算上의 單位일 뿐 실제 제품의 價格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거래에서 적용되는 公定환율²⁾은 수출과 수입을 균형시키는 정책변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經濟體制에서는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며 이로써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평가절하의 효과를 자국의 수출품 價格을 의도적으로 낮춤으로써 기대할 수는 있는데 社會主義 國家의 주요 수출품중 일부 — 원자재등 1차산품 — 를 제외하고는 서방세계의 수입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價格인하가 의도한대로 가능하다 해도 이로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2. 北韓經濟의 문제점

오늘날의 北韓은 권위주의와 儒敎的 傳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

2) 북한의 경우 외국과의 무역이나 무역외거래에서 사용되는 무역환율(trade rate)이 있다.

권적이고 엄격한 統制經濟的 國家中的 하나로 발전해 있으며,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 결정이나 정책과제 선정에 있어서 김일성의 개인적인 역할이 크게 중시되어 왔다. 따라서 北韓은 중앙집권적인 기획과 개인의 엄격한 정치적 통제에 입각한 명령이 강조되는 사회이다.³⁾

현재 北韓 經濟體制의 문제점은 앞서 논의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일반적 문제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1960년대 중반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北韓에서 변형된 김일성주체사상의 강화로 인한 폐쇄성과 둘째, 자본과 기술을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셋째, 대외부채의 급격한 누적 및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 생활 필수품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閉鎖的 自給自足の 經濟體制(autarky)라고 하여 대외부분이 완전히 封鎖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 비하여 閉鎖의 程度가 심한 것은 김일성 1인이 지배한 정치적 구조에 근거한 때문이다. <표2 참조>

<표 2> 社會主義 國家의 대외의존 정도('88)

(單位: 십억\$)

	소 련	中 國 ¹⁾	폴란드	동 독	헝가리	체 코	루마니아 ²⁾	北 韓 ³⁾	불가리아
GNP(A)	2630.7	427	175.2	157.7	65.5	122.0	81.0	21.1	51.2
수 출(B)	110.7	52.5	30.8	30.8	19.1	38.5	13.2	2.0	20.3
수 입(C)	107.3	59.1	26.6	30.8	18.3	40.2	11.5	2.8	21.0
B+C/A	0.08	0.26	0.33	0.39	0.57	0.65	0.30	0.23	0.81

자료: Handbook of Economics Statistics, 1990

北韓經濟綜合評價, 國上統一院.

1) 3), 89년도 통계임. 2) 87년도 통계임.

※ 여기서의 대외의존이란 단지 무역액의 GNP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음.

北韓의 重工業우선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해방이후 1950년대말까지 社會主義 基盤建設에 필요한 工業化의 基礎를 어느정도 완성한 점에서 經濟開發의 초기단계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1960년대 이전까지 석탄, 전력, 철

3) 연하청,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연구」, 1990 창간호 p.10.

강 등 重工業部門 生産에서는 北韓이 南韓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이후부터 시작된 제 1 차 7개년 계획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産業間 불균형, 그리고 식량을 위시한 消費財 生産과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부족등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北韓은 뒤떨어진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落後된 經濟의 效率的인 運用을 기하고자 先進技術과 자본의 導入必要性을 절감하고 제 2 차 7개년 계획중 合營法의 制定等으로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으나 실적도 미비할 뿐더러 전부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의한 투자이다.

合營法이 제정된 이래 1989년말 현재 合作契約 件數는 98건이며 이 가운데 성사된 것은 41건으로 모두 조총련계 재일동포와의 합작사업이다. 현재 가동중인 合營事業을 보면 86년에는 서어비스 업종이 대부분이었으나 87년 이후 피복, 피아노, 電子 및 金融 부문등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 참조>

<표 3> 가동중인 합작사업 분포

사 업 별	86	87	88	89
서어비스업	3	3	5	
제조가공업	1	7	5	9
광 업		1		
금 융		1		1
기 타		1	2	2

資料：JETRO,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0.

北韓의 經濟開發 計劃期間을 통해 관찰해 볼 때 中國과 蘇聯의 원조가 있었을 때에는 成長이 순조로왔으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개발계획의 연장 및 조정을 거쳐야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 1 차 7개년계획에 해당되며 뒤이은 6개년계획의 경우에도 계획 초반에는 共產圈 대신 서방 세계의 적극적인 자본도입을 계기로 성공적인듯 하였으나 계획기간의 후반에 들어와서는 외채지불 연기 사태에 직면하여 서방으로 부터 經濟協力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자 곤란에 직면하였던 예도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1980년 이후 소련과 중국에 다시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經濟的 難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이다. 결국 北韓의 經濟는 그들이 내세우는 自立的 民族經濟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中國과 蘇聯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⁴⁾

北韓은 이미 지난 87년 서방세계의 채권은행난으로 부터 借款 元利金 연체통보를 받아 국제적 破産國으로 선고되어 더 이상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北韓이 지고있는 대외부채는 약 50억달러로 日本에 대해 약 700억엔, 서방은행에 대해 9억달러, 그리고 蘇聯에 대해 22억루블의 債務를 안고 있다. 더욱이 蘇聯이 北韓과의 거래에서 경화결제불을 요구하고 中國 또한 92년 6월부터 北韓과의 거래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北韓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北韓은 심각한 食糧難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은 지난 數年 동안의 흉년으로 곡물생산이 감소하여 84년에 560만톤을 기록하던 것이 86년에는 483만톤으로 激減하였고, 89년에는 548만톤(쌀 215만톤, 옥수수 268만톤)으로 조금 회복되긴 했으나 한해 동안 필요한 食糧이 600여만톤임을 감안하면 北韓은 현재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의 곡물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만톤(86년 201만톤, 89년 215만톤)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北韓은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80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泰國으로부터 쌀 50만톤을 수입키로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루 2食 運動을 전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여 식량폭동이 여러차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다.

Ⅲ. 南北韓 經濟協力の 成功條件과 求償貿易의 必要性

이상에서 우리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北韓經濟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南·北韓의 經濟交流 및 協力は 어떤 조건에서 성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求償貿易의 必要性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4) 이태욱, 앞의 책 p.161

이다. 결국 北韓의 經濟는 그들이 내세우는 自立的 民族經濟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中國과 蘇聯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⁴⁾

北韓은 이미 지난 87년 서방세계의 채권은행난으로 부터 借款 元利金 연체통보를 받아 국제적 破産國으로 선고되어 더 이상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北韓이 지고있는 대외부채는 약 50억달러로 日本에 대해 약 700억엔, 서방은행에 대해 9억달러, 그리고 蘇聯에 대해 22억루블의 債務를 안고 있다. 더욱이 蘇聯이 北韓과의 거래에서 경화결제불을 요구하고 中國 또한 92년 6월부터 北韓과의 거래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北韓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北韓은 심각한 食糧難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은 지난 數年 동안의 흉년으로 곡물생산이 감소하여 84년에 560만톤을 기록하던 것이 86년에는 483만톤으로 激減하였고, 89년에는 548만톤(쌀 215만톤, 옥수수 268만톤)으로 조금 회복되긴 했으나 한해 동안 필요한 食糧이 600여만톤임을 감안하면 北韓은 현재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의 곡물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만톤(86년 201만톤, 89년 215만톤)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北韓은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80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泰國으로부터 쌀 50만톤을 수입키로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루 2食 運動을 전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여 식량폭동이 여러차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다.

Ⅲ. 南北韓 經濟協力の 成功條件과 求償貿易의 必要性

이상에서 우리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北韓經濟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南·北韓의 經濟交流 및 協力は 어떤 조건에서 성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求償貿易의 必要性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4) 이태욱, 앞의 책 p.161

1. 經濟交流 및 협력의 성공조건

北韓의 개방은 점진적이기는 해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의 속도는 우리가 실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지 또한 모를 일이다. 이 시점에서北韓의 開放의 속도나 변화의 폭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北韓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北韓이 개방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北韓의 개방은 두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美國, 中國, 蘇聯, 日本 4강의 力學關係이며 다른 하나는北韓內部的 개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다. 물론 이러한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인식변화는 상호연관된 것이다. 南北韓을 둘러싼 美國, 中國, 蘇聯, 日本 4강의 현재의 역학관계는北韓의 開放을 촉진하는데 있어 어느때보다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北韓이 UN가입을 서두르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입 그리고 핵사찰에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北韓 內部的 개방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自立更生이라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개방은 소폭이지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中國과 蘇聯으로부터 차관도입이 어려워지고 외채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된 70년대 전반과 80년대에北韓이 서방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北韓은 이제 蘇聯과 中國으로부터 더 이상 經濟援助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 인식하고 있으며 낙후된 生産施設을 改善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經濟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蘇聯과 中國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며 최근 日本과의 신속한 수교노력, 美國과의 접촉노력 등은北韓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北韓은 김일성 이데올로기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목표인 자립적 民族經濟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南·北韓간의 經濟交流 및 協력이 성공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南·北韓간의 經濟交流 및 協력이 정부가 주관

하여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현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달성되기에는 현재의 南北韓 대결구도상, 그리고 南·北韓 각자의 정치권력이 斷層的으로 형성된 역사적 경험상 南·北韓간 經濟交流에 관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정치적 영향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피하고 北韓의 입장과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北韓을 협력의 상대자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주도의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南·北韓 당국간의 經濟會談이 쉽게 決裂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둘째, 北韓과의 經濟交流은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현재까지 건수로는 총 286건이며 반입은 261건으로 7천1백만불 반출은 7건으로 2백7십만불로서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⁵⁾ <표4 참조>

<표 4> 南·北韓 交易現況('88.10~'91.6)

구 분	년 도	통 관		비율(통관/승인)
		건 수	금 액(천\$)	
반	'88	0	0	
	'89	66	18,665	83.9%
	'90	78	12,278	60.3%
	'91.6	117	40,185	54.6%
입	누계	261	71,118	60.6%
반	'89	1	69	100%
	'90	4	1,187	25.1%
	'91.6	2	1,448	11.5%
출	누계	7	2,704	15.6%
총계		268	73,822	54.8%

資料：月刊 南北交流協力 動向, 統一院, 1991.7(1호)

5) 통관기준으로 한 91.6현재까지의 건수 및 금액임.

南北間 經濟交流 및 협력에는 항상 상대방의 狀況과 與件을 고려해야 하는바 직접교역이 겨우 성사된 시점에 資源의 共同開發, 合作投資, 共同開發區 造成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일방적 제안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며 이는 北韓으로 하여금 오히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쉬운 부분, 쉬운 방법으로부터 교류를 행하여 상호 理解와 信賴를 더해가면서 다음 단계로 접근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바람직한 남북의 經濟交流 및 協力은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직접교역에서 製品還買方式의 투자형태로, 다시 製品還買方式의 투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단독 및 합작투자로 그리고 남북의 產業間 協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며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市場經濟의 미경험 및 硬貨의 부족등 北韓의 어려움을 고려할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北韓의 점진적이며 조심스러운 開放의 속도와 변화의 정도에 알맞는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 南北韓 求償貿易의 필요성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속에 달리 존재해 온 南北韓이 經濟的 協力關係를 구축해 간다는 것은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다. 대결, 적대적 대립關係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南北韓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補完的 經濟構造라는 互惠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데올로기의 그늘에 가려 오늘날까지 이를 무시해오고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환경은 분명 北韓의 개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그러한 징후는 北韓의 태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인정한 공존의 틀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장차 혼란없이 민족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절에서 논의된 2가지의 조건은 다양한 형태의 求償貿易에 의하여 충족될 수가 있고 求償貿易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또 다른 社會主義 國家 — 蘇聯

및 中國—와도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The Golden Delta)를⁶⁾ 중심으로 經濟協力を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求償貿易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있어 南北韓 모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北韓이 위기의식이나 입장에 손상됨이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실현성이 높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IV. 求償貿易의 定義 및 形態

일반적으로 求償貿易이란 거래 당사국 사이에서 財貨나 用役의 거래가 현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총칭한다.⁷⁾ 더 넓은 의미로서의 求償貿易은 최종결제가 財貨나 用役의 형태로 전부이거나 일부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형태를 포함한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탐색비용(Search cost)을 발생시키는 물물교환 經濟의 非效率性 때문에 차츰 市場이 형성되고 화폐를 매개로한 교환제도가 발달하여 왔음을 볼때 求償貿易은 비효율적이며 국제무역 環境이 개선되는대로 전체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求償貿易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의 여부를 떠나 불안정적 혹은 불균형적인 시장여건 및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經濟主體의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經濟主體—정부 혹은 개별기업—가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求償貿易의 형태를 단순히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바 터(Barter)

바터거래는 거래 당사국 사이에 財貨나 用役이 동시에 교환되는 형태이다.

6) 북한의 청진과 소련의 나홋카 혹은 보스토니지 그리고 중국의 연길 혹은 훈춘을 잇는 삼각지역을 일컫음.

7) 구상무역을 간혹 연계무역으로 표현하기도 함.

및 中國—와도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The Golden Delta)를⁶⁾ 중심으로 經濟協力を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求償貿易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있어 南北韓 모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北韓이 위기의식이나 입장에 손상됨이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실현성이 높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IV. 求償貿易의 定義 및 形態

일반적으로 求償貿易이란 거래 당사국 사이에서 財貨나 用役의 거래가 현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총칭한다.⁷⁾ 더 넓은 의미로서의 求償貿易은 최종결제가 財貨나 用役의 형태로 전부이거나 일부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형태를 포함한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탐색비용(Search cost)을 발생시키는 물물교환 經濟의 非效率性 때문에 차츰 市場이 형성되고 화폐를 매개로한 교환제도가 발달하여 왔음을 볼때 求償貿易은 비효율적이며 국제무역 環境이 개선되는대로 전체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求償貿易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의 여부를 떠나 불안정적 혹은 불균형적인 시장여건 및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經濟主體의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經濟主體—정부 혹은 개별기업—가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求償貿易의 형태를 단순히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바 터(Barter)

바터거래는 거래 당사국 사이에 財貨나 用役이 동시에 교환되는 형태이다.

6) 북한의 청진과 소련의 나훗가 혹은 보스토니지 그리고 중국의 연길 혹은 훈춘을 잇는 삼각지역을 일컫음.

7) 구상무역을 간혹 연계무역으로 표현하기도 함.

동시적 교환이라고 해서 財貨나 用役의 인수 및 인도가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개 1년 이내에 걸쳐 계약이 이행된다. 바터거래는 求償貿易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단순한 형태인데 최근 南韓의 쌀과 北韓의 무연탄 및 시멘트가 중개상을 통해 직교역되고 있는 것이 바터거래의 예이다. 바터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物品을 파악하는 탐색비용이 다른 求償貿易의 형태보다 많이 발생하고, 이 필요한 物品을 다른 한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거래가 쉽게 성립할 수 없다는 短點이 있기는 하나 단시간에 거래가 이행됨에 따라 國際價格 時勢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다소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南北韓의 바터거래를 통한 교류는 우선 南北韓이 지리적으로 近接해 있음으로 해서 거래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특히 南北韓의 상호보완적 經濟構造로 인해 거래대상 품목이 많아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北韓의 원자재, 광·수산물 및 기타 1차상품과 南韓의 食糧, 電氣, 電子製品 등 完製品 및 소비재상품 등은 유망한 교류 대상품목이 될 수 있다.

2. 對應購買(Counterpurchase)

對應購買는 한 국가의 수출거래가 상대방 국가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입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對應購買는 서방세계의 기업이 自社製品을 市場經濟體制가 아닌 국가(NMEs: Non-Market Economies)나 개발도상국(LDCs: Less Developed Countries)에 輸出하려 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市場經濟體制를 갖지 않은 국가가 對應購買를 선호하는 이유는 硬貨의 부족, 국제수지 악화, 외채의 누중에 따른 높은 외채상환부담율(Debt service ratio)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지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對應購買는 바터거래 보다 계약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통상 1년이상 5년) 수출계약시 상대방국가로부터 後日 수입할 대상물품의 목록을 제공받아 수입국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對應購買 거래는 南韓이 먼저 北韓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우리의 기업으로서의 수출대금을 확실히 회수하는 이외에 수입물품과 교환될 南韓의 수출품의

과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北韓의 입장에서 硬貨 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南韓으로부터 수입대상품목을 폭넓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製品還買(Buy-back, compensation)

製品還買은 플랜트, 기계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고 일단 제조설비가 가동된 후 그로부터 生産되는 결과재(resultant product)로 상환을 받는 거래를 일컫는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많은 경우 턴키설비의 판매를 수반하며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간의 經濟協力の 형태로서 활발하였는데 초기에는 석유 및 광산 분야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계 및 기술이전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전분야에 걸쳐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와 관련되어 크게 활용되고 있다. 製品還買의 특징은 기계설비 및 기술을 제공한 댓가로 그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된 製品 즉 결과재로 상환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바터거래나 對應購買와는 다른 것이며 공장설비의 설치로부터 최종 결과재의 인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행되고 관련 금액도 커서 위험이 큰 편이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製品還買에 따른 거래가 可視化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간의 製品還買를 통한 經濟協力は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쌍방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北韓이 개발을 추진중인 두만강 유역에 南韓의 企業이 製品還買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 南韓은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및 섬유부문 등에서 北韓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값싼 노동력 및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들 製品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北韓 또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어려운 외환사정을 더 이상 악화시킴이 없이 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다. 製品還買를 통한 南北韓의 협력으로 北韓은 南韓 또는 특히 제 3국에게, 낮은 北韓製品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써 대외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고 南韓은 製品還買를 통해 北韓으로부터의 수입품의 質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製

品還買를 통한 교류가 확대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개발, 관광사업, 환경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北韓에의 직접투자의 시발점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4. 相計貿易(offset)

相計貿易은 주로 軍事 및 통신장비, 항공기등 정부나 국영기업의 구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큰 물품의 거래에 사용되는 求償貿易 形態이다. 국제무역에 있어 多者關係(multiplicity)를 강조하는 GATT는 求償貿易의 상호관계(reciprocity)적 성격 때문에 원칙적으로 求償貿易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求償貿易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政府購買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요원자재 및 부품의 국내 조달을 義務化하고 거래상대국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는 相計貿易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 정부는 이를 통하여 외화의 절약은 물론, 기술이전, 국내고용을 증대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相計貿易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간의 武器去來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방법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선진국 상호간에 기술 및 經濟協力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비군사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맥도날 더글러스사의 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일부 기술의 이전 및 자체부품 조달을 연계시키는 거래가 相計貿易에 해당된다. 相計貿易에는 下請生産(Subcontract production), 共同生産(Co-production), 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 등 다양한 계약형태가 있으며 바터거래 對應購買 및 製品還買거래가 相計貿易의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求償貿易의 형태중 相計貿易이 가장 광범위한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바터거래와 對應購買, 그리고 製品還買에서 같이 민간주도가 가능한 求償貿易이 南北韓 사이에 성숙되어 가면서 지금은 국가나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相計貿易을 통한 교류가 어려우나 장차 철도, 항공, 항만, 기타 운송시설에 南北韓의 협력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5. 스윗치(Switch)

스윗치거래는 두 國家간의 貿易去來에 제 3 국이 참가하여 債券·債務 관계를 균형시켜주는 거래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스윗치 달러⁸⁾가 개입하여 추진한다. 바터거래나 對應購買의 경우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시장성이 없거나 혹은 국내시장에서 처분이 어려울 경우 중개상의 도움으로 물품의 인수 후 혹은 인수전에라도 물품의 價格을 할인하여 중개상에 이전하고 硬貨를 획득하기도 한다. 스윗치거래를 이러한 거래와 구분하는 이유는 거래개시에서 부터 중개상이 介入하여 제 3 국을 활용하여 去來當事國간의 債券·債務를 균형시키기 때문이다. 스윗치거래는 두 국가 사이에 清算協定(Clearing Arrangement)⁹⁾이 맺어지고 청산계정이 불균형일 때 발생하는데, 청산계정상의 채권국이 스윗치달러를 통하여 제 3 국 물품에 대한 수입대납으로 채무국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국가간의 清算協定은 극히 드물고 IMF 및 GATT도 이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¹⁰⁾ 南北韓간의 스윗치를 통한 교류는 중앙은행 주도가 아닌 일반은행이 참여하는 은행간 清算協定 혹은 南北韓무역상사간 清算協定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가 종전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南北韓 은행간 혹은 무역상사간 清算計定の 貸借를 日本企業에 개입케함으로써 균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V. 南北韓 求償貿易 現況

우리나라의 求償貿易은 동남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求償貿易 提議에 수

8) 외환중개달러와 일반중개상을 포함하여 스윗치 달러라 함.

9) 청산협정을 구상무역의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스윗치거래에 포함시켰음.

10) IMF 8조 및 GATT 38조 규정으로 회원국들은 청산협정체결이 제한되고 있음.

5. 스윗치(Switch)

스윗치거래는 두 國家간의 貿易去來에 제 3 국이 참가하여 債券·債務 관계를 균형시켜주는 거래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스윗치 달러⁸⁾가 개입하여 추진한다. 바터거래나 對應購買의 경우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시장성이 없거나 혹은 국내시장에서 처분이 어려울 경우 중개상의 도움으로 물품의 인수 후 혹은 인수전에라도 물품의 價格을 할인하여 중개상에 이전하고 硬貨를 획득하기도 한다. 스윗치거래를 이러한 거래와 구분하는 이유는 거래개시에서 부터 중개상이 介入하여 제 3 국을 활용하여 去來當事國간의 債券·債務를 균형시키기 때문이다. 스윗치거래는 두 국가 사이에 清算協定(Clearing Arrangement)⁹⁾이 맺어지고 청산계정이 불균형일 때 발생하는데, 청산계정상의 채권국이 스윗치달러를 통하여 제 3 국 물품에 대한 수입대납으로 채무국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국가간의 清算協定은 극히 드물고 IMF 및 GATT도 이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¹⁰⁾ 南北韓간의 스윗치를 통한 교류는 중앙은행 주도가 아닌 일반은행이 참여하는 은행간 清算協定 혹은 南北韓무역상사간 清算協定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가 종전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南北韓 은행간 혹은 무역상사간 清算計定の 貸借를 日本企業에 개입케함으로써 균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V. 南北韓 求償貿易 現況

우리나라의 求償貿易은 동남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求償貿易 提議에 수

8) 외환중개달러와 일반중개상을 포함하여 스윗치 달러라 함.

9) 청산협정을 구상무역의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스윗치거래에 포함시켰음.

10) IMF 8조 및 GATT 38조 규정으로 회원국들은 청산협정체결이 제한되고 있음.

동적으로 응하고 있는 형편이며 정책적 무역회사인 고려무역과 자본력, 정보기능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大企業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거래규모나 내용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면 수출입 제한 품목이 아닌 경우 求償貿易은 바터거래만 규정하고 對應購買, 製品還買, 相計貿易, 스윗치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求償貿易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터거래일 경우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고, 대금결제가 특수신용장(Back-to-Back L/C, Thomas L/C, Escrow L/C)방식에 의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화폐가 수반되지 않는 바터거래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求償貿易政策은 법적인 규제도 엄격하고 求償貿易의 지원이나 장려보다는 수출입의 사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무역거래는 크게 나누어, 社會主義 國家와 아프리카 국가 등 제 3 세계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求償貿易이 활용되고 서방국가와의 거래는 신용장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資金의 결제는 北韓의 무역은행, 대성은행, 그리고 금강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런던, 쥘리히 및 홍콩은행사이에 硬貨로 결제된다. 北韓의 무역구조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역상대국이 蘇聯, 中國 및 日本 등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고 수출품목 또한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 산품과 輕工業 半製品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5〉 北韓의 주요국별 무역거래 비율(1988)

국 가(지역)	수 출	수 입
蘇 聯	52.6%	61.1%
中 國	4.0%	12.2%
日 本	19.4%	8.4%
아 시 아	8.1%	7.8%
서 유 럽	3.9%	4.5%

자료 : China, North Korea Country Report, Business International, 1991

北韓은 80년 이후 큰 무역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는데(표6 참조)北韓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蘇聯이 무역거래에 있어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방국가와의 求償貿易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¹⁾

〈표 6〉 北韓의 貿易收支(百萬\$)

	87	88	89
수 출	1,647	2,033	1,946
수 입	2,500	3,211	2,845
무역수지	-853	-1,178	-899

자료 : 1988, 1989 北韓經濟綜合評價, 國土統一院.

北韓의 求償貿易에 관한 규모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Index to Countertrade」¹²⁾에 나타난北韓의 求償貿易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추적해 봄으로써 어느정도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北韓의 주요 求償貿易을 통한 수출품목은 1차산품, 소형 농기계 및 장비, 창유리 등 輕工業製品, 비료를 포함한 基礎化學製品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食料品, 纖維製品, 醫藥品 등 기초 생활필수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상공부가 파악한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 및 대기업의 求償貿易 실태를 보면¹³⁾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도차량 등 重工業製品과 TV, VCR 등 電子製品, 그리고 조미료, 비누 등 기초 생활 필수품 등 수출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수입품목으로는 철광석, 유연탄과 무연탄 등 광산물과 설탕, 원목, 바나나 등 1차상품

11) 1989년 북한 총무역량의 58.4%가 소련과의 무역임.

12) 「Index to Countertrade」는 미국 Countertrade Outlook이 매년 발간하는 구상무역에 대한 전산 자료임.

13) 상공부가 참고자료로 종합상사 및 대형상사에 요청하여 파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구상무역의 실태로 보기는 어렵다.

〈표 7〉 北韓의 求償貿易現況(86—88)

거래형태	상대국가	품 목	
		수 출	수 입
對應購買	잠비아	농업용 기계장비	면화, 설탕, 콩
清算協定	인도	시멘트, 화학제품 PVC, 금속관, 실 철도차량축 및 바퀴	밀
負債相計	일본	수산물(어류)	
對應購買	가나	소형농업용기계 및 장비, 비료, 창유리	보크사이트, 코코아, 콩, 어류, 파인애플, 수산물, 목재, 식물성유지, 광석
清算協定	인도	화학제품(HDPE) 요소비료, 철도차량축 및 바퀴, 철판 유황, 요소	자동차타이어, 건설기계 면화, 가죽 및 가죽제품, 철광석, 의약품, 섬유제품, 운반차량, 운모 및 운모제품, 곡물

자료 : Index to Countertrade, 1986, 1987, 1988

주) 이밖에 그림, 도자기, 물(bottled, spring), 알루미늄製品 등이 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南北韓 각각의 求償貿易을 통한 수출입 품목을 비교해 볼 때 南韓은 철광석, 알루미늄, 수산물 등을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 대신 北韓으로 부터 求償貿易을 통해 수입할 수 있을 것이며 北韓 또한 건설기계 장비, 纖維製品, 운반차량 등을 南韓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품목은 「Index to Countertrade」와 상공부 자료에 나타난 품목을 근거로 南北韓이 直接求償貿易으로 통해서도 교환할 수 있었던 품목을 발췌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밖에 北韓의 옥수수, 피마자, 한약재, 南韓의 電氣·電子製品, 纖維製品, 鐵鋼製品등 상호 필요로 하는 물품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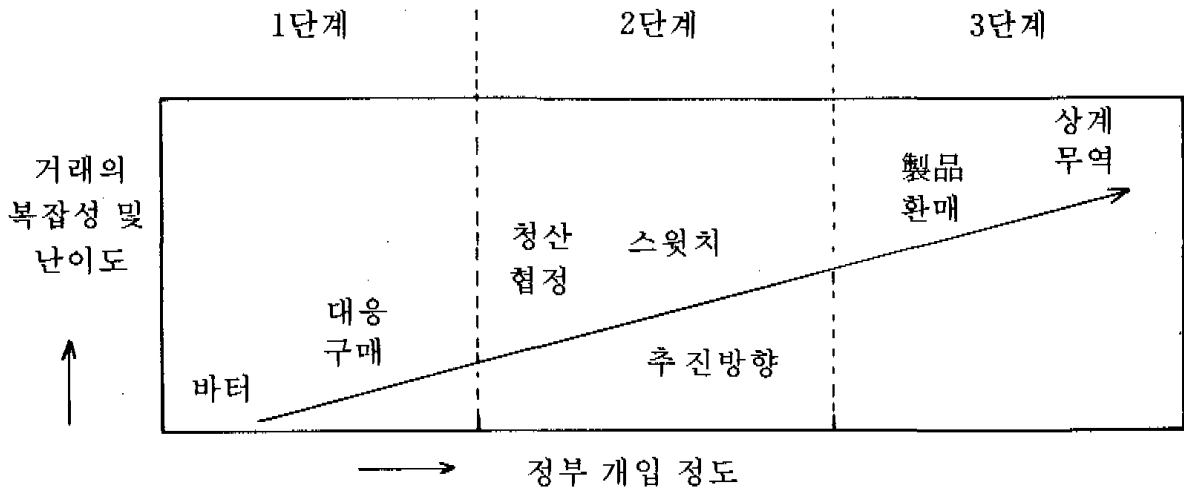
VI. 南北韓간의 求償貿易 추진방향

北韓과의 經濟 交流 및 協力은 北韓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동구권 국가의 몰락, 蘇聯의 개방과 개혁, 中國의 經濟개혁 등 社會主義 國家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개방과 개혁의 파고를 北韓도 결코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北韓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南韓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느냐에 있다. 北韓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특히 日本, 美國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러 이들 국가로부터 蘇聯에 대신하여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 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南韓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협력체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南韓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南韓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2중적 접근방법을 취할 것인데, 정부부문의 접촉은 대외적명분을 위해 소극적 혹은 형식적으로 응해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접촉으로부터는 經濟的 實利를 확보하고 또한 南韓의 政府和 民間部門의 摩擦을 유도해 가려는 戰略을 추구할 것이다. 즉 北韓은 體制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經濟的 實利를 취해 가려는 中國式의 개방과 공존모델을 조심스럽게 추구해갈 것으로 보인다. 南韓과의 經濟交流가 활발해질 경우 北韓內部的 矛盾이 자연히 노출되어 北韓社會의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고 독일의 경우처럼 經濟力의 차이에서 귀결될지도 모를 흡수통합의 두려움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南韓과의 經濟 교류를 모색할 것이다. 이처럼 北韓과의 經濟交流는 北韓의 입장때문에 제한적이고 정치적상황에서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蘇聯 쿠데타사건시 北韓이 보인 즉각적인 제 4차 南北 고위급회담 연기발표는 南北間 經濟 交流 및 協力の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또한 극복해야될 과제가 많은지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北韓과의 經濟交流 및 협력방안으로 求償貿易을 제안하는 이유는 민간부문 주도와 단계별 접근이 北韓과의 經濟交流에 필요한—北韓이 현단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조건이기 때문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南北韓 經濟 交流 및 協力 추

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南北韓 段階別 經濟協力 推進 方向



南北韓의 經濟交流 및 協力은〈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의 개입 정도가 아주 낮고 거래가 단순한 바터거래와 對應購買로 출발하여 清算協定 및 스왑치 거래, 그리고 제품환매 및 정부부문간 相計貿易으로 이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제 1 단계에서는 바터거래와 對應購買를 활용하여 南北의 자동차, 선박, 전기, 전자, 纖維製品 및 기타 食糧, 消費財產品과 北韓의 鑛·水産物·藥材 등 1차상품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의 利點을 살려나가야 한다. 특히 1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교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硬貨의 부족 및 수출품목의 제한 등 北韓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여 부분적 경화결제 혹은 완전한 물적교환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중개상을 통한 바터거래나 對應購買에 응함은 물론 南北韓 무역 상사간의 간접바터거래나 직접對應購買가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한 교역대상물품의 발굴, 北韓 商品의 중개 및 알선을 위해 정보수집기능과 마케팅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단계로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우선 南北韓 交易企業間 은행계정 혹은 기업간 소규모 清算計定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문 주도의 清算協定에 의한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清算計定의 균형적 운용을 위해 스윗치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청산계정상의 南北韓間 미회수채권은 日本, 中國, 蘇聯, 美國企業의 仲介를 통해 확보되도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서는 南北韓의 기업이 원자재, 부품 및 최종생산물의 生産으로부터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비교우위에 입각, 상대방과 수직적 분업구조를 이룩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투자의 안정 및 손실보전을 보장하는 정부부문의 제도적 장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는 일단 제품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生産된 製品은 각기의 국내로의 반입 뿐만 아니라, 제 3 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민간부문 주도의 製品還賣가 빈번해지면 南北韓 當局이 참여하는 자원 및 에너지 공동개발, 제 3 국으로의 합작진출, 그리고 南北韓 산업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資源, 資本 및 技術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南北韓 經濟 共同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Ⅶ. 結 論

80년 중반 이후 불어닥친 개혁과 개방의 거센 회오리는 동구 社會主義 국가의 몰락과 독일의 통합, 中國의 개혁을 재촉하고 마침내 社會主義 종주국인 蘇聯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이제 마르크스·레닌의 이념은 그 역사적 종말을 고하고 있다. 北韓은 이 대변혁의 물건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北韓변화의 조짐은 UN동시가입신청, 핵사찰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 日本과의 급속한 국교정상화노력, 美國과의 접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主義 국가의 몰락과 함께 우리는 中國과는 準外交關係를, 그리고 蘇聯과는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 정치적 상황은 어느 때 보다도 더 없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슬기롭게 포착하고 우리의 북방정책을 민족의 대통합으로 결실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 北韓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北韓은 국제적 고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문 주도의 清算協定에 의한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清算計定의 균형적 운용을 위해 스윗치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청산계정상의 南北韓間 미회수채권은 日本, 中國, 蘇聯, 美國企業의 仲介를 통해 확보되도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서는 南北韓의 기업이 원자재, 부품 및 최종생산물의 生産으로부터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비교우위에 입각, 상대방과 수직적 분업구조를 이룩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투자의 안정 및 손실보전을 보장하는 정부부문의 제도적 장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는 일단 제품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生産된 製品은 각기의 국내로의 반입 뿐만 아니라, 제 3 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민간부문 주도의 製品還賣가 빈번해지면 南北韓 當局이 참여하는 자원 및 에너지 공동개발, 제 3 국으로의 합작진출, 그리고 南北韓 산업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資源, 資本 및 技術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南北韓 經濟 共同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Ⅶ. 結 論

80년 중반 이후 불어닥친 개혁과 개방의 거센 회오리는 동구 社會主義 국가의 몰락과 독일의 통합, 中國의 개혁을 재촉하고 마침내 社會主義 종주국인 蘇聯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이제 마르크스·레닌의 이념은 그 역사적 종말을 고하고 있다. 北韓은 이 대변혁의 물건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北韓변화의 조짐은 UN동시가입신청, 핵사찰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 日本과의 급속한 국교정상화노력, 美國과의 접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主義 국가의 몰락과 함께 우리는 中國과는 準外交關係를, 그리고 蘇聯과는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 정치적 상황은 어느 때 보다도 더 없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슬기롭게 포착하고 우리의 북방정책을 민족의 대통합으로 결실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 北韓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北韓은 국제적 고립

을 피하기 위해 서방세계 특히 한반도 문제와 이해가 걸린 日本 및 美國과의 國交正常化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UN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그들의 입지를 확보내지 강화하려는 政治·外交的 努力을 경주할 것이다. 日本 및 美國과의 접촉에는 이들로부터 蘇聯에 대신할 經濟 援助線을 확보하려는 實利的 계산도 있을 것이다.

한편 北韓은 南韓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겠는가? 최근 蘇聯의 쿠데타 실패 이후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北韓은 南韓과의 교류가 빈번해질 경우 내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내부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로인해 체제유지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韓과의 접촉에서 2중적방법, 즉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분리시켜 가능한한 이념이 논쟁될 수 있는 정부부문의 접촉은 회피하려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접근은 대외적으로 명분을 살리기 위해 소극적 내지 형식적으로 응하고 따라서 南北韓間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컨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올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접촉으로부터는 經濟的 實利를 얻는 한편 南韓政府 部門과 民間政府 部門간의 마찰을 유도해 내려고 할 것이다.

南北韓간의 經濟交流 및 協力은 이제 겨우 直交易이 성사된 단계이다. 성급하거나 과격적인 經濟交流 및 協力提議는 北韓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민족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經濟的 공동체로서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南北韓간의 經濟交流 및 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南北韓간의 經濟交流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민간부문이 우선 주도해가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오는 南北韓 극한대결구도의 현실에서 北韓으로 하여금 經濟交流에 응하게 함인 동시에 우리가 소원하는 민족대통합의 과업을 혼란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민간부문 주도의 점진적 經濟交流로 상호이익을 얻고 수평적 보완구조에서 점차 수직적 분업구조로 발전시켜가면 공동체로서의 필요성은 상호간 인식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외환사정, 市場經濟의 미경험등 社會主義 國家로서의 北韓이 안고 있는 經濟的 어려움과 문제점을 고려, 求償貿易의 여러형태를 이용한

3단계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차원에서 간접·직접 바터거래와 對應購買를 활용하여 현재의 南北韓 상호 보완적 經濟構造의 利點을 살리고, 다음으로 민간기업의 은행간 혹은 기업간 소규모 清算協定과 이를 활용하는 제 3 국이 개입하는 스윗치거래를 행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민간기업의 제품환매를 통한 北韓과의 經濟交流를 강화하여 남북의 기업이 각각의 비교우위에 입각, 점차 수직적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정부부분이 자원 및 에너지 개발, 관광, 운송, 환경분야 및 기타 분야에 서 産業間 協力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고현욱 외, 「北韓사회의 구조와 변화」(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219-247.
- 국토통일원, 「南北韓 經濟 現황비교」(1987)
- _____, 「北韓經濟 종합평가」(1987)
- _____, 「기로에선 北韓經濟」(1988)
- _____, 「北韓의 정치 經濟」(1988)
- _____, 「南北韓의 관계개선 및 평화제도화 연구」(1988)
- _____, 「1987년도 北韓經濟 종합평가」(1988)
- _____, 「南北韓의 經濟 교류 협력 모색」(1989)
- _____, 「北韓 및 공산권 동향」(1989), 各號.
- 통일원, 「1989년도 北韓經濟 종합 평가」(1990)
- 극동문제연구소, 「北韓의 農業生産에 관한 연구」(1989)
- 김광수, “南北經濟의 전망,” 「北韓」, 206호(1989.2)
- 김남식, “北韓과 中國·蘇聯과의 체제발전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의」, 제 8권 제 2호(국토 통일원, 1988), pp. 126-156.
- 김두환, “北韓의 정치권력 변화양상과 특징,”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9집(국토통일원, 1989), pp. 36-53.
- 김학준, “한국휴전 이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북방관계의 정치 외교사적 재조명」(서울: 평민사, 1990)
- 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과 협력 방안」(산업연구원, 1991.2)
- 노희목, 외, 「南北韓 經濟交流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안)」, (한국무역협회, 1989)
- 대한무역진흥공사, 「求償貿易과 우리의 대응」, 무공자료 90-104
- 박동철, “北韓의 3차 7개년 經濟계획과 추진방향,” 「공산권 經濟」 1권 3호

- (1988. 12)
- 박동철, “北韓의 대외經濟개방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1 권 3 호 (1989. 가을).
 -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와 南北韓교류에 주는 시사점”(1989)
 - 박준삼, “北韓의 經濟개혁과 南北韓 교역,” 「北韓」, 207호(1989. 3).
 - 북한연구소, 「北韓총람」(1983)
 - 양성철 編, 「남북통일理論의 새로운 전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연하청·김동원, 「南北韓經濟比較」(한국개발연구원, 1989).
 - 연하청·김형원, “北韓의 經濟 개방화정책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 9 권제 3 호(1987. 가을), pp. 95-120.
 - 연하청, “北韓의 經濟정책과 운용,” 「연구총서」, No. 57(한국개발연구원, 1986).
 - _____, “北韓의 經濟體制,” 김영봉 외, 「자본주의와 社會主義-理論과 현실」(세경사, 1989), pp. 195-280.
 - _____,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연구」 제 1 권(1990. 가을), pp. 9-24.
 - 유길재, “북한, 중국형 개방모델 따볼까,” 「월간중앙」91. 1, pp. 220-229
 - 이 호, “北韓經濟의 딜레마-외채문제,”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3집(국토통일원, 1987. 11), pp. 50-58.
 - _____,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민주통일론」(국토통일원, 1989), pp. 59-104.
 - 이원준, “北韓經濟體제의 특징과 南北韓 經濟交流,” 「北韓」, 206호 (1989. 2)
 - 이흥구, “북방정책과 한반도평화,” 국토통일원, 「통일로의 진로」(서울: 국토통일원, 1989).
 - 임양택, 「南北韓 산업 및 기술협력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經濟연구원, 연구총서 No. 64, 1989. 5).
 - _____, 「蘇聯 및 동구제국의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연구」(한국經濟연구원, 연구총서 No. 65, 1989. 8)

- _____, 「南北韓 經濟特區의 개발전략과 적정지역의 선정에 관한 연구」(韓國經濟學會, 1991.2)
- 임양택, “북한경제의 개방 및 개혁전망,” 「통일문제 연구」(통일원, 제 3 권 1 호 1991, 봄) pp.75-105
- 임현진, “제 3 세계의 체제유형과 구조변화,” 김영봉 외, 「자본주의와 社會主義-理論과 현실」(세경사, 1989), pp.281-361.
- 한국무역협회, 「소·동구의 求償貿易 체크리스트」, 1991.3
- 한광수 외, 「북방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산업연구원, 1991.4)

◆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南北交流 方案 研究

金 康 鉉(한국 방송통신대)

〈要 約 文〉

本 論文에서는 南北韓간 情報交換 및 共同 研究를 위하여 南北韓 情報處理分野의 統一된 國家 標準을 制定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쌍방간의 技術 發展을 도모하며 開放을 促進하고 南北韓 相互理解 및 信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統一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모든 分野가 電算化 되어가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이 정해져야만 제반 科學技術 分野의 情報交換이나 協力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이 分野의 國家標準을 相互 補完하거나 統一化하는 問題는 가장 시급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北韓은 南韓과의 협의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과는 크게 다른 컴퓨터 한글 자판안을 ISO에 國際標準안으로 단독 제출하였고, 곧이어 “7비트 조선 문자 부호” 및 “8비트 조선 문자 확장법”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標準化 分野에 무관심했던 자세를 자성하고 南北標準化 交流를 위한 노력을 多方面으로 摸索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本 論文에서는 情報 處理分野를 中心으로 標準化되어져야 할 기본적인 分野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短期 標準化 課題로서 한글 情報處理 分野인 한글, 한자 코드 그리고 한글자판에 대한 표준화이다. 이 分野의 標準化는 현재 가장 시급하고 남북의 동질성 차원에서도 파급효과 또한 가장 큰 분야이다. 다음으로는 中長期 標準化

과제로서 短期 標準化 課題처럼 현재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向後 統一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분야는 한글 문서화와 한글 字形 그리고 情報處理 用語와 個人用 컴퓨터의 규격 및 情報通信網의 구축에 따른 標準化이다.

南北韓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먼저 한글 및 한국어 情報處理 分野의 國家 標準을 統一하거나 相互 보완해야 한다. 한글코드의 표준화는 南韓은 이미 북한이 제출한 7비트 코드체계와 8비트 코드체계를 겪고 난 후, 2바이트 完成形 코드나 2바이트 組合形 코드로 발전이 되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이 분야의 초보단계인 北韓에게 제공하고,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2바이트 코드 체계로 이끌어야 하겠다.

한글 자판의 問題는 타자기에 관한 것도 있고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다. KS C-5715는 컴퓨터에 관한 것만 정하고 있으나 타자기와 연결하여 최근 論難이 일고 있으며 재검토가 되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北韓의 자판과 南韓의 자판은 크게 다르다. 標準 제정을 고려할 때 南北韓이 협력하여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예비 시안 E와 예비 시안 F를 北韓의 자판과 조선족의 자판으로 할당시킨 후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물레이션한 후 그 結果를 토대로 南北관계자가 최선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中長期 標準化 課題로서는 字形, 한글 文書化 등도 한글문화권의 관점에서 相互 協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 文書 화일의 文書 형식(format)이 統一되어 한글 文書화일의 호환성이 해결되어야 한다. 南北 直交流가 활성화되고 이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통한 交流의 필요성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고 이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南北 한글 文書の 標準化이다. 아울러 한글 字形(font)에 관한 問題는 각 컴퓨터 혹은 인쇄기 회사마다 새로운 자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서 생기는 수고의 낭비를 막고, 광학 스캐너를 통해 인쇄물의 내용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일을 효율화 한다는 점 등에서 꼭 필요하다.

北韓에서 使用하는 평양의 언어나 南韓에서 使用하는 서울 언어의 차이는 學術用語나 專門用語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knowledge base'를 '자료 기지'로 使用하고 있으며 南韓에서는 '지식기저'로 使用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概念을 다른 用語로 使用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専門지식 交流나 자료 交換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南北韓 科學交流를 위해서는 학자들간의 交流가 선행되는데 서로간의 研究 論文이나 技術이전 및 専門지식의 相互 交換을 위해서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情報通信은 물론이고 事務自動化 등으로 웬만한 中小企業의 業務支援이나 學校의 學生教育 및 實習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될 個人用 컴퓨터는 向後 統一된 國家에서의 教育, 通信, 자료交換 등을 위하여 규격 등이 標準化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南北韓 教育용 컴퓨터의 標準化를 이룩해야 한다. 나아가서 南北韓 情報處理 分野의 원활한 交流를 위하여 언젠가는 南北韓 通信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向後 情報産業技術 分野가 技術的 次元에서 國家 발전을 주도할 첨단 科學技術로서의 위치를 담당할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의 南北韓 標準案을 制定하여야 한다.

현재 北韓이 ISO에 한글코드 및 한글자판 標準을 제출하였고 이는 國際標準이 될만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 이것을 막는 일이 시급 할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問題는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情報處理 分野의 國際 標準化 영역도 방대하므로 시급히 '南北韓 情報處理 標準化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南北韓 科學者 및 標準化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서로간 南北韓의 자료를 交換하고 실정을 분석한 후 科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南北韓의 統一 標準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고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北韓의 자세에 따라서는 매우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와 같은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南北韓 交流방안을 위한 研究로서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먼저 北韓의 情報處理 分野의 실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南北韓 標準化 交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標準化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短期 標準化 課題와 中長期 標準化 課題에 대하여 III장과 IV장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끝으로 V장에서 앞에서 제시한 장단기 標準化 방안에 대한 結論을 지었다.

I. 序 論

情報化 時代에 있어서 南北韓의 科學技術 分野의 交流를 위하여 가장 먼저 先行되어야 할 分野는 바로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이다. 왜냐하면 모든 分野가 電算化 되어가고 있는 現實情으로 보아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이 정해져야만 제반 科學技術 分野의 情報交換이나 協力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分野의 國家 標準을 相互補完하거나 統一化하는 問題는 가장 시급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南北韓이 각자 必要에 따라 國家 標準을 制定할 수 있겠으나 相互간의 원활한 情報交換을 위하여 또한 미래의 統一된 國家로서 國際 標準에 맞추거나 혹은 지역적인 標準을 제정할 수 있도록 標準化 할 必要性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北韓은 南韓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과는 크게 다른 컴퓨터 한글 자판안을 ISO에 國際標準案으로 단독제출하였고, 곧이어 “7비트 조선문자부호” 및 “8비트 조선문자확장법”을 제출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동안 標準化分野에 무관심했던 結果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南北 標準化 交流를 위한 노력을 多方面으로 摸索해야 할 것이다.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標準化 하나만도 1987년 봄 모스크바에서 열린 TC 46총회에서 南北 對話가 이루어진 이후 벌써 4년 째 접어들고 있는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北韓과의 標準化 交流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必要性에 의해서 本 論文에서는 情報處理 分野를 中心으로 標準化 되어야 할 기본적인 分野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먼저 短期 標準化 課題로서 한글 情報處理 分野인 한글, 한자 코드, 글자판 등을 구분하였다. 이 分野의 標準化는 현재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 또한 가장 클 것이다. 다음으로는 中長期 標準化 作業으로서 短期 標準化 課題처럼 현재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向後 統一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한글 字形 그리고 情報處理 用語와 個人用 컴퓨터의 規格 및 情報 通信網의 構築에 따른 標準化에 대하여 研究하였다.

南北韓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먼저 한글 및 한국어 情報處理 分野의 國家 標準을 統一하거나 相互 보완해야 한다. 물론 南北韓이 각각 필요에 따라 國家 標準을 제정할 수 있으나 相互간에 원활한 情報交換을 위해서도 國際標準에 맞추거나, 지역標準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南韓의 한글 코드 標準에 관하여는 組合形이나 完成形을 놓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그에 대한 研究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실이 있을 것이다.

南韓은 이미 7비트 코드체계와 8비트 코드체계를 겪고 난 후, 2바이트 完成形 코드나 2바이트 組合形 코드로 발전이 되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고 北韓은 아직 한글 코드의 권장 규격이나 情報交換용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南韓의 앞선 경험과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2바이트 코드 체계로 이끌어야 하겠다.

한글 자판의 問題는 타자기에 관한 것도 있고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다. KS C-5715는 컴퓨터에 관한 것만 정하고 있으나 타자기와 연결하여 최근 論難이 일고 있으며 재검토가 되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北韓의 자판과 南韓의 자판은 크게 다르다. 標準 制定을 고려할 때 南北韓이 협력하여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中長期 標準化 課題로서는 字形, 한글 文書化 標準化 등도 한글문화권의 관점에서 相互 協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南北韓의 情報交換을 위하여 相互 開放이 許容되면 가장 먼저 情報 通信網 구축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또한 日常業務, 敎育, 通信 등에 이르기 까지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個人用 컴퓨터의 규격도 제정되어야 한다.

한글 文書 화일의 경우, 南北 直交流가 활성화되고, 이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통한 交流의 필요성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고 이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南北 한글 文書の 標準化이다. 아울러 出版에 직접 관계되는 한글 字形(font)에 관한 問題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폰트'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供給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字形이 지엽적으로 만들어져서 字形의 選擇에 대단한 制限이 있다. 南北韓 간의 상이한 字形 使用도 어떤 統一된 標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 使用하는 평양의 언어나 南韓에서 使用하는 서울 언어의 차이는 學

術用語나 專門用語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북한은 'Knowledge base'를 '資料기저'로 사용하고 있으며 南韓에서는 '지식기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概念을 다른 用語로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문지식 交流나 資料 交換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南北韓 科學交流를 위해서는 학자들간의 交流가 선행되는데 서로간의 研究 論文이나 技術이전 및 전문지식의 相互 交換을 위해서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情報通信은 물론이고 事務自動化 등으로 웬만한 中小企業의 業務支援이나 學校의 學生教育 및 實習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될 個人用 컴퓨터는 向後 統一된 國家에서의 教育, 通信, 資料交換 등을 위하여 規格 등이 標準化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南北韓 教育用 컴퓨터의 標準化를 이룩해야 한다.

南北韓 情報處理 分野의 원활한 交流를 위하여 언젠가는 南北韓 通信網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向後 情報産業技術 分野가 技術的 次元에서 國家 발전을 주도할 첨단 科學技術로서의 위치를 담당할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의 南北韓 標準案을 制定하여야 한다.

本 論文에서는 이와 같은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南北韓 交流方案을 위한 研究로서 먼저 北韓의 情報處理 分野의 실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南北韓 標準化 交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標準化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으로서 短期 標準化 課題와 中長期 標準化 課題에 대하여 研究하였다.

II. 北韓의 컴퓨터 産業 및 南北交流現況

먼저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交流를 위하여 北韓의 컴퓨터 産業 現況과 標準化를 위한 南北韓의 交流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術用語나 專門用語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북한은 'Knowledge base'를 '資料기저'로 사용하고 있으며 南韓에서는 '지식기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概念을 다른 用語로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문지식 交流나 資料 交換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南北韓 科學交流를 위해서는 학자들간의 交流가 선행되는데 서로간의 研究 論文이나 技術이전 및 전문지식의 相互 交換을 위해서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情報通信은 물론이고 事務自動化 등으로 웬만한 中小企業의 業務支援이나 學校의 學生教育 및 實習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될 個人用 컴퓨터는 向後 統一된 國家에서의 教育, 通信, 資料交換 등을 위하여 規格 등이 標準化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南北韓 教育用 컴퓨터의 標準化를 이룩해야 한다.

南北韓 情報處理 分野의 원활한 交流를 위하여 언젠가는 南北韓 通信網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向後 情報産業技術 分野가 技術的 次元에서 國家 발전을 주도할 첨단 科學技術로서의 위치를 담당할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의 南北韓 標準案을 制定하여야 한다.

本 論文에서는 이와 같은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南北韓 交流方案을 위한 研究로서 먼저 北韓의 情報處理 分野의 실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南北韓 標準化 交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標準化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으로서 短期 標準化 課題와 中長期 標準化 課題에 대하여 研究하였다.

II. 北韓의 컴퓨터 産業 및 南北交流現況

먼저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의 交流를 위하여 北韓의 컴퓨터 産業 現況과 標準化를 위한 南北韓의 交流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北韓의 컴퓨터 産業

北韓은 科學技術 水準이 落後되어 외국과의 技術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자 科學技術의 核인 컴퓨터 技術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産業정책의 제1 課題로 定하고 집중 투자를 計劃하고 있다. [33]

北韓이 컴퓨터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2년 부터이다. 유엔개발 계획(UNDP)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北韓은 당시 일본 등지로부터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들여와 8비트급 퍼스컴을 처음 組立 生産했다.

北韓이 생산한 퍼스컴은 「봉화 4.1」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科學技術 수준이 뒤져 아직까지 北韓의 컴퓨터 産業은 8비트 퍼스컴의 組立生産 段階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외부와의 技術격차로 초조해진 北韓당국은 16비트급 이상의 컴퓨터 개발을 위해 UNDP의 원조를 받아 평양에 위치한 科學院 산하 電子工學研究所에 집적회로(IC) 시험공장을 完工했다. 또 89년 이후에는 평양-해주-단천 영예군인 반도체 공장등 컴퓨터 關聯 事業의 生産基盤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조선 컴퓨터 센터」「컴퓨터 요원 양성 센터」「평양 프로그래밍 센터」등을 잇따라 設立하며 컴퓨터 産業育成에 필요한 技術人力 養成과 소프트웨어 技術開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컴퓨터 産業육성에는 조총련의 자금지원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설립된 조선 컴퓨터 센터는 조총련의 지원으로 만경대 구역에 건설됐다. 이곳은 연 건평 2만3천M²로 화상 처리실 등 10여개의 專門 研究室과 컴퓨터 技術 講習所를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개원한 컴퓨터 요원양성 센터는 김책 공과대학내에 설치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작년 8월에 열린 北韓-중국간 科學技術협력위 30차 총회에서 합의된대로 중국의 설비지원으로 개설됐다.

지난 7월 17일 업무를 시작한 평양프로그램 센터는 조총련의 자금과 UNDP의 技術지원으로 기존의 컴퓨터 相關 研究所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측의 고민은 컴퓨터 技術開發에 投資하는 노력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北韓의 전반적인 技術水準이 떨어지고 컴퓨터

운용 능력도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컴퓨터 産業이 올해로 만 10년을 맞고 있지만 이제껏 北韓의 자체개발한 컴퓨터 하드웨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技術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 9월 평양 전자계산기 운영회사가 개발했다는 文書編輯用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관련 技術로는 거의 유일한 개발성으로 꼽힐 정도이다.

北韓 當局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技術隔差가 갈수록 심화되자 최근에는 하드웨어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작년말에는 전국 대학과 研究所의 기술진 4백명을 평남 평성에 모아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학술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1990년도에 北韓에서 발간된 전자자동화 잡지 4월호의 “프로그램 生産技術의 現狀態와 動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資料가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프로그램 技術者 需要와 供給간의 差異가 커지고, 둘째, 계산기 체계에서 질높은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셋째, 계산기 체계에서 차지하는 프로그램 값이 상승하여 프로그램 生産技術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生産技術의 現상태로 프로그램 生産技術의 지원체계의 기본 내용으로 프로그램 수명주기에 일관한 지원, 응답성 확보, 프로그램 작성의 시각화, 프로그램 재산 축적 및 재이용, 프로그램 文書作成의 능률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생산동향으로 계산기에 의한 프로그램 技術, 프로그램 生産工程, 인공지능 技術의 應用, 지식기반(北韓에서는 ‘knowledge base’를 ‘資料기지’로 使用하고 있음)의 추론 기구에 의하여 問題해결을 진행하는 지식공학 分野가 발전함에 따라 生産技術에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것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1990년 2월에 발간된 전자자동화 잡지로부터 전자공학 分野에 관한 전자재료 개발, 재료의 순도를 높이는 問題, 집적회로를 비롯한 전자요소의 개발 研究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발간된 科學技術 문헌에 “계산기에 의한 집적회로 공정 설계”, “국부 지역 通信網을 위한 쌍방향 通信 연결의 설계와 실현”, “로보트용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컴퓨터 分野의 科學技術 수준이 아직 초보적이지만

다양하게 研究가 進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論文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도표에 의하면 UNIX 운영체제와 個人別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도 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北韓은 精確한 資料에 의한 精確한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컴퓨터産業分野가 南韓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情報處理 分野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南韓의 선진 技術을 수용한다면 標準化 交流는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2. 南北 標準化 交流 現況

南韓의 경우 지난해부터 公産權 國家와의 交역 촉진을 위해 北韓의 CKS(北韓 規格委員會) 등 公産權 規格관련 기관과의 工業規格相互交流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工業振興廳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소련의 GOST, 중국의 GB, 헝가리의 MSZ, 체코의 CSN, 유고의 JUS, 쿠바의 NC 規格 등 이미 1만9천 건 이상을 입수, 활용에 나서고 있으며 北韓과는 國際 標準化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를 통해 相互 交流를 교섭중에 있다. 工業振興廳은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公産權 國家들과의 交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들 國家의 工業規格을 精確히 파악하기 위하여 ISO에 規格交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각국의 國家 規格위원회와 相互 規格 交流를 위한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北韓과의 交流가 이루어진 分野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分野였다. 한국과 北韓은 제각기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어 놓고 1987년 봄 모스크바에서 열린 TC 46 총회에서 만났으며, 양쪽 모두가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혼란이 있는 현실과 統一의 필요성은 일단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자수 51자는 대체로 일치되지만 그 중 12자가 서로 달랐다. 北韓에서는 ㄱ, ㅋ, ㆁ을 k, kh, kk로 표기하자는 의견으로 북측에서는 언어학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고 우리는 기계화의 용이성까지 추가 검토한 것이었다.

그 후 1988년 봄에 파리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종래의 주장만이 오고갔

으나 대중의 수용성, 경제성, 모호성(기계화의 어려움)이 그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후에도 1989년 3월, 5월 등의 공식 회의 일정은 잡혀 있었으나 北韓의 불참석으로 유회되었다가 지난 1990년 5월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標準協會(ANFOR)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 北韓, 일본, 프랑스, 소련 등 15개국에서 31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하였다. 한국이 참여한 회의는 SC2 총회와 WG4 회의인데 WG4에서는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國際 규격화 하기위한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글 로마자 표기의 南北韓안을 비교해 볼 때, 北韓안의 問題點은 첫째, 北韓안의 ㅋ, ㅌ, ㅍ, ㅊ을 각각 kh, th, ph, ch로 전자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인 k, t, p, c보다 경제성에서 떨어진다. 둘째, '각하'를 'kakha'로, '애'를 'ai'로 표기함으로써 원래의 글자로 복원할 경우 각각 '가카'와 '아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등 모호성이 높다. 셋째, 로마자 중 'g, d, b, j' 등 4자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로마자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工業振興廳에서는 科學技術處와 협력하여 한국 標準研究所에 소프트웨어(software)를 개발하도록 의뢰하였으며 1989년 초 南北韓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5월 회의에서 demonstration하기로 결정하였고, 北韓측은 南韓측이 우수함을 공식 인정하고 기존의 北韓안을 철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비록 北韓안이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南北韓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南北韓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안 중 ㄱ, ㅋ, ㆁ의 전자를 g, k, gg에서 각각 k, g, q, kk, gg로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한글 로마자 표기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성숙한 것으로 보이며 예정대로 우리나라 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여 北韓측과 별도로 협의를 갖고 최종 단일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기된 問題는 최근에 北韓이 제출한 한글코드와 자판이다. 北韓은 지난 3월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과는 크게 다른 컴퓨터 한글 자판안을 ISO에 國際標準案으로 단독 제출하였고, ISO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다. 그리

고 한글자판에 이어서 北韓은 ISO에 “7비트 조선문자 부호” 및 “8비트 조선문자 확장법”을 제출하였다.

체신부가 밝힌 北韓의 國際標準案의 특징을 보면 2벌식이고, 자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음 오른쪽에는 모음이 배열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南韓의 標準자판과 같으나 구체적인 위치배열은 크게 다르다.

특히 北韓안은 南韓에서는 두음법칙관계로 자주 使用하지 않는 ㄱ, ㄴ 등의 자음을 중시하여 중앙에 배열하는 등 南北韓 사이의 언어 생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北韓이 ISO에 제출한 “7비트 조선문자 부호” 및 “8비트 조선문자 확장법”을 살펴 보면 南韓에서 74년 이전 使用했던 N바이트 코드체계와 비슷하다. 즉 74년 이전에는 24자모로써 초성, 중성, 종성 등을 1바이트씩 표현하였고, 한글 시작 코드(SO)와 한글 끝 코드(SI)로 지정한 다음, 한글 시작 코드가 나타난 이후의 코드들은 한글을 의미하며 한글 끝코드 이후의 코드들은 영문 코드를 의미하도록 만든 코드체계이다.

그리고 北韓이 ISO에 제출한 8비트 한글부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使用되었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8비트 3바이트 코드체계와 흡사하다. 이 8비트 3바이트 코드체계는 7비트 코드체계가 가지고 있는 問題點을 보완하려고 나온 것이다.

北韓의 안은 글자판의 경우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정확한 보급대수에 관한 통계도 없으나 南韓의 경우는 이미 KSC-5715 한글자판이 20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北韓이 제출한 문자 코드는 南韓의 경험으로 충분히 원시성이 입증되어 國際標準化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ISO에 제출되기만 하면 ISO에서는 회원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대로 투표를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南韓측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Ⅲ. 短期 標準化 課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情報處理 分野의 표준화는 매우 시급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를 短期 標準化로 하면 최근 북한의 국제표준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글, 한자 코드 및 글자판의 統一에 대한 標準化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글, 한자 코드 問題

南北韓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입장은 물론 미래의 統一된 國家로서 자국어의 코드가 情報交換코드, 혹은 情報處理用 코드가 서로 統一되어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問題는 아주 심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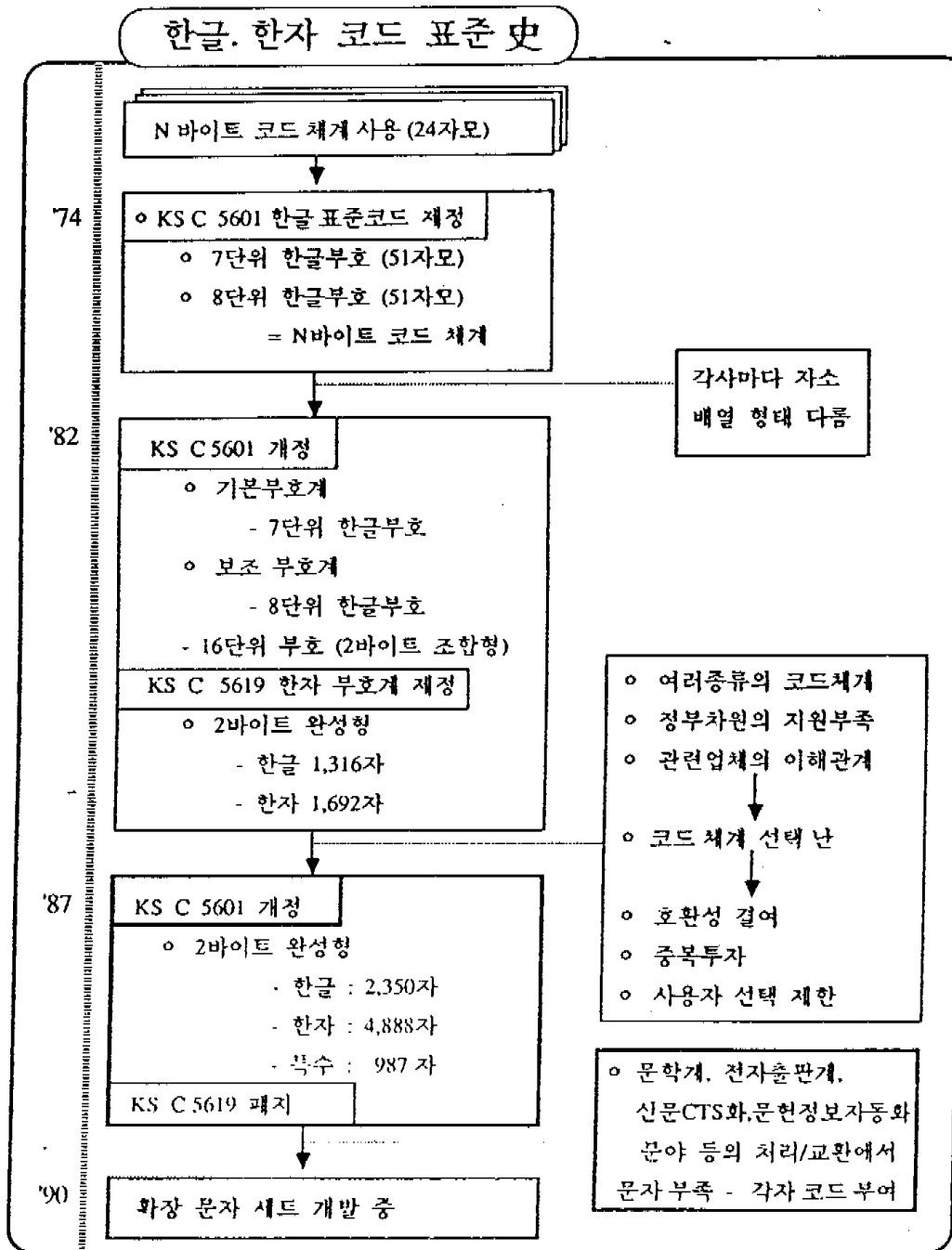
그러면 한국어 情報處理를 위한 최적 한글 코드란 어떠한가? 한글 문자의 情報處理 대상으로서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處理의 적합성과 效率성을 갖는 코드가 요구된다.

먼저 그 동안의 한글코드 標準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초 당시 한글 코드는 24자모를 ASC II 코드에 1:1 대응하여 使用하는 n byte 코드체계가 여러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1974년 KS C 5601 情報 交換用 부호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정된 규격은 51자모를 ASC II 코드에 1:1 대응시켜 使用한 7bit의 n byte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격도 한글에 대한 研究가 研究所나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었으며 이들은 외국의 技術을 받아들이는 현실에서 한글 코드 標準化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 규격만으로 존재한 채 여러 업체들이 각기 다른 자소 배열 및 코드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1981년 KAIST가 중심이 되어 한글 코드 標準化를 위한 研究가 처음으로 착수되어 82년에 KS C 5601 이 개정과 아울러 KS C 5619 한자 부호계를 제정하



< 한글, 한자 코드 標準史 >

였다. 이 규격에서 기본 부호계는 7단위 한글 부호로 하고 보조 부호계는 8단위 한글 부호 및 16단위 한글 부호로 하였으며 한자 부호계는 2바이트 完成形으로 구성하였다. 이 규격은 그때까지 최대 27개까지 달하던 부호계를 어느 정도 統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부호계의 종류도 많고 標準규격을 채택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관련 업계간의 이해관계로 코드 標準이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기종간의 互換性 결여, 중복 투자 및 使用者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問題가 계속되어 왔다. 그리하여 정부, 제조업체, 使用者 모두 이런 問題點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標準코드에 대한 재정립의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으며 1985년 한국 標準研究所를 중심으로 다시 研究가 착수되어 1987년 情報交換용 2 byte 完成形 단일 부호체계로 KS C 5601-87이 제안되어 개정되었다.

이 코드는 행정전산망용 워크 스테이션과 敎育用 PC에서 채택되는 등의 파급효과에 의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또한 이 코드는 일반 使用者들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使用하기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어문학계, 전자 출판계, 신문 발행 CTS화, 도서관 문헌情報 등의 處理交換 分野에서 의성어, 의태어, 방언 등을 표현할 때 표시되지 않는 한글 문자가 나타나고 한자도 해당 집단 간의 컴퓨터 處理·交換이 일반화 되면서 사전에 부호 부여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國際·國家 標準에서 제시한 방법하에 문자 세트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현재 南韓에서 標準化되어 使用되는 코드로는 情報交換용 2byte 完成形으로 한글 2350자, 한자 4888자, 특수문자 987자로서 모두 8225자를 제정하여 使用하고 있다. (KS C 5601-1987)

한편 北韓이 ISO에 제출한 “7비트 조선문자 부호” 및 “8비트 조선문자 확장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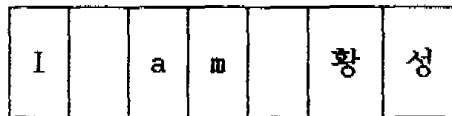
					b7	0	0	0	0	1	1	1	1
					b6	0	0	1	1	0	0	1	1
					b5	0	1	0	1	0	1	0	1
b4	b3	b2	b1		0	1	2	3	4	5	6	7	
0	0	0	0	0	NUL	DLE	SP	0	@	P	'	ㅏ	
0	0	0	1	1	SOH	DC1	!	1	A	Q	ㄱ	ㅑ	
0	0	1	0	2	STX	DC2	"	2	B	R	ㄴ	ㅓ	
0	0	1	1	3	ETX	DC3	#	3	C	S	ㄷ	ㅕ	
0	1	0	0	4	EOT	DC4	\$	4	D	T	ㄹ	ㅗ	
0	1	0	1	5	EMQ	MAK	*	5	E	U	ㅛ	ㅛ	
0	1	1	0	6	ACT	SYN	&	6	F	V	ㅜ	ㅝ	
0	1	1	1	7	BET	ETB	'	7	G	W	ㅠ	ㅠ	
1	0	0	0	8	BS	CAN	(8	H	X	ㅇ	ㅣ	
1	0	0	1	9	HT	EM)	9	I	Y	ㅈ	ㅉ	
1	0	1	0	10	LF	SUB	*	:	J	Z	ㅊ	ㅋ	
1	0	1	1	11	UT	ESC	+	:	K	[ㅋ		
1	1	0	0	12	FF	FS	,	<	L	\	ㅌ		
1	1	0	1	13	CR	GS	-	=	M]	ㅍ		
1	1	1	0	14	SQ	RS	.	>	N	^	ㅎ		
1	1	1	1	15	SI	US	/	?	0	_	ㅏ	DEL	

< 北韓의 7 비트 한글 부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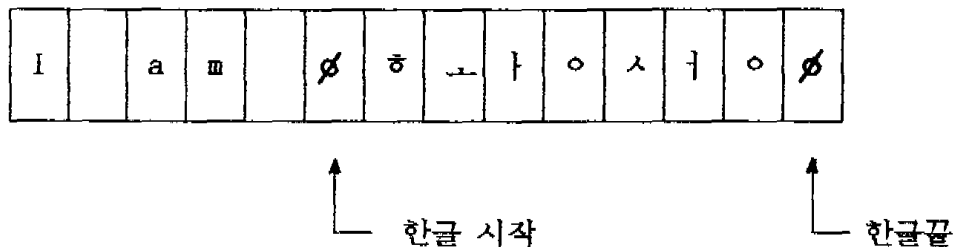
				b8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b7	0	0	0	0	1	1	1	1	0	0	0	0	1	1	1	1
				b6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b5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b4	b3	b2	b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0	0	0	0	NUL	DLE	SP	0	@	P	'	p			NASP				FIL	ㅏ
0	0	0	1	1	SOH	DC1	!	1	A	Q	a	q							ㅑ	ㅓ
0	0	1	0	2	STX	DC2	"	2	B	R	b	r							ㅕ	ㅗ
0	0	1	1	3	ETX	DC3	#	3	C	S	c	s							ㅛ	ㅜ
0	1	0	0	4	EOT	DC4	\$	4	D	T	d	t							ㅝ	ㅠ
0	1	0	1	5	EMQ	MAK	%	5	E	U	e	u							ㅟ	ㅢ
0	1	1	0	6	ACT	SYN	&	6	F	V	f	v							ㅣ	ㅥ
0	1	1	1	7	BET	ETB	'	7	G	W	g	w							ㅨ	ㅩ
1	0	0	0	8	BS	CAN	(8	H	X	h	x							ㅪ	ㅫ
1	0	0	1	9	HT	EM)	9	I	Y	i	y							ㅭ	ㅮ
1	0	1	0	10	LF	SUB	*	:	J	Z	j	z							ㅱ	ㅲ
1	0	1	1	11	UT	ESC	+	:	K	[k	{							ㅴ	
1	1	0	0	12	FF	FS	,	<	L	\	l	;							ㅶ	
1	1	0	1	13	CR	GS	-	=	M]	m	}			SHY				ㅸ	
1	1	1	0	14	SQ	RS	.	>	N	^	n	~							ㅺ	
1	1	1	1	15	SI	US	/	?	O	_	o								ㅼ	DE

< 北韓의 8 비트 한글 부호 >

위의 코드를 살펴보면 南韓에서 74년 이전 使用했던 N바이트 코드체계와 비슷하다. 즉 74년 이전에는 24자모로써 초성, 중성, 종성 등을 1바이트씩 표현하였고, 한글 시작 코드(SO)와 한글 끝 코드(SI)로 지정한 다음, 한글 시작 코드가 나타난 이후의 코드들은 한글을 의미하며 한글 끝코드 이후의 코드들은 영문 코드를 의미하도록 만든 코드체계이다.



< 화면 표시 >



< 내부 기억 상태 >

이 7비트 n바이트 코드체계는 한글을 영문 코드와 똑같이 7비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7비트만 處理할 수 있는 컴퓨터나 OS(Operating System)에서 한글을 손쉽게 使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

첫째는 한글과 영문이 같은 코드 영역을 使用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문자에 대해 이것이 영문인지 한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한글 시작코드와 한글 끝코드는 화면이나 프린터에는 출력되지 않는 데다가 한글 한자의 길이가 영문과는 달리 변화 부쌍하여 資料處理시 어려움이 많다.

셋째는 입력시에만 모아쓰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시에도 모아쓰기를 해주어야 하므로 效率이 매우 떨어진다.

넷째는 資料를 분류(sorting)하거나 검색(searching)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

다섯째는 한자를 위한 코드 영역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 코드체계는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글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8비트 個人用 컴퓨터나 유닉스 오퍼레이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 사용하곤 했으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은 코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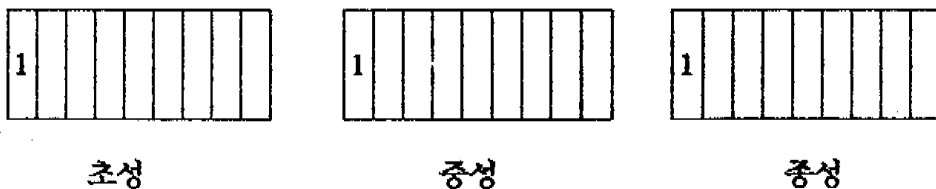
또한 가변적인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7비트 3바이트 코드체계가 나왔으나 근본적으로 n바이트 코드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北韓이 ISO에 제출한 8비트 한글 부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8비트 3바이트 코드체계와 흡사하다.

이 8비트 3바이트 코드체계는 7비트 코드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것이다.

7비트 코드체계는 영문코드의 영역을 그대로 한글 코드에 할당하여 사용하는 대신 한글 시작코드와 한글 끝코드를 사용하여 한글과 영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하나의 코드만 보아서는 그것이 한글인지 영문인지를 알 수가 없고, 내부에 기억하고 있는 코드를 처음부터 해당 글자의 위치까지 검색하여 한글 시작코드와 한글 끝코드가 어떻게 들어 있는지 추적해야만 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글 코드를 영문코드와는 별도로 8비트 영역(MSB가 1인 코드 영역, 즉 코드값이 128이상인 영역)내에 할당함으로써 하나의 코드를 놓고 볼 때에 바로 한글인지 영문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 8 비트 - 3 바이트 코드 체계 >

참고로 7비트 한글 코드표인 KS C5601 부속서 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0	1	2	3	4	5	6	7
0	NUL	DLE	SP	0	@	P	'	p
1	SOH	DC1	!	1	A	Q	a	q
2	STX	DC2	"	2	B	R	b	r
3	ETX	DC3	#	3	C	S	c	s
4	EOT	DC4	\$	4	D	T	d	t
5	ENQ	NAK	%	5	E	U	e	u
6	ACK	SYN	&	6	F	V	f	v
7	BEL	ETB	'	7	G	W	g	w
8	BS	CAN	(8	H	X	h	x
9	HT	EM)	9	I	Y	i	y
10	LF	SUB	*	:	J	Z	j	z
11	VT	ESC	+	:	K	[k	[
12	FF	IS4	.	<	L	W	l	l
13	CR	IS3	-	=	M]	m]
14	SO	IS2	.	>	N	^	n	
15	SI	IS1	/	?	O		o	DEL

0	<FIL>	리랑		
1	ㄱ	ㅁ		
2	ㅋ	ㅂ	ㅓ	ㅕ
3	ㄴ	ㅅ	ㅗ	ㅛ
4	ㄷ	ㅈ	ㅜ	ㅠ
5	ㄹ	ㅊ	ㅡ	ㅣ
6	ㅌ	ㅊ	ㅑ	ㅓ
7	ㄷ	ㅇ	ㅑ	ㅓ
8	ㅁ	ㅈ		
9	ㄹ	ㅈ		
10	ㄹ	ㅈ	ㅑ	ㅓ
11	ㄹ	ㅈ	ㅑ	ㅓ
12	ㄹ	ㅈ	ㅑ	ㅓ
13	ㄹ	ㅈ	ㅑ	ㅓ
14	ㄹ	ㅈ	ㅑ	ㅓ
15	ㄹ	ㅈ	ㅑ	ㅓ

위의 코드표를 보면 北韓은 한글 낱자의 수를 26개로 보고 있는데 비해 KS C-5601에서는 52개로 보고 있다. 즉 北韓은 한글 단자음 14개와 단모음 10개와 특별히 “ㄱ”와 “ㅋ”를 추가시켜 26개이고, 南韓은 단자음 14개, 쌍자음 5개, 복자음 11개, 단모음 10개, 복모음 11개인 전체 52개의 한글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北韓은 쌍자음과 복자음을 단자음의 조합으로 만들 의도가 엿보이고, 복모음은 단모음의 조합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억 용량을 더 크게 늘릴 뿐만 아니라 處理하는 데도 복잡하게 되는 非效率을 낳는다.

이와같은 것은 北韓이 한글 자판과 같이 26개로 꼭 맞추어 버리자는 아주 경직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82년도에 이러한 問題에

불착하였을 때 경직되게 정할 것이 아니라 한글의 발전여지를 고려해서 좀 더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는 현대어에 사용되는 모든 낱자에 독립된 낱자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 處理에 용이하다는 실증적인 資料를 바탕으로 둔 것이다. 또한 쌍자음과 복자음등으로 야기되는 “음절 구분의 모호성”을 배제하려면 26자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16비트(2바이트)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8비트-3바이트 코드 체계는 내부에 기억된 코드의 길이와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되는 形態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영문은 1바이트이지만 한글 漢字는 내부에 기억될 때에 3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될 때에는 한글은 영문의 2배 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래서 3바이트를 2바이트로 줄이는 研究에 착수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이때, 2바이트가 3바이트 보다 더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은 2바이트로 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체계에 비하여 기억 장소를 적게 차지한다.

둘째, 내부에 기억되는 코드와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되는 모양이 일반적으로 일치하므로 워드프로세서나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資料를 處理하기가 용이하다.

셋째,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분류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넷째, 한글외에도 특수부호나 한자를 위한 코드영역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南韓은 이미 7비트 코드체계와 8비트 코드 체계를 겪고 난 후, 2바이트 完成形 코드나 2바이트 組合形 코드로 발전이 되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고 北韓은 아직 한글 코드의 권장 규격이나 情報交換用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므로 北韓과 합의하에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2바이트 코드체계로 이끌어야 하겠다.

이러한 南北韓 단일 한글 標準 코드를 만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드라는 것은 다양한 情報를 표현하기 위한 부호인데 최근의 컴퓨터 관련 分野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미디어들을 수용 가능한 코드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國際 부호확장 체계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情報·交換시의 國際적인 互換性을 보장하고 외국 소프트웨어에의 한글 수용이 쉬워지며 국내개발 소프트웨어 수출시 수정이 쉽도록 國際 부호확장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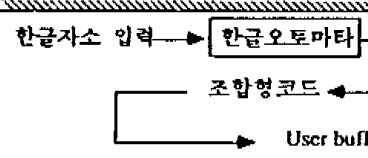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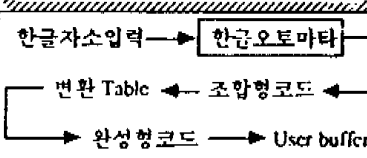
또한 南韓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組合形이나 完成形이나의 논란을 北韓과 같이 상의할 기회도 열어 주어서 北韓의 입장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다.

다음은 情報 標準化 기구의 요구에 의해 完成形으로 標準化를 제정하였지만 그에 대한 問題點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完成形의 問題點과 2바이트 組合形과 完成形을 비교하였다[26, 29].

〈完成形의 問題點〉

- 1) 完成形 한글은 한글 조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
- 2) 빠진 글자가 많아서 組合形 한글의 경우 11172자 모두 가능한 반면 完成形에서는 組合形의 20%밖에 쓸 수 없다는 점
 - (1) 국어 정서법에 쓰이는 글자가 標準 코드에서 빠져 있다.
(예를 들면 ‘뵤다’의 센말인 ‘뵤다’를 나타낼 수 없다.)
 - (2) 살아있는 문화 유산인 방언을 표기할 글자가 없다.
(예를 들어 1990년 TV에서 방영된 바 있던 미니시리즈 ‘똥방각하’의 ‘똥’자를 쓸 수가 없다.)
- 3) 음소 분석이 불가능하여 한글 문장의 인식, 자동 번역 시스템, 한글 패턴 인식 등의 인공지능 分野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
- 4) 情報交換용이라는 標準 코드가 오히려 情報 交換에 장애가 된다는 점.
한글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편법인 95자의 ‘使用者 정의 영역’은 글자 使用시 使用者마다 다른 부호를 정의함으로 생기는 情報交換상의 혼란은 물론 순차 배열에도 問題를 가져온다.
- 5) 完成形 한글에는 등록된 글자를 화면에 나타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
(‘뵤, 쌍, 쉐, 쑹, 쑹’의 등록된 글자를 입력도중 현재 입력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뵤, 쌍, 쉐, 쑹, 쑹’가 없다.)
- 6) 한글에 비해 한자수가 너무 많고 ‘cm’ 등 불필요한 특수기호가 많다.

2 바이트 조합형 : 완성형 비교

항목	부호종류	2바이트 조합형 부호	2바이트 완성형 부호
표현방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5비트 5비트 5비트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fit-content;"> 1 조성 중성 중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소별 의미 부여 ○ 조합가능한 모든 한글 음절 표현가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제1바이트 제2바이트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fit-content;"> 1 1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절 단어 의미 부여 ○ 사용빈도에 따라 한글설정, 가나다순으로 배열
부호발생방법			
국제규격과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022 부호확장법 체계에 따르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022 부호확장법 체계 따름 ○ '84.4-현재,국제규격안으로추진중인 Multioctet code 체계와 비슷함
Async 통신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B를 Parity로 사용할 경우 문제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 가능
음절의 자소구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호에 의해 간단히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pping Table을 이용하여 자소구분
모든 한글 음절 표현 가능 ?		가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확장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음절 표현 가능
외국 S/W의 한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x 등 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Mclta 문자와 중복으로 문제발생 (S/W를 2바이트 처리 형태로 변경해야 해결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lta 문자영역 피하기가 용이함
한자수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형 한글+ 완성형 한자 3000자 정보 수용 가능 ○ 그 이상은 별도의 방법으로 수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코드체계내에서 5000여자 수용가능 ○ 그 이상은 ISO 부호확장법에 의해 수용해야 함
한글, 한자, 영문 혼용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Sct만 사용할 경우 용이함 	과 등
한글, 한자, 영문 혼용시 S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용 Sort시 혼용 Sort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과 등

〈 2 바이트 組合形과 完成形 비교 〉

한편 國際 標準 기구에서는 92년까지 세계의 모든 분자를 하나의 코드로 統一할 수 있는 멀티 옥테트(Multi Octet)코드(ISO DP 10646)를 새로운 標準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 멀티 옥테트 코드는 현행 KS코드가 따르고 있는 2바이트 ISO 2022 규격과는 달리, 4바이트로 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때 한문을 使用하는 한국, 일본, 중국이 모임(ISO/IEC JTC1/SC2 Ad-hoc Meeting)을 갖고 코드의 標準化를 협상하였다. 여기서 國家별로 4등분 해서 8천자씩 나누어서 國家별로 배열하도록 하자는 일본측과 한자영역은 따로 구분하지 말고 統一하자는 중국측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南韓은 여기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글 전용이나 한자 혼용이나의 갈등이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즉 한글전용이면 접근 전략이 전혀 달라야 하고 혼용일 경우에는 중국의 統一안에는 반대해야 옳을 것이다. 北韓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중국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열린 서울의 國際會議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가 南北 한글코드 標準을 먼저 협상하고 일본과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므로 南北 科學者가 하루 빨리 만나 협상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2. 글자판의 統一

한글 자판의 問題는 타자기에 관한 것도 있고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다. KS C-5715는 컴퓨터에 관한 것만 정하고 있으나 타자기와 연결하여 최근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재검토가 되어야 할 형편이다.

현재 問題되고 있는 한글 자판 배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의 몇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27]

첫째, 기본 자소의 배열 問題이다. 한글은 자모 14자, 모음 10자를 기본으로 하고 복자음과 복모음을 합하면 30여자에서 50여자의 자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판에 어느 자소를 기본 배열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초성, 중성, 종성의 표현 問題이다. 이 問題가 자판 배열의 주요쟁점

이 되는 부분으로 같은 자음, 모음이라도 초성에 쓰이느냐, 종성에 쓰이느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히는 위치와 모양이 다르게 되는 것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가 자판 배열 문제 특히 별식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별식, 3별식, 4별식 등 다양한 자판배열 형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자판의 별수는 기계의 内部構造, 具現 方法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셋째, 자모의 배치 문제이다. 자판에서 어느 글자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즉, 使用 빈도가 높은 글자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使用 빈도가 낮은 문자를 주위에 배치시킴으로써 손가락의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고 입력 속도 또한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한 통계적 분포 조사가 많은 研究에서 행해져 왔다.

넷째, 입력속도의 문제이다. 현대는 情報化 시대인 만큼 입력 속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글이라도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면 경쟁 사회에서 그 만큼 뒤떨어진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능률의 극대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자판은 배우기 쉬워야 하며 손가락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즉, 기능이 우수한 손가락에서 작업량을 많이 배분하고 기능이 약한 손가락에는 작업량을 적게 배분함으로써 골고루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人間工學的 측면에서 합리성 문제이다. 인간공학적으로 합리적인 자판배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글 자 모음 별 출현빈도를 감안한 좌, 우측 손에 대한 부하 및 각 손가락에 대한 부하분포율, 손가락 이동거리 및 슈프트율, 연타율을, 그리고, 재열 습득도 등 재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한편 韓國科學技術院의 “컴퓨터 標準化 研究”에서 제시한 글자판 標準안에서는 자판 배열의 성격을 “컴퓨터에서 使用될 資料를 입력하기 위한 장치의 자판 배열”로 하였으며 이는 국무총리 훈령 81호(1969년 7월)로 제정된 바 있으며 인쇄전산기용 2별 標準자판의 배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글 부분의 배열을 위해서 건반 수용 문자를 자체부호 생성기능을 가진 컴퓨터 입력장치라는 점에서 최소자모만으로 하고 그 배열 범위는 될 수 있는 한 영문, 숫자 및 부호 부분의 배열에서 영문의 배열 부분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숫자 및 부호의 입력을 위하여 한글/영문 모드 변화를 행하지 않는 장치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가지 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28]. 이 4가지 시안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시안 A

-기본자모음 24자와 복모음 ㅐ, ㅑ를 현행 인쇄 전산기 건반 배열 표준규격 (KS C 5528)과 동일하게 배열한다.

-초성에 사용되는 복자음 ㄲ, ㄸ, ㅃ, ㅆ, ㅉ을 각각 ㄱ, ㄷ, ㅅ, ㅈ, ㅊ의 상단에 배열한다.

-복모음 ㅐ와 ㅑ를 각각 그 형태가 유사한 ㅑ와 ㅑ의 상단에 배열한다.

2) 예비시안 B

-기본자모음 24자 복모음 ㅐ, ㅑ, ㅑ와 초성 복자음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 ‘ ’을 배열한 것으로 工業振興廳에서 제정한 컴퓨터 주변 장치 설계 기준 (KSCP-C-1510)상의 HL 방식의 건반과 일치하는 배열이다.

-예비시안 A와 유사하나, 자음중 ‘ㄱ’과 ‘ㄷ’의 위치를 相互 交換하였고, 모음 ‘ㅑ’의 위치에 ‘ㅑ’를 배열하고, ‘ㅑ’를 ‘ㅑ’의 위치로 배열함으로써 ‘ㅑ, ㅑ, ㅑ’가 우측으로 한자리씩 옮겨졌으며 ‘ㅐ’의 위치는 10열 C행에, ‘ㅑ’의 위치는 8열 B행에 배열하였다.

-‘ㅐ’와 ‘ㅑ’는 영문, 숫자, 기호부분의 배열중, 영문의 배열 범위를 벗어나게 되나 쉬프트를 使用하여 입력되는 자모는 없다.

3) 예비시안 C

-유사형태의 자모음 입력 방식의 統一性을 기하려는 입장 중에서, 복모음 ㅐ, ㅑ를 D열 상단에 배열하는 것으로 하고, 한글 자모별 출현빈도를 감안하여 배치하면서, 받침에만 使用되는 11종의 복자음 ㄴㅎ, ㄹㄱ, ㄱㄱ, ㄷㅅ, ㄷㅌ, ㄷㅎ, 등과 가로모음과 세로모음이 복합된 7종의 복모음 ㅑ, ㅑ, ...등의 입력시에 같은 손가락에 의한 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열한 것이다.

4) 예비시안 D

C안의 배열과 유사한 개념으로 좌우를 交換하여 배열한 것으로 좌측손으로 입력되는 건반의 위치에 모음과, 낮은 출현 빈도를 갖는 일부 자음을 우측손으로 입력되는 건반의 위치에 자음을 배열한 것이다.

위의 4개의 예비시안을 ① 부하율, ② 손가락 이동거리, ③ 쉬프트율, ④ 연타율, ⑤ 배열 습득도를 기준으로 시안을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에서 (5) 항의 比較 結果 각 예비시안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특별히 우월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즉, 빈도를 고려한 부하비교에서 예비시안 D가 우측손이 좌측손보다 높은 부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상적인 건반 배열인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나, 빈번히 使用되는 기호 및 기능키가 우측에 배열되며, 수치 입력용을 별도로 분리시킨 건반배열의 경우 이를 우측에 배열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우측손의 부하가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좋은 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2)에서 (4)의 實驗 結果 직접적인 수치의 비교에서 다소 우위를 차지하는 예비시안이 있었으나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이에 현존하는 컴퓨터용 단말장치에서 대다수 모델에 채택하고 있는 배열이며 인쇄 전산기용의 건반 배열과도 일치하는 예비시안 A를 선정하는 것이 근소한 차이의 능률을 높이고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런 가운데 근래에 들어서 北韓은 지난 3월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과는 크게 다른 컴퓨터 한글 자판안을 ISO에 國際標準案으로 단독 제출하였고 ISO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다. 체신부가 밝힌 北韓의 國際標準案의 특징을 보면 2벌식이고, 자판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음, 오른쪽에는 모음이 배열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南韓의 標準 자판과 같으나 구체적인 위치배열은 크게 다르다.

특히 北韓案은 南韓에서는 두음법칙관계로 자주 使用하지 않는 ㄴ, ㄷ 등의 자음을 중시하여 중앙에 배열하는 등 南北韓 사이의 언어 생활의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南韓 2벌식 자판과 北韓의 자판과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交流가 빈번한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자판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0	-	=	:	\	
q	w	e	r	t	y	u	i	o	p	[]				
ㅊ	ㅅ	ㅍ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a	s	d	f	g	h	j	k	l	:	'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z	x	c	v	b	n	m	,	.	/						
ㅈ	ㅊ	ㅅ	ㅆ	ㅂ	ㄴ	ㅁ	,	.	/						

< 한국 2 벌식 자판 (KSC-5715) >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	\
	q	w	e	r	t	y	u	i	o	p	[]	.		
	ㅊ	ㅅ	ㅍ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a	s	d	f	g	h	j	k	l	:	'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z	x	c	v	b	n	m	,	.	/					
	ㅈ	ㅊ	ㅅ	ㅆ	ㅂ	ㄴ	ㅁ	,	.	/					

< 한글 3 벌식 자판 >

B01	B02	B03	B04	B05	B06	B07			
ㄱ	ㅋ	ㆁ	ㄴ	ㄷ	ㄹ	ㅁ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ㄷ	ㅌ	ㄴ	ㄷ	ㄹ	ㅁ	ㅂ	ㅅ	ㅈ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8	D09	D10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北韓 자판 >

!	<	>	1	2	3	4	5	6	7	8	9	0	()
/	#	\$	%	&	!	J	W	+	-	/	=	\	[]
기능	⊙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ㄴ	ㄷ	ㄹ	ㅁ	ㅂ	ㅅ
?	*	ㅈ	ㅊ	ㅋ	ㆁ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반복	□	자모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ㄴ	ㄷ	ㄹ	ㅁ	ㅂ
상/하														

< 조선족 자판 >

北韓의 자판과 조선족의 자판이南韓의 자판과 크게 다르다. 이를 해결하는 方案으로는 예비 시안 E와 예비 시안 F를北韓의 자판과 조선족의 자판으로 할 당시킨 후 앞에서 정한 6가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北韓에서 使用하는 單語와南韓에서 使用하는 單語가 다름으로서 다른 結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민족 동질성 차원에서 單語를 비롯하여 어휘를 먼저 統一하여야 함으로 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어휘 統一 이전에 자판을 統一 시켜야 한다면南韓이 使用하는 어휘와北韓이 使用하는 어휘를 따라 따로 테스트하고 다음으로 함께 섞어서 테스트하여 변이가 적은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北韓이 ISO에 한글 자판 標準을 제출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國際 사회에서 한글 標準이北韓의 안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 한국데이터通信의 유경희 위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方法을 제안하였다. [32]

제 1 方案 :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 즉 의안 채택 투표에서 부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는 해도 대화의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 2 方案 : 일단은 JTIC/SE18에서는 의안을 채택하는데 도와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본 의제가 JTIC/SC(제18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본 동분과에 상정된 다음에北韓의 대표를 참석시켜서 대화를 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설명 설득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問題는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情報處理分野의 國際 標準化 영역도 방대하므로 시급히 ‘南北韓 情報處理 標準化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南北韓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서로간 南北韓 실정을 조사하고 科學的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南北韓의 統一 標準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IV. 中長期 標準化 課題

南北韓 短期 標準化 단계를 진행해 나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나간다면 그 다음으로써 2차적인 標準化 단계인 한글 文書化의 標準化와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 情報通信網 설치에 관한 標準化, 個人用 컴퓨터의 규격에 대한 標準化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1. 한글 文書化의 標準化

최근 個人用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계산용 컴퓨터나 게임용 컴퓨터가 아닌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文書 작성 및 보관에 個人用 컴퓨터를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 코드의 난립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개발되어 使用되어지고 있는 많은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이의 한글 코드 역시 統一되지 않아 한글 文書 화일 사이의 기종간, 워드프로세서간의 互換性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이의 한글 文書 화일의 文書 形式(format)이 統一되지 않아서 한글 文書화 일의 互換性에는 많은 問題를 안고 있다.

또한 EDI(Electric Data Interchange)의 발달로 각 회사 마다의 文書 標準化의 필요성이 시급해 지고 있다. 앞으로 南韓간의 기업끼리의 기업활동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國際 경쟁력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점점 南北 直 交流가 활성화되고 이를 效率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통한 交流의 필요성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은 南北 한글 文書の 標準化일 것이다.

南北간의 한글 文書 標準化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

- 南北韓 한글 文書を 조사, 비교 평가한다.
- 한글 文書가 컴퓨터를 통해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표현이 될 것이므로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標準化를 꾀한다.

- 다양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의해 작성된 文書들을 標準化 내지, 互換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한글 코드를 標準化한다.

먼저 한글 文書 標準化의 첫걸음이 될 南韓의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問題點을 살펴보고 개선 方案 등을 생각해 보자.

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보석글과 행정전산망 標準 워드프로세서인 하나 워드프로세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글 등이다.

그러나 南韓에서 현재 使用되고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글 코드의 차이로 KS 標準은 2바이트 完成形이 채택되었으나 기존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2바이트 組合形 코드를 아직도 使用하고 있다. 둘째, 한글 文書 형식의 차이로 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들이 나름대로의 文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文書의 호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 한글 文書의 관리 기능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使用하여 文書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있지만 기존의 한글 워드프로세서들이 한글 文書 화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존의 DOS 역시 한글 文書에 대한 관리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개선 方案으로는 文書 관리 기능의 개선과 文書 형식의 標準化를 들 수 있다. 한글 文書 화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글 文書에 대한 情報 유지, 한글 文書 관리 명령어, 한글 文書의 코드변환 問題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文書 화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文書 작성, 편집 기능 이외에도 일반 화일 관리기능, 文書 형식 변환 기능, 文書 情報 유지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文書 형식의 標準化 方案으로서 기존의 文書의 끝부분에 워드프로세서에서 使用하는 情報 영역과 독립하여 標準化된 情報 유지 영역을 두거나 文書의 앞부분에 情報 유지 영역을 標準化하는 두가지 方案이 제시될 수 있다. 현재 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한글 文書 형식이 한글 워드프로세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글 文書의 호환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한글 字形에 관한 標準

字形 標準化 問題는 자판이나 코드 問題와 같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컴퓨터 혹은 인쇄기 회사마다 각기 새로운 字形을 개발해 使用하는데서 생기는 수고의 낭비를 막고, 광학 스캐너(optical scanner)를 통해 기존 인쇄물의 내용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일을 수월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폰트'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字形이 지엽적으로 만들어져서 字形의 선택에 대단한 제한이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일부 사식 기계에는 일본제 광학 字形이 대량으로 도입되어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을 출력할 때도 저장을 할 때와 같이 組合形 字形을 使用하느냐 完成形 字形을 使用하느냐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完成形 字形은 글자(음절) 한자 한자를 따로 제작하기 때문에 각 글자의 모양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 서체를 하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수고가 엄청나게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현행 完成形 標準코드에 준하는 새로운 한글 서체를 개발하려면 2,350자나 되는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영문의 경우 소문자와 대문자를 합해 52자만 만들어 주면 새 서체가 생기는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된다. 그동안의 납활자나 사진 식자기를 통한 재래식 인쇄방법으로는 한 음절 음절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출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타이프 세터나 레이저 프린터를 使用하는 전자사식에서는 한글의 음절을 이루는 자모들을 각기 만들어 놓고 이들을 조합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음절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組合形 字形은 完成形 字形과는 달리 한글의 구성법칙에 맞는 모든 음절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필요한 글자수가 적어 새로운 서체의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우리의 눈에 익은 명조체인 네모꼴 글씨와 다르다는 데에 問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메이커마다 다르게 만들어서 字形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 최근에는 수많은 ‘문자字形’이 만들어져 이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경비를 쓰고 있는 실정이므로, ‘字形의 개발 및 보급’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研究 課題이다.

한편 지난 6월 세계 한민족 科學技術 협회 전국위원의 말에 의하면 중국 연변에서 使用하고 있는 글자 字形은 bitmap방식으로 아주 정교하여 일반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南韓의 글자 字形보다 훨씬 보기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글자 字形도 상당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南北韓간의 상이한 字形 使用도 어떤 統一된 標準을 마련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을 위한 ‘폰트 협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字形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3.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

情報處理 分野의 南北韓 交流가 이루어질 때 한글 코드나 字形 등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情報處理用語가 標準化 되어져야 한다. 특히 北韓은 평양의 언어를 南韓은 서울의 언어를 각각 標準語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전문用語나 외래어에 특히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1990년도에 北韓에서 발간된 전자자동화 잡지 4월호 “프로그램 생산技術의 현 상태와 동향”에서는 ‘knowledg base’를 ‘資料기지’로 使用하고 있으며 南韓에서는 지식기저로 使用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개념을 다른用語로 使用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문지식 交流나 資料 交換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南北韓 학자들간의 交流가 이루어지고 서로간의 研究 論文이나 技術이전 및 전문지식의 相互 交換을 위해서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南韓에서는 情報處理 用語의 標準化를 크게 9개 종류에 걸쳐 標準化를 만들어 놓았다.

이 규격은 情報處理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用語와 그 읽는 방법, 의미 및 대응 영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이는 國際규격 ISO 2382/4 - 1974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의 情報處理 用語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 구성
- 2) 데이터 표현
- 3) 프로그래밍
- 4) 데이터 通信
- 5) 운영기법 및 기능
- 6) 도형處理
- 7) 신뢰도, 유지보수 및 이용도
- 8) 프로그램 언어
- 9) 情報 이론

일단 南北韓 학자들이 만나 情報處理 표기법과 用語를 交換하여 검토하고 틀린점을 토론하고 標準案을 확정지어야 한다. 먼저 南韓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각 用語를 번호, 用語 및 읽기, 의미 및 대응영어의 4개란으로 구분해 技術하였다. 단, 각각의 난에 대한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번호에 관한 표기법

- 번호는 6개의 숫자에 의해 표시한다.

(최초의 2개의 숫자는 규격번호를 나타내는 데 이는 情報處理 용어 번호의 끝 2자리와 같다. 다음 2개의 숫자는 규격내에서 동일한 분류를 구분하기 위해 使用된다. 마지막 2개 숫자는 동일 분류내의 일련번호이다.)

- 번호의 우측 상단의 별표는 그 用語가 KS 독자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2) 用語 및 읽기에 관한 표기법

- 동일한 의미를 표시하는 用語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그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使用한다.

- 用語의 일부가 괄호 기호로 둘러 싸여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을 생략해도 좋다는 것을 표시한다.

- 유사한 여러개의 의미를 지닌 경우는 (1), (2)... 등과 같이 표시한다.

(3) 의미에 관한 표기법

-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그 서술이 거의 동일한 2개이상의 用語는 대괄호 [] 를 사용하여 하나로 통합해서 규정한다.

(4) 대응 영어에 관한 표기법

- 이 난의 영어는 國際규격(ISO 2382/4)에 규정되어 있는 의미와 대응한다.

- 대응영어에 붙어 있는 괄호내의 주석표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國際규격 및 이 규격에서는 이 영어를 使用하지 않기 때문에 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표시한다.

② (使用하면 안된다.)

: 國際규격 및 이 규격에서는 用語 統一의 견지에서 영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③ (이 의미에서는 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國際규격 및 이 규격에서는 다른 의미로 使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서는 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표시한다.

④ (XX 뿐)

: 이 영어는 XX(국명)에서만 통용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4.01 일반 用語

번 호	用語및읽는법	의 미	대 응 영 어
04.01.01	文 書	데이터매체 및 거기에 기록된 데이터로서,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으며, 사람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것.	document
04.01.02	文書化	文書의 관리로서 그 확인, 수집, 處理, 보존, 배포 등도 포함한다.	documentation
04.01.03	文書(화)	주어진 주제에 관한 文書의 집합	documentation
04.01.04	기 호	개념의 관례적 표현 또는 일정한 약속에 의거한 개념의 표현	symbol

4. 個人用 컴퓨터의 규격

70년대 초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출현한 이래 여러가지 형태와 많은 발전을 해오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個人用 컴퓨터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情報化 시대와 情報通信은 물론이고 사무자동화 등으로 웬만한 중소기업의 업무지원이나 학교의 學生教育 및 실습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될 個人用 컴퓨터는 向後 統一된 國家에서의 教育, 通信, 資料交換 등을 위하여 규격 등이 標準化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南北韓 教育用 컴퓨터의 標準化를 이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統一조국의 중추세력이 될 자라나는 세대가 가장 많이 使用하게 될 컴퓨터가 教育用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南北韓 教育用 컴퓨터의 標準化를 위해 우선 南韓의 標準化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조 건	비 고
教 師 用	CPU : 80286 명령어 메모리 : 1MB이상 비디오 : 허클리스 모니터 : 모노 멀티싱크 HDD : 20MB이상 FDD : 3.5인치 1대, 5.25인치 1대 프린트 : 132컬럼	정부 標準기기 호환 CAI파일서버 역할 공중通信網
學 生 用	CPU : 8088 명령어 메모리 : 512KB이상 비디오 : 허클리스 모니터 : 모노 멀티싱크 FDD : 5.25인치 1대	정부 標準기기 호환
공 통 사 양	한글코드 : KS 5601 코드 키보드 : 정부 標準 배열 시력 보안용 필터	의무 부착

만약 北韓의 敎育용 컴퓨터의 標準化가 되어 있으면 위의 標準化를 가지고 서로의 技術적차를 고려하여 南北韓 단일 標準化를 마련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많은 협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北韓의 수준으로 보아 北韓이 標準化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北韓과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 의외로 쉽게 南北韓 단일 標準化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南北韓 標準化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1) 중앙處理 장치

CPU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로 미국 인텔사의 8088, 8086, 80186, 80286, 80386, 80486 등과 모토로라사의 6800, 68000, 68010, 68020, 68030, 68040 등으로 되어 있고 CPU의 處理 속도는 4.77MH, 5MH, 6MH, 8MH, 10MH, 12MH, 16MH, 20MH, 25MH, 33MH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XT급은 CPU가 8088, 8086 등으로 구성되며 AT급은 68000, 80186, 80286 EMD등으로 구성된다.

2) 주기억 장치

전원을 켜고 있을 때 使用 가능한 컴퓨터 용량을 말하며 OS, 프로그램 등이 운영 되는 공간이므로 용량은 클수록 좋다.

범위는 256KB, 512KB, 640KB, 1MB, 2MB, 4MB-16MB등으로 구성된다.

3) 모니터

크기로 보면 9", 12", 14", 15", 19", 21"등으로 나눌 수 있고 색상별로는 흑백(단색), 칼라 등이 있다. 화면과 본체의 어댑터와 일치해야 한다.

4) 기억 장치

FDD (FLOPPY DISK DRIVER), HDD(HARD DISK DRIVE)와 CTD (CARTRIDGE TAPE DRIVE), CDD(CARTRIDGE DISK DRIVER)등이 있다.

CTD는 주로 資料 복사 보관용으로 使用하며 CDD는 일종의 디스켓과 같은 하드 디스크라 하겠다.

5) 자판

이의 종류에는 84키, 96키, 101키 등이 있다. 이때 한글 자판과 標準자판을 살펴보아야 한다.

6) 확장슬롯

종류에는 8 BIT, 16 BIT, 32 BIT 슬롯 등이 있다.

7) 입출력 포트

종류에는 마우스 포트, 게임 포트, 시리얼 포트, 패럴렐 포트 등이 있다. 여기서 互換性 問題를 생각해야 한다.

8) 전원공급장치

주변 기기 등이 추가될 때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약 200와트 정도가 적절하다.

9) 프린터

공진청에서 89년 8월에 발표한 K.S. 규격을 고려해야 한다.

5. 情報通信網 설치에 관한 標準化

南北韓 情報處理 分野의 원활한 交流를 위하여 언젠가는 南北韓 通信網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研究의 필요성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國家的인 측면에서 情報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國家 전시스템에서의 총소요 전산 자원의 확보 및 배분과 그 이용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向後 情報, 産業, 技術 分野가 技術的 차원에서 國家 發展을 주도할 첨단 科學技術로서의 위치를 담당할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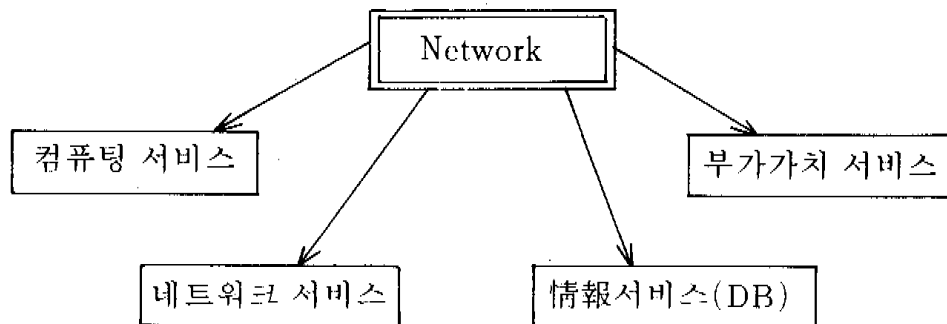
둘째, 敎育 研究 分野에서 컴퓨터는 學生 및 研究員으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증진하고 問題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敎育 및 研究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敎育 研究 영역에서의 최근 경향을 보면, 학문의 전수 및 컴퓨터 이용영역의 확산에 따라 보다 많은 전산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선진 技術의 최신 情報와 文獻 資料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컴퓨터가 敎育 研究 부문에서 필수 장비화되고 있다.

셋째, 민족 동질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다. 南北韓의 공동의 標準化된 通信網을 이용한다면 이산가족 問題 및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는 민족의 최대 염원인 統一을 앞당길 초석이 될 것이다.

通信網을 구축하는 데는 전용선을 이용하는 방법과 공중망을 이용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

전용선을 이용하면 새로운 선을 연결시키는 데 비용이 들지만 매우 빠르게 通信할 수 있어 대용량의 화일 전송을 가능하게 해 준다. 공중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선과 반대로 속도는 느리지만 기존의 선을 연결시키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선은 전송량이 많은 단체와 단체, 國家와 國家間 通信에 이용하면 좋고, 공중망은 전송량이 적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단체 간의 전송을 이용하면 좋다.

通信網이 연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첫째, Network Service을 받을 수 있다. Network Service를 기본 서비스로서 이 서비스를 基礎로 다른 모든 서비스들이 가능해 질 것이다. 즉 Network Service는 국내외 情報 交換을 가능하게 할 뿐더러 특수 컴퓨터자원, DB 등의 자원 공유 체계를 확립해 준다.

둘째, Computing Service이다. H/W와 S/W를 비롯한 Computing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컴퓨터 자원을 확충하고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는 情報檢索 및 기타 서비스(VAN)이다. 教育 및 研究 개발에 있어서 情報 檢索은 중요한 分野이다. 情報 검색을 위해 관련 Database System을 구축하고, 공동 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네트워크 등 각 전문 分野별

로 논리적 개념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相互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北韓과는 학술 전산망이나 행정 전산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학술 전산망일 경우는 우리나라 각 대학, 研究所, 도서관 등을 연결하여 北韓에 대한 研究, 科學技術에 대한 研究, 문화 交流에 대한 研究 등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행정 전산망일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아픔인 이산가족을 쉽고 확실하게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완전한 자유 왕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南北韓 標準案을 만드는 일이다. 南韓에서는 國際 標準인 OSI 標準을 기본으로 착수하였으므로 OSI 標準을 중심으로 標準化 動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O는 다른 시스템의 相互 接續을 실현하기 위한 開放形 시스템간 相互접속(OSI)의 標準化를 이미 1978년에 시작 하였다.

이러하 목적을 위하여 ISO는 開放形 시스템간 相互接續의 조건을 정하는 기본 참조 모델의 標準化에 착수하여 1984년에 기본 참조 모델의 國際標準인 ISO 7498을 제정하였다. 이 기본 참조 모델의 골격이 굳혀진 1980년 ISO는 기본 참조 모델의 개념에 基礎해 다시 각층의 서비스와 프로토콜의 標準化에 착수하여 開放形 시스템 相互接續을 위한 일련의 규격 개발을 진행시켰다. 이 結果 이들 중 트랜스포트 서비스와 프로토콜 및 세션 서비스와 프로트콜이 각각 1984년 및 1985년에 ISO로서 발행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전산망을 통하여 南北韓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情報를 交流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용선을 연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자 情報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北韓도 敎育 전산망이나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때 北韓의 데이터베이스의 構造와 南韓의 데이터베이스의 構造가 다르며 이를 서로 交換하는 데 많은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統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전화선과 같은 공중망이 南北韓에서 자유롭게 이용된다면 個人用 컴퓨터의 모뎀을 이용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의 情報交流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단계에서는 北韓의 한 가정에서 南韓의 백화점에 모뎀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南北韓 大學生들이

모뎀을 통하여 밤새도록 대화(채팅)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統一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V. 結 論

本 論文에서는 南北韓의 統一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科學技術 分野의 交流를 위해서 先行되어야 할 分野인,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에 대하여 研究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北韓의 情報處理 分野의 現況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동안의 科學技術分野의 標準化 交流現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北韓과의 실질적인 交流를 위한 方案으로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를 短期 標準化 課題와 中長期 標準化 課題로 분류하였으며 이어서 각 分野別 問題點과 南北韓 標準化를 위한 方案들을 研究하였다.

情報處理 分野의 短期 標準化 分野는 한글 및 한국어의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로 한글, 한자 코드, 글자판의 統一이 있으며 이들 分野는 현실적으로 南北韓이 제정되어 있고 國際標準案으로 까지 제출되어 있음으로 매우 시급하고 그 영향도 클 것이다. 그리고 이 分野는 北韓 뿐만 아니라 현재 中國標準인 연변의 조선족 코드 및 한글자판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밖에 字形, 한글 文書 標準化 등도 한글 문화권의 관점에서 相互 協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南北韓의 情報交換을 위하여 相互 開放이 허용되면 가장 먼저 情報 通信網 구축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또한 일상업무, 敎育, 通信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個人用 컴퓨터의 규격도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에 北韓에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글자판에 대한 標準案을 단독으로 ISO에 제출한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情報化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統一 問題에 있어서 情報處理分野의 標準化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南韓은 이미 7비트 코드 체계와 8비트 코드 체계를 겪고 난 후, 2바이

모뎀을 통하여 밤새도록 대화(채팅)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統一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V. 結 論

本 論文에서는 南北韓의 統一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科學技術 分野의 交流를 위해서 先行되어야 할 分野인,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에 대하여 研究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北韓의 情報處理 分野의 現況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동안의 科學技術分野의 標準化 交流現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北韓과의 실질적인 交流를 위한 方案으로 情報處理 標準化 分野를 短期 標準化 課題와 中長期 標準化 課題로 분류하였으며 이어서 각 分野別 問題點과 南北韓 標準化를 위한 方案들을 研究하였다.

情報處理 分野의 短期 標準化 分野는 한글 및 한국어의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로 한글, 한자 코드, 글자판의 統一이 있으며 이들 分野는 현실적으로 南北韓이 제정되어 있고 國際標準案으로 까지 제출되어 있음으로 매우 시급하고 그 영향도 클 것이다. 그리고 이 分野는 北韓 뿐만 아니라 현재 中國標準인 연변의 조선족 코드 및 한글자판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밖에 字形, 한글 文書 標準化 등도 한글 문화권의 관점에서 相互 協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南北韓의 情報交換을 위하여 相互 開放이 허용되면 가장 먼저 情報 通信網 구축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또한 일상업무, 敎育, 通信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個人用 컴퓨터의 규격도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에 北韓에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글자판에 대한 標準案을 단독으로 ISO에 제출한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情報化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統一 問題에 있어서 情報處理分野의 標準化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南韓은 이미 7비트 코드 체계와 8비트 코드 체계를 겪고 난 후, 2바이

트 完成形 코드나 2바이트 組合形 코드로 발전이 되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고 北韓은 매우 초보단계이므로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2바이트 코드 체계로 이끌어야 하겠다.

그러나 한글자판의 경우는 北韓의 자판과 조선족의 자판이 南韓의 자판과 크게 다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시안 E와 예비 시안 F을 北韓의 자판과 조선족의 자판으로 할당시킨 후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南北관계자가 최선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北韓이 ISO에 한글코드 및 한글자판 標準을 제출하였고 이는 國際標準이 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 이것을 막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問題는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情報處理 分野의 國際 標準化 領域도 방대하므로 시급히 '南北韓 情報處理 標準化 委員會'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南北韓 科學者 및 標準化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서로 간 南北韓의 資料를 交換하고 실정을 분석한 후 科學的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南北韓의 統一 標準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고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北韓의 자세에 따라서는 매우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 統一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이 課題가 우리 눈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때에 情報處理 分野의 제반 標準化는 연변, 사할린, 일본, 미국 등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누구에게나 바르게 적용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情報化 시대에 들어선 시점에서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는 統一과 마찬가지로 우리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써야 할 중대한 課題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당파나 어느 한 쪽의 이익 등을 초월하여 순수 科學으로 다루어 합리적이고 科學的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情報處理 分野의 標準化 方案은 科學技術交流를 위하여 北韓이 開放된다는 가정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이미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을 해체하고 開放으로 방향전환을 하였고 따라서 北韓도 開放의 흐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統一 후에 겪을 수 있는 많은 問題들을 미리 해결한다는 것만으로도 統一에 한걸음 앞선다고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工業振興廳, 標準局, 情報處理 分野의 工業標準化, 1989년 2월, pp-7, pp. -65
- [2] 김한택, 한글 입출력에 관한 연구, 퍼스널 컴퓨터, 1989년 8월
- [3] 21세기 마을, 한글 전산코드 및 글자판 공개토론 공청회, 情報化 時代,
- [4] 한글 무엇이 문제인가?, 1990년
- [5] 科學技術處, 한글 情報處理 標準化 研究(1), 1986년
- [6] 科學技術處, 한글 情報處理 標準化 研究(2), 1986년
- [7] 韓國情報科學會, 情報科學會誌, 1990년
- [8] 송 현, 한글 기계화 운동, 人物研究所, 1982년
- [9] 韓國 科學 技術團體 總聯合會, 世界 韓民族 科學 技術者 綜合 學術大會
- [10] 초록집, 情報產業 分科, 1990년
- [11] 정조영, 北韓의 科學 技術과 產業, 1990년
- [12] 韓國情報科學會, 情報處理 標準化의 現況과 展望, 1988년
- [13] 김홍규, “國語 國文學 古典 資料處理의 電算化를 위한 훈민정음 코드
- [14] 體系 構成 및 컴퓨터 處理 方案 研究”, 民族文化研究, 제23호, 고려대
- [15] 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90년 3월, p. 145-p. 188
- [16] 北韓의 中央科學技術 通報史, 전자 자동화 잡지, 1990년
- [17] 北韓의 태경수, 專門家 體系 技術, 北韓의 명전 시보, 1988년
- [18] 北韓의 科學 技術 出版社, 科學院 通報, 1990년
- [19] 國土統一院 調查 研究室, 北韓의 科學 技術 水準 分析, 1980년
- [20] 國土統一院 調查 研究室, 南北韓 社會 文化 및 藝術 分野 交流方案
- [21] 김강현, 왕숙희 情報處理 分野의 南北交流方案 研究, 北韓 統一 研究
- [22] 김강현, 백두권, 南北韓의 科學技術 및 情報處理標準化 交流 方案, 도산 아카데미, 1991년

- [23] 이준희, ISO DP 10646 標準과 組合形 한글 코드의 수용, 한글 전산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1년
- [24] 강태진, 새 한글 코드 어떻게 개정되나?, 한글 전산 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25] 金忠會, 完成形 한글은 한글 組織의 基本 原理에 어긋난다, 한글 전산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26] 강철희, 한글코드 제정시 고려사항, 한글 전산 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27] 황중선, 한글 자판 배열에 관한 고찰, 한글 전산 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28] 박동인, “컴퓨터 標準化 研究”에 대한 研究, 한글 전산 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29] 박동희, 한글 標準 코드의 발전 방향, 한글 전산 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30] 유경희, 우리가 만든 ‘우리 표준’이어야 한다. 한글 전산 코드 및 글자판 공개 토론회, 1990년
- [31] 유경희, 한글 부호의 南北韓 意見 差異, 등불 4 호.
- [32] 유경희, 南北韓의 國語 情報의 國語統一, 등불 3 호.
- [33] 王相漢, 北韓의 컴퓨터, 조선일보 제21746호, 7면, 1991년 9월7일

◆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的 問題點과 解決方案

제 성 호(수원대)

〈要約文〉

國土가 南北으로 分斷되어 戰爭의 고통을 겪은 우리 民族은 필연적으로 離散家族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分斷의 苦難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祖國의 統一을 達成하는 것이 當然히 韓民族의 夙願이면서 離散家族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人道的인 측면에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韓民族의 統一이라는 民族적 夙願과 동일한 차원에서 國家의 基本적 政策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하나의 國家 政策으로 추진하는 것이 口號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력한 실천의지와 실현가능성을 갖고 行하여지는 것이라면 再結合이 실현된 후 그 사후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豫비하고, 그 解決方案을 미리 검토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南北離散家族의 概念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南北離散家族이라 함은 1945년 9월 이후 金日까지 動機를 불문하고(따라서 ① 3.8선으로 分斷된 후 6.25동란전 離散된 경우, ② 韓國動亂으로 越南하거나 越北한 경우, ③ 韓國動亂後 어선이나 항공기 납치로 拉北되거나 自進 越北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分斷된 韓半島의 南北韓 地域에서 分斷된 상태로 각기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離散家族의 범위에는 부와 처,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南北離散家族이 再結合할 경우 발생하는 法的 問題點을 해결하고 또한 그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① 현재의 分斷狀況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② 남북한이 國家聯合을 구성한 경우, ③ 聯邦制로 統一한 경우, ④ 單一國家로 統一한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먼저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②의 경우 남북한이 완전히 2개의 國家로 分裂되는 경우로서 남북한의 離散家族들은 각기 별개의 國籍을 갖기 때문에 소위 國際私法에 따라 夫婦關係, 相續關係, 親子關係에 수반되는 法的 問題들이 解決될 것이므로 國內法적으로 별다른 法的 措置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南北韓間에 條約을 締結할 수도 있고, 또한 國內法에서 特則이나 經過規定을 들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③의 경우에는 聯邦國家에서의 一般通例에 따른 이른바 準國際私法의 解決에 의해 離散家族의 再結合문제에 처리될 것이다. 聯邦制 統一後 초기에는 당장 南北韓間에 統一的인 私法을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南北韓 私法의 效力을 각기 南北韓 地域에서 인정하는 방향에서의 解決策이 모색되어야 한다.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律問題의 解決은 뭐니해도 現分斷狀況下에서의 再結合時와 統一後 再結合時에 가장 문제된다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①의 경우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 ④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律問題는 夫婦關係, 財產關係, 親子關係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夫婦關係를 보면 먼저 夫婦의 再結合時 失蹤宣告制度나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不在宣告制度는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이 발생하고, 그나마 再會의 기한이 막연한 그러한 경우를 특별히 배려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平均人에게 기대되는 것은 설령 남북으로 配偶者가 갈려 있고, 또한 각기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를 받게 해서 再婚하게 함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一應 惡意의 後婚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別途의 立法的 해석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특히 不在宣告의 경우에는 失蹤宣告와는 달라서 殘留者와 再結合하더라도

殘留者가 未收復地區에 거주하는 이상 不在宣告를 取消할 수 없고 따라서 後婚은 取消할 수 없다—즉 後婚은 有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再結合時의 해결책은 사안마다 달라지겠으나(본문 참조), 남북한에 離散된 부부가 각기 현재 獨身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前婚을 부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음 假戶籍의 不眞正한 경우에도 휴전선이 언제 제거될지 또 離散家族이 언제 再結合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의 虛偽事實 記載의 假戶籍을 그렇지 않은 평상시 상황하에서의 虛偽事實 記載와 같은 次元과 視角에서 보는 것은 어딘지 자연스럽지 못하고 衡平의 理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法解釋에 의하여 또는 解釋이 너무나 無理한 것일 경우에는 特別立法에 의하여 적당한 조절을 가미하여 이 문제를 合理的으로 해결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財産關係를 보면 離散家族의 경우 不在宣告의 取消에 의하여 復籍된 자는 不在宣告法 제 5 조 1 항 단서, 제 4 조 및 民法 제 29 조 2 항 등에 의하여 보호된다. 즉 不在宣告가 取消되는 경우, 不在宣告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財産을 취득한 자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規定들에 의하여 남한의 後位相續人으로서 相續받은 자 또는 共同相續人들은 善意인 경우에는 離散家族 즉, 以北居住 殘留者 또는 不在者인 先位相續人 또는 共同相續人에게 利益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親子關係를 보면 子女의 경우에도 不在宣告가 取消되면 復籍하게 되며, 法律上的 父母子女關係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 戶籍에 入籍되지 않은 子女 및 婚姻外 出生子女는 民法의 規定에 의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또한 殘留子女로서 改姓하였거나 타인의 자녀로 入籍되어 있는 경우에도 現行法에 의하여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편 離散家族인 殘留者가 長子孫인 경우 그 자를 戶主로 하여 호적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며, 離散家族인 不在者의 代襲相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單一國家로 南北韓이 統一될 경우 離散家族 再結合時 法的 問題와 그 解決方案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 거주하던 離散家族, 즉 以北居住 殘留者의 경우 그가 거주하던 「未收復地區가 收復된, 즉 統一된 경우」에는 不在宣告法 제 5 조의 規定에 의해 不在宣告가 取消되게 된다. 동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殘留者의 생존여부를 불문하며 取消의 宣告에 따라 戶籍에 復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法制度上의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統一의 경우 復籍對象이 될 離散家族의 수가 하나 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을 것이므로 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越南者나 越北 내지 拉北者의 配偶者등 南韓居住 離散家族의 戶籍原簿를 복사하여 原簿地別로 분류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南韓居住 離散家族의 호적에 관한 한 호적전반의 재편제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문제처리의 정확,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統一後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財産相續과 관련하여 一應 惡意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民法의 관련 規定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財産關係를 一律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離散家族으로서 殘留中인 또는 不在中인 相續人(예컨대 配偶者, 자녀 기타의 근친)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離散家族 再結合時 상호간의 애정의 면에서도 바람직하기도 하거니와 統一後의 多事多難한 過渡期에 財産의 多寡를 막론하고, 분쟁을 야기시켜 財産을 둘러싼 骨肉相爭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소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장기간 離散되었다가 다시 만난 친족간의 아름다운 情誼를 해침으로써 재출발을 위한 가족의 구성, 조화의식에 有害하다는 측면에서 民法의 關聯規定의 적용을 배제하고, 남한이나 북한에서 기왕에 개시된 財産相續과 그 歸屬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具體的인 立法的 解決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I. 序 論

國土가 南北으로 분단되어 戰爭의 고통을 겪은 우리 民族은 필연적으로 離散家族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分斷의 苦痛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조국의 統一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민족의 業원이면서 離散家族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人道的인 차원에서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한 민족의 統一이라는 민족적 業원과 동일한 次元에서 國家의 基本政策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南北 離散家族이 再結合하여 각자 자신의 緣故를 회복하게 되면 감격과 기쁨의 파고가 지나간 뒤 많은 社會·經濟的인 問題가 밀려올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夫婦關係와 財產關係(특히 相續)를 둘러싼 問題가 再結合한 사람들간에 발생하여 서로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이질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國家政策으로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추진하는 것이 口號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력한 意志와 實現可能性을 갖고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事後的인 法律問題에 대해서도 미리 예비하고 그 解決方案을 검토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먼저 離散家族의 概念과 現在의 南北韓 分斷狀況下에서 이에 해당하는 概念인 不在者 및 殘留者의 意義, 그리고 離散家族의 態樣에 관해서 살펴 보고,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의 法的 根據를 考察한 다음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時 發生하는 法的 問題點과 解決方案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南北離散家族의 意義와 類型

1. 南北離散家族의 意義

離散家族의 意義는 극히 多義的으로 사용되며, 그 範圍도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되므로 本研究의 範圍를 한정하기 위해 離散家族의 意義와 그 範圍를 明白히 定할 必要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離散」의 의미를 考察하고, 이어 「家族」의 概念을 定하기로 한다.

가. 「南北」의 意義: 離散地域의 制限

韓半島는 現在 「事實上」 地理적으로 分斷되어 있어¹⁾ 南北韓에 居住하고 있는 家族 構成員들간에 交通·通信이 단절되어 있다. 離散家族은 南北韓間에

1) 金明基, 北方政策과 國際法(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89), pp.140, 143 참조.

I. 序 論

國土가 南北으로 분단되어 戰爭의 고통을 겪은 우리 民族은 필연적으로 離散家族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分斷의 苦痛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조국의 統一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민족의 業원이면서 離散家族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人道的인 차원에서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한 민족의 統一이라는 민족적 業원과 동일한 次元에서 國家의 基本政策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南北 離散家族이 再結合하여 각자 자신의 緣故를 회복하게 되면 감격과 기쁨의 파고가 지나간 뒤 많은 社會·經濟的인 問題가 밀려올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夫婦關係와 財產關係(특히 相續)를 둘러싼 問題가 再結合한 사람들간에 발생하여 서로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이질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國家政策으로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추진하는 것이 口號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력한 意志와 實現可能性을 갖고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事後的인 法律問題에 대해서도 미리 예비하고 그 解決方案을 검토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먼저 離散家族의 概念과 現在의 南北韓 分斷狀況下에서 이에 해당하는 概念인 不在者 및 殘留者의 意義, 그리고 離散家族의 態樣에 관해서 살펴 보고,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의 法的 根據를 考察한 다음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時 發生하는 法的 問題點과 解決方案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南北離散家族의 意義와 類型

1. 南北離散家族의 意義

離散家族의 意義는 극히 多義的으로 사용되며, 그 範圍도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되므로 本研究의 範圍를 한정하기 위해 離散家族의 意義와 그 範圍를 明白히 定할 必要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離散」의 의미를 考察하고, 이어 「家族」의 概念을 定하기로 한다.

가. 「南北」의 意義: 離散地域의 制限

韓半島는 現在 「事實上」 地理적으로 分斷되어 있어¹⁾ 南北韓에 居住하고 있는 家族 構成員들간에 交通·通信이 단절되어 있다. 離散家族은 南北韓間에

1) 金明基, 北方政策과 國際法(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89), pp.140, 143 참조.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其他의 地域에도 있으나 本稿에서는 「南北韓」에 離散되어 있는 것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中國이나 蘇聯에 離散되어 있는 약 150만의 在中僑胞²⁾나 약 35萬의 在蘇聯僑胞³⁾ 등은 여기서 除外하기로 한다.

1953년의 停戰協定 第59項에 規定된 失鄉地域, 즉 離散地域은 ‘本停戰協定에 의해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resided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e Agreement) 또는 ‘本停戰協定에 의해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resided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e Agreement)로 明示되어 있으며, 1974년의 國際人道法專門家會議(Conferenc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決議 第2號에는 ‘南北으로 흩어진’으로 表示되어 있다.⁴⁾

本稿는 南北間에 離散된 家族의 問題를 다루고자 하므로 당연히 離散地域은 南北韓의 統治權이 미치는 地域으로 限定되어야 한다. 즉 「南北」은 離散地域으로서의 南北韓을 의미한다. 그러나 國際赤十字委員會의 立場에서 볼 때 離散地域은 「世界의 모든 地域」(all parts of the world)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5)

나. 「離散」의 意義

(1) 離散의 一般의 概念

法律上 「離散」(dispersed)이라는 用語는 매우 多義的으로 사용되나 一般的으로 「解體」, 「分散」, 「離別」, 「斷絶」 등 여러가지 苦痛의 加重狀態를 의미하는 含蓄的인 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國際協定이나 決議에서는 흔히 「離散」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前者의 경우로서 1949년의 「Geneva 第4協約」 第25條와 第26條, 1957년의 第19次 國際赤十字會議의 決議 第20號, 그리고 1965년의 第20次 國際赤十字會議(XX-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의 決議 第19號 등에서 각기 모두 「離散」(dispersed)으로 規定하고 있다.

後者의 경우로서는 1952년의 第18次 國際赤十字會議의 決議 第20號에서 ‘家庭으로 돌아가기가 妨害된’(prevented from returning to their home)으로 表示되어 있고, 1953년의 韓國停戰協定 第59項에서 「失鄉」(displaced) 또는 ‘歸鄉하기를 願하는’(desire to return home)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서울: 대한적십자사, 1976), p.140.

3) Ibid., p.127.

4) 金明基·지봉도, “南北 離散家族再會에 관한 研究”, 人道法論叢, 제4·5호 (1983), p.11.

5) ICRC, *The Central Tracing Agency*(Geneva: ICRC, no date), p.5.

6) K. Dais, *Human Society*(New York: Macmillan, 1969), p.397.

표현이 다소 다를지라도 이상의 規定은 모두 「離散」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離散의 概念을 離散原因과 離散時期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2) 離散原因

離散의 原因은 自進 越南·越北, 強制拉致, 北韓 義勇軍에의 強制入隊, 日本에서의 北送, 38線으로부터 休戰線으로 分斷線의 變更, 其他 事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家族集團의 構成員의 接觸을 再樹立한다'⁷⁾(to reestablish contacts between members of family group)는 點에서 이상의 어느 경우나 모두 同一하다. 따라서 離散家族의 範圍는 離散의 原因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自進 離散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動機가 強壓政治에 대한 不滿, 思想의 差異, 食糧不足과 失職, 原子彈投下の 恐怖, 愛情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動機를 불문하고 모두 離散家族으로 보아야 한다.⁸⁾

(3) 離散時期

南北韓의 離散家族은 대부분 休戰線을 설치하여 韓半島를 南北으로 分斷시킨 UN軍總司令官과 中共軍最高司令官 및 中共人民志願軍司令官間에 署名된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1953년 7月 27日 以前에 發生한 것이나,⁹⁾ 38線을 劃定하여 南北을 分斷시킨 UN軍總司令官 D. MacArthur의 一般命令 第1號 (General Order No.1)가 布告된 1945년 9月 2日 以後 停戰 以前까지의 사이에 離散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停戰 以後 漁船·航空機와 함께 北韓에 拉致되어 今일까지 歸鄉하지 못한 相當數의 人員도 離散家族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컨대, 離散의 期間은 1945년 9月 以後 今일까지로 보아야 한다.¹⁰⁾

이들은 모두 南北分斷의 結果로 發生한 것이며 또 본래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家族單位의 安全을 위한 것'(to safeguard the family unit)이며,¹¹⁾ 이러한 點에서 上記 3者는 모두 同一하기 때문이다.

다. 家族의 意義

7) J. Pictet, *Geneva Convention IV, Commentary* (Geneva : ICRC, 1958), p.196.

8) 尹世昌外, 南北韓家族法의 比較와 問題點 및 對備策, 72-3-93(서울: 國土統一院, 1972), p. 28.

9) *Ibid.*

10) *Ibid.*, p.27;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11.

11) J.S. Pictet, *supra* note 7, p.196.

‘모든 人間社會에 기본이 되는 機構’(an institution found in all human societies)의 構成員인 家族은 法的 側面에서 볼 때 一般國際法上的 概念이 아니며 國內私法上的 概念이다.

1948년의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第16條 第3項에 표시된 「家族」(the family), 1949년의 Geneva 第4協約(Geneva Convention IV) 第25條에 規定된 「그들의 家族」(their families), 同協約 第26條에 規定된 「離散家族」(dispersed families), 1965년의 第20次 國際赤十字會議의 決議 第19號에 표시된 「離散家族」(dispersed families), 1974년의 國際人道法 專門家會議의 決議 第2號에 표시된 「離散家族」(dispersed families) 등에서 보듯이 國際條約이나 宣言 및 각종의 決議에서 家族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으나, 國內法과는 구별되는 國際法上 特殊한(내지 固有한) 意味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上記 條約·宣言 및 決議의 그 어느 것에 있어서도 家族의 定義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條約·宣言·決議에서 規定된 일련의 家族의 概念은 그 나름의 特別國際法上的 (一般國際法上은 아니더라도) 概念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國際法上 家族에 대한 有權的인 定義가 없으므로 1969년의 條約法에 관한 Vienna協約 第31條에 따라 上記 諸條約·宣言·決議의 文脈上 「家族」을 通常的인 意味(ordinary meaning)로 解釋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 研究의 目的上 通常的 意味의 家族概念의 定立을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民法과 北韓法上的 定義를 살펴보고, 東西獨의 離散家族 再結合의 경우에 있어서 援用된 家族의 意義와 範圍, 그리고 國際赤十字委員會의 慣行上 通用되는 定義 등을 살펴보고 나름의 定義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1) 大韓民國 民法上 家族의 定義

大韓民國의 家族의 意義와 範圍는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民法上 一家(戶籍)는 戶主와 家族으로 構成되므로 결국 家族은 一家의 構成員으로서 戶主가 아닌 者를 말한다.¹²⁾

民法 第779條는 家族의 範圍를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기타 本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同條의 ‘其他 本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란 ① 夫의 血族이 아닌 妻의 直系卑屬이 夫家에 入籍한 者(同法 第784條)와 ② 戶主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할 때 廢家의 家族(同法 第785條)을 말한다.¹³⁾

그리고 民法 第780條는 戶主의 變更의 경우 家族의 範圍를 “戶主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前戶主의 家族은 新戶主의 家族이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12) 金容漢, 改稿親族相續法(서울:博英社, 1964), p.110; 張慶鶴, 新親族相續法(서울:三中堂, 1962), p.76; 鄭光鉉, 新親族相續法概論(서울:法文社, 1959), p.112; 金疇洙, 民法概論(서울:三英社, 1976), p.639.

13) 張慶鶴, *supra* note 12, p.76.

따라서 民法上 家族은 반드시 戶主와 親戚關係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戶主와 親族關係에 있으면 다 家族이 되는 것도 아니다. 家族은 어디까지나 戶主와 同一家內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戶主와 親族關係의 有無는 不問한다.¹⁴⁾

(2) 北韓法上 家族의 意義

北韓에는 統一的인 家族法이 없고 또 家族에 관한 其他의 成文法도 없으므로 家族의 範圍는 分明치 않다. 조일호著 「조선 가족법」에는 北韓의 家族法의 淵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열거되어 있다.

(i) 1946年 7月 30日의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임시인민위원회의 규정 제54호)

(ii) 1946年 9月 14日의 「북조선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시행세칙」(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 제78호)

(iii) 1949年 12月 31日의 「입양의 설정에 관하여」(내각지시 제473호)

(iv) 1955年의 3月 5日의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내각결정 제28호)

(v) 1956年 3月 8日의 「협의 이혼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내각결정 제24호)

(vi) 1956年 3月 16日의 「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사법상 규칙 제9호).¹⁵⁾

위에 列擧한 成文法 중 家族의 範圍를 정한 것은 없으나 戶主制度가 아직 存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家族制度는 廢止되고 말았으며, 따라서 戶主制度가 없어지고 戶主와 家族이라는 概念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見解¹⁶⁾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보아 아직 北韓에도 戶主制度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i) 1946年 8月 9日의 「북조선내 공민증교부실시에 관한 세칙」 제20조에는 “가족명수의 성명, 연령, 호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기입한 후 . . . 시·면 인민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이라 規定하고 있으며, (ii) 1946년 8월 9日의 「공민증에 관한 의정서」(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7호) 제10조에는 “공민증의 交付를 신청할 때에는 호적증에 의해서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한 증명이나 . . .”라 規定하고 있고, 또 (iii) 1947년 4월 8일 「호적사무에 관한 의정

14) 鄭光鉉, *supra* note 12, p.112.

15) 조일호, 조선가족법(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pp.47-49; 이외에도 家族法의 淵源이라 할 수 있는 法令에 관해서는 崔達坤, “韓國家族法의 異質性과 同質性”, 家族法研究, 제3호(1989), pp.188-189 참조.

16) 李熙鳳, 韓國家族法上の 問題點(서울: 일신사, 1976), pp.367-370; 尹世昌外, *supra* note 8, p.21

서」(인민위원회 결정 제26호) 등에 「호주」, 「호적」 등의 表現이 있는 것으로 보아 戶籍制度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¹⁷⁾

北韓法에 따르면 家族은 扶養을 標準으로 하여, 扶養의 權利·義務를 지는 一定한 親戚 사이와 기타 家族經濟生活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¹⁸⁾

조일호著 “조선가족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공화국 가족법은 가족성원들간에 호상간에서 물질적 방조를 줄 의무가 예견되어 있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형제자매간에서의 부양의무 같은 것은 곧 그의 구체적 표현이다”.¹⁹⁾

北韓法上 보통 扶養의 義務를 지는 親族은 夫婦사이, 父母와 子女사이, 祖父母와 孫子女사이, 兄弟姊妹사이, 그리고 共同生活을 같이 하는 繼親과 繼子사이이다. 따라서 이들이 家族의 範圍에 속하게 된다.²⁰⁾

(3) 東西獨에 있어서의 家族의 範圍

1961년 8월의 Berlin障壁의 構築으로 東西Berlin의 訪問은 완전히 遮斷되고 말았다. 그 후 1963년 12월 17일에 西Berlin市議會와 東獨政府間에 第1次 通行證協定이 締結되어 東西Berlin 家族이 相互 訪問할 수 있게 되었다. 同協定의 「議定書 附錄 I」에 의하면 訪問이 許容된 사람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親戚訪問에 該當하는 訪問은 父母, 子女, 祖父母, 孫子女, 兄弟姊妹, 叔母 및 伯母, 叔父, 조카, 조카딸 그리고 그들의 男便과 夫人 또 夫婦끼리의 訪問이다”.²¹⁾

1964年 9月 24日 締結된 第2次 通行證協定의 「議定書 附錄 I」의 1항 (c) 호도 第1次 通行證協定과 同一하게 規定하고 있으며, 1965年 11月 15日에 締結

17)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p.7-8.

18) 尹世昌外, *supra* note 8, p.21.

19) 조일호, *supra* note 15, p.45.

20) 尹世昌外, *supra* note 8, pp.21-22; 北韓의 「현대조선말사전」은 「가족」을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부부와 부모, 아들과 딸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집단의 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등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림을 하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8), p.14; 한편 北韓의 家族法과 南北韓의 家族制度의 比較에 관해서는 崔達坤, *supra* note 15, pp.187-218; 崔達坤, “北韓家族法の 指導的 原理”, 法律行政論集(고려대), 제14집(1976), pp.117-142 참조.

21) 議定書 附錄 I의 2항.

된 第3次 通行證協定の 「議定書 附錄 I」의 1항 (c)호, 1966年 3月 7日의 第4次 通行證協定の 「議定書 附錄 I」의 1항 (c)호도 역시 同一하게 規定하고 있다.²²⁾

(4) 國際赤十字委員會의 家族의 意義

赤十字事業의 範圍에 들어가는 離散家族再結合의 對象은 「家族」에 限한다.²³⁾ 1956年 武力衝突의 犠牲者의 保護를 위한 赤十字의 活動에 관한 세미나에 의하면 赤十字事業의 慣例上 赤十字가 周旋한 家族의 再結合의 範圍는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다.

- (i) 夫婦의 再結合
- (ii) 未成年者인 子女와 그 父母와의 再結合
- (iii) 病者나 老人으로서 그들의 子女·孫子女 혹은 扶養能力이 있는 기타 家族과의 再結合²⁴⁾

(5) 國際人道法專門家會議의 家族의 意義

1974年의 國際人道法專門家會議의 決議 第4號는 家族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本的인 集團을 構成하는 家族과 함께 살 權利를 確認하고, ... 家族이란 用語는 단순히 그의 妻와 子女에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直系尊屬에게도 適用할 것을 提議한다...”.

同決議에서 家族의 範圍는 夫婦, 父母와 子女, 祖父母와 孫子女로 明示되어 있다.

(6) 人道法國際研究所 理事會의 家族의 意義

1980年 1月 27日에 San Remo에서 開催된 人道法國際研究所 理事會(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에서 採擇한 “家族再結合에 관한 節次上의 原則體制”(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cedures on the Reunification of Families) 前文은 家族의 범위를 다음과

22)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8.

23) 崔殷範, 南北接觸에 따른 諸般問題, 資料 72-4-3(서울: 國土統一院, 1972), p.33.

24) Commission for the Red Cross Centenary in Switzerland, *Seminar on the Activity of the Red Cross on Behalf of the Victims of Armed Conflicts* (Geneva: Commission for the Red Cross Centenary in Switzerland, 1956), p.130.

같이 宣言하고 있다.

“... 家族이란 社會의 自然的 基本的 單位集團(group unit)이며 社會 및 國家로 부터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家族의 最少 概念은 配偶者, 扶養子女 및 扶養父母이고, 이와 같은 概念을 넓혀서 社會 및 文化的 慣習에 따라 인정되는 보다 광범위한 家族單位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考慮하며...”

이처럼 상기 「原則體制」는 家族의 範圍를 夫婦, 扶養子女, 扶養父母로 明示하고 社會的·文化的 慣習에 따라 그 範圍를 넓힐 수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²⁵⁾

(7) 結 語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南北韓, 東西獨, 國際赤十字委員會, 國際人道法專門家會議, 人道法國際研究所 등이 각기 이해하는 再結合 對象인 家族의 範圍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 그러나 家族의 範圍를 ①父와 妻, ②父母와 子女, ③祖父母와 孫子女, ④兄弟姉妹로²⁶⁾ 보고 있는 데는 대체로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가족의 範圍를 위와 같이 정하므로써,²⁷⁾ 離散家族의 범위에서 親戚과 親知는 배제하기로 한다.²⁸⁾

라. 南北離散家族의 意義

위에서 南北離散家族의 意義를 살펴 보기 위해 「南北」, 「離散」 그리고 「家族」의 概念에 관해 考察해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南北離散家族이라 함은 1948년 9월 이후 금일까지 動機를 不問하고 分斷된 韓半島의 南北韓 地域에서 分離된 상태로 각기 거주하고 있는 家族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離散家族의 範圍에는 夫와 妻, 父母와 子女, 祖父母와 孫子女 및 兄弟姉妹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25) ICRC,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May - June(Geneva : ICRC, 1980), pp.165-166.

26) 다만 兄弟姉妹를 南北韓과 東西獨은 家族으로 보나, 國際赤十字委員會와 國際人道法 專門家會議는 家族으로 보지 않고 있다.

27)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10 ; 家族의 規模는 漸次 작아져 가고 있으며(J.F.Cuber, *Sociology*, 2nd ed.(New York : Appleton, 1951), p.437), 核家族은 父母와 그의 子女로 構成된다(*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7(London : William Benton, 1979), p.155). 社會學的 意味의 家族은 兩親과 子女로 構成된다(K.Dais, *supra* note 6, p.397.

28) 崔殷範, *supra* note 23, p.36.

2. 殘留者 및 不在者와의 關係

현재 國內法上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 자체를 規律하는 單行法律은 制定되어 있지 않다. 또한 離散家族이라는 用語가 法律用語로 定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現行法上 南北 離散家族의 어느 一方에 해당하는 者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用語로는 殘留者와 不在者가 있다. 1967년 1월 16일 法律 제1867호로 제정된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이하 不在宣告法이라 한다)은 殘留者에 대하여 「戶籍에 未收復地區²⁹⁾ 居住로 표시된 자」라고 規定하고,³⁰⁾ 不在者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未收復地區 以南의 지역에서 그 住所나 居所를 떠난 후 生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고 하고 있다.³¹⁾

不在宣告法은 未收復地區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就籍한 자 중 未收復地區 殘留者에 대한 不在宣告와 未收復地區 以南의 지역에서 住所나 居所를 떠나 行方不明이 된 자에 대한 失蹤宣告의 節次에 관한 特例 및 二重戶籍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³²⁾이기는 하나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발생하는 法律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法規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겠다. 요컨대, 現行法上 殘留者는 北韓居住 越南者의 離散家族을, 그리고 不在者는 남한의 住所 또는 居所로부터의 離脫者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많은 경우 이상의 두 用語를 주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3. 南北離散家族의 類型

南北離散家族이라 함은 家族이 離散하게 된 原因과 動機는 각기 다르다 해도 要는 南北으로 갈라져 있는 對象이라고 할 수 있다. 南北離散家族을 離散原因과 離散時期 및 離散地域 등을 고려하여 類型化시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8.15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地域에서 越南한 사람과 北韓에 殘留하고 있는 家族과의 關係를 들 수 있다. 특히 北韓에서는 北韓地域에 남아 있는 家族에 대해 「越南者家族」이라는 用語로 부르고 있다.³³⁾

29) 不在宣告法에서 未收復地區라 함은 「1953년 7월 28일 현재 行政區域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일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同法 제2조 제2항.

31) 同法 제2조 제3항.

32) 同法 제1조 (目的) 참조.

33) 1976년 北韓地域 出身(越南者)들의 假戶籍 申告를 基準으로 以北五道廳이 集計한 南韓居住 離散家族 統計는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524만 3,000명으로 나타나 있다.

6.25 勃發 以前에 北韓의 共產虐政을 탈출하여 南下한 350여만명의 경우는 물론 戰爭期間中 緊急避難의 길에 올라 南下한 100여만의 경우 그 慘酷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이 避難民의 대부분은 家族의 일부를 北韓에 둔 채로 避難했거나 單身으로 越南한 사람들이었다. 戰爭의 渦中에서 미처 家族들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避難 隊列에 끼어든 사람, 家族과 함께 南下하다가 途中에서 生離別한 사람, 곧 統一이 될 것으로 믿고 머지 않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家族과 헤어진 사람, 두고 온 家族에 대한 避難民의 事緣들은 한결같이 哀切하고 苛酷한 것이었다.³⁴⁾

둘째, 8.15 해방 후부터 오늘에까지 南韓地域에서 北韓으로 越北한 사람과 在南家族과의 關係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6.25動亂을 계기로 대거 越北한 자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 北韓에서는 越北者에 대하여 「南韓出身」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셋째, 拉北人士와 그 家族을 들 수 있다. 즉 1950年 6.25 北韓에서의 南侵當時 政界를 비롯한 各界 著名人士들을 北韓으로 強制拉致한 사실이 있다. 그 數는 많지는 않으나 그들과 在南家族과의 關係를 말할 수 있다. 또한 退却하는 北韓共產軍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간 拉北人士들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男子들로서 그들은 家族들을 전부 南韓에 남겨둔 채 單身으로 북녘땅에서 望郷과 囹圄의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다.

네째, 南北離散家族의 발생은 6.25動亂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다. 北韓側은 停戰協定 成立後에도 各種의 挑發과 拉致行爲를 恣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離散家族들을 만들어 냈다. KAL機 拉北등 其他 事故로 因한 離散家族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³⁵⁾ 이 외에도 8.15 解放前에 離散되어 38線·休

<표 1> 越南家族 統計

出身道別	人員數	出身道別	人員數
平安北道	843,200명	黃海道	1,364,600명
平安南道	1,132,900명	京畿 및 江原道	100,000명
咸鏡北道	596,700명	(軍事分界線 以北)	
咸鏡南道	1,205,600명	計	5,243,000명

34) 任台淳, “南北韓 離散家族의 實態와 統一의 課題”, 統一論叢, 제3권 2호 (1983), p.122.

35) 北韓은 1954년부터 1983년 8월까지의 사이에 육상, 해상 및 공중에서 良民 3,176명을 北으로 끌어갔다. 그 중 良民(주로 漁夫) 3,267명은 送還했으나 449명은 아직도 北에 抑留한 채 送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경우도 그 대부분이 家族들을 南北地域에 남겨둔 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戰線의 障壁때문에 서로 찾지 못하고 있는 家族들도 있다.

이상의 離散家族의 類型中 再結合의 對象은 주로 앞의 3가지 부류, 즉 소위 「越南者家族」, 「南韓出身」(越北者) 및 拉北人士등이 될 것이다.³⁶⁾ 여기서 前者는 不在宣告法上 殘留者에, 그리고 後의 二者는 不在者에 해당한다.

Ⅲ.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法的 根據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法的 根據는 다음과 같다.

1. 停戰協定

1953年 7월 27日의 停戰協定 第59項은 南北離散家族을 失鄉私民이라 명시하고 失鄉私民에 관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7.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軍事 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년 6월 24일에 本 停戰協定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以北에 居住한 실향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以北地域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本 停戰協定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朝鮮인민군 最高사령관과 中國인민지원군 사령관의 軍事통제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년 6월 24일에 本 停戰協定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以南에 居住한 실향사민에 對하여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朝鮮인민군 最高사령관과 中國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以南地域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各 方面司令官은 책임지고 本目 規定의 내용을 그의 軍事통제지역에 광범하게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 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실향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 록 한다.

L. (省略)

ㄷ. 雙方의 本조 제59항 7목에 規定한 私民의 귀향과 本조 第59항 L목에 規定한 私民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本 停戰協定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빨리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 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朝鮮인민군 最高사령관과 中國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同規定에 의거하여 설치된 「失鄉私民 歸鄉協調委員會」를 통하여 失鄉私民의 귀향노력이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까지의 사이에 전개되었 다.³⁷⁾ 大韓民國측은 공개 신고의 방법을 통해 北韓地域으로의 귀향희망을 밝힌

36) 尹世昌外, *supra* note 8, pp.26-27.

37) 對韓赤十字社, *supra* note 2, pp.98-99.

戰線의 障壁때문에 서로 찾지 못하고 있는 家族들도 있다.

이상의 離散家族의 類型中 再結合의 對象은 주로 앞의 3가지 부류, 즉 소위 「越南者家族」, 「南韓出身」(越北者) 및 拉北人士등이 될 것이다.³⁶⁾ 여기서 前者는 不在宣告法上 殘留者에, 그리고 後의 二者는 不在者에 해당한다.

Ⅲ.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法的 根據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法的 根據는 다음과 같다.

1. 停戰協定

1953年 7월 27日의 停戰協定 第59項은 南北離散家族을 失鄉私民이라 명시하고 失鄉私民에 관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7.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軍事 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년 6월 24일에 本 停戰協定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以北에 居住한 실향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以北地域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本 停戰協定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朝鮮인민군 最高사령관과 中國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년 6월 24일에 本 停戰協定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以南에 居住한 실향사민에 대하여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朝鮮인민군 最高사령관과 中國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以南地域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各 方面司令官은 책임지고 本目 規定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하게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 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실향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 록 한다.

L. (省略)

ㄷ. 雙方의 本조 제59항 7목에 規定한 私民의 귀향과 本조 第59항 L목에 規定한 私民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本 停戰協定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빨리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 명으로 구성하되 그 中 2명은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이 이를 임명하며, 그 中 2명은 朝鮮인민군 最高사령관과 中國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同規定에 의거하여 설치된 「失鄉私民 歸鄉協調委員會」를 통하여 失鄉私民의 귀향노력이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까지의 사이에 전개되었 다.³⁷⁾ 大韓民國측은 공개 신고의 방법을 통해 北韓地域으로의 귀향희망을 밝힌

36) 尹世昌外, *supra* note 8, pp.26-27.

37) 對韓赤十字社, *supra* note 2, pp.98-99.

以北出身 실향사민 76명중 최종단계에서 의사를 변경한 39명을 제외한 37명을 1954년 3월 1일 판문점에서 北韓側에 넘겨 주었으나, 北韓側은 19명(Turkey人 11名과 白系 Russia人 8名)의 외국인만을 넘겨 보내고 내국인은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³⁸⁾

同 停戰協定은 國際法上 條約으로서 南北韓을 구속한다. 따라서 동조항에 의해 南北韓은 離散家族이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해야 할’ 法的 義務를 진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해야 할 義務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결과 면에서 ‘돌아가 그의 家族構成員과 再結合하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해야 할’ 法的 義務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전협정의 當事者가 일방은 “國際聯合”이고 타방은 “北韓·中國”이므로 대한민국이 北韓에 대해 停戰協定을 근거로 하여 실향민의 귀향을 요구할 法的 權利는 없으며 오직 國際聯合의 이름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는 견해³⁹⁾가 있으나, 이는 停戰協定의 當事者問題를 지나치게 形式論理的으로 考察한 것으로서 수락할 수 없다.

2. Geneva 第4協約

1949년의 Geneva 第4協約 제26조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관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各 衝突當事者는 전쟁 때문에 離散된 家族들이 상호연결을 회복하고, 될 수 있으면 再會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조회에 대하여 便宜를 제공하여야 한다. 各 衝突當事者는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서 용인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안전보장 규칙에 종사하는 한, 동 단체의 사업을 獎勵하여야 한다.”

大韓民國은 1966년 8월 16일에 Geneva 第4協約에 가입했으며,⁴⁰⁾ 北韓은 1957년 8월 27일에 가입했으므로,⁴¹⁾ 동협약은 南北韓을 法的으로 拘束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北韓에 대해 동협약에 의거하여 離散家族 찾기와 再會의 요구를 할 경우 北韓은 이에 응할 法的 義務가 있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먼저 再會(meeting)라고만 規定되어 있을 뿐인데, 再結合까지 義務지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가가 문제된다. 再會의 목적이 단순히 회합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再結合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擴大解釋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8) Ibid.

39) 金明基, 國際法上 南北韓의 法的地位(서울: 華學社, 1980), p.85 이하 참조; 金明基, “南北離散家族再會의 國際法的 接近”, 北韓, 1988년 5월호, p.57.

40) G.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The Law of Armed Conflict*(London: Stevens, 1968), p.793.

41) Ibid.

다음으로 家族의 離散은 南北韓이 Geneva協約의 當事者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不遑及의 原則에 의해 協約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동조는 雙方當事者가 가입한 이후부터 오늘의 상황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同條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이 北韓에 대해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國家로 승인하는 결과로 되지 않는다. 이는 동조약 제3조에 명백히 規定되어 있다.⁴²⁾

3. Geneva協約 第I 追加議定書

1977년 「武力衝突에 적용되는 國際人道法の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The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Reaffi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제4회기에서 채택된 「Geneva協約 제I 追加議定書」(Protocol I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제74조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締結者 및 衝突當事者는 武力衝突의 결과로 離散된 家族들의 再結合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容易하게 하며, 특히 제협약 및 본의정서에 의하여 그리고 각기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따라 이러한 임무에 종사하는 人道的 團體들의 사업을 장려한다.

同議定書에 대한민국은 1978년 12월 7일에 署名, 1982년 1월 15일 批准書를 기탁하여 當事國이 되었다.⁴³⁾ 그리고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効함에 따라서 상기 Geneva 第4協約과 동일한 法的 拘束力을 갖게 되었다.

4.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1972년 11월 4일에 南北間에 체결된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1. 南北調節委員會는 1972년 7월 4일부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추진하고 南北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사업하는 등 합의된 祖國統一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24; 金明基, *supra* note 39, p.57.

43) 裴秉承, “1979年 제네바協約 追加議定書 批准上의 重要考慮事項”, 人道法論叢, 第3號 (1980), p.108.

同合意書에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관한 直接的 規定은 없으나, 同條는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추진하고 南北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며”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共同聲明 제3항과 제4항에 표시된 내용이 南北間의 法的義務로 수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南北韓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추진해야 할 法的義務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同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는 “추진해야 할 義務”이지 직접적으로 離散家族을 再結合하게 할 義務인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⁴⁾

IV.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과 法的 問題의 解決方案

1.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的 問題點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關係를 어떻게 規定하는가에 따라 再結合의 態樣이 달라진다는 인식하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統一에 이르는 段階別 接近方式에 따라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現在와 같은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와 어떤 형식으로든 南北韓이 統一로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再結合, 그리고 完成된 統一國家로서 南北韓이 완전히 統合된 後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각기 그 法的 性質을 달리 하므로 서로 다른 觀點과 視角에서 이 문제에 接近하지 않고 劃一的이고 一律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問題의 本質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統一에 이르는 段階別 接近方式에 따라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를 고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法的 問題點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本 研究를 위하여 고려해야 法的 問題狀況은 다음 몇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남북한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 둘째, 南北韓이 國家聯合을 형성한(또는 國家聯合의 方式으로 統一한) 狀況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셋째 南北韓이 聯邦國家를 구성한(또는 聯邦制로 統一한) 狀況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넷째, 南北韓이 완전한 單一國家로 統一되어 再結合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다시 離散家族이 남한에서 再結合하는 경우와 북한에서 再結合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넷째의 경우는 남한에 의해 북한이 吸收·併呑되는 방식의 統一의 경우와 북한에 의해 남한이 吸收·併呑되는 統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상기 제 유형중에서 첫째 유형은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分斷狀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雙方의 當局이 分斷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人道的인 堅持에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가능한 유형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둘째, 셋째, 넷째 유형은

44)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p.24-25; 金明基, *supra* note 39, p.58.

同合意書에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관한 直接的 規定은 없으나, 同條는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추진하고 南北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며”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共同聲明 제3항과 제4항에 표시된 내용이 南北間의 法的義務로 수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南北韓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추진해야 할 法的義務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同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는 “추진해야 할 義務”이지 직접적으로 離散家族을 再結合하게 할 義務인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⁴⁾

IV.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과 法的 問題의 解決方案

1.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的 問題點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關係를 어떻게 規定하는가에 따라 再結合의 態樣이 달라진다는 인식하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統一에 이르는 段階別 接近方式에 따라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現在와 같은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와 어떤 형식으로든 南北韓이 統一로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再結合, 그리고 完成된 統一國家로서 南北韓이 완전히 統合된 後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각기 그 法的 性質을 달리 하므로 서로 다른 觀點과 視角에서 이 문제에 接近하지 않고 劃一的이고 一律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問題의 本質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統一에 이르는 段階別 接近方式에 따라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를 고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法的 問題點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本 研究를 위하여 고려해야 法的 問題狀況은 다음 몇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남북한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 둘째, 南北韓이 國家聯合을 형성한(또는 國家聯合의 方式으로 統一한) 狀況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셋째 南北韓이 聯邦國家를 구성한(또는 聯邦制로 統一한) 狀況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넷째, 南北韓이 완전한 單一國家로 統一되어 再結合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다시 離散家族이 남한에서 再結合하는 경우와 북한에서 再結合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넷째의 경우는 남한에 의해 북한이 吸收·併呑되는 방식의 統一의 경우와 북한에 의해 남한이 吸收·併呑되는 統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상기 제 유형중에서 첫째 유형은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分斷狀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雙方의 當局이 分斷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人道的인 堅持에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가능한 유형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둘째, 셋째, 넷째 유형은

44) 金明基·지봉도, *supra* note 4, pp.24-25; 金明基, *supra* note 39, p.58.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모종의 어떤 형태로의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한에서 각기 떨어져 사는 離散家族이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前提條件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法的 問題로 제기되는 경우들이다. 6. 25동란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시 20세의 부부가 남북한에 離散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벌써 60세의 연령에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앞으로 1세대 이내에 統一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1세대 후에는 再結合이 문제될 생존한 離散家族, 특히 부부는 아마 거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稿는 가능한 모든 法的 狀況을 고려하여 각기의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가장 法政策的으로 妥當한 것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考慮는 捨象하고 法理論上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간단하나마 모두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態樣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統一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에서 再結合을 하게 될 當事者를 고려하여야 한다. 再結合의 주체는 주로 夫婦, 父母 및 子女, 親戚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夫婦일 것이다. 離散家族의 再結合의 態樣中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여타의 離散家族의 再結合 態樣에 대하여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夫婦의 再結合의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夫婦가 再結合하는 態樣만을 검토하고 기타의 경우는 생략하기로 한다.

南北離散家族 특히 夫婦의 再結合 類型은 부부의 性別 및 현재 居住地 과 거의 本籍地 및 再結合 場所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다.

<표 2> 離散된 夫婦의 居住地, 出身 및 再結合 場所

성별 및 현재 거주지	과거의 본적지	재결합 장소
南男 北女	南韓	南韓(1)
		北韓(2)
	北韓	南韓(3)
		北韓(4)
男女 北男	南韓	南韓(5)
		北韓(6)
	北韓	南韓(7)
		北韓(8)

그리고 이들 각자의 경우는 또한 다음의 離散된 夫婦 중 夫가 (1)再婚한 경우, (2)獨身인 경우, (3)事實婚關係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표 3> 離散된 夫婦의 現狀態

婦 / 夫	재혼한 경우	독신인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신 분 상 태	婦가 재혼한 경우(①)	좌동(④)	좌동(⑦)
	婦가 독신인 경우(②)	좌동(⑤)	좌동(⑧)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③)	좌동(⑥)	좌동(⑨)

결국 南北韓에 離散되어 있는 夫婦는 性別 및 현재의 居住地, 과거 離散 以前の 本籍地 및 再結合場所와 南北離散 以前の 夫와 婦가 현재의 身分狀態를 基準으로 하여 보면 결국 離散家族 再結合의 類型은 $8 \times 9 = 72$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法的 觀點에서 보면 實質上으로 그 內容이 同一한 경우가 많다(法的으로 問題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後述 참조).

2. 分斷狀況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는 첫째, 남한에서 再結合하는 경우와 둘째, 북한에서 再結合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가. 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1) 除籍된 離散家族의 復籍問題

6. 25동란을 전후하여 越南한 자의 戶籍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以北居

住 殘留者에 대해서는 不在宣告에 의해 除籍되어 家族關係가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不在宣告法은 配偶者(離散家族)를 이복에 두고 월남한 자의 경우 계속되는 分斷狀況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再結合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越南者인 離散家族의 戶籍에서 과거의 配偶者와 家族들을 除籍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時 不在宣告에 의해 제적되었던 以北居住 殘留者들의 復籍問題가 제기된다.

分斷狀況下에서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선별적인 復籍措置를 취하면 될 것이므로 이 자체에는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統一後 離散家族이 大量流入하는 경우에는 戶籍再編制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發生하게 될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離散家族의 再結合과 관련된 보다 實質的인 問題는 個別的이든 또는 制度에 의한 것이든 復籍措置를 취함으로써 호적상 二重婚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들에 관해서 다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2) 夫婦關係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가 取消되게 되면 殘留者로서 제적되었던 離散家族, 즉 以北居住 殘留者는 越南者의 호적에, 또한 不在者로서 除籍되었던 자도 原戶主의 戶籍에 復籍하게 된다. 이에 따라 不在宣告가 取消되기 이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法律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주로 身分關係를 둘러싼 문제들로서 夫婦(婚姻)關係, 相續問題, 親子關係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夫婦關係가 가장 문제된다.

① 再結合時 失蹤宣告 내지 不在宣告의 取消와 惡意의 婚姻 認定問題

엄밀한 의미에서 離散家族 재결합의 類型은 전술한 바와 같이 72가지로 나누어지나 夫婦關係를 기준으로 離散家族 재결합의 類型을 나누어 보면 (1) 본래 甲南乙女가 北韓에 本籍을 두고 있고 남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甲男이 북한에, 乙女가 남한에 있는 경우와 (2) 본래 甲男乙女가 북한에 本籍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甲男이 남한에, 乙女가 북한에 있는 경우로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가령 甲男이 越北者 또는 拉北者로서 離散된 경우는 (1)에 해당할 것이고, 甲男이 越南者로서 離散된 경우는 (2)에 해당될 것이다.

먼저 (1)의 경우 乙女는 民法 제27조에 따라 甲男에 대한 失蹤宣告에 의

45) (1)에서 甲男이 남한에, 乙女가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離散後의 결과만을 보면 (2)와 동일하므로 또한 (2)에서 甲男이 北韓에, 乙女가 南韓에 있는 경우는 반대로 (1)과 동일하므로 本稿에서는 본문의 (1) (2)를 중심으로 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해서⁴⁶⁾, (2)의 경우 甲男은 不在宣告法 제3조에 따라 乙女에 대한 不在宣告에 의해서⁴⁷⁾ 각각 호적을 정리하고 새로이 제3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⁴⁸⁾ 많은 사람이 이 두가지 방법에 의거하여 配偶者가 未收復地區에 있으면서도 生死與否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3자와 결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2)의 경우 越南者인 甲男이 丙女와 婚姻하여 婚姻申告를 하고 有子生女하여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離散家族인 乙女가 생존하여 現分斷狀況下에서 南北韓 當局의 노력으로 남한에서 再結合이 실현될 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한 이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乙女가 (1)의 경우 甲男이 生存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으로 法的으로 증명되는 경우 失蹤宣告는 取消되어야 한다.⁴⁹⁾ 失蹤宣告가 取消되면 소급해서 그 效力을 구실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失蹤宣告에 의하여 除籍되었던 身分關係는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失蹤宣告後 그 取消前에 惡意로 한 행위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 46) 甲男의 生死가 3년 이상 不分明하고(民法 제840조 5호), 甲男이 乙女를 惡意로 유기한 경우(民法 제840조 2호)라면 當然히 乙女는 甲男과 離婚할 수 있고, 만일 甲男이 5년 이상 生死가 不分明할 경우(民法 제27조) 失蹤宣告에 의하여(民法 제28조), 死亡한 사람과 같이 取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乙女의 結婚에는 아무런 支障이 없다.
- 47) 北韓이 本籍인데 乙女(妻)를 남겨두고 越南한 甲男을 생각해 본다. 이 경우 甲男은 越南後 假戶籍을 했어야 하고 假戶籍은 本戶籍과 같아야 하는 바, 甲男의 假戶籍에는 北韓에 居住하여 往來가 두절되어 있는 乙女가 甲男의 妻로서 엄연히 記載되어 있어야 한다. 甲男이 丙女와 事實적으로 夫婦生活을 하느냐의 여부는 여기에서 論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法律的으로는 重婚이 되기 때문에 甲男은 다른 여자 丙女와의 婚姻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 統一이 되어 언제 家族再結合을 할 수 있을가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 制度를 고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1967년 1월 16일 法律 제186호로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公布하고, 동월 31일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을 공포하였는 바, 동법 3조에 의하면 未收復地區인 以北에 남아 있는 사람, 즉 殘留者임이 分명한 때에는 法院은 戶主 또는 家族이나 檢事의 請求에 따라 不在宣告를 하여 同法 第4條에 의하면 不在宣告를 받은 者는 戶籍에서 除籍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民法 제980조 및 제997조가 適用되고 婚姻에 관하여는 失蹤宣告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大韓民國에 살고 있는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配偶者가 南北으로 갈려 있을 때 그리고 戶籍에 실려 있을 때, 本人이 願하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또 本人이 願하면 整理하고, 正正堂堂히 法律上 結婚을 할 수 있다.
- 48) 民法 제28조, 不在宣告法 제4조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裴慶淑, “以北에 配偶者 있는 者의 再婚問題” 法政研究誌(建國大), 1966년 12월, pp.81-87 참조.
- 49) 民法 제29조 1항 本文.

住 殘留者에 대해서는 不在宣告에 의해 除籍되어 家族關係가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不在宣告法은 配偶者(離散家族)를 이복에 두고 월남한 자의 경우 계속되는 分斷狀況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再結合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越南者인 離散家族의 戶籍에서 과거의 配偶者와 家族들을 除籍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時 不在宣告에 의해 제적되었던 以北居住 殘留者들의 復籍問題가 제기된다.

分斷狀況下에서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선별적인 復籍措置를 취하면 될 것이므로 이 자체에는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統一後 離散家族이 大量流入하는 경우에는 戶籍再編制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發生하게 될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離散家族의 再結合과 관련된 보다 實質的인 問題는 個別的이든 또는 制度에 의한 것이든 復籍措置를 취함으로써 호적상 二重婚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들에 관해서 다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2) 夫婦關係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가 取消되게 되면 殘留者로서 제적되었던 離散家族, 즉 以北居住 殘留者는 越南者의 호적에, 또한 不在者로서 除籍되었던 자도 原戶主의 戶籍에 復籍하게 된다. 이에 따라 不在宣告가 取消되기 이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法律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주로 身分關係를 둘러싼 문제들로서 夫婦(婚姻)關係, 相續問題, 親子關係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夫婦關係가 가장 문제된다.

① 再結合時 失蹤宣告 내지 不在宣告의 取消와 惡意의 婚姻 認定問題

엄밀한 의미에서 離散家族 재결합의 類型은 전술한 바와 같이 72가지로 나누어지나 夫婦關係를 기준으로 離散家族 재결합의 類型을 나누어 보면 (1) 본래 甲南乙女가 北韓에 本籍을 두고 있고 남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甲男이 북한에, 乙女가 남한에 있는 경우와 (2) 본래 甲男乙女가 북한에 본적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甲男이 남한에, 乙女가 북한에 있는 경우로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가령 甲男이 越北者 또는 拉北者로서 離散된 경우는 (1)에 해당할 것이고, 甲男이 越南者로서 離散된 경우는 (2)에 해당될 것이다.

먼저 (1)의 경우 乙女는 民法 제27조에 따라 甲男에 대한 失蹤宣告에 의

45) (1)에서 甲男이 남한에, 乙女가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離散後의 결과만을 보면 (2)와 동일하므로 또한 (2)에서 甲男이 北韓에, 乙女가 南韓에 있는 경우는 반대로 (1)과 동일하므로 本稿에서는 본문의 (1) (2)를 중심으로 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해서⁴⁶⁾, (2)의 경우 甲男은 不在宣告法 제3조에 따라 乙女에 대한 不在宣告에 의해서⁴⁷⁾ 각각 호적을 정리하고 새로이 제3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⁴⁸⁾ 많은 사람이 이 두가지 방법에 의거하여 配偶者가 未收復地區에 있으면서도 生死與否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3자와 결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2)의 경우 越南者인 甲男이 丙女와 婚姻하여 婚姻申告를 하고 有子 生女하여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離散家族인 乙女가 생존하여 現分斷狀況下에서 南北韓 當局의 노력으로 남한에서 再結合이 실현될 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한 이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乙女가 (1)의 경우 甲男이 生存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으로 法的으로 증명되는 경우 失蹤宣告는 取消되어야 한다.⁴⁹⁾ 失蹤宣告가 取消되면 소급해서 그 效力을 구실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失蹤宣告에 의하여 除籍되었던 身分關係는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失蹤宣告後 그 取消前에 惡意로 한 행위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 46) 甲男의 生死가 3년 이상 不分明하고(民法 제840조 5호), 甲男이 乙女를 惡意로 유기한 경우(民法 제840조 2호)라면 當然히 乙女는 甲男과 離婚할 수 있고, 만일 甲男이 5년 이상 生死가 不分明할 경우(民法 제27조) 失蹤宣告에 의하여(民法 제28조), 死亡한 사람과 같이 取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乙女の 結婚에는 아무런 支障이 없다.
- 47) 北韓이 本籍인데 乙女(妻)를 남겨두고 越南한 甲男을 생각해 본다. 이 경우 甲男은 越南後 假戶籍을 했어야 하고 假戶籍은 本戶籍과 같아야 하는 바, 甲男의 假戶籍에는 北韓에 居住하여 往來가 두절되어 있는 乙女가 甲男의 妻로서 엄연히 記載되어 있어야 한다. 甲男이 丙女와 事實적으로 夫婦生活을 하느냐의 여부는 여기에서 論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法律的으로는 重婚이 되기 때문에 甲男은 다른 여자 丙女와의 婚姻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 統一이 되어 언제 家族再結合을 할 수 있을가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 制度를 고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1967년 1월 16일 法律 제186호로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公布하고, 동월 31일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을 공포하였는 바, 동법 3조에 의하면 未收復地區인 以北에 남아 있는 사람, 즉 殘留者임이 分명한 때에는 法院은 戶主 또는 家族이나 檢事의 請求에 따라 不在宣告를 하여 同法 第4條에 의하면 不在宣告를 받은 者는 戶籍에서 除籍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民法 제980조 및 제997조가 適用되고 婚姻에 관하여는 失蹤宣告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大韓民國에 살고 있는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配偶者가 南北으로 갈려 있을 때 그리고 戶籍에 실려 있을 때, 本人이 願하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또 本人이 願하면 整理하고, 正堂堂히 法律上 結婚을 할 수 있다.
- 48) 民法 제28조, 不在宣告法 제4조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裴慶淑, “以北에 配偶者 있는 者의 再婚問題” 法政研究誌(建國大), 1966년 12월, pp.81-87 참조.
- 49) 民法 제29조 1항 本文.

한 (2)의 경우 乙女가 거주하고 있는 未收復地區가 收復되거나 또는 乙女가 未收復地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면 不在宣告는 取消되어야 한다. 不在宣告가 取消된 때에도 失蹤宣告의 取消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不在宣告의 效力이 상실되므로 不在宣告에 의해 소멸되었던 甲男의 婚姻關係는 다시 부활된다. 그러나 不在宣告後 그 取消前에 惡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⁵⁰

또한 (2)의 경우 乙女가 거주하고 있는 未收復地區가 收復되거나 또는 乙女가 未收復地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不在宣告는 取消되어야 한다.⁵¹ 不在宣告가 取消된 때에도 失蹤宣告의 取消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不在宣告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不在宣告에 의해 소멸되었던 甲男의 婚姻關係는 다시 부활된다. 그러나 不在宣告後 그 取消前에 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⁵²

예컨대 甲男의 配偶者인 乙女에 대한 不在宣告가 있는 후 甲男이 남한에서 丙女와 再婚한 경우에 있어서 甲男과 丙女가 모두 善意이면 不在宣告가 取消되어도, 그 後婚인 甲男과 丙女間의 婚姻은 有效하고, 이와 양립하지 않는 前婚關係인 甲男과 乙女間의 婚姻은 부활되지 않는다.⁵³

그러나 만일 後婚의 양 당사자인 甲男과 丙女중 一方이 惡意일 때에는 不在宣告의 取消에 의해 前婚이 부활하게 된다. 따라서 重婚狀態가 발생하여 前婚에 관해서는 離婚原因, 後婚에 관해서는 取消原因이 생기게 된다(通說).⁵⁴

그런데 남북에 離散되어 있는 가족들의 생사는 특별한 저명인사를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에 離散된 상태하에서의 後婚의 경우 當事者는 一應 善意인 것으로 사실상 推定될 것이다.

그러나 論理的으로는 惡意의 當事者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실제로 惡意의 當事者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惡意의 當事者라고 하여 民法 또는 不在宣告法의 規定을 적용하여 後婚을 取消할 수 있는냐가 문제로 제기된다.

民法의 失蹤宣告制度나 不在宣告法의 不在宣告制度는 남북으로 갈린 離散家族이 생기고, 그나마 재회의 기한이 막연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平均人에게 期待되는 것은 설령 남북으로 配偶者가 갈려 있고, 또한 각기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를 받게 해서 婚姻하게 함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解釋이 또는 立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不在宣告의 경우에는 不在宣告와는 달라서 殘留者와 再結合하더라도 殘留者가 未收復地區에 거주하는 이상 不在宣告를 取消할 수 없고 따라서 後婚은 取消할

50) 民法 제29조 1항 단서.

51)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본문.

52)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단서.

53) 鄭範錫, “統一과 家族關係”, 統一研究(統一研究協會), 第一輯(1972), p. 85.

54) 韓國司法行政學會, 註釋 民法總則(上) (1985), pp. 285-286, 292.

수 없다 - 즉 後婚은 有效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⁵⁾

② 假戶籍이 不眞正한 경우

가령 위의 (1)의 경우에서 甲男乙女는 부부로서 북한이 本籍이고 북한에서 살던중 甲男만이 越南하여 假戶籍⁵⁶⁾을 就籍함에 있어서 配偶者가 없는 것으로 신청하여 등재된 경우 複雜한 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즉, 甲男은 假戶籍上 配偶者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失蹤宣告나 不在宣告나 하는 번잡스러운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丙女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丙女와의 사이에 有子生女하여 수십년 동안 살아 왔는데, 離散家族의 再結合이 실현되어 乙女가 나타났다고 할 때, 甲男, 乙女 및 丙女와의 3者關係는 위에서 논한 失蹤宣告나 不在宣告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失蹤宣告나 不在宣告의 取消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제의 소재는 離散以前 북한에서의 原戶籍謄本과 같이 甲男 乙女가 정식의 法律上 夫婦로서 離散後 남한에서 甲男이 행한 假戶籍이 고의로 잘못 기재된 것임이 각종의 증거에 의해 「확정된다면」 甲男乙女間의 夫婦의 關係는 法的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甲男과 乙女사이의 과거의 호적이 되살아날 경우 甲男과 丙女가 부부로 되어 있는 현재의 法律關係는 여하히 整理하고 調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북한에 호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과거 甲男과 乙女間의 夫婦關係를 입증할 수 없다면 乙女는 결과적으로 法的 保護를 받지 못하게 되고, 甲男, 乙女, 丙女間에 法的問題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離散家族이 모두 以南에 戶籍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북한에 殘留하던 離散家族이 분명하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또한 本籍地(北韓)에 戶籍이 잔존하고 있을 경우, 또는 原戶籍謄本이 있다고 할 경우 이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설은 新戶籍은 訂正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新戶籍은 取消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어느 입장에 의하든 重婚은 존속할 수 없다는 論理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⁵⁷⁾

이상의 法論理에 따른다면 甲男乙女를 부부로 하는 舊戶籍대로 호적이 訂正 또는 取消될 수 없게 되며, 또한 假戶籍訂正 또는 取消에 의해 丙女는 甲男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55) 鄭範錫, *supra* note 53, pp. 85-86.

56) 이는 美軍政法令 제179조에 의하여 就籍한 假戶籍을 말한다 이 假戶籍은 1962년 12월 29일 法律 제1238호로 개정된 戶籍法에 의하여 1963년 3월 1일부터 戶籍法의 規定에 의한 戶籍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북한의 각종 法令廢止에 따른 韓國法令의 補完 및 實行上의 問題點과 對策(1969), pp.28-30. 참조.

57) 鄭範錫, *supra* note 53, pp.86-87.

그러나 법도 「事情의 變更」을 전연 무시할 수 없고, 법제정시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狀況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假戶籍을 할 때 故意로 虛偽 記載를 한 사람이 지극히 적을 때에는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큰 수에 이를 때에는 그 수와 現實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우기 休戰線이 언제 제거될지 또 離散家族이 언제 再結合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의 虛偽事實記載의 假戶籍을 그렇지 않은 平常的 狀況下에서의 虛偽事實記載와 같은 次元과 視角에서 보는 것은 어딘지 자연스럽지 못하고 衡平의 理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法解釋에 의하여 또는 解釋이 너무나 無理한 것일 경우에는 特別立法에 의하여 적당한 조절을 가미하여 이 문제를 合理的으로 解決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⁵⁸⁾

③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 取消時 前婚의 부활에 대한 사안별 해결책

離散家族 再結合時 越南者나 越北者 또는 拉北者의 南韓居住 配偶者가 이미 再婚한 상태에 있는 경우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의 取消에 의하여 前婚의 妻가 復籍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단서와 民法 제29조 1항 단서에 의해 不在宣告後 또는 失蹤宣告後 그 取消前에 한 婚姻(後婚)은 善意인 경우에는 婚姻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後婚은 그대로 有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 取消時 현재의 有效한 後婚과 양립할 수 없는 前婚이 부활하는가가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해결책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不在宣告法 제29조 1항 단서에서는 「善意로 한」이라고 하여 惡意로 한 後婚의 경우도 예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越南者의 경우 惡意는 있을 수 없고 모두 不可抗力의 事由에 의한 것으로서 後婚은 「善意로 한」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그런데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가 取消된 경우의 婚姻關係에 대하여는 後婚當事者가 善意인 때에는 前婚關係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고 문제시하지 않는 견해⁵⁹⁾와 婚姻의 성격상 失蹤宣告 取消의 遡及效를 제한한 民法 제29조 1항 단서는 婚姻關係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보고, 다만 後婚을 당연히 無效인 것으로 보지 않고 前婚이 부활하는 결과 後婚을 重婚으로 보아 前婚에 관하여는 離婚原因이 생기고(民法 제840조 1호), 後婚은 취소할 수 있는 것(民法 제810조, 제816조, 제818조)으로 보는 견해⁶⁰⁾가 있다.

그러나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는 매우 복잡하여 이를 一律적으로 處理해

58) *Ibid.*, p.87 참조.

59) 通說의 見解이다. 가령 郭閔直, 民法總則(서울: 博英社, 1986), p.197; 金疇洙, 親族相續法(서울: 法文社, 1988), p. 109 참조.

60) 鄭範錫, 「失蹤宣告의 取消」, 考試界, 1963년 2월호, p.44; 中川善之助, 註釋親族法(上), p.123.

서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하여 남한에 있는 자가 再婚한 경우, 獨身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 그리고 事實婚關係에 있는 경우로 나누고, 다시 각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再婚자의 以北居住 殘留配偶者가 (a) 再婚한 경우 (b) 獨身인 경우, (c) 事實婚상태에 있는 경우.

(2) 獨身者の 以北居住 殘留配偶者가 (a) 再婚한 경우, (b) 獨身인 경우, (c) 事實婚상태에 있는 경우,

(3) 事實婚者の 以北居住 殘留配偶者가 (a) 再婚한 경우, (b) 獨身인 경우, (c) 事實婚상태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 대체로 南男北女의 경우가 일반적이고 南女北男의 경우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南男北女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a), (2)(a), (3)(a)의 경우에는 以北居住 配偶者가 북한의 남자와 再婚狀態에 있으므로 비록 法理上 後婚이 重婚이기는 하지만 前婚은 부활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再結合을 시키려고 국가가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a), (2)(a), (3)(a)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만일 不在宣告 取消에 의하여 前婚을 부활시키면 重婚關係가 되어, 前婚의 경우 離婚事由를 발생시키고, 後婚은 取消의 對象이 된다. 만일 오랜 세월동안 後婚의 當事者, 즉 以北居住 殘留配偶者와 그의 남편사이에 평온·공연하게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夫婦關係를 파탄시킨다면 法的 安定性의 保障이라는 法理念의 實現이나 法的 感情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강요할 경우 그것은 戰爭으로 인한 離散이라는 一次的인 悲劇에 또 한 번의 비극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前婚을 부활시키지 않도록 하는 特別의 설정이나 特別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1)(c), (2)(c), (3)(c)의 경우 以北居住 殘留配偶者와 그의 남편간의 夫婦關係가 법률혼이 아니라 事實婚의 관계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온 夫婦關係를 형식적인 법이론으로써 後婚을 無效 또는 取消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1)(b), (2)(b)의 경우, 즉 以北居住 殘留配偶者가 獨身인 경우 그 「獨身」은 전혀 再婚하지 않거나 再婚 後 離婚하여 獨身이거나 또 再婚하여 死別하여 獨身인 경우 중의 어느 하나일 것이다. (2)(b)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월남자인 남편이 계속 獨身으로 머물러 있었고, 以北居住 殘留配偶者도 역시 계속 獨身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들은 前婚의 부활로 당연히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b), (2)(b)의 그 나머지 경우에는 前婚이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後婚과의 관계에 있어서 重婚狀態에 있었거나 또는 현재에 그러함을 인정하는 것이 法理上으로는 妥當하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重婚禁止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결국 (2)(b)의 가능한 모든 경우는 사실상 前婚이 부활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特別法을 제정하거나 民法의 附則에 特別을 둠과 함께 經過規定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잠정적으로 重婚

禁止 規定의 適用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b)의 경우 南男의 事實婚關係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前婚이 우선한다는 것이 現行民法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當事者의 意思를 존중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⁶¹⁾

다음, 南男北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南女北男의 경우에도 먼저 남한에 있는 자가 (1)再婚한 경우, (2)獨身으로 있는 경우, (3)事實婚關係에 있는 경우로 나누고, 그 각 경우를 다시 세분하여 월북 또는 남북된자가 (a)再婚한 경우, (b)獨身으로 있는 경우, (c)事實婚關係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의 경우는 모두 남한에 남은 配偶者가 남한의 남자와 현재 再婚狀態에 있는 경우인 바, (a), (b), (c)의 어느 경우이든 실종선고 취소에 의하여 전혼을 부활시킬 경우 後婚은 重婚이 되므로 前婚에 대하여는 離婚事由가, 後婚에 대하여는 取消의 事由가 되나 그 동안 남한에서 오랜동안 合法的 夫婦였던 관계를 파탄시킴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前婚을 復活시키지 않는 法規定의 설치가 필요하다. 역시 이 경우에도 特別法을 제정할 경우 그 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規定을 두거나 民法 附則에 特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a)와 (2)(c)의 경우는 남한에 남은 配偶者가 獨身狀態에 있으나 越北 또는 拉北된 配偶者가 再婚하거나 事實婚關係에 있는 경우로서 이는 後婚을 존중하여 前婚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

(3)(a), (3)(c)의 경우는 越北 또는 남북된 配偶者가 남한에서 再結合을 원할 때 북한에서의 後婚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前婚의 法律婚을 현재 남한에서의 事實婚에 우선시키는 것이 民法의 입장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비록 남한에서의 夫婦關係가 事實婚이라 하더라도 부부로서의 결합의사가 있고 상당기간 동거해 온 사실을 무시하고 形式論理로 해결하여 어느날 갑자기 북한에서 돌아온 남자에게 事實婚關係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사태를 쉽사리 수공하기는 힘들 것 같다. (3)(b)의 경우는 前婚인 越北 또는 拉北前의 法律婚을 後婚인 事實婚에 우선시키는 것이 앞의 경우, 즉 (3)(a)와 (3)(c)보다 더욱 妥當性을 인정받을 것이나, 역시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當事者의 意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경우야말로 남북한에 離散된 配偶者가 모두 獨身인 경우와 함께 再結合을 시키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財産相續에 관한 問題

①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相續問題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相續問題를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히 財産關係

61)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supra* note 56, pp.33-34. 참조.

處理의 一般論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현재 國內의 通說과 判例에 의하면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 後 取消前에 한 행위가 單獨行爲이건 契約이건 불문하고 行爲者 一方 또는 雙方이 惡意인 경우 그 法律行爲는 無效가 된다. 이 경우 法律關係는 民法 제29조, 不在宣告法 제4조 및 제5조 但書條項에 의해 규율된다.

따라서 첫째,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에 의해 財産을 相續한 경우, 그 取消로 인해 被相續人이 생존한 경우는 그에게 그리고 異時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死亡時의 相續人에게 그 財産이 歸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財産相續人이 相續財産을 處分한 경우, 그 행위자의 一方 또는 雙方이 惡意인 경우는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그 法律關係는 첫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學說上의 異說 있음). 첫째와 둘째의 경우 相續받은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금전인 경우 不當利得返還의 法理에 따라 善意者인 경우 現存利益의 한도에서 惡意者인 경우 그 가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생존하고 있는 失蹤宣告者 또는 不在宣告者, 혹은 異時에 사망한 경우 그 때의 相續人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⁶²⁾

셋째, 財産相續人이 相續財産을 처분한 경우, 善意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有效하게 되고, 따라서 相續人은 不當利得法의 法理에 따라 現存하는 利益의 한도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失蹤宣告者 또는 不在宣告者 혹은 異時에 사망한 경우 그 때의 相續人에게 不當利得을 반환하여야 한다.

넷째, 通說에 의하면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 後 取消前에 相續人, 또는 그 후의 讓受人이 民法 제245조 내지 제249조 상의 時效取得을 한 경우는 相續人 또는 그 후에 讓受人에 의한 물건의 所有權取得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取消後 생존해 있는 不在宣告者 또는 失蹤宣告者 혹은 異時 死亡으로 인한 별도의 相續人은 不當利得法理에 의해 相續人에게 不當利得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不當利得 返還請求權의 期算點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期算點은 取消宣告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나 學說上으로는 이 경우 自己意思에 반하여 격리된 실종자 또는 不在者에게 「權利위에 잠잔者」로서의 責任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取得時效를 인정한다면 宣告取消의 實益이 없다는 점, 나아가 獨逸 民法 제2031조의 宣告取消後 단기간의 返還請求權 消滅時效認定制度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取得時效를 인정하는 것이 不當하다는 견해가 있다.⁶³⁾

離散家族의 경우 不在宣告의 取消에 의하여 復籍된 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단서, 제4조 및 民法 제29조 2항 등에 의하여 보호된다. 즉 不在宣告가 取消되는 경우, 不在宣告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財産을 취득한 자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⁶⁴⁾

62) 韓國私法行政學會, *supra* note 54, pp.282,292.

63) *Ibid.*, p.288

상기 規定들에 의하여 남한의 後位相續人으로서 相續받은 者 또는 共同相續人들은 離散家族 즉, 以北居住 殘留者 또는 不在者인 선위상속인 또는 共同相續人에게 善意인 경우에는 利益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⁶⁵⁾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현행의 不在宣告法과 民法上의 失蹤宣告制度에 의해서도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一見 해결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즉,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後 財産을 相續받은 相續人에 대하여 宣告取消後의 생존자 또는 다른 財産相續人 등이 물건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행사하거나 또는 善意로 그것이 처분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도 不當利得法에 의해 利害關係가 상당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後 거의 40년이 가까워 오고, 統一의 시점에서는 최소한 거의 50년 정도가 경과할 것인 바, 宣告後 相續받은 財産의 現存利益⁶⁶⁾을 정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後 南北에 각각 자녀 등의 法定相續人이 현존하고, 또 被相續人이 그 선고 후의 경제활동에 의해 새로이 축적한 부를 相續人이 相續할 경우 그 被相續인과 동일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던 相續人에 대한 다른 相續人의 반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相續制度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배려(로마법시대로부터 있었던 祖上神에 대한 제사의무, 家系維持 등도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과 相續人의 被相續人所有의 財産增加에 대한 기여의 평가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으로 동일한 相續分을 相續한다는 것은 相續制度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반인의 法感情에도 상치될 것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法制度가 이전의 親族法에는 없었으나, 1990년 개정된 親族法 제1008조의 2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離散家族의 再結合後의 相續문제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相續回復 請求와 관련된 問題

이 문제는 (1)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를 開始原因으로 하는 相續에 있어서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가 取消된 경우의 相續財産 회복관계와 (2) 失蹤宣告者 또는 不在宣告者가 당해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가 없었더라면 相續人 또는 共同相續人 중의 1인이 되었을 相續에 관하여 당해 宣告가 取消되어 復籍된 경우의 相續財産 回復關係의 2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65) Ibid.

66) 原物로 保管하고 있는 경우에는 保管·改良費의 償還이 공제될 것이고 (民法 제203조), 價額 返還일 경우에는 이익의 現存範圍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郭潤直, 債權論(서울: 博英社, 1986), pp. 594-598 참조.

取消되어 復籍된 경우의 相續財産 回復關係의 2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에 관하여 보면,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를 開始原因으로 하는 相續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한 자는 相續이 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그가 취득한 相續財産인 물건 그 자체가 현존하는 한 물건의 所有權은 선고를 取消당한 生存者에게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에 의한 相續人이 그 財産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는 無權利者의 처분행위로서 無效가 되므로 그 소유권은 生存者에게 복귀하게 된다.⁶⁷⁾

그러나 그 처분이 선고후 취소전에 쌍방의 善意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有效한 것으로 남게 되며, 生存者의 소유권은 회복되지 아니한다.⁶⁸⁾ 또한, 相續財産이 動産인 경우에는 비록 제3자가 惡意의 相續人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도 평은·공연하게 善意, 무과실로 취득한 이상 그 動産을 선의취득하게 되므로⁶⁹⁾ (제249조), 生存者는 動産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만 惡意의 相續人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를 취소당한 生存者가 財産의 회복을 구할 경우 이것을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民法 제999조 제2항의 除斥期間을 適用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상속회복청구권은 相續이 有效하게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개시 자체가 부정되는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 取消의 경우에는 民法 제999조의 適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2)의 경우를 보면, 본래 어떤 相續에 관하여 單獨相續人 또는 共同相續人이 되었을 자가 相續開始前에 이미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를 받아 除籍됨으로써 相續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가 取消됨으로써 相續人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取消당한 生存者는 진정한 相續權者로서 財産相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⁷⁰⁾ 이 때 相續回復請求의 방법과 효과는 生存者가 民法 제1000조에 의한 相續順位에 있어서 유일한 1順位 相續人, 즉 單獨相續人이나 또는 共同相續人 중의 1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生存者가 單獨相續人의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을 받은 자는 전원 僭稱相續人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그가 점유하는 相續財産을 모두 生存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僭稱相續人이 제3자에게 相續財産을 처분하였다면, 雙方當事者가 善意인 경우가 아닌 한 제3자는 진정한 相續人인 生存者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⁷¹⁾ 다만 相續財産이 動産인 경우에는 僭稱相續人이 惡意의 경우라도 제3자가 평은·공연하게 善意,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民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生存者는 제

67) 民法 제29조 1항 本文,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本文.

68) 民法 제29조 1항 단서,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단서.

69) 民法 제249조.

70) 民法 제999조 1항.

71) 民法 제29조 1항,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3자에게 그 動産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僭稱相續人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生存者가 共同相續人 중의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共同相續人들을 상대로 相續財産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⁷²⁾

그런데 종전의 共同相續人들이 相續財産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僭稱相續人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共同相續人은 無權利者가 아니므로 生存者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相續回復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전의 공동상속인과 제3취득자가 모두 善意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生存者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相續回復請求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당해 相續財産이 분할됨이 없이 共有狀態로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다.

그러나, 相續財産의 분할결과 제3자가 취득한 財産의 경우와는 문제가 달라진다. 즉, 生存者를 포함한 共同相續人들이 宣告의 取消로 無效가 된 相續財産分割을 다시 행한 결과 生存者가 相續하기로 결정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相續回復請求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民法 제1015조 단서는 相續財産의 분할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規定하여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同規定에 의할 경우 제3자의 善意·惡意를 불문하게 되므로 제3취득자는 動産·不動産 할 것 없이 언제나 보호받게 되는 반면, 相續人의 지위를 회복한 生存者의 利益은 전혀 무시되어 버린다. 이는 立法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民法 제999조 제2항에 의하면 相續回復請求權은 침해를 한 날로부터 3년, 相續開始日로부터 10년의 除斥期間中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소멸한다고 規定되어 있는 바, 이 規定을 離散家族에 대하여도 그대로 適用한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相續開始日로부터 10년의 除斥期間에 걸리게 되어 사실상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상속 회복청구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民法 附則에 經過規定을 둠으로써 民法 제999조 2항의 제척기간의 適用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4) 親子關係 및 戶主承繼에 관한 問題

① 子女의 問題

子女의 경우도 不在宣告가 取消되면 復籍하게 되며, 法律上的 父母子女關係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 戶籍에 입적되지 않은 子女 및 婚姻外 出生子女는 民法의 規定에 의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또한 殘留子女로서 改姓하였거나 타인의 子女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現行法에 의하여 구제하는 措置를 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⁷³⁾

② 戶主承繼에 관한 問題

72) 民法 제1013조, 家事訴訟法 제2조 1항 마10호.

73)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supra* note 56, pp.34-35.

離散家族인 殘留者가 長子孫인 경우 그 자를 戶主로 하여 戶籍을 再編成해야 한다. 또한 離散家族인 殘留者의 代襲相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현재의 分斷狀況에서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當事者의 法律關係에 南北韓의 法中 어느 법을 適用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法理論上으로는 헌법 제3조의 領土條項과 國家保安法에 의해 北韓은 우리에게 대하여 국가가 아니며 反國家團體에 불과하며 북한주민도 大韓民國의 국민이다. 따라서 離散家族이 남한에서 再結合할 경우는 물론 북한에서 再結合할 경우에도 理論上 우리의 民法이 適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기대가능성이 없는 法論理의 修辭(rhetoric)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할 경우에는 一應 北韓의 民事法을 適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一般國際法과 國際私法의 확립된 이론에 의하면 未承認國과의 관계에서도 婚姻이나 離婚 등 親族關係나 相續關係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未承認國의 법령을 인정하고 이를 準據法으로서 適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領土條項의 效力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私法關係에 있어서는 公法關係와 달라서 우리에게 未承認國인 北韓私法의 北韓內에서의 效力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다수의 國際慣行에도 합치하고,⁷⁴⁾ 또 현실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일본의 경우 승인의 여부를 불문하고 實定法인 한에 있어서 國際私法의 規定에 따라 準據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⁵⁾ 중국인이나 한국인의 신분법으로서 공산정권의 法律을 適用한 下級審判決이 1959년 12월 22일 일본 大審院에 의하여 확정된 바 있는데, 北韓法을 適用한 이러한 判例들은 거의 離婚, 入養, 婚姻外의 出生者의 認知 등에 관한 것이었다.⁷⁶⁾

그러나 이는 北韓私法의 北韓內에서의 效力에 국한될 뿐이며 南韓 領域內에서의 北韓法의 效力은 부인됨은 물론이다. 우리의 경우 東·西獨과는 사정이 다르고 엄연히 領土條項이 존재하는 한 현재의 分斷狀況下에서는 과거 東西獨

74) 스위스의 판례에는 國際法上의 承認이 外國法適用의 요건은 아니라는 판례가 많고, 이탈리아의 법원도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제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였다. J.L.Kunz, "Critical Remarks on Lauterpacht's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A. J. I. L.*, vol.44(1950), p.717; 미국에서도 정의의 구현이나 공공정책상 필요하면 승인과는 별개로 外國法令의 效力을 인정하였다.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8), pp.145, 147.

75) Yoshiro Hayata, "The Lex Patriae of Chinese and Koreans,"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1965), p.57.

76) 張孝相, "各國法院이 본 事實上의 政權", 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1,2호 합병호(1978), pp.247-248, 251 참조.

間의 準國際私法的 解決⁷⁷⁾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北韓地域에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미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北韓地域에서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시 南韓의 民事法을 適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에서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領土條項을 근거로 한 形式論理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 또 이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可能性은 전혀 없다 - 그에 따른 法律問題는 현재와 같은 分斷狀況下에서는 일체 北韓法에 맡겨야 할 것이다.

3. 國家聯合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南北韓이 國家聯合⁷⁸⁾을 構成한다는 것은 각기 南北韓이 國際法上 2國家로 分裂되고, 그러한 2國家 體制下에서 機能的 觀點에서 交流·協力을 통하여 兩國間에 國際的 協議體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單一國家로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統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南北韓이 統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暫定的인 過渡體制로서 國家聯合을 창설할 可能性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다만 國家聯合的 統一方式의 경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잠정적으로나마 2國家로 分裂된다는 점에서 - 물론 이것은 永久分斷을 위한 것이 아니라 統一이라는 長期目標 達成을 위한 手段的 性格을 갖는다 - 헌법의 領土條項과 배치되며 종래부터 大韓民國이 견지해 온 正統性 主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때에는 分斷狀況下에서의 領土條項을 근거로 한 解決策이 그대로 타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 親者關係, 相續問題가 발생함은 앞의 경우와 같으나, 특히 除籍者가 復籍되는지의 문제는 다소의 검토를 요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除籍된 자는 國家聯合의 形成으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77) 동서독간의 準國際私法的 解決에 관해서는 오수근, “남북한 교류에 따른 準國際私法的 問題解決을 위한 序論的 研究I-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北韓·統一研究論文集 - (IV) 交流·協力分野 -, 국통조 90-12-93(1990), pp.55-97 참조; 다만 南北韓이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서 豫定하고 있는 南北聯合 또는 體制聯合을 構成한 경우에는 동서독식의 準國際私法的 解決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8) 「國家聯合」(confederation, Staatenbund)이란 複數의 國家가 각기 國際法上 國家의 資格 또는 個別의 人格 (international personality)을 保持하면서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共通의 利益을 위하여 條約에 의해 결합하고 共同의 機構 (聯合機構)를 통해 外交, 기타 일정한 事項을 協議하여 그에 관한 機能을 共同으로 행사하는 國家結合이라 할 수 있다. 宮澤俊義, 「聯邦制度概說」(東京: 中華民國法制硏究會, 1939), pp.26-27; J.H.W. Verzij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l.2 (Leyden, the Netherlands: Sijthoff, 1969), p.159.

라는 外國의 國籍을 이미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除籍者의 復籍과 관련해서는 먼저 國籍選擇權의 행사를 許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南北韓間의 合意가 필요하다 할 것인 바, 國際法的次元에서 解決策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國家聯合을 構成한 경우 南北韓은 별개의 主權國家이기 때문에 離散家族은 각각 南北韓의 國民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며, 이들이 남북한 중 어느 지역에서 再結合하게 되면 특정의 法律問題와 관련된 領土國의 國際私法이 適用되게 된다.

다음에는 國家聯合 形成 後 離散家族이 남한에서 再結合할 때 발생하는 問題를 夫婦關係, 親子關係, 相續問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離散 前의 婚姻의 效力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涉外私法 제16조가 「婚姻의 效力은 夫의 本國法에 의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同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즉 北韓 國籍의 夫인 甲男과 大韓民國 國民인 婦인 乙女가 南韓에서 再結合할 경우 前婚의 效力에 관해서는 夫의 本國法인 北韓의 民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반대로 大韓民國에서 再結合할 경우에는 夫의 本國法인 大韓民國의 民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後者の 경우 발생하는 問題點과 그 解決 및 對策은 기본적으로 現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의 項目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大韓民國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離散家族이 생존하는 경우 重婚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 때에는 離婚原因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後婚은 法的 安定性을 고려하여 계속 有效한 것으로 간주하고 前婚에 대하여는 離婚事由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親子關係에 관해서 우리나라 涉外私法 제19조(親生子)는 「친생자의 推定, 承認 또는 否認은 그 출생당시의 母의 夫의 本國法에 의한다. 夫가 子の 出生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當時의 本國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出生地에 관계없이 출생당시 母의 夫의 本國法에 의해서 친생자에 관한 法律問題가 해결되며,⁷⁹⁾ 북한에서 事實婚關係에서 出生한 婚外子의 경우 認知問題는 涉外私法 제20조⁸⁰⁾에 의해 해결된다.⁸¹⁾

79) 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北韓의 國際私法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準據法(實質私法)이 결정되게 되고, 指定된 특정국가의 實質私法의 規定에 의해 法的 解決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北韓의 國際私法은 制定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大陸研究所가 펴낸 北韓法令集 제5권(1990)에 서도 國際私法에 관한 規定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實質的 意味의 國際私法에 해당되는 個別私法의 規定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80) 이 경우 母의 夫는 生父가 아닐 수도 있다.

81) 徐希源, 國際私法 講義 (서울: 一潮閣, 1987), pp.275-277 참조.

82) 涉外私法 제20조(認知)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父 또는 母에 관하여는 認知한 때의 父 또는 母의 本國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子에 관하여는 認知할 때의 子의 本國法에 의하여 이를

기타 親子間의 法律關係의 效力은 涉外私法 제22조에 따라 親子間의 法律關係는 父의 本國法에 의하고 父가 없는 때에는 母의 本國法에 의해 해결된다.

84)

세째, 涉外私法 제26조에 의해 相續은 被相續人의 本國法에 의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時 발생하는 相續問題는 동 조항에 의거하여 被相續人이 北韓國民이라면 相續人이 한국인인지 북한국민인지 관계없이 北韓法에 따라 相續問題가 解決되게 되며, 반대로 被相續人이 한국인이라면 相續人의 國籍을 불문하고 韓國民法에 따라 相續問題가 해결된다.

따라서 離散家族과 관련된 法律問題의 해결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으나 國家聯合 형성 후 離散家族의 法律問題의 처리와 관련하여 關係法規의 劃一的 適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問題點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經過規定을 두거나 附則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特則의 내용의 方向은 대체로 「分斷狀況下에서 南韓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의 항목에서 고찰한 것과 유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 남북한이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法律問題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國家次元에서 條約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 子女의 경우 國籍選擇權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聯邦制 統一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聯邦國家는 복수의 支分國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中央政府組織이 완전한 國際法上的 能力을 갖고 연방의 정부조직은 극히 제한된 특정사항에 관해서만 國際法上的 能力을 갖고 있는 複合的 國際人을 말한다.⁸³⁾ 따라서 聯邦國家는 그 자체의 정부기관을 갖고 연방구성국가와 聯邦構成國家의 주민에게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이다.⁸⁴⁾ 남북한이 聯邦國家로 統一된다는 것은 1국가를 형성하여 남북한의 정부는 구성국 정부로 될 뿐으로서 對外的인 國際法人格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構成國은 對內的으로는 國家的 性格을 보유하므로써 獨自的인 立法·行政 및 司法의 組織을 갖는다. 南北韓이 聯邦國家로서 統

정한다. ②認知的 效力은 父 또는 母의 本國法에 의한다.

83) *Ibid.*, pp.278-282 참조.

84) *Ibid.*, pp.288-292 참조.

85) I. Bernier,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 (London : Longmans, 1973), p.13; W.L. Goul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New York : Harper, 1957), p.200;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79), p. 291.

86) J. G. Starke,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 Butterworth, 1958), p.192; G.V. Glahn, *Law Among Nations*, 3rd ed. (New York : Macmillan, 1976), p.67.

一되는 경우에 南北韓에 離散되어 있는 가족의 再結合時에도 夫婦關係, 親子關係, 相續關係에서 문제가 발생함에는 다른 경우와 차이가 없다. 또 除籍者의 復籍問題도 역시 발생할 것이다.

聯邦國家의 구성국간에는 소위 國際私法 또는 準國際私法이 適用된다는 것이 확립된 法原則이다. 準國際私法이라 함은 생활관계가 不統一法國의 법률에 관계된 경우에 어느 法域의 法律(地方法)을 適用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國際私法과 準國際私法은 모두 私法의 衝突을 해결하는 法律이라는 점에서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영·미에서는 양자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다.⁸⁷⁾

남북한이 聯邦國家를 구성할 경우 초기에는 체제와 제도간의 이질성이 클 것이므로 단시일내에 남북한의 법률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準國際私法의 原理에 따라 夫婦關係, 親子關係, 相續關係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國際私法의 원칙에 따르게 되므로 國家聯合 단계에서의 解決策과 事實上 같아지게 될 것이다. (단 조약체결과 국적 선택권 부여 문제는 제외)

그런데 남북한이 聯邦國家를 형성한 후 민족간의 異質性이 극복되어 상당한 정도로 同質性이 회복된 후에는 점차적으로 私法을 統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단계에서는 準國際私法의 원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統一私法을 제정하므로써 法律의 抵觸을 解決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單一國家로의 統一 後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완전한 의미의 統一은 南韓에 의한 北韓의 吸收·併合型의 方式⁸⁸⁾과 北韓에 의한 南韓의 吸收·併合形의 方式이 있을 수 있다. 本稿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기로 하고, 大韓民國에 의한 統一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全般的 戶籍再編制의 問題

大韓民國에 의한 北韓의 吸收·併合的 統一, 즉 北韓이 收復된 後에는 무엇보다도 戶籍制度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서 제기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현재 戶籍制度가 시행되지 않고 公民證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統一後에는 이를 폐지하고, 戶籍의 전반적인 정확한 再編制가 중대한 사업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大韓民國에 의한 統一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으로는 戶籍의 再編制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 이는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戶籍整理와도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해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87) 徐希源, *supra* note 81, p.15.

88) 大韓民國에 의한 北韓의 吸收·併合型의 統一은 國內法上 未收復地區의 「收復」을 의미한다.

戶籍의 전반적인 再編制의 問題는 첫째, 戶籍編制의 資料獲得, 둘째, 戶籍의 정확한 編制問題, 셋째 戶籍編制에 있어서 복잡한 법률관계의 해결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戶籍編制時 資料獲得의 問題

戶籍을 再編制함에 있어 資料獲得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收復과 동시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戶籍原簿를 수집하고, 북한주민이 私藏하여 온 족보 기타의 立證文書를 제출하도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 참가가 되는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越南者인 離散家族의 戶籍을 들 수 있다. 이를 복사하여 原籍地別로 분류하고, 編制擔當 地方行政機關에 비치하면 戶籍사무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기타의 자료로서는 公民證을 들 수 있는데, 公民證原簿를 確保하고,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公民證을 참고로 하면 戶籍再編制의 問題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公民證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공민증을 교부받은 주소, 번호, 교부년월일, 가족란, 혼인관계란, 직업란, 거주 퇴거등록란, 기타 특별기록란이 있으므로 제1차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⁹⁾

② 戶籍의 정확한 編制問題

戶籍의 再編制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再編制時 虛偽記載나 二重就籍이 난무한다면 再編制事業에 불필요한 불편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戶籍의 再編制時 부정확한 記錄과 虛偽記載 및 二重就籍을 防止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越南者의 경우 그와 離散되었던 가족이나 친족의 경우는 비교적 정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信賴할 수 있는 者」의 保證을 요하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다.⁹⁰⁾ 여기서 「信賴할 수 있는 者」를 어떠한 자 또는 어떠한 범위의 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아예 立法的으로 해결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③ 戶籍編制上의 복잡한 法律問題의 解決

越南者와 북한에 殘留하고 있던 離散家族(殘留者)과의 관계로서 이미 언급한 바를 제외한 法律問題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기왕의 北韓法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漸進的으로」 補完策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⁹¹⁾

나. 離散家族 再結合時 法的 問題와 그 解決

89)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supra* note 56, pp.37-38.

90) *Ibid.*, p.38.

91) *Ibid.*

북한에 거주하던 離散家族, 즉 이북거주 殘留者의 경우 그가 거주하던 「未收復地區가 收復된, 즉 統一된 경우」에는 不在宣告法 제5조의 規定에 의해 不在宣告가 取消되게 된다. 同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殘留者의 생존 여부를 불문하며 取消의 宣告에 따라 戶籍에 復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法制度上의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統一의 경우 復籍對象이 될 離散家族의 수가 하나 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을 것이므로 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越南者나 越北 내지 拉北者의 配偶者등 남한거주 離散家族의 戶籍原簿를 복사하여 原簿地別로 분류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남한거주 離散家族의 戶籍에 관한 한 호적전반의 再編制時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문제처리의 정확,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다음으로 統一後 離散家族 再結合時 法律問題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는 무엇보다 夫婦關係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에서 甲男이 수십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統一後, 즉 北韓地域의 收復後 본격적인 북한으로 찾아 갔더니 配偶者 乙女가 北韓의 法에 의하여 失蹤宣告 등의 방법으로 戶籍을 정리하여 A男과 북한법에 의하여 결혼했을 때를 상정해 볼 수 있다. 統一前이든 또는 統一後이든 분명히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치권은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미쳐야 한다. 다만 현재는 김일성정권에 의하여 北韓地域이 사실상(de facto) 占據되어 있기 때문에 法理上으로는 일시적으로 大韓民國 法이 施行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南北離散家族問題 특히, 夫婦關係의 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判例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鐵原地區는 6. 25동란 전에는 북한에 속하였는데, 1953년 이후 등 지구는 남한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철원지구의 農地所有權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하였는데, 大法院은 1965년 11월 11일의 判決에서 1949년 6월 21일 大韓民國이 공포한 農地改革法이 1953년에 있어서 철원지구에 有效하다고 判示하고 지방법원의 合議部判決을 파기·환송하였던 것이다.⁹³⁾

이상의 판시로부터 논리적으로 推理하면, 현시점에서 大韓民國법원이 북한에서의 婚姻關係를 직접 취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統一이 되어 大韓民國이 스스로 統治權을 행사하게 될 때, 舊政權이 제정·실시한 법령하에서의 法律行爲의 效力은 부인되고 大韓民國의 법령만이 有效하며 그에 따라 法律行爲의 效力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統一以前 殘留配偶者가 北韓法에 따라 제3자와 再婚한 경우에 있어서 統一後 상기와 같은 法理를 따라 法的 問題를 해결하려 한다면 法的 安定性의 측면에서나 人道的인 側面에서 매우 不合理한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일 南北韓이 國家聯合→聯邦→單一國家로 점차적으로 統一에 이른다면 점진적으로 南北韓의 私法이 統一되게 될 것이므로 그나마 혼란은 크지 않을

92) Ibid., p.32.

93) 大判 1965. 11. 11 合議部 判決 파기·환송 65다 1527.

것으로 보이나, 일시에 分斷狀況下에서 갑자기 統一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北韓法秩序下에서 이루어진 殘留配偶者 또는 越北 또는 拉北者의 再婚의 效力을 否認하는 것은 확실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현재의 分斷狀況下에서 북한은 離散家族이 再結合할 경우에도 사실상 북한법의 效力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統一後 기존의 現狀, 즉 夫婦關係의 安定性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의 再婚關係를 一律적으로 無效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民法 및 不在宣告法 등 實定法의 精神과 當事者의 意思를 고려하여 事案別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 基本方向은 分斷狀況下에서 離散家族이 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의 解決方法과 유사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再婚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當事者의 어느 一方 또는 雙方이 再婚한 경우는 民法 제29조 1항 단서와 不在宣告法 제5조 1항 단서의 適用으로 失蹤宣告 또는 不在宣告 이후, 그 취소전에 한 再婚은 善意인 한 有效하다(立證責任은 惡意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즉, 前婚이 회복되고 後婚(再婚)은 取消의 대상이라는 것이 通說(異說도 있음)이다.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를 받은 경우 대다수가 善意일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경우에는 이 이상의 해결은 없을 것이다.

다만, 統一後 婚姻關係는 초기에는 情緒的인 問題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겠으나 점차 扶養義務 등 경제적인 문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특히 扶養해 줄 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經濟能力이 없는 夫가 없으므로 해서 발생할 經濟的 問題가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老後保障이라는 社會保障法的인 견지에서 解決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분단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世代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統一後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財産相續과 관련하여 一應 惡意의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또 그 결과로 損害를 가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상기 規定들을 기계적으로 適用하여 一律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離散家族으로서 殘留中인 또는 不在中인 相續人(예컨대 配偶者, 子女 기타의 近親)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단된 상태하에서 상호간의 애정의 면에서도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統一直後의 多事多難할 過渡期에 財産의 多寡를 막론하고, 분쟁을 야기시켜 財産을 둘러싼 骨肉相爭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소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장기간 離散되었다가 다시 만난 親族間의 아름다운 情誼를 해치므로써 재출발을 위한 가족의 구성, 조화의식에 有害할 것이라는⁹⁴⁾ 점에서 民法 기타 關聯法規의 適用을 배제하고 南韓이나 북한에서 기왕에 개시된 財産相續과 그 歸屬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具體的인 立法的 解決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94) *Supra* IV.2의 「나」를 참조.

95) 서울大學敎 法學研究所, *supra* note 56, pp.35-36.

이 외에도 親子關係 및 相續問題 등의 解決은 남북한의 分斷狀況下에서 남한에서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解決方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詳述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再論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이 때 根本적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南北韓의 經濟制度가 상이함에 따른 결과로 經濟的 富를 취득할 기회가 많은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개인이 經濟的 富를 축적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난한 북한가족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한가족의 再結合이 法的 問題로 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再結合時 언급해 둘 것은 반드시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越南者의 경우 越南하기 이전 북한에서 대지주 내지 소지주 또는 그 相續人이었던 자가 統一以前에 북한에 의해 國有化되었을 북한내의 土地에 대해 返還請求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東·西獨의 統一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적어도 남한에서의 農地改革의 前例, 國土利用에 대한 國家介入의 正當性과 個人犧牲에 대한 報償, 이미 既得權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現地住民의 利益保護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殘留者가 없는 越南者 또는 남한에 離散家族이 없는 越北者의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離散家族과 관련된 紛爭에 現행 節次法上的 規定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不在宣告 取消節次, 相續紛爭 解決節次 등은 복잡하고, 특히 북한주민들은 訴訟節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것이므로 이산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IV. 結論

南北韓 當局의 承認下에 지금까지 몇 차례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 사이에 書信交換과 相逢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앞으로 南北韓의 화해무드와 함께 相互信賴의 基盤이 충분히 조성되면 人道的 次元에서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 의하면 南北聯合의 機構인 南北閣僚會議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審議對象으로 하고 있고, 統一에 이르는 過渡體制로서 南北聯合이 構成될 경우 여기에서 다루기 쉽고, 또한 모종의 合意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이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라고 생각된다.

이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은 한편 分斷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解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家族關係의 次元에서 복잡하고도 미묘한 새로운 法律的 問題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離散家族 再結合에 따른 諸般 問題點을 추출하여 그 法的 對應策을 마련하는 것은 統一의 여건이 점차 무르익어 가는 現時點에서 매우 時宜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南北離散家族의 再結合과 그에 따른 法的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關係變化에 따라 어떠한 狀況下에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확실히 分斷狀況下에서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은 國家聯合 構成 또는 聯邦國家 形成段階와는 다르며 나아가 單一國家 수립시의 再結合과는 다른 것이다.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는 주로 夫婦關係, 相續關係, 親子關係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法的 問題의 解決은 現行法의 一律的인 適用에 의해 解決할 경우에는 具體的 正義를 實現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實定法의 精神을 尊重하면서도 최대한 當事者의 意思를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우기 離散家族의 再結合으로 善意의 被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事案에 따라서」 利害關係人의 利益을 考慮하는 方式의 立法 또는 經過規定을 두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I

1. 金明基, 北方政策과 國際法 (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89).
2. 金明基, 國際法上 南北韓의 法的 地位 (서울: 華學社, 1980).
3.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1976).
4.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북한의 각종 法令廢止에 따른 韓國法令의 補完 및 實行上의 問題點과 對策 (1969).
5. 徐希源, 國際私法講義 (서울: 一潮閣, 1987).
6. 尹世昌 外, 南北韓家族法의 比較와 問題點 및 對備策, 72-3-93 (서울: 국토통일원, 1972).
7. 李熙鳳, 韓國家族法上의 問題點 (서울: 일신사, 1976).
8. 조일호, 조선가족법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9. 崔殷範, 南北接觸에 따른 諸般問題 資料, 72-4-3 (서울: 국토통일원, 1972).
10. 韓國司法行政學會, 註釋 民法總則(上) (1985).
11. Bernier, I.,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 (London: Longmans, 1973).
12. Lauterpacht, H.,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8).
13. Pictet, J.S., Geneva Convention IV, Commentary (Geneva: ICRC, 1958).
14. Verzijl, T.H.W.,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l.2 (Leyden, The Netherlands: Sijthoff, 1969).

II

1. 金明基. 지봉도, “南北 離散家族再會에 관한 研究,” 人道法論叢, 제4·5호(1983).
2. 裴秉承, “1979년 제네바協約 追加議定書 批准上의 重要考慮事項,” 人道法論叢, 제3호(1980).
3. 裴慶淑, “以北에 配偶者있는 者의 再婚問題,” 法政研究誌(建國大), 1966년 12월.
4. 張孝相, “各國法院이 본 事實上의 政權,” 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1·2호 합병호 (1978).
5. 鄭範錫, “失蹤宣告의 取消,” 考試界, 1963년 2월호.
6. 鄭範錫, “統一과 家族關係,” 統一研究(統一研究協會), 제1집(1972).
7. 崔達坤, “北韓家族法의 指導的 原理,” 法律行政論集(고려대), 제14집(1976).

8. 崔達坤, "韓國家族法의 異質性과 同質性," 家族法研究, 제3호(1989).
9. Hayata Yoshiro, "The Lex Patriae of Chinese and Koreans,"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1965).
10. Kunz, J.L., "Critical Remarks on Lauterpacht's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A.J.I.L., Vol. 44(1950).

이하 기타 參考文獻은 생략함.

◆ 南北韓鐵道(京義線)를 利用한 國際複合輸送에 관한 研究

차 중 곤(명지대)

〈 要 約 文 〉

최근의 世界貿易秩序는 선진각국의 保護主義의 팽배, 公正貿易과 相互主義 확산, 그리고 地域主義의 대두 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高賃金, 技術隔差 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가격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시장구조는 계속해서 美·日 依存度の 深化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수출입국의 지향과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強化와 EC·東歐圈地域 등에 대한 市場多邊化政策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6·23 外交宣言」, 1988년의 「7·7 特別宣言」으로 北韓은 물론 中國·蘇聯·東歐와 같은 社會主義諸國과 經濟交流를 중심으로 하는 非政治分野의 접촉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90년 이들 北方國家들과의 總交易額은 46億3,930萬달러에 달하였고 향후 급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88년 10월부터 '9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南北韓經濟交流의 實績은 北韓物資의 搬入이 119件에 3,925萬2千달러, 搬出은 3件에 16萬2千달러로 總122件에 3,914萬4千달러에 달하였고 금년들어 8월말까지의 南北物資交易은 1億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소련과의 국교수립을 통한 經協 등으로 향후 교역액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저 이에 대한 수송루트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輸出入貨物의 95%가 釜山港을 통하여 輸送되고 있는데 首都圈地域 물동량 집중으로 이의 89%('90年 60%)가 陸上(公路) 運送됨으로 인

해 京釜高速道路 적체가 심화되어 貨物의 適期入渡가 지연되고, 釜山港의 선적 부족으로 인한 채선 심화로 막대한 損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간접 자본투자기획단 자료에 의하면 '90년 도로적체로 1조2천억원, 항만채선으로 인해 7천억원, 총 2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貨主들은 貨物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輸送費, 金融費用, 在庫管理費 등의 物的流通費(Physical Distribution Cost) 節減을 위해 陸·海·空을 연계 수송하는 광범위한 綜合運送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UR協商이 타결되면 運送서비스 部門의 開放이 필연적인데 이 때 우리나라 선사나 複合運送業者가 外國 先進 運送業者와의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輸送手段의 새로운 연계방법이나 신루트를 개발하여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京義線을 利用한 國際複合 輸送方法(TKR : Trans Korea Railroad Container Service)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本 論文은 南北交流의 巨視的 觀點에서의 方案提示에서 탈피하여 微視的 觀點에서 政府의 南北交流의 實踐的 方案인 京義線鐵道 連結을 위한 政策 方案과 國際複合運送業의 發展方案提示에 그 目的이 있다.

유우라시아대륙철도를 이용한 複合輸送으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TSR과 '92년 서비스가 개시될 TCR, TKR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南北韓鐵道(京義線)와 중국·소련철도를 이용한 수송루트인 TKR은 極東地域 貨物을 一次海上輸送에 의해 우리나라의 釜山·仁川港 등으로 輸送하고 다음으로 南北韓·中國·蘇聯鐵道を 이용하여 歐洲·中東·몽골·아프카니스탄 등의 지역으로 輸送하는 것을 말한다.

유우라시아대륙철도를 이용한 複合輸送인 TSR, TCR, TKR에 대한 수송거리와 트랜지트타임(Transit Time), 費用面에 관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송거리에 있어서는 歐洲의 경우 로테르담까지 TSR은 수에즈운하 경유의 해상수송에 비해 약 7,000km 단축할 수 있고, TCR은 仁川港~連雲港~阿拉山口~쿠이비셰프~스몰렌스크 經由의 경우 TSR에 비해 약 1,200km, 極東地域(日本)出發의 경우 약 1,100km 단축된다.

TKR은 日本지역 출발화물의 경우 TSR에 비해 약 950km 단축되며, 京仁地域 出發貨物의 경우 육상구간에서 약 1,040km(서울/부산 444.5km 포함)와 해

상구간 약 800km를 합하여 약 1,840km 단축되는 루트로 TCR에 비해 200km 단축된다.

또한 몽골(울란바토르)까지의 수송거리는 TCR의 경우 連雲港에서 울란바토르까지 2,612km, 해상구간 약 600km로 總 3,212km이나 TKR은 경인지역 출발의 경우 육상구간이 3,177km로 35km 단축되며, 極東(일본)지역출발의 경우 약 290km 단축되는 루트이다.

둘째, 트랜지트 타임에 있어서는 歐洲까지의 海上輸送은 약 30~32일, Trans-Rail방식에 의해 TSR은 26~28일, TCR은 20~22일, TKR은 18~20일이 소요되어 TKR은 TSR에 비해 약 6~10일, TCR에 비해 약 1~4일이 단축된다.

셋째, 비용면에 있어서는 京仁地域出發 獨逸向 전기제품의 경우 40ft當 TCR은 TSR에 비해 약 300달러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TKR은 TSR에 비해 약 770달러(전체의 1/5)정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TKR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유우라시아 大陸橫斷鐵道を 이용한 어떤 輸送方式보다 유리하며, 京義線 鐵道の 연결을 통해 南北韓 經濟交流가 이루어지면 중국에 가서는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輸出入 이용물동량만큼 해상수송을 위해 부산항으로의 국내수송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정부고속도로의 적체 현상과 부산항 체선 심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그런데 TKR 輸送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의선 철도의 연결문제이다. 북한의 모든 계획이 김일성주석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남적화전술을 기본전략으로 南北高位級 會談이나 經濟會談 등에 임하고 있어, 정부주도로의 정책추진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에스캅총회에서 제안된 남북한, 중국, 소련, 몽골 5개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국제철도연결제안을 근거로 차후에 개최될 남북고위급·경제회담에서 과거 쌍방이 합의한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경의선 연결이 아닌 단지 소련, 동구권을 포함한 歐洲向 貨物輸送과 북한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 東北亞經濟圈 構想에 따른 원자재 등의 화물수송을 위한 경의선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TKR 輸送이 개시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外債償還 압력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철도 부설 이외에는 별다른 施設投資 없이도 현행 우리나라 철도料率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TEU當 150달러 정도의 運賃收入과 手數料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측이 현실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경의선을 연결하여 TKR 輸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民間團體나 業體 또는 個人에게 全權을 위임해 주어 민간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측과 협의하여 TKR수송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4條의 규정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소 국교수립에 따른 경험차관과 결부하여 소련측에 우리가 TKR 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諸般事項에 대해 協助要請을 해야 하며, 중국과도 事前協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TKR에 의한 복합수송의 效率化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의 철도 이용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DMZ, 강화지구 등에 南北韓 共同區域 설정을 제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선 TKR 철도 수송을 위한 복합터미널과 産業工團을 연계해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TKR 수송이 개시되면 일본의 輸出入貨物 일부가 이 루트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광양항·부산항 개발시 이점을 고려하여 CY·철도 터미널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재 京釜間(부산진/오봉)의 철도컨테이너 수송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運送業體들이 컨테이너의 公路輸送을 더 선호함에 따라 京釜高速道路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철도컨테이너 수송에 있어 적절한 요율체계·수송시스템 개선과 아울러 부산·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컨테이너가 바로 鐵道輸送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民間業體가 맡고 있는 부곡터미널의 運營體系를 鐵道廳이 직접 맡는 조직의 개편, 중앙집중제어장치(CTC)등 철도시설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을 전국 각지역으로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대

전, 광주, 대구 등의 각권역별로 철도와 트럭의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CY (CFC)를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TKR서비스가 개시되면 TSR Block Train은 52~55臺車로 104~110TEU를 積載輸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철도수송은 25~29臺車로 50~58TEU 적재 수송가능하기 때문에 시베리아철도 연결시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내·TKR화물수송의 효율화와 對貨主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해 關聯政府機關인 關稅廳, 鐵道廳, 海運港灣廳, 公共團體인 BCTOC, 民間關聯業體間 貨物情報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96년 시행예정으로 있는 KNet (Korea Trade Network)의 수출입증인·수출입검사·보험정보 VAN(Value Added Network)과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T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關係當事國과 通過貨物輸送協定을 締結하거나 각 당사국이 참여하는 單一管掌機關을 설립해야만 하며, 이때 만약 각국이 管轄區域만 책임지고 輸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北韓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국가의 승인은 영토의 승인을 포함하므로 우리 憲法第3條에 위배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TKR에 의한 複合輸送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中·蘇國境驛까지 換積없이 신속하게 輸送하기 위해서는 우리 貨車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비용부담문제, Westbound와 Eastbound 물동량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경우의 회차회수문제, 운임의 정산문제, 사고발생구간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 북한, 중국에 대한 複合運送人의 實際運送人에 대한 求償權行使 등에 관한 運送責任問題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관계 당사국간의 協議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南北韓, 中國 三國의 업체나 관계기관의 合作投資로 企業(公司)을 설립하여 TKR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TKR 輸送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 밖의 유우라시아 大陸橫斷鐵道輸送루트인 TSR과 TCR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TCR은 歐洲向 輸出入貨物 수송루트일 뿐 아니라 TCR통과 루트상에 11個省 自治區를 지니기 때문에 이의 이용

시 12億 人口를 가진 중국의 潛在市場을 개척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며 일본이 이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借款提供과 建設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SR은 우리 기업이 시베리아 개발참여시 필요한 수송루트이고 또한 TKR수송불능사태 또는 수송적체시 대체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京仁運河計劃時 TCR수송과 京仁間 貨物輸送의 효율화를 위해 Barge船을 이용해 콘테이너를 仁川港으로 輸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 序 論

우리 나라는 1973년의 「6.23 外交宣言」, 1988년의 「7.7 特別宣言」으로北韓은 물론 中國·蘇聯·東歐와 같은 社會主義諸國과 經濟交流를 중심으로하는 非政治分野의 접촉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90년 이들 北方國家들과의 總交易額은 46億3,930萬달러에 달하였고 향후 급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88년 10월부터 '9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의 南北韓 經濟交流의 實績은 北韓物資의 搬入이 119件에 3,925萬2千달러, 搬出은 3件에 16萬2千달러로 總122件에 3,914萬4千달러에 달하였고 금년들어 8월 말까지의 南北物資 交易은 1億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輸出入貨物의 95%가 釜山港을 통하여 輸送되고 있는데 首都圈地域 물동량 집중으로 이의 89%('90年 63%)가 陸上(公路)運送됨으로 인해 京釜高速道路 적체가 심화되어 貨物의 適期引導가 지연되고, 釜山港의 선석부족으로 인한 체선심화로 막대한 損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자료에 의하면 '90년 도로적체로 인한 손실은 1조 2천억원, 항만체선으로 인한 손실은 7천억원으로 총 2조여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 하였다 한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貨主들은 貨物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輸送費, 金融費用, 在庫管理費 등의 物的流通費(Physical Distribution Cost)節減을 위해 陸·海·空을 연계 수송하는 광범위한 綜合輸送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UR協商이 타결되면 運送서비스 部門의 開放이 필연적인데 이 때 우리 나라 船社나 複合運送業者가 外國先進 運送業者와의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輸送手段의 새로운 연계방법이나 新루트를 개발하여야만 한다.

中國政府는 開放化政策의 추진으로 經濟發展을 가속화시키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東歐諸國과의 交易物動量의 원활한 수송의 필요에 따라 中國大陸을 最短距離로 동서로 관통하고 소련철도와 연계하여 구주까지 수송루트를 연결하려는 TCR(Trans China Railroad Container Service)構想을 위해 소련철도와의 철도연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루트가 輸送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現行 TSR(Trans Siberia Railroad Containor Service)과 함께 極東에서 歐洲까지의 유라시아大陸橫斷鐵道輸送루트는 2個로 늘어나게 되어 경쟁에 의한 運賃引下와 돌발적인 중동사태의 발발에 따른 海上輸送의 위협과 수송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複合輸送業者가 개발한 수송루트가 아니어서 수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단지 이용만 할 수 있을 뿐으로 종합적인 수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우리 政府는 이전의 南北經濟會談에서나 高位級會談에서 京義線 連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985年 5月 17日 合議된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議書」에 의하면 「雙方은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事業에 따른 物資輸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京義線 鐵道를 連結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만약 京義線鐵道가 連結되면 南北韓의 京義線, 中國의 滿洲鐵道와 中東鐵道(하얼빈~만추리 間), 소련시베리아 鐵道를 연결한 汎유라시아大陸橫斷루트¹⁾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우리 나라 釜山港에서 유럽의 全地域, 中東地域, 英國과 프랑스間 海底 터널工事 完了時에는 英國內陸地方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國際輸送루트이고, 突發的 中東事態로 인해 야기되는 海上輸送의 危險에 대비할 수 있는 한 수송방식인 것이다. 이와 함께 市場多邊化政策을 통해 늘어나는 中東·歐洲行 貨物과 급신장세를 보이고있는 對北方交易物動量輸送에 이용할 수 있다면 京釜高速道路 적체현상과 釜山港 체선심화 를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物的流通 費用의 절감을 통해 우리 나라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提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本 論文은 南北交流의 巨視的觀點에서의 方案提示에서 탈피하여 微視的觀點에서 政府의 南北交流의 實踐的인 方案인 京義線鐵道 連結을 위한 政策方案과 우리 나라 複合輸送業 發展方案提示에 그 目的이 있다.

1) 이것을 여기서는 TKR(Trans Korea Railroad Container Service)로 표기 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對北方·歐洲 輸出入 貨物 輸送現況과 問題點

1. 對北方·歐洲交易推移

1) 對歐洲交易推移

80年代들어 先進國間의 貿易不均衡이 심화되어가고 한국 대만등 NICS의 급속한 輸出 增大에 대한 경계로 EC는 '92年の 域內市場統合을 추구하는 한편 EC특유의 保護主義的 反덤핑制度를 자의적으로 동원하여 아시아 新興工業國으로부터의 輸入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의 對EC 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EC의 우리 상품에 대한 輸入規制가 강화되고 있으나<表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對歐洲 輸出額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年度別 우리의 對歐洲 輸出컨테이너 物動量은 '86年 95,586TEU로 前年對比 50.3%의 증가를 보였으나 '88年을 고비로 물량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2-1> 우리나라의 對歐洲 交易推移(단위:백만불/TEU)

년 도	수 출 액 ²⁾	물 동 량 ¹⁾
81	3,382	65,172
82	3,761	61,082
83	3,842	58,317
84	4,100	62,582
85	4,470	63,582
86	5,325	95,586
87	8,013	132,121
88	9,915	161,129
89	9,376	138,641
90	10,973	153,669

資料 1) '81~'88年 FEFC 사무국 통계자료, '89~'90年은 해운항만청자료.
2) 한국무역협회

2) 對北方交易推移

最近 우리나라의 對北方交易規模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73년의 「6.23 宣言」을 통해 共產圈國家에 대해서도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門호를 개방하면서 부터 시작되었고, '89年 東歐圈의 開放化와 改革조치에 힘입은바크고 또한 政府의 北方政策의 結果로 교역의 폭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蘇聯·東歐圈輸出額은 <表 2-2>에서와 같이 '88年 2억3,714만달러에서 '89年 4억7,812만달러로 前年比 20.4%증가추세를 보였으며, '90년에는 10억6,054만달러로 '88년에 비해 무려 약4.4배 증가 하였다.

한편 지난해 對蘇聯·東歐圈과의 總交易額은 16억4,34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1,348억달러의 1.2%에 불과한 것이지만 향후 급상승할 전망이다.

<表 2-2> 對北方交易推移

(단위 : 천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소련	49,895	67,783	67,231	133,132	111,566	178,312	207,746	391,700	519,147	369,652
동구	67,539	19,636	102,352	46,197	125,573	89,317	270,377	117,762	541,396	213,201
소계	117,434	87,419	169,583	179,329	237,139	267,629	478,123	509,462	1,060,543	582,853
기타 (베트남, 몽골)	39,427	27,208	43,909	17,711	63,042	16,908	45,031	42,342	117,340	35,571
합계	156,861	114,627	213,492	197,040	300,181	284,537	523,154	551,804	1,177,883	618,424

資料 : '86~'88年 상공부, '89~'90年 한국무역협회

2. 國內輸送方法과 問題點

1) 京釜間컨테이너 輸送現況

컨테이너부두의 부산집중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인 95%가 釜山港을 통하여 수송되고 있다. '90년 부산항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은 2,273千TEU였으며 이중 36.3%인 824千TEU가 수도권 물동량이었다. 京釜間 輸送量의 輸送手段別 輸送分擔率은 道路 519千TEU로 63%, 鐵道 290千TEU로 35%, 海運 15千TEU로 2%를 담당하고 있다. <表2-3>참조.

2) 內陸輸送上의 問題點

京釜間컨테이너 輸送方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수송상

〈表 2-3〉 京釜間 輸送手段別 輸送分擔現況

(단위 : 千TEU)

輸 送 手 段	계	도로	철도	연안해운	비고
물 동 량 (비 율)	824 (100)	519 (63)	290 (35)	15 (2)	
부산항 물동량 대 (T/S 제외)	36.3	22.8	12.8	0.7	

資 料 : 金英南, 2000年代에 對備한 港灣開發計劃, 海運港灣, 1991/봄호, p.29.

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公路(道路)輸送上의 問題點

京釜間 컨테이너貨物의 도로운송 비율이 높는데 이는 貨主가 保稅運送業體에게 컨테이너 반출지시를하면 이들의 輸送 Mode선택에 따라 컨테이너가 수송되며, 각 업체들은 도로운송을 위한 수송장비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장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로수송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또한 철도운송이 도로운송보다 操作段階등의 운송절차가 복잡하고 요율구조의 경직성등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고속도로의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자료에 의하면 도로적체로 연간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장거리 도로수송은 불필요한 대형트럭의 투입으로 인한 적재효율의 악화에 따른 비용증대와 에너지의 과대소비, 불필요한 수송장비의 투입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資源配分の 最適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 鐵道輸送上의 問題點

富谷터미널은 우리 나라 유일한 컨테이너 철도내륙기지로서 철도청이 투자하여 전체 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직접 운영하지 않고 16個 小運送業體에 의해 분할 관리되고 있으며, 하역시설은 弘益會가 CFS는 世邦이, 컨테이너 수리시설은 개인회사가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어 수송이 조직화, 체계화 되지 못하며 操作의 多段階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아니라 선하증권(B/L)을 발급하지 못하여 貨主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

또한 釜山鎮驛터미널의 운영형태도 부곡터미널과 같으며 소운송업체가 하역부문까지 담당하고 있다.

(3) 沿岸海上輸送上의 問題點

'90年 仁川/釜山間 컨테이너의 해상수송실적은 15千TEU로 미미한 실정이나 부산항의 On-Dock CY 시설부족으로 인한 32個 Off-Dock CY의 산재에 따른 부산시내 교통체증

과 경부고속도로의 적체가 심화 될 경우 연안해상수송의 이용이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하역에 의해 항만물류비가 증가된다.

3. 港灣施設現況과 問題點

1) 港灣施設現況

(1) 釜山港灣施設

우리 나라 컨테이너貨物들은 모두 釜山港과 仁川港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釜山港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는 <表2-4>와 같이 전체의 95%가량이 釜山港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表 2-4> 釜山港 컨테이너 物動量 推移

(단위 : TEU)

구 분	적(Full)			공(Empty)			합 계		
	입 항	출 항	계	입 항	출 항	계	입 항	출 항	계
1976	115,517	182,211	297,728	48,831	4,202	53,033	164,348	186,413	350,761
1977	160,794	231,319	392,113	53,515	8,654	62,169	214,309	239,973	454,282
1978	199,986	261,739	461,725	34,030	10,801	44,831	234,016	272,540	506,556
1979	237,444	280,680	520,124	29,513	46,937	76,450	266,957	329,617	596,574
1980	201,028	336,968	537,996	55,114	39,756	94,870	256,142	376,724	632,866
1981	239,552	391,989	631,541	76,051	36,376	112,427	315,603	428,365	743,968
1982	259,599	388,985	643,584	88,861	49,211	138,072	348,460	438,196	786,656
1983	286,565	432,989	719,554	88,444	75,654	164,098	375,009	508,643	883,652
1984	328,850	518,358	847,208	95,056	112,066	207,122	423,906	630,424	1,054,330
1985	365,436	560,179	925,615	117,706	111,976	229,682	483,142	672,155	1,155,297
1986	471,075	746,304	1,217,379	159,503	71,343	230,844	630,578	817,647	1,448,223
1987	596,804	944,459	1,541,263	217,339	65,531	283,870	814,143	1,010,990	1,825,133
1988	684,603	1,086,823	1,771,426	200,977	93,059	294,036	885,580	1,179,882	2,065,462
1989	771,048	1,059,827	1,830,875	159,908	168,045	327,953	930,956	1,227,872	2,158,828

資料: 해운항만청, 해운항만통계년보, 1990.

釜山港은 在來埠頭인 1. 2. 3. 4埠頭와 컨테이너專用埠頭인 5. 6埠頭로 되어 있다. 5埠頭는 1978년에, 6埠頭는 1983년에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공용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3단계부두(신선대 컨테이너부두)가 '91年6月 개장되었으며, 접안능력 5만톤급 3척, 연간하역능력 96만TEU, 연간 장치능력 84만TEU이다.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시설 현황은 <表 2-5>와 같이 총면적이 641,714m²이고, 안벽은 1,262m로 5万吨級 4隻이 동시 접안이 가능하며, 16,447 TEU를 동시에 장치할 수 있다. '88年 2月부터 BCTOC 내의 CY장치기능을 마샬링기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장치능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²⁾

<表 2-5 > BCTOC施設 現況

시 설 명	내 역	비 고
면 적	641,714 m ²	
안 벽	1,262 m	5만톤급 4척 동시접안
수 심	12.5 m	
컨테이너 장치장	377,165 m ² (114,092평)	16,447TEU 동시장치
CFS	25,617 m ² (7,749평)	3동
정 비 공 장	2,748 m ² (831평)	2동
철 도 인 입 선	600 m (2차선)	31량 동시수용
사 무 실	6,823 m ² (2,604평)	7동
기 타 부 지	217,499 m ²	도로, 주차장 등
하 역 능 력	900 천 TEU	

資料: 해운항만청, 부산광역시개발기본계획, 1989.7.

재래부두는 BCTOC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많은 컨테이너가 하역되고 있는데 年間 保管能力은 64,000 TEU, 年間 荷役能力은 360,000 TEU에 불과하나 처리물동량은 고유능력보다 월등히 많아 항만에서 直上車運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부두의 시설현황은 <表2-6>과 같으며, 총 면적은 16万 6千m²로서 부두별로 잡화, 철재, 시멘트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야드는 1埠頭 20,463m², 3埠頭 989m², 4埠頭 1,350m²정도로 총 면적의 14%에 불과하여 마샬링, CY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며, 단지 荷役을 그 主要業務로 하고 부수적으로 區内移送, 內陸輸送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다.

2) KMI, 컨테이너의 港灣/內陸輸送合理化方案, 1988. p.107.

〈表 2-6〉 在來埠頭施設 現況

부 두 명	시설연장 (m)	전면수심 (-m)	접 안 능 력		건설년도	비 고
			규 모(DWT)	치수		
소 계	10,213		100~50,000	71		
제 1 부 두	397	9	7,000~8,000	2	(1912) 1977	잡화, 컨테이너
제 2 부 두	925	8-11	1,000~20,000	6	(1927) 1979	"
증 양 부 두	645	9	8,000	4	1944	원목, 잡화
제 3 부 두	1,126	9	3,000~20,000	7	1941	잡화, 컨테이너
제 4 부 두	1,308	4-9	3,000~20,000	9	1943	"
제 7 부 두	광석	337	7.5~9.5	5,000		
	고철	193	12	15,000	1	1978
	석탄	127	12	6,000	1	
제 8 부 두	1,000	5-10.5	1,000~15,000	7	1980	특수화물
국제여객부두	556	6-9	3,000~10,000	3	(1978) 1988	여객, 컨테이너
연안여객부두	480	6.5	100~5,000	12	1977	여객, 잡화
연 합 안 벙	946	3-8	500~4,000	8	1974	철재, 잡화
동 명 부 두	240	3-8	1,000~2,000	12	1974	유류, 선어

資料: 〈表 2-5〉과 同一

(2) 仁川港灣 施設

인천항 4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은 1974년에 개장되었으며, 韓進 및 大韓通運의 民間 資本을 유치하여 건설한 사유터미널이다. 4埠頭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규모 컨테이너 專用埠頭로서 선박내에 트레일러가 직접 출입할 수 있는 Roll on-off Ramp³⁾가 설비되어 있어 컨테이너 및 重量貨物을 직접 하역함으로써 신속한 船積 및 揚陸이 가능하게 되었다.⁴⁾

3) 仁川商工會議所, 仁川港振興委員會, 仁川港總覽, 1986, p. 49.

4) 해운산업연구원·한국산업경제연구원, 컨테이너 요율체계개선 및 개발 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연구, 1990.6., p. 64.

한진은 3만톤, 2만톤 각 1선석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1만톤 1선석은 一般貨物埠頭로 사용중이고, 대한통운은 일반화물부두로 조성하여 필요시에만 컨테이너 부두로 전용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를 북미항로 취항 컨테이너선과 동남아해운, 흥아해운, 長錦有限公司 선박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주요 定期船社들은 취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테이너 年間 荷役能力은 36万 9千 TEU, 藏置能力은 46万 8千 TEU로 추정된다.

〈表 2-7〉 仁川港 컨테이너埠頭施設 및 裝備 現況

안벽길이	접안능력(DWT)	하역능력	야적장	장 비	장 치 능 력
1,160m	10,000톤 1척	2,309	147,186 m ²	갠트리크레인 5기	한진 :1,700TEU
	20,000톤 1척	천톤	CY :68.827 m ²	트랜스테이너 4대	
	30,000톤 1척	(27만		스프레다 19대	대한통운 :1,200TEU
	40,000톤 1척	TEU)		캐리리프트 1대	
	50,000톤 1척		트랙터 54대		
			CFS :19.80m ²	트레일러 169대	연간 39만TEU
				샤 시 268대	

資料: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한국항만하역협회 인천지구협회
대한통운, 한진기획부

2) 問題點

(1) 선석부족에 따른 체선심화

우리 나라 컨테이너부두와 일반부두의 선석부족으로 선석대기 시간이 증가하여 '89年 현대상선의 PSW/PNW항로에서 부산항의 선석대기 시간이 각각 평균 10.7시간, 14.9시간⁵⁾이었으며, '90년에는 평균 5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선박체선으로 인한 체선료가 운임으로 전가되고 화물인도가 지연됨으로 인해 화주들은 불필요한 금융비용등의 손실을 보게 된다.

(2) 컨테이너 처리능력 부족

'89년도 전국취급 컨테이너物動量은 2,375千TEU로서 이중 釜山港 취급 컨테이너는 전국의 95%에 해당하는 2,158千TEU로 부산항 처리능력 1,260千TEU를 상회하고 있어

5) 박세용, 一貫運送體制確立의 必要性和 制度改善, 荷主, '90/3호, p.7.

처리능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表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年 6月末 신선대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되었으나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화물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表 2-8〉 컨테이너 貨物需要 및 處理能力展望

(단위 : 千TEU)

구 분	'89	'91	'96	2001
물 동 량	2,375	2,940	4,600	6,900
처리능력	1,410	2,520	4,470	6,620
과 부족	△965	△420	△130	△280

資 料 : KMI, 光陽 新港灣開發 基本計劃에 관한 研究, 1990.

(3) On-Dock CY(Container Yard) 부족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중 82%가 BCTOC On-Dock CY의 부족으로 시내에 산재한 Off-Dock CY를 이용해야하는 불합리한 유통체제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화물의 적기 인도가 지연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輸送段階와 이중 조작으로 화물유통비가 증대하고 있다.

Ⅲ. TKR의 利用과 問題點

1. TKR의 利用可能性

우리 나라는 1973년의 「6.23 外交宣言」, 1988년의 「7.7 特別宣言」 등으로 北韓은 물론 中國·蘇聯·東歐와 같은 社會主義諸國과 經濟交流를 중심으로 하는 非政治分野의 접촉을 크게 확대 함으로서 '90年 11月 蘇聯과 國交를 수립하였고, 中國과는 貿易代表部를 상호 개설하였다.

우리 政府는 이전의 南北經濟會談에서나 高位級會談에서 京義線 連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985年 5月 17日 合意된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議書」에 의하면 「雙方은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事業에 따른 物資輸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京義線 鐵道를 連結하기로 한다.」⁶⁾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京義線 連結事業이 雙方에 利益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되나 北韓側의 반대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北韓의 開放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部分的인 開放措置를 취해나가면서 이를 段階的으로 擴大하는 方式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北韓이 처해 있는 극심한 經濟難과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동구권 國家들과의 經濟交流激減, 蘇聯과의 經濟交流 역시 改革 및 對外開放없이 확대하기 힘든 상황 등을 利用하여 京義線 連結을 통해 汎유라시아大陸橫斷鐵道 루트가 개설되어 北韓側이 現實的인 實益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함으로서 自發的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편 '91年 4月 6日 서울에서 개최된 第 47次 에스캅(UN亞太經濟社會理事會)에서 우리나라와 蘇聯은 南北韓과 中國, 蘇聯, 몽골등 東南亞 5個國을 연결하는 國際鐵道網의 건설을 공동제의 하였다.⁷⁾ 또한 中國도 東北三省(吉林, 遼寧, 黑龍江)의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으로 中·蘇兩國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京義線 連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이때 우리측이 주의해야 할 것은 上記 合議書에 규정된 목적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이의 국제적이용이 우선적인 것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6) 李相禹의 6名, 북한 40년, 乙酉文化社, 1989, p. 657.

7) 조선일보 1991. 4. 7字

2. TKR 關聯國의 鐵道施設現況과 輸送體制

1) 우리나라

(1) 富谷터미널

同터미널은 '84年 7月 富谷驛을 중심으로 綜合鐵道貨物基地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컨테이너와 양회만을 취급하고 있다. 부곡터미널은 京仁地域 工業團地를 중심으로한 ICD(Inland Container Depot)로서의 입지조건(서울 38km, 수원 10km, 안양 14km, 부곡 4.4km, 경수산업도로 2.4km)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總 39萬坪의 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오봉역에는 本線 7個線(580~600m)과 側線 6個線(475~500m), 컨테이너 기지에는 1군線 3個線(575m), 2군선 3個線(575m), 3군線 2個線(545m)의 8個線으로 구성되어 있어 總 4,540m²로 각종 열차의 입환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컨테이너 기지에는 16個 小運送業體가 관리하는 CY(7萬 7千坪), 세방기업에서 관리하는 CFS 1동(1.1千坪), 관리사무소 1동, 컨테이너 정비소 1동(300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荷役裝備는 트랜스태이너 2기(35噸), 톱핸들러 12기(35噸), 포크리프트 14台, 크레인 1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弘益會의 트랜스태이너 2기, 톱핸들러 1기, 포크리프트 1대를 제외하고는 소운송업체의 장비이다.

(2) 부산진驛 鐵道터미널

부산진역은 BCTOC의 철도시설과 연결하는 우암선의 시발점으로 釜山港과 부곡터미널을 연결시켜주는 輸送據點이다.

부산진역의 철도터미널도 부곡터미널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 장비와 터미널의 운영이 대부분 小運送業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역구내의 철도 CY에는 3개의 引入線이 배치되어 있는데 1번선(세방선) 272m(11량), 2번선(통운선) 490m(16량), 3번선(고려선) 490m(16량)으로 總 42輛의 貨車作業을 할 수 있다. 年間藏置能力은 約 9.3萬 TEU, 荷役能力 約 28萬 TEU로 추정된다.

부산진역의 각 入口線의 길이는 1個 單位열차를 구성하기에 짧은 側線이기 때문에 入口線별로 작업된 화차를 1개 열차로 조성하여 부곡터미널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列車造成作業이 필요하다. 또한 부곡에서 부산진으로 도착한 수출 컨테이너 중

8) 白種實, 우리나라 컨테이너 鐵道輸送現況과 改善方向, 海運産業動向, 1990年 3月 號, p.12.

BCTOC로 반입될 컨테이너가 각 列車마다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BCTOC行 컨테이너列車을 따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단계의 열차조성작업으로 불필요한 조작단계와 작업시간이 소요되어 합리적인 수송체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⁹⁾

(3) BCTOC鐵送地域

BCTOC鐵送施設은 철도인입선이 3個線(各 300m)이나 1개선은 담장에 인접하여 사용 불능이나 기관차의 진입은 가능하다. 입환 가능 화차량은 15~16량으로 列車當 30~31량의 화차를 견인해와 BCTOC 철송지역에서 上·下車作業을 할 수 있으며, 荷役能力은 레일용 트랜스터이너 1대로 年間 約 11万 TEU 이다. BCTOC鐵送地域面積은 4,165坪이나 실장치면적은 488坪으로 年間藏置能力은 約 3.1万 TEU 이다.

〈表 3-1〉 釜山鎮驛 小運送業體의 貨貸·裝備 現況

소운송업체	CY(m ³)	CFS(m ³)	장 비
대한통운	16,975	1,386	T/H 2, F/L 2
고려종합	11,286	-	T/H 1, 크레인 1, F/L 1
세방	32,053	-	T/H 2, F/L 1
국보	10,521	-	T/H 1
계	70,835	1,386	T/H 6, F/L 4, 크레인 1

資料: 부산진역

주: T/H : 틈헨들러, F/L : 포크리프트

BCTOC는 15個 小運送業體와 契約을 체결하여 컨테이너 철도수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산진역에 철도 CY를 가진 대한통운, 세방, 고려, 국보와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동진, 천경-고려, 양양-대한통운, 일양-세방을 제외한 업체들은 직접 BCTOC 철도 CY에서 컨테이너 上·下車作業을 하며, 부산진역에 철도 CY를 가진 4업체의 輸出컨테이너의 일부도 BCTOC에서 下車作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2) 北韓

北韓은 日帝가 建設하여 놓은 鐵道網을 基礎로 經濟計劃을 추진하는 가운데 自體의 計劃에 맞추어 輸送網을 확장시켜 왔는데 東西海岸連結路線, 對蘇國境路線들이 건설된 것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 KMI, 前掲書, pp.155~157.

이 鐵道網敷設과 함께 電氣機關車와 디젤機關車を 生産하여 鐵道電氣化 및 내연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標準軌化와 중량레일화 공사도 함께 추진되었다.

鐵道運營은 中央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鐵道部에 司令室을 두어 지휘하게 하였으며, 1970年 후반부터는 集中列車運送體系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集中列車輸送이란 석탄, 광석, 시멘트, 木材 등 重量貨物이 大部分인 鐵道貨物을 수송함에 있어서 生産地에서 消費地까지 중간 정차없이 직통으로 수송하여 運行時間을 短縮 함으로써 보다 많은 貨物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다.

集中貨物驛 建設과 함께 비료, 곡물, 시멘트, 유류등의 貨物들을 용기에 담아 쉽게 荷役할 수 있도록 하는 짐함(一種의 컨테이너) 輸送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같은 諸般 施策의 결과 北韓은 현재 總貨物巡換量中 鐵道가 90%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중 87.5%는 電鐵에 의해 수송되고 있다.¹⁰⁾

中蘇와 國境을 맞대고 있는 北韓은 이들 國家와 鐵道로 連結되어 있는데 中共과는 6個路線, 蘇聯과는 1個路線이 연결되어 있으나 現在 신의주, 남양, 두만강역을 통하는 3個路線만이 運營되고 있는 실정이다.

對中國路線運營은 1954年 1月 5日 체결된 “朝·中直通列車 運行協定”에 의거하여 평양/북경間 列車가 開通되었는데 運行上 問題點이나 貨物運賃, 時間編成 등은 上記 協定에 의하여 구성된 “朝·中國境鐵道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하고 있다. 이委員會는 每年 교대로 北韓과 中國地域에서 개최되고 있다.¹¹⁾

소련과의 鐵道運營은 1963年 3月 鴻의선(鴻의~두만강)이 부설되어 시베리아鐵道와 連結된 후 부터이며 쌍방간에는 “朝·蘇國境鐵道共同委員會”가 구성되어 제반 필요한 事項을 토의하여 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과는 軌幅이 달라서 國境驛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련의 핫산역에는 換車施設이 갖추어져 있다.

이 對蘇國境鐵道는 소련이 나진港을 對東南亞 貿易貨物 轉輸 港口로 이용하기 시작한 1974年 이후부터는 運營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한 移動貨物은 소련으로부터는 原木, 原油, 코크스 및 機械類이며 北韓으로 부터는 채소, 광석, 금속류가 소련으로 輸送되고 있는데 通過貨物量은 年間 500萬 噸 정도에 달한다. 평양/모스크바間 旅客輸送列車는 두만강驛을 通過하지 않고 신의주驛을 통하여 中國의 심양, 하얼빈을 거쳐 치타/모스크바로 가는 路線을 運行하고 있으며 所要時間은 8日이 걸린다.¹²⁾

1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China, North Korea Country Profile 1990-91, 1990, p. 75.

11)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p. 846-847.

12) 上揭書, p. 847.

〈表 3-2〉北韓 國境鐵道區間 現況

대 상 국	구 간	비 고
중 공	신의주 - 단동 청수 - 장전하구 만포 - 좁안 삼봉 - 개산둔 훈릉 - 훈춘 남양 - 도문	운 행 중
소 련	두만강 - 하산	운 행 중 운 행 중

資 料 :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 847.

3) 中國

中國의 鐵道는 가장 중요한 輸送手段이고, 鐵道の 現代化와 新規路線의 增設이 經濟發展의 주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中國의 鐵道는 專用線과 引入線 등을 포함하여 '89年 66,918km¹³⁾ 이지만 營業距離는 53,187km 이며, 軌幅은 1,453mm의 標準軌(一部區間제외)이고, 機關車保有臺數는 '89年 13,727臺로 이중 SL(증기기관차) 6,919臺, 디젤기관차 5,378臺, 電氣機關車는 1,430¹⁴⁾臺이고, 客車 1.9萬輛과 貨車 28萬輛이 있다.¹⁵⁾

근래에 中國의 철도에 관한 정책의 흐름은 량보다 質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곧 일부의 新線建設은 하지만 중점은 電化, 複線化, 차량의 대형화, 자동화 등 질의 충실에 있다.

한편 수송능력의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電化의 추진이 급무이며, 鐵道建設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5年間 新設電化區間은 3,000여km에 이르러 총전화 구간은 6,400여km로 전체 철로의 12%에 달한다.¹⁶⁾

中國鐵路交通分布는 〈圖 3-1〉와 같다.

컨테이너 鐵道輸送은 철도부와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고있으며, 조정을 행한다. 그리고 每月 17日~20日 까지 4日間 物流의 촉진과 합리적인 船舶配船, 화차의 배차를 목적으로 북경 바란스회의가 열린다. 여기에는 交通部(각항무국, 각해운국, COSCO), 철도부, 대외경제무역부(SINOTRANS, 외국무역총공사), 상업부가 참석한다.

水陸聯運(連合運輸: 船과 鐵道の 複合輸送)에 관해서는 당연히 철도부가 참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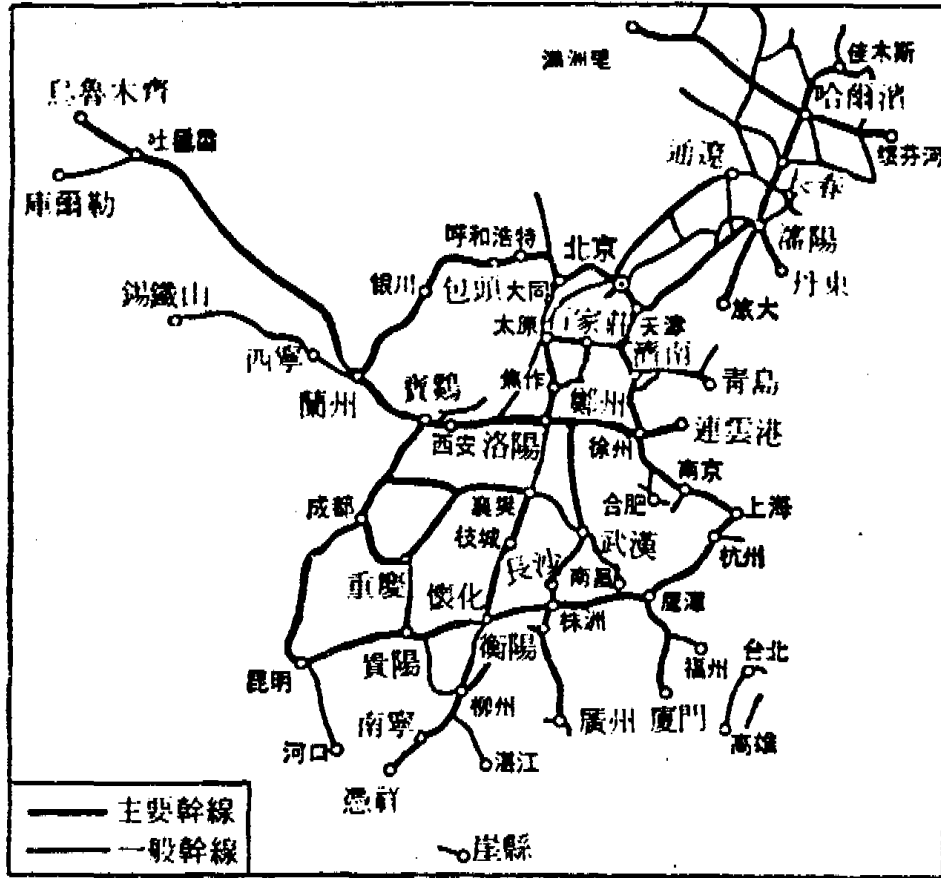
13) 통계청, 中國主要統計指標, 1991, p. 82.

14) 經濟企劃院對外經濟調整室, 中國經濟統計, 1990. 12, p. 142.

15) Reed Business Publishing Ltd., Railway Directory & Year Book, 1989, p. 351.

16) 통계청, 前掲書, p. 81.

〈圖 3-1〉 中國鐵路交通分布圖



資料：一柱編譯樓，最新分省中國地圖，香港學林書店，p.20.

화차 배차의뢰를 위해 통상 COSCO 와 SINOTRNS는 1개월 단위로 필요한 화차의 調達數를 철도부에 요구하여야 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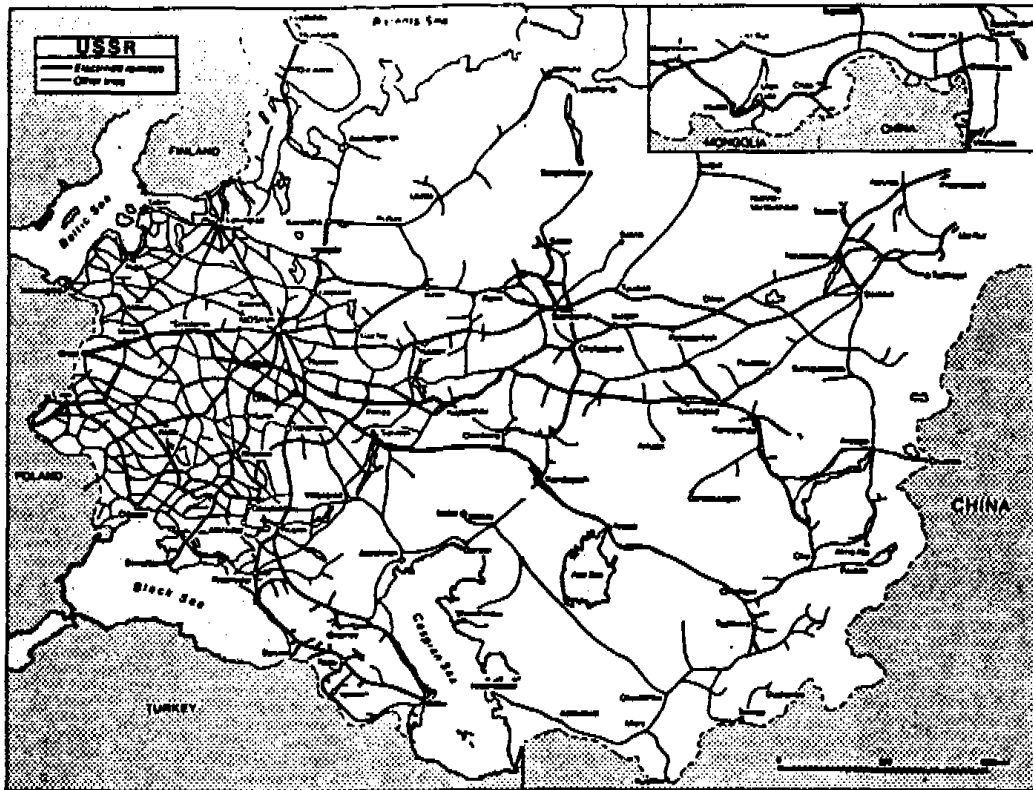
4) 蘇聯

시베리아橫斷鐵道の 총길이는 약 1万km이고 1916년 全線開通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스리線(1891年着工-1897年完成), 아무르線(1908年着工-1916年完成), 자바이칼線(1895年着工-1901年完成), 周바이칼線(1899年着工-1904年完成), 中部시베리아線(1893年着工-1899年完成), 西시베리아線(1892年着工-1896年完成), 러시아철도로 구성되어 있다.¹⁸⁾ 蘇聯의 鐵道路線은 〈圖 3-2〉와 같다.

17) 鳥居幸雄，中國の港灣と物流，日本海事新聞社・關西總局，1987，pp. 105~106.

18) NHK取材班，シベリア橫斷鐵道 赤い流星「ロシア號」の旅，日本放送出版協會，1982，p.142.

〈圖 3-2〉 蘇聯鐵道路線圖



資料: Reed Business Publishing, Railway Directory & Year Book 1989, pp. 342~343.

3. TKR의 長點

만약 京義線鐵道가 連結되면 南北韓의 京義線, 中國의 南滿鐵道와 中東鐵道(하얼빈~만추리間), 소련시베리아鐵道を 연결한 汎유라시아大陸橫斷루트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釜山港 등에서 유럽의 全地域, 中東地域, 몽골, 英國과 프랑스間 海底터널 工事 完了時에는 英國內陸地方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國際輸送루트이고, 突發的 中東事態로 인해 야기되는 海上輸送의 危險에 대비할 수 있는 한 수송방식인 것이다. 이와 함께 市場多邊化政策을 통해 늘어나는 中東·歐洲行 貨物과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對北方交易物動量輸送에 이용할 수 있다면 現行 SLB(TSR)輸送보다 輸送期間이 6~10日 단축되고 運送經費가 1/5정도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物的流通費用의 절감을 통해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提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日本의 輸出入貨物의 1/3以上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年間 輸送量이 15萬TEU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南北韓 공히 많은 貨物通過料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KR을 이용하여 複合輸送을 할때 國內貨主들이 누릴 수 있는 메리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TSR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보스토치니港驛에서의 적체 현상¹⁹⁾등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둘째, TKR은 總輸送距離가 國內貨主(京仁地域)의 경우 TSR 보다 約 1,840km 단축된다.²⁰⁾

셋째, 貨物의 Transit Time이 단축된다. 歐洲向 貨物은 海上輸送이 約 30~32日, TSR輸送이 26~28日 인데 반해 TKR은 陸上鐵道輸送區間이 짧아 各國鐵道와 잘 연계만 되면 18~20日이 소요되어 TSR에 비해 6~10日 정도 단축되고, TCR과 비교해도 1~4日이 단축되는 최상의 노선이다.

넷째, 京仁地域 출발의 경우 TKR을 이용하면 TSR·TCR輸送에 비해 輸送費用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TKR은 TSR에 비해 1,840km정도 단축되는 루트로서 독일향 전기제품의 경우 40ft當 TSR보다 約 770 달러(전체의 1/5)정도 절감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현재 우리 나라 輸出入貨物 國內輸送上의 문제점인 고속도로 적체와 항만의 체선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輸出入貨物의 95%가량이 釜山港을 통하여 海上輸送되고 있는데 首都圈地域 物動量 집중으로 이의 89%('90年 63%)가 公路輸送됨으로 경부고속도로 적체가 심화되고, 부산항 선석부족으로 인한 체선 심화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TKR을 이용하게 되면 부산에서의 해상수송이 불필요하여 고속도로 적체와 부산항 체선현상을 막을 수 있다.

여섯째, 우리 나라 複合輸送業者가 主가 되는 수송루트개발로 國際的인 複合輸送業者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포워딩 업자는 외국회사의 代理店이거나 파트너로 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尙後 UR協商이 妥結되면 필연적으로 國內輸送 서비스部分이 개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國內業界는 外國의 우수한 國際複合輸送業體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단순한 貨物周旋人으로 전락할 입장에 처해있으나, TKR이 이용되면 그 起點이 우리 나라 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主가되어 國際複合輸送을 실시하게 된다.

그 외에 京義線鐵道 連結로 南北交流가 촉진되고 南北統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19) 業界에 따르면 '90년에 平均 6日의 적체가 있었다 함.

20) 이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TSR] 보스토치니~모스크바 : 9,455km

[TKR] 모스크바~심양: 8,160km, 심양~단동: 227km, 신의주~개성: 423km, 개성~서울: 74km 임.

따라서 육상구간 約 600km, 경부간 444.5km, 해상구간 約 800km를 합하여 約 1,840km가 단축됨.

4. TKR 利用上의 問題點

1) 京義線連結問題

TKR에 의한 複合輸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京義線철도가 연결되어야 한다. 南北雙方은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事業에 따른 物資輸送을 원활히 하기 위해 京義線鐵道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中國鐵道利用問題

京義線連結도 중요하지만 TKR輸送루트는 歐洲向의 경우 瀋陽·하얼빈鐵道局을 몽골向의 경우는 瀋陽·北京·呼和浩特鐵道局을 통해야만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中國鐵道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약이 있어야 한다.

3) 우리 나라 憲法第3條 위배문제

만약 TKR輸送을 위한 單一管掌機關이 설립되지 않고 관계 당사국들과 通過貨物輸送協定을 체결하여 각국이 관할 구역만 책임지고 수송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으로 되며, 國家의 승인은 領土의 승인을 포함하므로 우리 나라 憲法第3條에 위배²¹⁾되는 것이 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21) 金明基, 國際法上 北方政策과 北韓의 法的 地位에 관한 研究, 社會科學論叢(明知大社會科學研究所), 1990, p. 78.

IV. TKR에 의한 複合輸送

1. TKR의 基本概念

1) TKR의 基本概念

TKR은 日本, 대만, 홍콩 곧 極東을 起點으로 하여 一次船舶을 이용하는 海上輸送에 의하고, 다음으로 유우라시아(Eurasia) 大陸을 횡단하는 內陸輸送의 接點에서 南北韓·中國·蘇聯鐵道에 연결되어 目的地로 향하는 複合輸送이다. 곧 極東에서 유럽·중동行 貨物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우리나라의 부산항등으로 海上輸送한 다음 우리나라 鐵道廳, 北韓鐵道部, 中國鐵道部, 와 全中通過貨物(運輸)公司(만약 TCR의 관장기관으로 설립되면), SOTRA와 蘇聯鐵道 Association 등의 수송 담당기관과 韓國, 日本, 유럽의 複合輸送業者(Fright Forwarder)들이 제휴하여 鐵道로 南北韓, 中國, 蘇聯의 유우라시아大陸을 횡단, 中東近接地域이나 蘇聯西部의 國境地域까지 수송하고 여기서 다시 東·西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鐵道, 콘테이너船,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國際複合輸送이다. 그 밖에 TKR은 南北韓·中國鐵道を 연결해 中國의 遼寧·吉林·黑龍江省과 內蒙古自治區北部地域(中國東北經濟區)²²⁾ 向 貨物을 수송할 수 있고, 또한 우리와 國交를 수립한 內陸國인 몽골向 貨物을 수송할 수 있는 國際複合輸送루트이기도 하다.

TKR의 構想은 이 루트가 極東에서 歐洲까지 가는 루트중 가장 짧은 루트는 아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複合輸送業者가 主가 될 수 있고, 또한 TSR·TCR輸送時 필수적인 海上輸送이 불필요함에 따라 輸送時間에서나 費用面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 착안된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貨主들은 貨物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輸送費, 金融費用, 在庫管理費 등의 物的流通費(Physical Distribution Cost) 節減을 위해 陸·海·空을 연계 수송하는 광범위한 綜合輸送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UR協商이 타결되면 輸送서비스 部門의 開放이 필연적인데 이 때 우리나라 선사나 複合輸送業者가 外國先進 輸送業者와의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輸送手段의 새로운 연계 방법이나 신루트를 개발하여야만 한다. 결국 TKR은 京釜高速道路 적체현상과 釜山港 越前심화를 短期間에 해소하고 UR協商妥結로 인해 발생될 輸送서비스部門의 問題들을 동시에 해결할

22) 여기에 관해서는 崔秀雄, 개방문호 넓히는 中國東北經濟區, 북방경제, IPECK, 1991年 3月號, pp. 72~76. 參照

수 있는 방법이고, 中國 東北地域과 몽골向 화물의 最短輸送루트로 또한 市場多邊化·北方政策으로 인해 증가될 歐洲向 貨物輸送을 위한 신루트로 구상된 것이다. TKR輸送 서비스는 5年前만 해도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였으나 最近 東北亞의 政勢變化로 그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에스캅총회에서는 南北韓, 中國, 蘇聯, 몽골의 5個國의 國際鐵道를 연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TKR은 1920年代 초반에 이미 실제 이용되고 있던 SLB(TSR)의 母體인 大陸橫斷輸送 루트 중의 하나이며, 그 루트는 釜山~서울~開城~平壤~新義州~심양~하얼빈~맨추리~치타~모스크바~歐洲의 獨逸에 이르는 루트였다. 最盛期の 1927년에는 年間 845百여톤의 화물을 수송하였고, 1931년에는 前述한 「歐亞貨物連絡運送約定」이 맺어졌으나 滿州事變勃發로 이 루트의 이용이 중단되었다. 이후 이 루트를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무하였으나 향후 東北亞經濟圈²³⁾구상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複合輸送業의 발전을 위해 TKR루트는 필히 다시 개통 되어져야 하며, 심양/맨추리間은 심양~四平~白城~昂昂溪~맨추리 루트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짐으로서 이 루트를 이용할 경우 심양~하얼빈~맨추리 경유보다 約 60km 단축된다.

2) 輸送 루트

TKR輸送은 <圖4-1>에서와 같이 輸送方式에 따라 크게 3個의 루트로 대별되어 지리라 예상된다.

極東地域 各 港으로부터 우리 나라 釜山港(기타 港도 포함될 수 있다)까지 海路船舶輸送을 행하고, 그 후 南北韓(京義線)鐵道, 中國鐵道를 이용하여 中國東北部地域向·몽골向 화물을 수송하며, 歐洲·中東·아프카니스탄向 화물은 蘇聯鐵도에 연결시켜 陸路鐵道輸送 하여 각각 유럽·中近東의 國境까지 운반하고 이후 各 輸送手段으로부터 Trans-Rail, Trans-Sea, Tracons方式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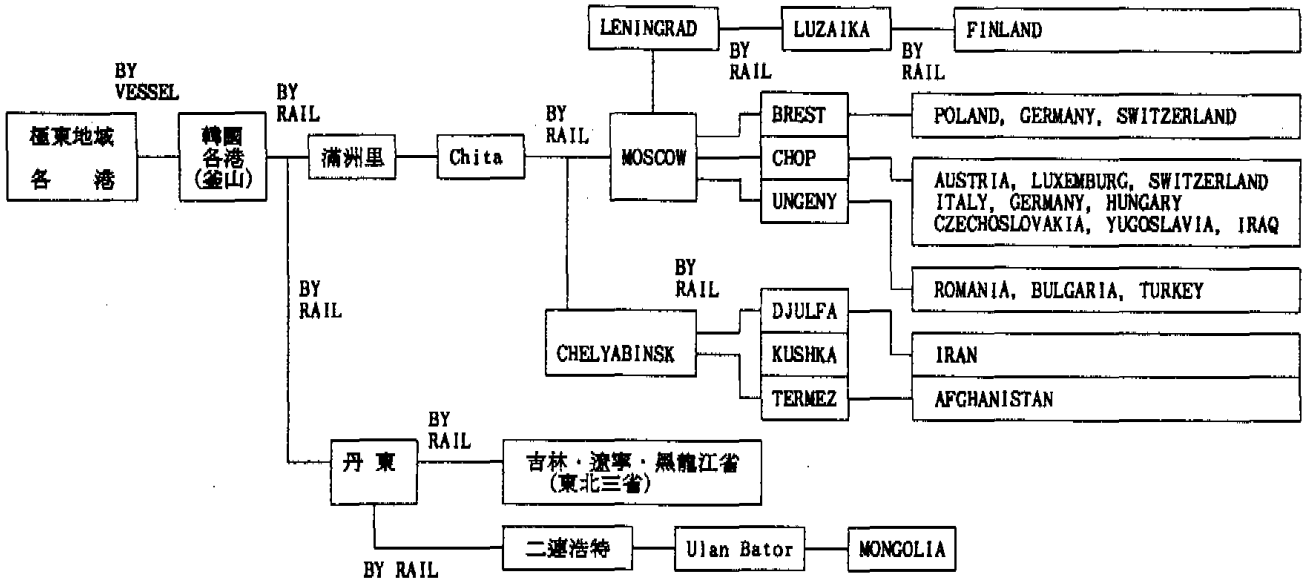
Trans-Rail에 있어서 TSR과 다른 것은 TKR이 歐洲向 화물이외에 中國東北部地域向·몽골向 貨物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經路는 우리의 京義線과 中國鐵道の 接點인 丹東에서 심양, 하얼빈, 연길向 經路와 二連浩特을 지나 올란바토르地域, 몽골 전지역까지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Trans-Sea는 蘇聯西側港인 레닌그라드(Leningrad), 타린(Tallinn), 리가(Riga) 南側港인 즈다노브(Zhdanov), 일리체브스크(Iljichevsk)와 河川利用의 아프카니스탄國境 터메즈(Termez)로부터 각각 海路(河川) 船舶을 이용하여 목적지 근교의 港이나 都市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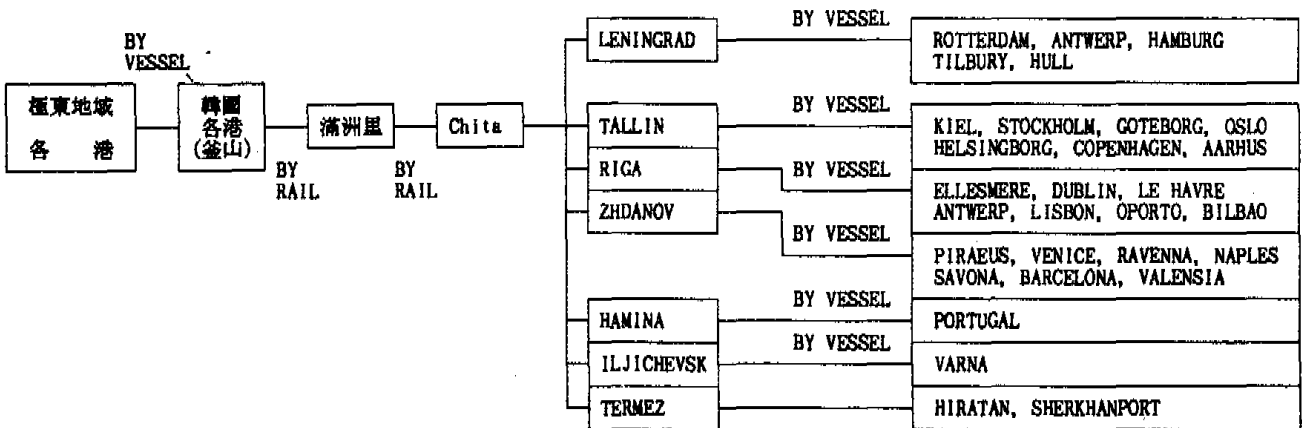
23) 여기에 관해서는 金成勳, 中國의 東北亞經濟圈構想과 戰略, 中蘇經濟研究(韓國中蘇經濟學會), 1989, pp. 1~24. 參照

〈圖 4-1〉TKR輸送方式別 輸送手段과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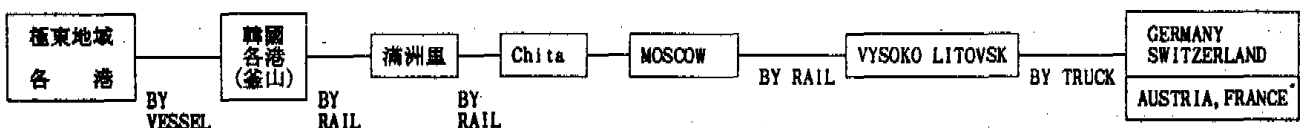
ROUTE I - TRANS-RAIL (TRANSIT TIME : 18~20 DAYS)



ROUTE II - TRANS-SEA (TRANSIT TIME : 23~28 DAYS)



ROUTE III - TRACONS (TRANSIT TIME : 22~25 DAYS)



송되며, 이 때 선박은 蘇聯海運省(MORFLOT) 산하의 國營海運會社船을 이용하고 있다.

Tracons는 蘇聯/폴란드國境의 브레스트(Brest)의 동쪽에 위치한 비소코·리토브스크(Vysoko-Litovsk)까지 鐵道輸送된 화물은 스위스, 프랑스 이북의 서비스지역까지 陸路 트럭수송된다.

2. 運送組織과 運送責任

1) 運送組織

(1) TKR輸送機關·業者

TKR輸送을 담당할 各國의 機關과 業者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複合輸送業者

②韓國鐵道廳, 弘益會(鐵道荷役擔當)

③北韓鐵道部

④中國鐵道部(하얼빈·瀋陽·呼和浩特·北京鐵道分局)과 全中通過貨物(運輸)公司

⑤全蘇通過貨物公團, 鐵道省 Association, 全蘇對外運輸公團(SVT), 蘇聯海運省(MORFLOT), 蘇聯트럭公團(SOVTRANSVOT)

⑥Eurasia Trans社

⑦Intercontainer社

① 韓國鐵道廳, 弘益會

우리 나라 철도의 모든 施設의 管理·運營은 鐵道廳이 담당하고 있으며, '84년부터 京釜間(부곡터미널/부산진) 컨테이너 輸送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부곡터미널을 鐵道廳이 전체 시설을 투자 조성하였으나 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여러 컨테이너 運送 關係業體가 시설을 賃貸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輸送에 있어서 철도청의 역할은 서울, 부산간의 本線輸送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철도 수송의 荷役施設은 弘益會가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CFS는 世邦企業이, 컨테이너 수리 시설은 개인회사가 임대 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釜山鎮鐵道터미널의 경우도 부곡터미널과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鐵道小運送業體가 荷役部門까지 담당하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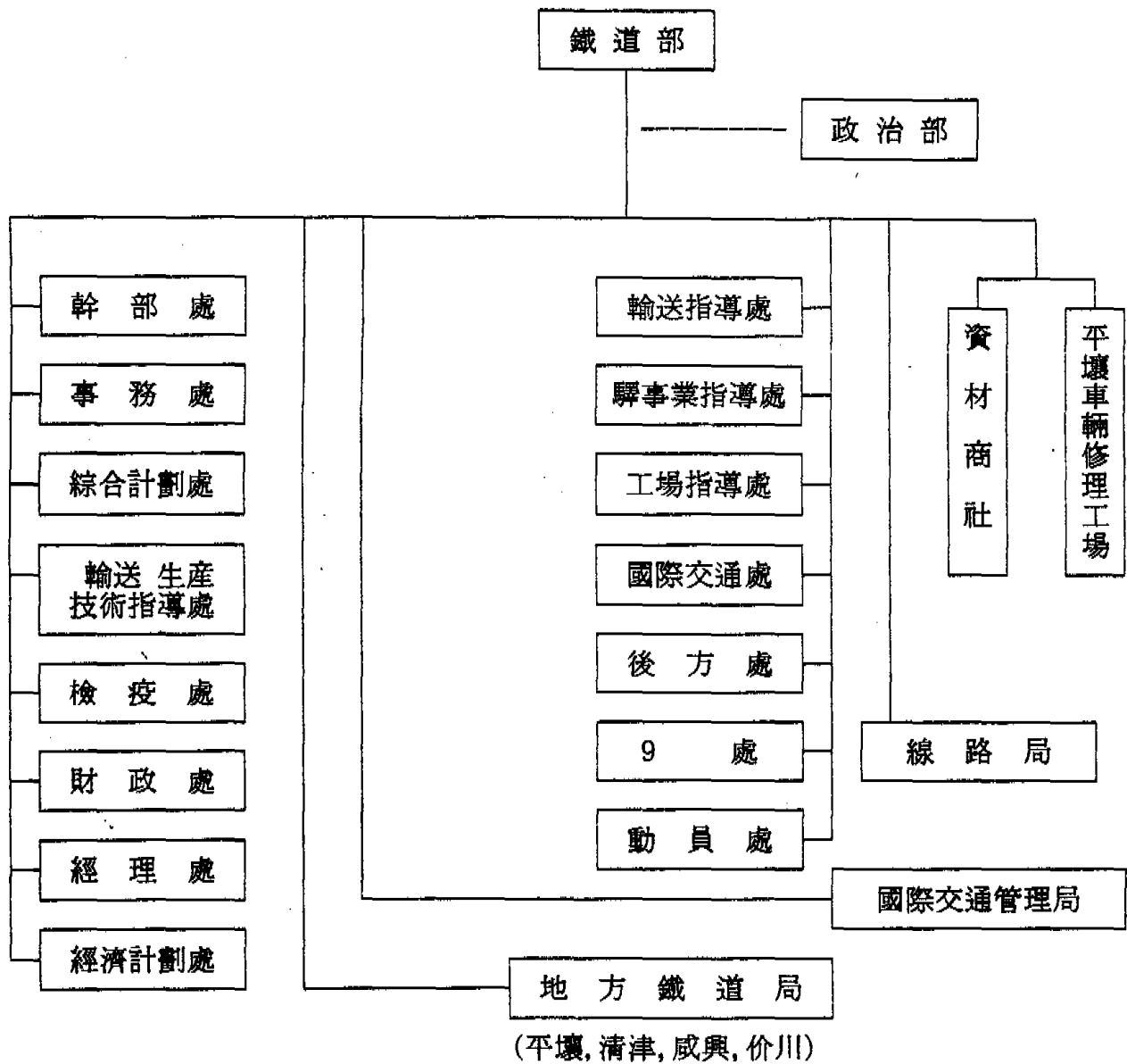
② 北韓鐵道部

鐵道部는 政務院 산하기관으로 1976年9月 交通遞信委員會를 철도부, 체신부, 육해운

24) KMI, 前掲書, p. 176.

부로 분리함에 따라 철도부로 따로 분리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술지도, 자재 및 설비의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 운영 등의 책임을 지며 수립된 계획을 집행한다.²⁵⁾ 鐵道部の組織은 <圖4-2>과 같다.

<圖 4-2> 北韓鐵道部組織



資料 : 朴完信, 北韓行政論, 喜生出版社; 1988, p. 138.

25)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 233.

北韓의 輸送政策은 지금까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미봉책에 그쳤다. 북한이 추진해 온 수송정책의 기본 방침은 첫째, 기존 수송시설의 확장·현대화·시설개수 등에 역점을 두었고, 둘째, 輸送運營體系의 개선으로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본방침에 따라 철도의 전철화추진, 레일의 중량화, 철도장비 생산증대 등 주로 철도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自動車·船舶輸送과 三化輸送²⁶⁾ 등을 철도의 보조적 기능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진해 왔다.

북한이 근래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三大輸送體系는 ①集中輸送 ②連繫輸送 ③集合輸送을 말하며, 집중수송은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 요충지에 貨物을 집중시킨후 종합적으로 수송토록 한다는 것이고, 연계수송은 다른 수송수단을 지역과 실정에 맞게 즉각적으로 연결시켜 운송의 공백을 없애자는 것이며, 집합수송은 컨테이너 수송을 말한다.²⁷⁾

③ 中國鐵道部

中國鐵道는 西藏(티벳)自治區를 除外한 모든 省, 自治區, 直轄市에 敷設되어 있으며, 鐵道業務는 國務院傘下의 鐵道部가 담당하고 그 내부조직으로는 22局, 室, 委員會가 있으며, 下部機關으로 12個鐵道局, 工場, 設計院, 施工擔當의 工程局, 科學研究院, 病院 등이 있다. 과거 鐵道部는 '82년까지 20個 鐵道局이 있었지만 그후 改革으로 인한 合併이 진전되어 현재는 <表4-1>에서와 같이 12鐵道局 60分局 2事務所로 되어 있다.²⁸⁾

한편 中國鐵道部 鐵道局과 分局의 組織은 <圖4-4>과 같으며, 現業機關을 관리하고 있는데 輸送關係 現業기관은

車務段[3級이하의 站(驛) 또는 貨物運轉車掌]

站(驛)[1級 내지 2級의 站은 分局直轄]

列車段[旅客列車乘務員(客運段이라고도 함)]

機務段[機關車, 動力車乘務員]

車輛段[客車, 貨車의 檢修]

保溫段[冷藏車의 檢修]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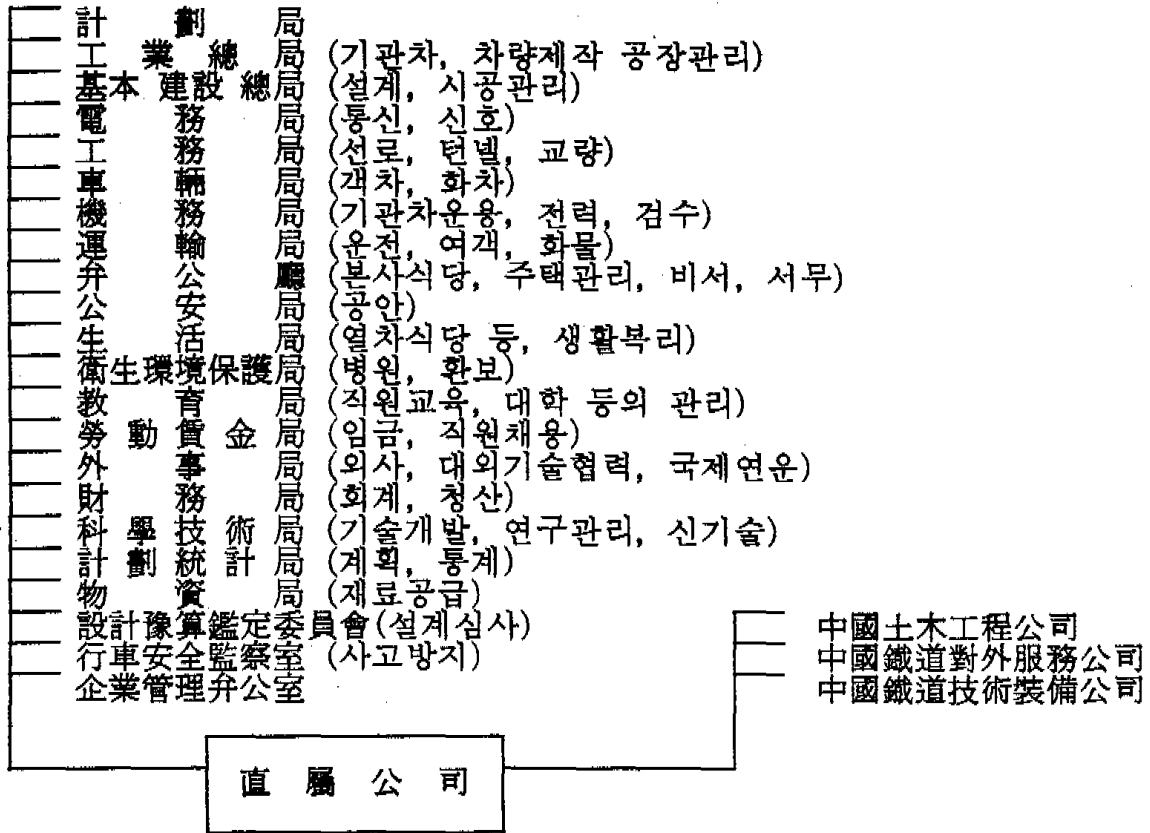
各 鐵道局은 獨立性이 강한반면 橫的 연계가 매우 약한것이 큰 문제점이다.

26) 3화수송이란 ①관화(파이프라인) ②삭도화(케이블카) ③벨트 컨베이어를 말한다.

27) 徐極性, 북한의 경제실상, 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85, pp. 163~164.

28) 中嶋誠一, 中國의 鐵道와 鐵道輸送, 中國經濟, JETRO, 1989. 3. p. 55.
人民交通出版社, 全國交通營運線路里程示意圖, (北京1987), pp.12~17.

〈圖 4-3〉 中國鐵道部 組織과 業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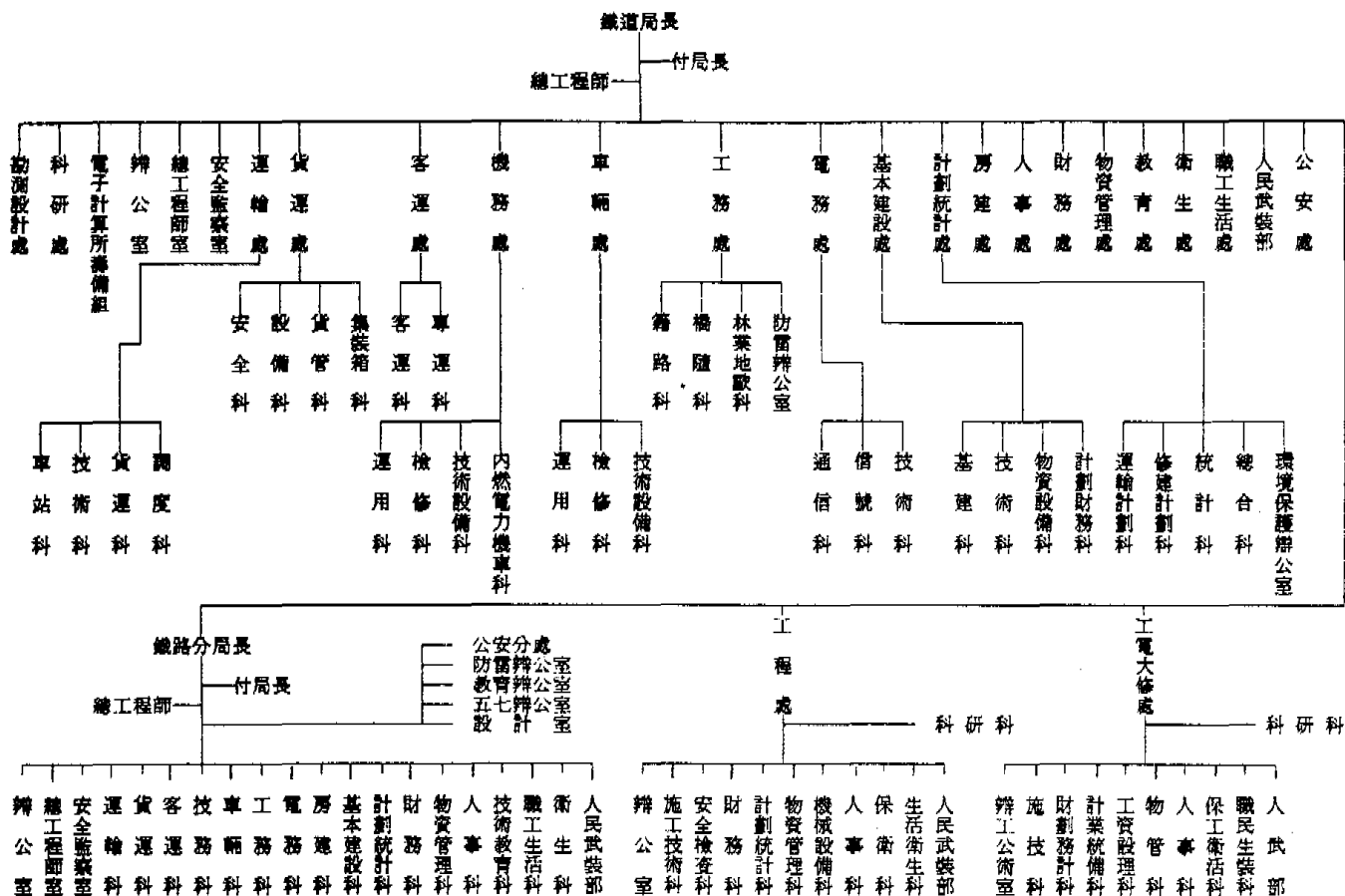
資料: 日中經濟協會, 中國行政·經濟關係機關要覽, 1985, p.54 와
 日中經濟協會, 中國의 陸上運輸, 1985. 5, p.51에 의거 再作成

〈表 4-1〉 各 鐵道局과 鐵道分局

鐵道局	鐵道分局, 事務所	分局數
哈爾濱	齊齊哈爾, 海拉爾, 白城, 伊圖里河, 加格達奇, 하얼빈, 佳木斯, 牡丹江	8
沈陽	吉林, 圖門, 通化, 瀋陽, 長春, 大連, 丹東, 錦州, 鄭家屯, 阜新	10
北京	北京, 石家莊, 天津, 大同, 太原, 臨汾	6
鄭州	鄭州, 洛陽, 新鄉, 武漢, 襄樊, 西安, 寶雞, 安康	8
廣州	廣州, 衡陽, 長沙, 懷化	4
柳州	柳州, 南寧	2
上海	上海, 南京, 杭州, 蚌埠, 南昌, 福州, 鷹潭	7
濟南	濟南, 青島, 徐州	3
蘭州	蘭州, 銀川, 西寧, 武威	4
成都	成都, 重慶, 貴陽, 西昌, 昆明, 開遠	6
呼和浩特	包頭, 集寧	2
烏魯木齊	烏魯木齊(事務所), 哈密(事務所)	2
12 局		60分局

資料: 中嶋誠一, 中國의 鐵道と鐵道輸送, 中國經濟, JETRO, 1989. 3., p.55.

〈圖 4-4〉 中國鐵道部 鐵路局, 分局의 組織圖



資料: 日中經濟協會, 中國의 陸上運輸, 1985, p. 53.

TKR 루트는 하얼빈, 瀋陽, 北京, 呼和浩特的 4個鐵道局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齊齊哈爾, 白城, 하얼빈, 審陽, 長春, 丹東, 北京, 集寧의 分局을 통과하고 있어 이들의 협력에 의해 원활한 TKR輸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래 시행되고 있는 經濟請負責任制下에서 鐵道局 聯合企業公司를 설립하여 철도수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④ 全中國通過貨物(運輸)公司

中國政府는 TCR을 이용한 國際複合輸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國家經濟委員會主導下에 COSCO, PENAVICO, SINOTRANS, 鐵道部가 공동참여하여 大策을 강구중이며, TCR輸送의 관장자로서 全中國通過貨物(運輸)公司(가칭)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同公司가 中國對外經濟貿易部 혹은 交通部의 산하 直屬公司로 설립된다면, 그 業務目的은 첫째, 海運, 河川, 鐵道, 自動車 및 航空의 各輸送手段을 연계한 複合수송으로 中國과 第三國領土를 經유하여 外國의 通過貨物輸送의 유치와 조직화, 둘째, 各輸送에

관해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通過貨物을 수송하는 Operator 으로 의화획득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일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TKR輸送에 있어서도 中國內 交渉·協定の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全蘇通過貨物公團(SOTRA : V/O SOJUZTRANSIT)

SOTRA는 對外經濟關係省(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²⁹⁾의 하부조직으로 1980年 2月 1日부터 SLB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으며, '90年초 SVT와 완전히 분리독립되었다.

SOTRA의 業務目的은 첫째, 海運·河川運輸·鐵道·自動車 및 航空의 各輸送手段을 복합화하여 蘇聯邦이나 第三國 領土經由로 外國의 Transit 貨物輸送의 유치와 조직화하고, 둘째, TSR수송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적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Transit 화물수송에 관한 오프레이션으로 의화획득과 效率化를 도모함에 있다.³⁰⁾ 따라서 SOTRA는 실제업무에 있어서는 蘇聯邦鐵道, 海運省, SVT, AEROFLOT 등의 輸送機關과 個別契約을 체결하여 행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화물수송을 청부받는 기관으로 蘇聯邦內의 交渉·協定の 창구역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Eurasia Trans社가 설립되어 과거에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는 상실되고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SOTRA는 다음의 3個公社로 구성되어 있다.³¹⁾

① SIBTRANSIT(시베리아 通過貨物)社

트랜스 시베리아루트에 따라 蘇聯邦 및 第三國 곧 中國, 北韓, 베트남의 領土經由로 유럽과 이란 아프카니스탄 그밖의 지역으로 화물수송을 행함.

② INTRANSIT社

Trans Caucasian Container Service(TCCS)를 이용하여 이란방향, 이란과 極東諸國, 이란과 歐洲諸國과의 화물수송을 행함.

③ YUZHTRANSIT社

아프카니스탄, 몽골, 이라크, 시리아 그 밖의 인접지역까지 소연방 및 제3국 영토 경유의 화물수송을 행함.

29) 對外經濟關係省은 對外貿易省과 對外經濟關係國家委員會를 통합하여 1988年 1月に 설립되었다. 同省은 세계 모든 국가와의 通商, 협력업무 및 貿易協定, 外換, 재정등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무역 실무기관을 일원화하여 대외무역 정책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漢陽大 中蘇研究所, 蘇聯邦의 經濟體制 및 制度分析, 1989, p. 195.

30) 松本好雄·宮本 敬·市來清也·富田 功, 最新國際複合輸送の話, 港運新書, 1985, p. 123.

31) JANE'S Containerization DIRECTORY 1989~90, p. 335.

⑥ 全蘇對外運輸公團(V/O SOJUZVNESHTRANS : SVT)

SVT는 對外經濟關係省 산하 國營複合運送業體로 TSR을 개발운영해오다 이를 전담하는 부서로 SOTRA를 설립하여 운영을 맡겨 왔으나 '90년부터 직접 TSR輸送에 참여하기로 했다. SVT는 소련의 모든 항구와 국경역, 공항등 주요지역에 支部, 事業所와 해외 지점을 갖고 거의 모든 소련의 輸出入貨物을 운송하고 있다.

SVT는 소련복합운송기관중 최대의 조직이며 각 업무별로 i) Fracht Service ii) Techvneshtans iii) Expresstrans iv) Intertrans v) Inservice vi) Transervice 등의 조직³²⁾이 있고, 폴란드와의 國境驛인 Brest(브레스트)에는 19,000sg. m.의 Container Terminal과 Depot를 가지고 있어 1,000TEU를 장치할수 있다.

SVT는 서방국가와의 합작회사로 아프카니스탄의 Astras와 Afsotr, 이란의 Irsotr, 東·中部 유럽 總代理店인 오스트리아의 Asotra, 西·北部 유럽 총대리점인 독일의 Westora, 이태리의 Italsotra, 핀란드의 Saimaa Lines, 스웨덴의 Scansov를 두고 있다.³³⁾

SVT는 TSR輸送에 蘇聯內支部 30個所와 事務所 11個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 수송에 관한 各文書作成과 換積, 장치, 荷役業務를 행한다.³⁴⁾

⑦ 蘇聯海運省(USSR MINISTRY OF MERCHANT MARINE : V/O MORFLOT)

海運省은 소련해운을 관장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船舶의 建造, 購賣, 備船, 修理, 港灣管理, 船員教育, 代理店業務, 對外海運協力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며, 國家計劃委員會(GOSPLAN)의 결정된 의사와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부기관들을 감독·조정한다. 모스크바에 본부가 있고 레닌그라드(Leningrad), 오데사(Odessa),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등에 地方廳이 있다.

⑧ 蘇聯自動車公團(SOVTRANSVTO)

소련과 인접국가간 곧 동구권 국가들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등에 도로를 통한 貨物輸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련도로의 총연장은 100万km에 이르며 이중 포장도로는 82万km에 이르고 있다. 소련의 도로사정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며, Baltic, 서우크라이나, Transcancasia와 크리미아지역만 도로사정이 좋을 뿐이다.

⑨ 蘇聯鐵道省Association

소련철도는 總延長 143,590km(1988年)인데 이 중 電化區間은 51,733km이며, 연간 화물수송량은 소련전화물량의 55%가량 이다.

32) 朴鍾玉, 蘇聯의 海運 및 複合運送現況, Korea Shipping Gazette, May 7, 1990, p. 145.

33) SOJUZVNESHTRANS, International Forwarders 선전팜플렛.

34) 松本好雄·宮本敬·市來青也·富田功, 前掲書, p. 125.

소련철도는 소련鐵道省이 일괄관리하고 있지만 실제의 운행에는 32個의 地方鐵道管理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zerbaidzhanian	Alma-Atinsk	Baikal-Amur
White Russian(Byelorussian)		East Siberian
Gorki	Far Eastern	Donetsk
Trans-Baikal	West Kazakhstan	West Siberian
Trans-Caucasian	Krasnoyarsk	Kemerovsk
Kuibyshev	Lvovsk	Moldavian
Moscow	Odessa	Oktyabrsk
Baltic	Volga	Dniepr
Sverdlovsk	Northern	North Caucasian
Central Asian	Tselinn	South Eastern
South Western	Southern	South Ural

이 중 TKR輸送에는 9이상의 鐵道管理局의 관할노선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Brest 向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Baykal Railways→②East-Siberian Railways→③Krasnoyarsk Railways→④Kemerovo Railways→⑤West Siberian Railways→⑥Sverdlovsk Railways→⑦Gorki Railways→⑧Moscow Railways→⑨White Russian Railways 로 연결되어 간다.

⑩ EURASIA TRANS社

1990年8月1日을 기해서 TSR輸送과 관련한 큰 變革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종래 TSR輸送業務를 담당해오던 全蘇通過貨物公團(SOTRA)의 獨占運營體制에서 自由競爭에 의한 效率化와 利潤極大化를 위한 複數의 General Operator 體制로의 轉換이다. 이는 SOTRA의 강력한 競爭相對가 생겨 TSR輸送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Eurasia Trans 社는 SOTRA 와 동일한 지위로 TSR輸送에 참여할 수 있어 TSR 運營組織과 運賃體系, 代理店契約 등 TSR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urasia Trans 社는 資本金 約125萬루블(2억 6천만엔)으로 蘇聯鐵道省 Association (51%)과 日本 Jeuro 社(49%)의 合資企業이다.³⁵⁾

Jeuro 社의 宮本社長이 E. T 社를 설립하고자 했던 저변의 구상은 과거의 TSR輸送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인 Transit time의 불규칙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 수송루트보다 경쟁력이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TSR輸送時 발생했던 문제들, 즉 과거에 Block-Train 이 화물이 다차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不定期運行과 Vostochny 를 출발해서 10이상의 鐵道管理局의 管轄路線을 통과하고 각 철도관리국이 바뀔 때마다 機關車와 승무원을 교체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接續이

35) JEURO Container Transport 社 提供資料

잘되지 않는 점을 시정하는 方案으로 運營의 원활화를 위해 32개 소련철도회사연맹인 蘇聯鐵道省 Association 과 合資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Block-Train 이 화물의 有無에 관계없이 定時出發하기 위해 3,000輛의 貨車를 준비하고 화차는 모두 Green 색으로 도장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중에 화차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Eurasia Trans 社は TSR의 General Operator로서 Baltic Shipping Line, Estonian Shipping Line, SOVTRANSVTO(소련트럭공단), Intercontainer, 各國鐵道會社, 各國 트럭회사 등의 Carrier 들과 契約을 체결하고 集貨會社에게 경쟁력 있는 運賃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SOTRA와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되고 소련철도성 Association 과 공동으로 Block-Train 運行, 관리와 정보서비스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나 Jeuro 대신 Sea-Land를 파트너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⑪ Intercontainer社

歐洲 各國과 연결되는 鐵道는 Intercontainer(International Company for Transport by Transcontainers)인데 이는 國際컨테이너 鐵道運送會社를 말하며, 海上컨테이너의 中대와 함께 이것을 內陸輸送에 접속하기 위해 구주 11개국 철도와 인터프리고(Interfrigo: Internati-onal Railway-owned Company for Refrigerated Transport)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1967年 UIC(國際鐵道聯盟)가 컨테이너수송을 위해 合同機關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의 決議를 하고 同年 Intercontainer의 이름 아래 合同企業이 설립되었다. 同社는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實務上의 總괄은 스위스 바젤에서 하고 있다. 同社는 컨테이너의 국제간 수송업자를 화주로 해서 철도에 의해 국제컨테이너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컨테이너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1983年 5月 구주를 대표하는 국가들에 의해 同社에 歐洲 Container Pool이 설치되어 세가지 타입의 컨테이너 곧 20' · 40' Dry Container, 20' Side Open Container, 20' Platform Flats를 공급하고 철도건인과 화물운반, 취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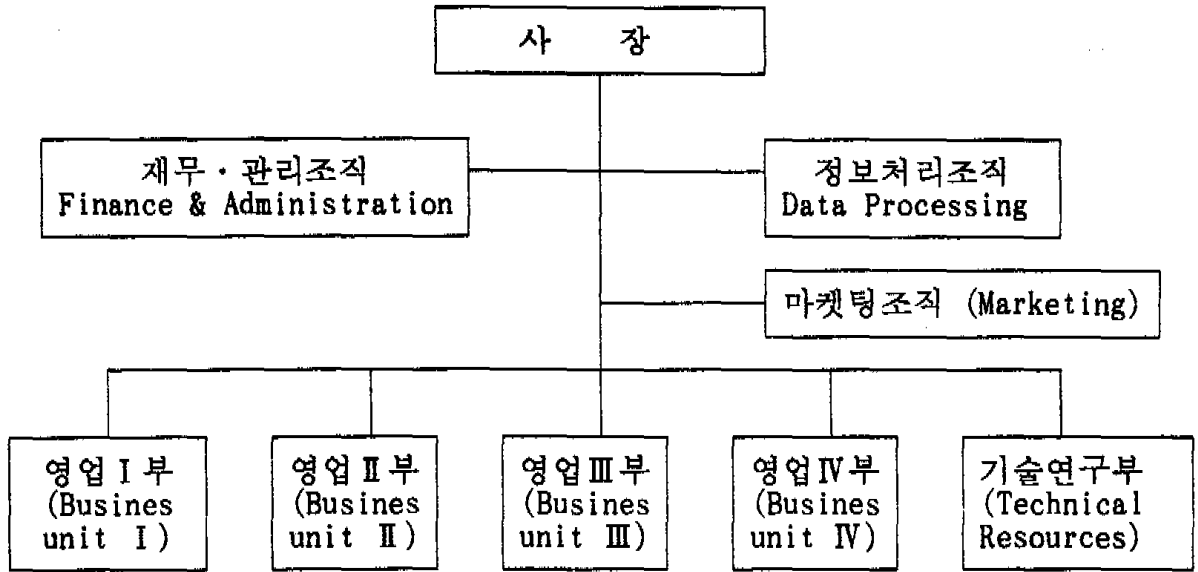
現在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유고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루마니아, 터키가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와 소련철도는 구주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다.³⁶⁾

近來 인터컨테이너社는 책임영업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개편하여 장거리 철도운송 효율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990年 7월에 개편된 인터컨테이너社의 조직은 <圖4-5>과 같은데 각지역을 담당하는

36) Reed Business Publishing Ltd., Railway Directory & Year Book 1989, p. 62.

〈圖 4-5〉 Intercontainer의 組織



資料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August, 1989.

영업1부~4부의 4개 지역별 영업담당부와 기술연구부를 두고 본사에는 재무, 관리조직과 정보처리 조직 그리고 마케팅조직을 두고 있다.

4개의 지역별 영업부는 獨立採算制에 따라 운영되며, 담당지역은 영업1부가 독일, 동구라파, 영업2부가 이탈리아, 남서유럽, 영업3부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영업4부가 중서 유럽을 담당한다.

(2) 單一管掌機關과 複合輸送業者

① 單一管掌機關

TKR輸送의 關聯國은 南北韓, 中國, 蘇聯, 몽골이며, 원활한 수송서비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關係國 상호간의 協定締結이 있어야 한다.

北韓과 中國은 '54年1月25日「朝·中 직통열차운행 협정」을 체결하여 同年6月3日 평양/북경 간 직통여객열차 운행을 개시³⁷⁾하였으며, 運行上 問題點이나 貨物運賃, 時間編成등은 上記協定에 의해 구성된 「朝·中國境鐵道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년 교대로 북한과 中國地域에서 개최되며, 참석자는 주로 철도국장이나 철도 기술담당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蘇聯과는 '63年3月 鴻의선(홍의~두만강)이 부설되어 시베리아鐵道와 연결된 후 「朝·蘇國境鐵道共同委員會」가 구성되어 제반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37) 東亞日報社, 〈原資料로 본〉北韓 1945~1988, 新東亞 1989年 1月號 별책부록, p. 433.

한편 北韓과 中國은 '61年 11月 24日 체결된 「통상항해 조약」 第12條에서 “조약국 일방의 천연산물이나 생산품이 조약국인 다른 일방의 영토를 경유하여 제 3국 영토로 운반할 때나 또는 제 3국 영토로부터 운반해온 화물이 조약국인 다른 일방의 영토를 경유할 때는 관세와 기타 세수를 면제한다. 상기 산물과 화물의 국경 통과시에 있어서의 규정과 수속적용은 어떠한 제 3국의 국경 통과 화물에 주어지는 특혜에 떨어지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또한 蘇聯과는 '60年 11月 19日 체결된 「교역과 항해에 관한 조약」 第 12條에서 “조약체결 일방의 농산물제품 및 공업제품이 조약체결 타방의 영토를 통하여 제3국으로 운송될 때는 관세나 세금 및 기타 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기한 제품의 운송에 관한 규칙과 형식에 있어서 제 3국의 화물운송이 받는 혜택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³⁹⁾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미 TKR輸送이 실시되면 그 당사국중 3개국에 이미 通過貨物에 대한 수송 보장과 통관에 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 별문제는 없으나 우리 나라가 T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국들과 協定을 체결하거나 또는 각 당사국이 참여하는 單一管掌機關을 설립하여야만 하는데 이때 단일관장 기관은 TSR에 있어서의 SOTRA와 같은 업무영역을 가지고 각국의 輸送機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TKR의 원활한 수송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② 複合輸送業者

TKR輸送서비스가 개시되기 위해서 관계당사국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管掌機關이 설립되든, 共同委員會가 설립되든 TKR輸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TKR輸送에 참여할 수 있는 複合輸送業者는 同機關의 營業許可를 받은 업자가 되고, TS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ransit Licence (通過貨物運送許可證)을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TKR에 있어서의 Westbound 화물의 起點이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國內 TKR輸送業者로는 一般的으로 Freight Forwarder라 불려지고 있는 海運業法 第 2條 第 5號와 海運關聯業의 登錄 및 事後管理要領에서 정의한 海上貨物運送周旋業者와 船舶會社, 航空會社, 航空運送周旋業者가 있다.

2) 運送責任

複合運送에 있어서 運送人의 責任은 責任主體, 責任原則, 責任範圍에 따라 분류될

38) 국토통일원, 북괴조약집, 1971. 10., pp. 96~97.

39) 上揭書, p. 191.

수 있다. 그런데 複合運送의 責任形態는 3가지로 구분된다.⁴⁰⁾

① 各運送區間 分割責任型

運送人이 직접 운송한 區間에 대하여만 責任을 지는 形態

② 全運送區間單一責任 各區間異種責任原則(Network Liability System)

運送人이 全運送區間에 대하여 責任을 지되, 各 運送區間마다 기존 責任을 적용 즉, 海上에서는 헤이그룰(Hague Rule), 陸上에서는 道路運送 일때 國際道路貨物運送條約(CMR : 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e de Marchandies par Route), 鐵道運送일때 國際鐵道貨物運送條約(CIM : Convention Internationale concernatele Transport de Marchandies par Chemins de Fer)의 規定에 따른다.

③ 全運送區間單一責任 全運送區間同一責任原則(Uniform Liability System)

全運送區間을 통하여 동일한 內容의 責任을 지는 형태로 不可抗力 外에는 약간의 免責事由밖에 인정하지 않는 無過失責任原則에 가까운 形態.

TKR은 TSR이나 TCR과 달리 최소한 3個國 이상의 領土를 통과하게 되어 화물운송시 손해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관계법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소련측의 輸送距離가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 TSR責任體系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TKR輸送業者가 元請運送人이 되어 TKR輸送서비스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한 北韓·中國의 鐵道運送責任과 蘇聯鐵道運送責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北韓鐵道運送責任

北韓은 '78年 9月 15日 政務院決定 第 183號로 「鐵道運輸에 관한 規定」을 제정⁴¹⁾하였으나 아직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전의 鐵道運輸에 관한 規則은 '47年 9月 25日과 '49年 10月 7日 각각 제정되었었다. 그리고,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규정은 '49年 12月 2日에 交通部(당시) 규칙 제 4호로 제정되었었다.

'47年 9月 25日 制定('47年 10月 1日 施行) 鐵道運輸에 관한 規則에는 鐵道는 天災事變, 기타 不可抗力에 기인한 運送品의 損害에 대하여는 賠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⁴²⁾ 또한 運送品의 引受·保管 및 引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運送品의 滅失·毀損 또는 延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⁴³⁾고 규정하고 있다.

40) 谷川久·高田四郎·小林友次, コンテナ B/L, 勁草書房, 1969, p.15.

41) 大陸研究所, 北韓法令集 第5卷, 1990., p. 446/3362.

42) 同規則 第 97條

43) 同規則 第 99條

한편 '49年 10月의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에는 천재, 선로 불통,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배차 못하였을 때와 내각 지시 및 특명에 의한 긴급 수송으로 인하여 배차 못하였을 때 철도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운송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① 멸실, 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멸실·손상 부분에 대하여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국정판매 가격으로 하되 국정가격이 없는 것은 국가상업기관의 평가에 의한다. ② 연착으로 인한 손해(계획의 임시 수송은 제외 한다)는 운임액을 한도로 하되 연착기간 1일마다 운임액의 5%이다.⁴⁵⁾ 또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는 ①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② 화송인(송화인)의 부정신고 또는 포장불안전으로 인한 손해, ③ 자연변질, 자연건조로 인한 손해⁴⁶⁾다.

'49年 12月의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규정 第12條에는 화물을 탁송할 때는 화송인(송화인)이 1건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발역 및 착역(잘못 알기 쉬운 역명은 그 소속선명까지)
- ② 화송인, 화수인(수화인)의 주소, 성명
- ③ 화물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및 필요한 때에는 그 성질 또는 기호
- ④ 화물의 명칭마다 개수 및 실증량
- ⑤ 운임료금의 지불방법
- ⑥ 인도증명을 청구할 때는 그 요지 등이다.

(2) 中國 輸送機關의 運送責任

① 經濟契約法上的 貨物運送契約과 運送人의 責任

a. 貨物運送契約

현재 중국에는 國際輸送契約에 대해 國內法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中國涉外經濟契約法 第2條에서도 國際輸送契約은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鐵道輸送에 있어서의 運送責任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관규정을 참조하여 類推解釋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中國에서는 貨物運送에 대한 契約은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契約法(原名:經濟合同法)⁴⁷⁾ 第8條에 의해 同法の 規定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經濟契約締結은 國家의 法律을

44) 同規則 第 17條 2項

45) 同規則 第 45條

46) 同規則 第 46條

47) 1981年12月13日 第5期全人代 第4次會議通過, '82年7月1日 施行되었으며, 7章57條로 구성되어 있다.

國會圖書館, 中共의 主要經濟法令集, 1982, pp.65-83.

————, 中共의 經濟法令解說, 1982, pp.14-31.

준수하고, 國家政策과 計劃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⁴⁸⁾ 그리고 經濟契約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고, 법적 拘束力을 가지며, 當事者는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履行하여야 하며, 어느 一方도 任意로 契約을 變更 또는 解除할 수 없으며,⁴⁹⁾ 국가에서 主導하는 계획에 속하는 項目의 經濟去來는 국가에서 下達한 指標를 참조하여 當核機關의 實情에 적합하도록 經濟契約을 체결해야 한다.⁵⁰⁾

貨物運送契約은 貨物搬出計劃, 運送能力 및 運送計劃에 따라 체결해야 하며, 화물을 中繼運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雙方 또는 他方의 責任과 連絡方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⁵¹⁾

b. 運送人의 責任⁵²⁾

i. 運送契約에 規定한 期日과 要求하는 配車(船)便으로 發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託送人에게 違約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ii. 貨物이 錯誤로 다른 貨物到着地 또는 受貨人에게 잘못 送達되었을 경우에는 契約에 規定한 貨物到着地 또는 受貨人에게 無償으로 運送하여 주어야 한다. 貨物引渡期間이 經過된 다음 貨物을 運送하였을 경우에는 貨物引渡期間超過에 대한 違約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iii. 運送過程中에 貨物이 滅失, 不足, 變質, 汚染, 毀損되었을 경우에는 貨物의 實質的인 損害(包裝費, 運送費用도 포함한다)에 대한 賠償을 하여야 한다.

iv. 中繼貨物이 滅失, 不足, 變質, 汚染 또는 毀損되어 運送人이 賠償의 責任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最終段階의 運送人이 規定에 依하여 賠償하고 다시 最終段階의 運送人이 其他 責任이 있는 運送人들에게 順次賠償시키도록 한다.

v. 法律과 契約에 規定된 條件과 一致되게 運送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因하여 화물이 滅失, 不足, 變質, 汚染 또는 毀損되었을 경우에는 運送人이 違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가. 不可抗力

나. 貨物自體의 自然的인 性質

다. 貨物의 自然損耗

라. 送貨人 또는 受貨人自身の 過失

48) 同法第4條

49) 同法第6條

50) 同法第11條

51) 同法第20條 參照

52) 同法 第41條 第1項

② 中國의 鐵道貨物 運送契約 施行細則과 運送責任

鐵道貨物運送契約施行細則⁵³⁾은 中國經濟契約法の 相關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國際連繫鐵道輸送에 관한 規定은 없다. (同施行細則 2條參照) 同細則은 中國鐵道部가 公布한 鐵道貨物運送營業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또한 鐵道運送部署와 기업, 국가기관, 사업단위 등의 法人 상호간에 체결한 貨物運輸契約에 적용되므로 TKR輸送의 경우에도 準用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a. 鐵道貨物 運送契約

運送委託人이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運送取扱人和 貨物運送契約을 체결해야 하는데 鐵道運送計劃을 참고로 하여 鐵道運送能力에 의거하여 체결해야 한다.⁵⁴⁾

컨테이너 화물은 貨物運送狀으로 運輸契約을 대체할 수 있으며, 運送取扱者가 送貨人이 제출한 運送狀에 역, 날자를 가인하므로써 계약은 성립된다.⁵⁵⁾

貨物運送狀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⁵⁶⁾

①송·수화인의 姓名 및 주소, ②발·착역과 착역의 주관鐵道(分)局, ③적재 화물명, ④수량, 중량(화물포장중량포함), ⑤운송취급일, ⑥운송도착시간, ⑦운송비용, ⑧화물차 종류와 차량번호, ⑨컨테이너 번호, ⑩雙方이 협의 결정한 其他事項

b. 運送取扱人の 책임

운송취급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⁵⁷⁾

①계약상에 약정된 時間, 數量, 車種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貨車를 배치해야 하고, ②역구내에 장치된 컨테이너의 上·下車작업을 책임진다.⁵⁸⁾ ③취급 화물은 계약상의 기간과 착역에 따라 완전하고, 하자없이 인도해야 한다. ④송·수화인이 결정한 지점에 화차를 배치한다. ⑤運賃過收가 발견될 경우 송·수화인에게 지체없이 반납한다.

운송취급인이 專用鐵道 컨테이너貨車의 화물을 下貨할 경우 운송취급인은 수화인과 함께 협의·결정한 규정에 따라 교부검수를 처리한다.⁵⁹⁾

53) 韓國貿易協會, 中國의 經濟關係法令, 第4集, 1988, pp. 312-320.

1986年11月8日 國務院 認可, 1986年12月20日 鐵道部 公布, 1987年7月1日 施行

54) 同細則 第2條

55) 同細則 第3條

56) 同細則 第7條

57) 同細則 第9條

58) 주요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철도야드간의 수송은 컨테이너 operator의 책임이며, 야드의 컨테이너 하역시설의 설치, 운영, 上·下車작업은 철도부의 관리하에 실시된다.

外國海事情報, 1989, 10月15日字, p.6.

59) 同細則 第12條

한편 화물운송 契約履行中の 免責事由는 다음과 같다.

- ① 不可抗力의 사고 또는 철도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화차배치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② 國家와 省, 自治區, 直轄市의 주관행정기관의 서면요구에 근거하여 적재를 중지한 경우⁶⁰⁾,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화물운송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운송취급인은 간선철로를 이용하여 운송하도록 해야한다.⁶¹⁾ ③ 화물자체의 特殊性質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國家主管部署에서 규정한 화물의 합리적인 소모에 해당하는 경우, ⑤ 송화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⁶²⁾

그리고, 화물운송계약 위반에 대한 운송취급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⁶³⁾

첫째, 다음의 원인으로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취급인은 차량에 따라 송화인에게 위약금 50元을 보상한다.

- ① 月別 적차계획 및 협정한 車種이나 車型에 따라 충분히 차량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단, 해당 月의 차종과 차형을 보강했거나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배치된 차량의 完整과 청결상태가 운송요구에 부적합한 경우

둘째, 운송취급시부터 화물인도시까지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완료시까지 규정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화물상에 발생한 손실, 결함, 변질, 오염, 파손 등에 대해 아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 ① 이미 貨物運送保險에 부보된 화물은 운송취급인이 보험회사와 함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 ② 보험계약한 운송화물은 운송취급인이 명시가격에 따라 배상한다. 단, 화물의 실제 損失額이 명시가격보다 적을 경우 실제 손실액에 따라 배상한다.

- ③ 상기 ①②항 이외에는 모두 운송취급인이 화물의 실제 손실액에 따라 배상한다. 배상가격 산출기준은 철도부가 국가물가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협의하여 별도 규정한다.

셋째, 운송취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착역에 잘못 운송했을 경우 계약규정상의 착역까지 無料運送해 주어야 한다.

넷째, 규정 운송 도착기한내에 화물을 착역에 운송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화물 운송비의 5%에서 20%의 위약금을 보상한다.

60) 同細則 第21條

61) 同細則 第14條

62) 同細則 第18條 第3項

63) 同細則 第18條

다섯째, 손실발생이 운송취급인의 고의행위로 판명된 경우 운송취급인은 규정된 실제 손실배상뿐만 아니라 계약관리기관에 초래된 손실분의 10%에서 50%의 벌금을 부과한다.

(3) 蘇聯鐵道·Intercontainer의 運送責任

TKR수송서비스가 실시되면 소련철도와 Intercontainer의 운송책임을 현행 TSR의 운송 책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TSR輸送에 참가하는 各社의 Through B/L의 裏面約款에 정해져 있는 責任體系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나 TCM 條約案(國際物件複合運送條約案: project de convention sur le Tra-nsport Internationale Combiné de Marchandies)을 토대로 한 一般原則과 Network System으로 되어 있다. 단, 損害賠償額에 관해서는 一定金額에 의한 限度額을 정할 것, 到着地 가격에 의한 것, 혹은 送狀價格에 의한 것 등으로 나뉘어 지고 있으나 UN協約에는 責任限度額에 관하여 包裝 또는 그밖의 船積單位當 920 SDR, 또는 滅失하거나 損傷을 받은 物品의 總重量의 1kg當 2.75 SDR의 어느쪽이든 높은 쪽을 넘지않는 金額으로 제한되어 있다.⁶⁴⁾

複合運送人으로서의 各社의 責任은 引受地 또는 揚貨港에서 貨物을 인도할 때까지의 전구간에 미친다. 즉, 이 사이에서 생긴 貨物의 滅失 또는 損傷(延着에 대한 責任을 갖지 않는 것은 複合運送 船荷證券(CT B/L)과 같다)에 관해서는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免責事由도 나열되어 있는데 各社가 거의 공통으로 채용하는 면책사유는 아래와 같다.⁶⁵⁾

- ①貨主 또는 화주를 위해 행위하는 者의 故意나 過失
- ②貨物의 잠재결함이나 性質
- ③貨物의 包裝不備나 缺陷
- ④貨主나 화주를 위해 행위하는 者나 또는 그러한 權利를 갖고 있는 者의 지휘에 따른 것.
- ⑤貨主나 화주를 위해 행위하는 者에 의한 貨物의 取扱, 積載, 積置.
- ⑥貨物, 包裝, 梱包 및 컨테이너에 記載된 記號나 番號의 不備나 缺陷.
- ⑦同盟罷業, 閉鎖, 部分的이든 全體的이든 불문하고 모든 원인에 의한 勞動의 停止나 抑制.
- ⑧상당한 注意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船舶, 車輛, 運送機器, 컨테이너運送 이외의 施設, 터미널의 창고 및 기타 모든 시설의 잠재 결함.

64) 「UN國際複合運送條約」第18條 第1項.

65) 日本海上コンテナ協會, コンテナリゼーションナ總覽, 成山堂, 1978, PP. 469-470.

⑨運送人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피할 수 없고, 또한 結果를 방지할 수 없는 事故나 事件.

이상이 一般原則에 의한 運送人の 責任原則이다.

단, 이 責任은 損害發生場所가 判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TSR서비스에서 실제로 채용하고 있는 條約이나 規則은 다음과 같다.

① 損害發生區間이 判명된 경우

① 海上輸送區間-헤이그·틀

② 나흐드카·보스토치니 부두에서 蘇聯國境까지의 鐵道輸送區間-SMGS(USSR社會主義圈連絡輸送規則)⁶⁶⁾

③ 蘇聯國境에서 歐洲各國에의 鐵道輸送區間-CIM條約:50Gold Francs per Kg.

④ 蘇聯國境에서 歐洲各國에의 トラック輸送區間-CMR條約:25Gold Francs per Kg.

⑤ 下請契約者에 의한 運送, 取扱, 保管 등에 적용되는 法規 및 約款

② 損害發生區間 不明의 경우

全區間에 대해 헤이그·틀에 준거함.

TSR輸送에서 각 NVOCC는 貨物의 目的地 到着時間 遲延에 대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으며, 만약 封印이 파손된 容器가 발견된 경우에는 稅關, 國境警備隊, 터미널 책임자, SVT책임자, 태리맨, 鐵道關係者등의 입회하에 개방검사를 행하며, 이상이 없으면 新規 Seal을 붙여 철도에 인도하고, 貨物의 過不足, 損傷 등 이상이 있는 경우 關係者가 書名한 AKT(事實確認書)를 작성한 후에 철도에 인도하고 있다.

최근의 소련사태에 의해 각 공화국이 분리 독립한다 하여도 현행 TSR운송책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판단된다.

3. 運送手段과 運送節次

1) 運送手段

TKR輸送에는 TKR管掌機關·機構, 合資會社의 營業許可를 취득한 複合輸送業者가 貨主에 대해 Through B/L을 발행하며, 容器를 수배하고, 船腹의 수배를 한다. 우리나라 Westbound貨物은 海上輸送이 불필요하여 容器 수배만 행한다. 輸送業者는 ISO規格의 容器를 사용하며 FCL貨物은 貨主의 工場이나 창고에서 적입된 容器를 인수하여 철도터미널로 수송하고, LCL貨物은 철도터미널 CFS에서 적입한다.

66) 松本好雄·宮本敬·市來清也·富田功, 前掲書, p. 140.

TKR輸送은 다음의 3가지 종류가 될것으로 본다.

(1) Trans-Rail方式

Truck/Rail/Rail/Rail 또는 Sea/Rail/Rail/Rail

(2) Trans-Sea方式

Truck/Rail/Rail/Rail/Sea 또는 Sea/Rail/Rail/Rail/Sea

(3) Tracons方式

Truck/Rail/Rail/Rail/Truck 또는 Sea/Rail/Rail/Rail/Truck

(1) 海上區間

우리 나라 輸出貨物을 수송할 때 TKR을 이용하면 海上輸送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그 외 극동지역에서의 컨테이너貨物은 海上輸送되어 우리 나라 釜山·仁川港 등에서 양화 되어 鐵道터미널로 이송된다.

(2) 陸上區間

陸上區間은 Trans-Rail方式으로 수송할 때 크게 다섯구간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부산항·수도권등의 철도터미널에서 南北韓接境地까지이고, 둘째는 南北韓接境地에서 中國丹東까지, 셋째는 丹東에서 滿洲里까지, 넷째는 中·蘇國境인 滿洲里에서 蘇聯西部國境驛까지, 다섯째는 蘇聯西部國境驛에서 유럽 各 目的地까지 이다.

① 우리 나라(南韓)鐵道輸送區間

우리 나라에서의 컨테이너 鐵道輸送은 1984年 부터 실시 되었고, 부곡(오봉역)/부산진·BCTOC間 定期 18回, 임시 4~8回로 1일 평균 22~26回 운행되고 있으며, 여객열차의 운행시간대를 피해 주로 야간에 운행되고 있다.

컨테이너列車는 3,000마력 이상의 機關車가 25輛 내지 29輛의 貨車를 견인하게 되며 專用컨테이너 列車의 機關車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貨車나 客車 모두를 필요에 따라 견인하게 된다.

3,000마력 이상의 기관차 수는 '89年1月 현재 201臺이고, 컨테이너 화차는 502량이며, 화차의 길이는 13m, 16m, 19m로 각각 다른데 16m화차는 20ft 2개 혹은 40ft 1개를 적재하고도 3.8m정도 불필요한 공간⁶⁷⁾이 생겨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다.⁶⁸⁾

컨테이너列車의 최대속도는 객차의 制動裝置를 가진 화차의 경우에는 기관차의 최대속도가 90km이며, 일반 제동장치를 가진 화차를 견인하는 기관차의 최대속도는 70km,

67) 컨테이너 ISO·KS規格 중 1AA·1A·1AX는 바깥지수 길이 12,192mm이고, 1CC·1C·1CX길이는 6,058mm이다.

韓國컨테이너 工業協會, 컨테이너의 種類와 貨物積入의 常識, 1985, pp. 44~45.

68) 韓國海運技術院, 前掲書, pp. 129~130.

차장차(Caboose)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컨테이너 열차도 70km로 최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정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부곡/부산間 平均 7~9.5時間의 運行時間이 소요됨으로 평균주행속도는 時速 43~58km에 불과한 실정이다. 1개 컨테이너 열차를 주간 서비스에 투입하여 시험 운행중에 있으나 주간의 여객열차 과다운행, 저속의 운행속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88年末부터 운행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시켜 서비스향상을 시도하고 있다.⁶⁹⁾ 富谷터미널의 1日 輸送能力은 約 1,050TEU 정도이다.

〈表 4-2〉 富谷터미널 鐵道輸送實績

〈單位 : 千 Teu〉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積	空	積	空	積	空	積	空	積	空	積	空
發送	10.1	1.8	26.0	3.4	52.6	7.5	68.7	8.4	87.3	16.9	84.0	24.6
到着	15.5	9.6	36.1	18.8	45.4	41.7	61.0	61.4	78.4	50.1	93.8	44.2
小計	25.6	11.4	62.1	22.2	98.0	49.2	129.8	69.8	165.7	67.0	177.8	68.8
計	37.0		84.3		147.2		199.6		232.7		246.6	

資料 : 鐵道廳

② 北韓鐵道輸送區間

한반도의 鐵道는 日本이 大陸을 침략하기 위한 中間通路와 한반도에서 物資와 資源을 약탈하기 위해 建設된 것으로서,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서 經濟를 建設하기 위한 要件과는 거리가 먼 畸形的 體系로 이루어져 있었다.

해방당시 北韓地域의 鐵道는 49個 路線에 總延長 약 3,800km에 이르고 있었으며 그 중 궤폭 1,435mm 는 38個 路線 3,000km, 狹軌(궤폭 762mm)는 700여km 이었다. 휴전 이후 一部地域이 北韓으로 편입되어 토해선(해주~토성)과 응진선(해주~응진)이 북쪽으로 넘어갔고, 京義線이 여현에서 開城까지 연장되었다.

북한은 경의선의 複線鐵道를 單線化⁷⁰⁾ 하였으며, '72年 이후 철로명은 평양을 중심으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주요 철도망은 평양/신의주 평의선(224km), 평양/개성 평부선(200km), 평양/나진 평나선(819km)이 주요간선철도이다.

제3차 7개년('87~'93)계획에는 평양/사리원間을 複線화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⁷¹⁾

69) 白種實, 우리나라 컨테이너 鐵道輸送現況과 改善方向, 海運産業動向, 1990年3月號, pp.10-12.

70) 徐極性, 前揭書, p. 166.

71) 大陸研究所, 前揭書, p. 307/3223.

전국적인 鐵道貨物輸送에 있어서의 電氣機關車의 牽引比重은 1984년에 88.3% 이던 것이 1988년에는 89%에 달했으며, 鐵道幹線과 主要支線에 있어서 電氣機關車에 의한一元化輸送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뿐만아니라 아마도 2~3年後에는 현재 미완성의 간선을 비롯하여 주요지선의 전화에 의하여 전국의 철도전화가 100%완성 될 것으로 보인다.⁷²⁾

이같이 북한이 철도전기화에 전력추구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많은 철도노선이急勾配와 심한 곡선으로 선로능력이 낮으며, 둘째, 노후화한 증기기관차의 대체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셋째, 수입유류를 사용하는 디젤기관차보다 전기기관차 운행으로 동력의 자급화를 기하려는데 있다.⁷³⁾

북한은 '89年 現在 貨車는 '88年 보다 1,500輛이 많은 23.4千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차는 40臺 많은 1,164臺를 보유하고 있다.⁷⁴⁾

전기기관차는 1961년 8월 평양전기기관차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면서 월 1대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생산한「붉은기호」전기 기관차는 4,300마력으로 3,000톤을 견인할 수 있다.

〈表 4-3〉 北韓保有機關車 諸元

구 분	전기(붉은기호)	디젤(금성호)	증 기
마 력	4,300	2,500	1,000
최대속도(km/h)	120	100	100
최대전인력(톤)	3,000	2,500	2,000
무 게(톤)	120	123	-

資料 : 〈表 3-2〉와 同一

그리고, 북한의 鐵道車輛工場은 평양전기기관차공장, 원산철도공장, 나홍철도 공장 등이 있으며, 電氣機關車뿐만 아니라 60~120屯級貨車도 생산하고 있다.〈表4-4 參照〉

北韓鐵道輸送區間은 南北韓接境地域에서 中國의 丹東까지이며, 軌幅이 같아서 환적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中國鐵道輸送區間

北韓鐵道로 輸送된 컨테이너 貨物은 中國의 丹東에서 中國側에 인계되어 歐洲向은 瀋

72) 若林熙·唐笠文男, 資料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資料·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刊行會, 1990, p. 299.

73) 北韓研究所, 前掲書, p. 849.

74) 國土統一院, 1989年度北韓經濟總合平加, 1990. pp. 22.

〈表 4-4〉北韓 鐵道車輛工場

工場	規模	主要製品
平壤 電氣 機關車工場	1級企業所 ⁷⁵⁾	電氣機關車, 內燃機關車 貨車, 客車
元山 鐵道工場	1級企業所	客車, 貨車(60~120噸級) 冷輕車輛
羅興 鐵道工場	2級企業所 ⁷⁶⁾	重量貨車(60噸級), 各種 鐵道裝備
球場 鐵道工場	3級企業所 ⁷⁷⁾	機關車, 客·貨車 部品 및 素材, 자동적재기, 화차전복기
威興 鐵道 綜合工場	3級企業所	車輛部品, 기증기

資料 : 國土統一院, 北韓의 産業政策 및 施設現況(시리즈Ⅳ), 1984.12, p. 340-117.

陽·하얼빈 鐵道局에 의해 몽골向은 瀋陽·北京·呼和浩特 鐵道局에 의해 수송된다.

丹東/瀋陽間 277km는 瀋丹線으로 해방전에 부설되었으며, 瀋陽/하얼빈間 547km는 瀋哈線으로 불려지고 해방전에 부설되었으며 복선이고, 하얼빈/滿洲里間 935km는 濱州線으로 해방전에 부설하였고 복선이다.⁷⁸⁾ 또한 하얼빈철로 제1기 공정이 '91년까지 완공되면 화물운송능력이 1億噸에 달하게 될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⁹⁾

'90年 화물회전량은 전년비 2.9%증가한 26,322억톤·km였으며, 이중 철도화물회전량은 전년비 2.1%증가한 10,593억톤·km이었다.⁸⁰⁾

현재 중국에 ISO規格의 해상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철도 야드는 불과 40여개 있으나 그 대부분이 20' 컨테이너의 수송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鐵道部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향상과 컨테이너 수송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실시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해상컨테이너 수송전문의 대차는 얼마없으며 사이즈가 크고, 컨테이너의 중량에 견딜 수 있는 재래의 Wagon을 이용하고 있다.

철도부는 ISO규격의 컨테이너수송이 가능한 臺車를 소량 보유하고 있으며, 50ton의

75) 종업원 5천명 이상을 가진 주요 제품생산 공장·기업소를 말함

76) 종업원 3천명 이상을 가진 주요 제품생산 공장·기업소를 말함

77) 종업원 5백명 이상을 가진 공장·기업소를 말함

78) 志村嘉一郎, 最新中國國勢要覽, 教育社, 1979, pp. 92-93.

79) 慧峰, 1990年的 中共交通, 中國研究 第25卷 第2期, 1991.2.15, p.69.

80) 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0年 中國의 經濟·社會 發展實績, 1991, p.10

적재능력을 소유한 홉바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길이가 12.5m고 2TEU를 적재할 수 있다.

④ 蘇聯鐵道 輸送區間

滿洲里에 도착한 컨테이너貨物은 소련측 국경역인 자바이칼스크驛에서 中·蘇間의 궤도폭의 차이로 환적된다. 환적된 컨테이너 화물은 시베리아鐵道와 연결되는 치타를 경유하여 소련서부 국경역으로 수송되어 폴란드 국경역 마라세비치에서 궤도폭의 차이로 다시 한번 환적되어 유럽 각 목적지로 수송되며, 貨物輸送時間의 短縮을 위해 블록트레인(Block Train)方式이 채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컨테이너專用列車로 40' 와 60' 컨테이너 Waggon貨車가 있다. 60' 컨테이너 Waggon貨車의 경우에는 20' 컨테이너 3個 또는 40' 컨테이너 1個와 20' 컨테이너 1個를 합하여 目的地別로 분류하여 Waggon에 적재한다. 이 貨車는 四軸 및 六軸의 大型으로 50 ton~90 ton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 一編成에는 52~55臺車 104~110TEU를 적재하며 目的地別로 출발해야 한다. 현재 Block Train은 1일에 약 700km이상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Intercontainer輸送區間

인터컨테이너社는 各 海運會社, 貨主, 取扱代理業者 名義의 컨테이너를 市場豫想에 기초해서 리스를 해주고, 各國의 鐵道와 契約을 맺고 있으며, 各國 國鐵을 통해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위해 트럭運送業者와도 제휴하고 있다. 現在 23個國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그 외 인터프리고(1949년에 설립된 國際冷凍輸送會社, 17個國이 參加)社도 참가하고 있다. 한편 소련 국철은 국제철도연맹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나 Intercontainer와 공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구주향화물수송이 가능하다.

Intercontainer는 독립된 회사조직으로 각국 국철간의 결정에 의하여 국제컨테이너는 모두 同社가 취급하게 되어 있다. 또 同社는 참가 각국 국철에 100% 봉사할 의무를 지며, 업무내용은 국제 컨테이너 운송의 세일즈 및 Operation調整計劃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同社는 참가 각국 국철을 대신하여 單一窓口로서 복합운송계약을 화주에게 제공하고 계획된 국제열차의 운행을 監視하게 되어 있다. 또 각국의 국철은 Intercontainer의 代理店이 된다.

同社가 행하는 컨테이너운송은 3가지 經路가 있는데 그것은 TEEM(Trans European Express Merchandise), Intercontainer Block Container Train, TECE(Trans European Container Express)이다.⁸¹⁾

81) 中尾朔朗, 數内 宏, 國際コンテナ輸送實務指針, 海文堂, 1977, pp. 148~149.

黃根植, 李源哲, 改訂國際複合運送實務, 韓國海事問題研究所, 1985. pp. 235~236.

폴란드 국경역 Brest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역까지의 컨테이너 수송은 TEEM경로를 이용하는데 이는 각국 국철의 협동으로 운행되는 國際貨物列車로 이 貨物列車에 컨테이너貨車를 연결시키고 있다. 유럽全域에 걸친 네트워크가 있으며 역사가 오랜 서비스 방식이다.

Intercontainer社は ISO規格의 20', 30', 40' 컨테이너와 구주 Inland Container, 스왑바디, High-Cube(9ft 6in)와 35' 해상 컨테이너 모두를 수송한다.

화차는 ① 10' 컨테이너 4개, 20' 2개, 30' 1개, 40' 1개를 각각 적재할 수 있는 40' Wagon貨車 ② 20' 컨테이너 3개 30' 2개, 40' 1개와 20' 1개를 적재할 수 있는 60' Wagon貨車 ③ 20' 컨테이너 4개, 30' 컨테이너 2개와 10' 컨테이너 2개, 40' 컨테이너 2개, 10' 컨테이너 4개와 20' 컨테이너 2개를 적재할 수 있는 80' Wagon貨車가 있다. 40' Wagon은 2軸으로 20.5~28.5ton, 60' Wagon은 4軸으로 46~62ton, 80' Wagon은 6軸 64~88ton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⁸²⁾

그 밖에 Trans-Sea方式은 京釜線(부산/서울), 京義線(개성/신의주)의 南北韓鐵道와 中國의 瀋丹線(丹東/瀋陽), 瀋哈線(심양/하얼빈)鐵道, 濱州線(하얼빈/滿洲里), 蘇聯의 시베리아鐵道가 연결되어 컨테이너 화물을 소련서부국경역인 레닌그라드, 타린, 리가, 제다느브등으로 수송하여 레닌그라드로부터는 Baltic社가 다린으로부터는 Latvian社가 리가로부터는 Estonian社가 수송을 담당한다.

Tracons方式은 비스코-리토보스크驛에서 컨테이너貨物이 하차되어 트럭에 의해 歐洲最終目的地까지 수송된다.

通關問題는 TSR, TCR에서와 같이 관계기관·기구의 證明書(一種의 Transit License)에 의해 보장되어 질 것이며, 따라서 세관검사는 생략된다.

그리고 歐洲内로 輸送되는 컨테이너는 CCC條約⁸³⁾, TIR條約⁸⁴⁾, 新컨테이너通關係約⁸⁵⁾

82) JANE'S WORLD RAILWAYS, 1988-89, PP. 525-526.

83) Custom Convention on Containers 1956의 略稱이다.

1956년 유럽經濟委員會(ECE)에 의해 制定되었다. 이 컨테이너條約은 일시적으로 輸入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再輸出할 것을 條件으로 免稅措置를 인정하는 것, 締約國의 稅關이 붙인 封印을 존중할 것 등을 內容으로 하는 條約이다.

84) TIR條約(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의 略稱)은 1959년 ECE에 의해 제네바에서 制定되었다.

이 條約은 國際道路運送通關係約으로 불리우며 CCC條約이 컨테이너 自體의 國際間 通關節次를 간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컨테이너 積入貨物運送을 대상으로 하는 通關係約이다.

締約國은 道路走行車輛에 의해 運送되는 封印된 컨테이너内的 貨物에 대해서는 經由地 稅關에서의 輸出入稅의 남부 및 공탁이 免除되고, 國際運送手帖(TIR Carnets)에 의한 保證이 있으면 經由地稅關의 檢査가 免除되어 通關節次만 밟으면 된다.

新國際道路運送通關條約⁸⁵⁾, 國際運送通關條約⁸⁷⁾에 의해 無檢査로 통과되어 最終目的地까지 수송된다.

歐洲에서 極東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이며, 韓國出發 TSR通過貨物인 컨테이너도 이에 준한다.

2) 運送節次

TKR輸送이 개시되었다 가정하고 우리나라 京仁地域 貨物을 獨逸의 프랑크푸르트까지 輸送 한다면 예상되어지는 輸送節次는 다음과 같으며, TSR·TCR輸送과 다른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海上輸送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외의 극동지역(일본, 대만)의 화물은 극동지역 각 항에서 海上輸送되어 우리나라 각 항에 도착한후 양화되고 이후 TKR鐵道터미널에서 上車되어 陸路鐵道輸送되며, 수도권 TKR鐵道 터미널에서 재편성되어 TKR 수송루트를 따라 목적지로 향하게 된다. 이때 발행되는 Railway B/L은 Ocean B/L의 내용에 따라 발행된다.

(1) 國內輸送

① 公路輸送

㉠ FCL貨物의 경우

貨主는 TKR輸送業者에게 수송을 의뢰한후 화물 Vanning 준비를 하며, TKR輸送業者는 空컨테이너를 수배하여 화주의 倉庫나 工場으로 보낸다. 화주는 空컨테이너를 제공받아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自家裝置場 혹은 他所裝置許可를 받아 通關完了하고, 保稅運送許可 취득 후 保稅運送業者에게 컨테이너 반출지시를 하면 운송업자는 公路輸送하여 수도권 TKR鐵道 터미널⁸⁸⁾로 반입하여 CY에 장치하며, 荷役業體인 흥의회가 장치된 컨테이너를 이송하여 貨車에 上車 또는 화주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를 직접 화차에 상차 한다.

㉡ LCL貨物의 경우

貨主는 자가트럭이나 일반화물트럭을 수배하여 公路로 수도권 TKR 鐵道터미널의 CFS로 운송한다. CFS에 도착된 화물은 필요한 절차를 밟고 檢數, 檢量 등 通關 및 확인을

85) 新컨테이너通關條約 (Custom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은 1972년 UN과 政府間海事諮問機構와의 合同會議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 發效하였다.

86) 이것은 1975년에 채택되어 1978년 3월 20일 發效되었다.

87) ITI條約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 國際運送通關條約)은 關稅協力理事會가 앞의 新國際道路運送通關條約 작성과 병행하여 獨自의으로 國際運送에 有關한 通關條約의 作成作業을 추진 1971년에 채택한 것이다. 이條約은 각종 運送機器에 의한 海·陸·空 모든 運送手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88) 現在 鐵道컨테이너 輸送時 부곡 컨테이너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다.

위한 절차가 끝난뒤 보세운송된 LCL貨物과 함께 目的地別, 運行列車別로 FCL상태로 混載되고 提單서류를 갖추어 CY에 裝載하였다가 이송하여 貨車에 上車한다.

TKR輸送業者는 貨물이 철도터미널 CY, CFS에 搬입됨과 동시에 Through B/L을 貨주에게 發給하고, 이후 各國의 TKR輸送關聯諸機關에 手송을 의뢰 한다.

② 鐵道輸送

우리 나라 컨테이너 鐵道輸送 主管자로서 鐵道廳 산하의 TKR수송 담당驛은 TKR輸送業者로부터 컨테이너 手송의뢰를 받고 貨車配定, 列車造成作業을 실시한다. 이후 열차는 運행스케줄에 따라 北上하여 北韓과 約定된 接境驛으로 향한다. 이때 우리 나라 TKR輸送業者가 Shipper가 되고 蘇聯國境驛 자바이칼스크(Sabaikalsk) SVT가 Consignee가 되는 Railway B/L이 發행된다.

한편 우리 나라 TKR輸送業者의 獨逸側 파트너는 사전에 보내어진 서류를 기초로하여 Buyer와 컨테이너 인도에 대해 사전상의를 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蘇聯通過國境驛인 브레스트(Brest)에 사전에 텔렉스, 서류로 지시한다.

(2) 北韓鐵道輸送

南北韓의 鐵道軌道幅이 1,435mm로 같기때문에 換積되지 않으나 京義線이 電化되어 있기 때문에 機關車를 電氣機關車로 바뀌어야 한다. 이 때 북한측으로부터 運送狀謄本(화물통지서 謄本)⁸⁹⁾이 우리측에 交부된다. 中國側接境驛은 丹東이며 이 밖의 中國과 연결되는 곳으로 滿浦가 있으며, 平壤과 연결되어 있고⁹⁰⁾, 中國接境驛은 集安이다.

(3) 中國鐵道輸送

中國國境驛에 도착한 컨테이너화차는 이후 瀋陽·하얼빈 鐵道局에 의해 滿洲里까지 輸送되며, 이때 軌道폭이 北韓과 같기 때문에 換積되지 않으며 북한측에게 貨物運送狀謄本이 交부된다.

(4) 蘇聯鐵道輸送

中·蘇國境의 자바이칼스크에 도착한 컨테이너貨車는 蘇聯의 軌道幅이 1,520mm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換積되며 시베리아鐵道の 支塔에서 接속되어 蘇聯西部國境驛으로 향한다. 이 때 자바이칼스크 SVT가 Shipper가 되고 TKR輸送業者의 폴란드대리점이 Consignee가 되는 Railway B/L이 發행된다.

(5) Intercontainer에 의한 輸送

歐洲鐵道(핀란드제외)의 軌道폭이 1,435mm여서 蘇聯鐵道の 軌道폭과 다르기 때문

89) 大陸研究所, 北韓法令集 第3卷, 1990, p. 512/1964.

90) 林熙喆·李浩, 北韓의 輸送網과 産業分布의 蘇聯關係分析,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974., pp. 19-20.

에 독일·폴란드·스위스 등 歐洲向 컨테이너는 브레스트(Brest)를 지나 폴란드를 통과할 때 모두 마라세비치(Malaszewicze)驛에서 獨逸側 파트너의 사전지시에 따라 換積되어 프랑크푸르트驛을 향해 컨테이너를 발송한다.

換積에 소요되는 시간은 1日이며⁹¹⁾ 이의 수배는 우리나라 NVOCC의 폴란드 代理店이 담당하며, 폴란드대리점이 Shipper가 되고, 독일 파트너가 Consignee가 되는 Intercontainer Railway B/L이 발행된다.

프랑크푸르트驛에 컨테이너가 도착되면 Buyer와의 사전 협의대로 컨테이너가 인도된다.

4. 運賃體系와 費用構造

1) 運賃體系

TKR의 運賃體系는 현행 TSR運賃體系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기 때문에 먼저 TSR運賃體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TSR運賃은 TSR輸送의 全區間에 있어서 實質運送의 대부분이 소련선박 및 시베리아철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측에 의해 좌우되었다.

各 NVOCC는 SOTRA와의 個別契約을 체결 하는데 이는 運送契約과 運賃契約이다. 契約의 內容은 Special Rate를 제외하고는 모든 NVOCC에 동일하며 매년 4月1日 Tariff를 개정해 왔었다. 이때 SOTRA가 제시하는 運賃은 SOTRA가 TSR輸送의 關長자로서 實際運送人(Actual Carrier)인 海上區間의 FESCO와 Navix Line/飯野海運,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의한 陸上區間은 蘇聯鐵道省, 그 밖의 蘇聯自動車公團, Baltic 海運 등과의 運送契約을 체결하여 제시받은 운임에다 경쟁관계에 있는 歐洲同盟의 運賃水準 및 物動量등을 감안하여 제시되었으며, 品目別, 目的地別, 輸送手段別, 컨테이너當 料率⁹²⁾이었다.

各 NVOCC가 제시하는 Through Rate는 SOTRA제시 運賃에다 소련 이외의 各地域에서 運送를 담당하는 實際運送人제시 運賃, 附帶費用, 手數料등을 합하여 貨主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各社가 다르다.

TSR輸送에 의한 運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日本에서 獨逸까지의 Trans-Rail方式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⁹³⁾

① 컨테이너 賃借料(Container Rental)

91) Eurasia Trans Inc. 提供資料.

92) LCL의 경우에는 別途 m³單位로 料金を 算出한다.

93) 松本好雄·宮本敬·市來清也·富田功, 前掲書, p. 142.

- ② 컨테이너 移動料(Container Positioning Repositioning Charge)
- ③ 컨테이너 自體 및 貨物의 保險料
- ④ 日本에서 나호드카·보스토치니까지의 船社 FESCO에 지불하는 海上運賃
- ⑤ 日本 CY에 있어서의 Stowage 料金
- ⑥ 나호드카·보스토치니에서 소련과 歐洲國境驛까지의 貨車引渡條件付 鐵道貨物 輸送運賃
- ⑦ 소련國境驛에서 西獨目的地驛까지의 Intercontainer에 支拂하는 鐵道運賃
- ⑧ 歐洲에 있어서의 FIO(Free In and Out) 手數料
- ⑨ 빈 컨테이너의 返還料
- ⑩ NVOCC의 手數料

이상 10가지 要素를 합하여 하나의 一括料금이 제시된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TSR運賃體系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90年 8月 1日 부터 營業을 개시한 Eurasia Trans社도 SOTRA와 마찬가지로 各 實際運送人들과의 個別契約을 통해 元請運送人과 시베리아 鐵道實際運送人의 補完者로서 貨主, 포워더, NVOCC에게 일관된 Rate를 제시할 수 있는 TSR제너럴 오퍼레이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Through Rate의 構成比率는 電氣製品의 경우 다음과 같다.⁹⁴⁾

- ① Trans-Sea(로테르담向)의 경우
日本 Cost 30%, 소련 Cost 55%, 유럽 Cost 15%
- ② Trans-Rail(헬싱키向)의 경우
日本 Cost 30%, 소련 Cost 45%, 유럽 Cost 25%
- ③ Tracons(퀵른向)의 경우
日本 Cost 25%, 소련 Cost 65%, 유럽 Cost 10%

1983年 4月 1日부터 導入된 이란行 貨物에 대한 總代理店制度에 따라 1984年 4月부터 各 NVOCC의 取扱實績은 이란行과 유럽行이 완전히 분리되어 유럽行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은 Volume Rate System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공개되었다.⁹⁵⁾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1987年 4月 日本을 제외한 우리 나라, 대만, 홍콩 등 極東地域 TSR貨物에 대해 獨逸의 PCT(Poseidon Container Transport)社가 SOTRA의 總代理店으로 지정⁹⁶⁾된 후 FAK(Freight All Kind Rate : 品目無差別運賃)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94) 宮本 敬, SLB運送의 現狀과 問題點, 荷主, 1982年 겨울號, p. 32.

95) Cargp Press社, 貿易運送, 1985年 8月號, p. 68.

96) PCT의 SOTRA와의 總代理店契約은 1992年末 滿了된다.

구 분	W B	E B
2,500 TEU 이하	15.0%	20.0%
2,501~ 5.000 TEU	17.5%	22.5%
5,001~ 7.500 TEU	20.0%	25.0%
7,501~10.000 TEU	22.5%	27.5%
10,001 TEU 이상	22.5%	27.5%

그동안 歐洲向 貨物輸送에 있어서 TSR運賃은 海上輸送運賃에 비해 저렴하여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나 最近 歐洲行 海上運賃이 船腹量의 과잉으로 대폭 인하되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東歐圈등의 內陸國陸上輸送에서 큰 메리트를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TSR運賃은 Eastbound貨物에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Eastbound 物動量이 Westbound 物動量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Westbound 貨物은 高價品인데 반해 Eastbound貨物은 大量輸送 곧 海上輸送에 적합한 벌크(Bulk)貨物이 많기 때문이다.

아프카니스탄쪽은 구라파 Tariff의 適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NVOCC들과 SOTRA가 Rate를 契約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R의 運賃은 美달러화로 표시되고 있으나, 從來 蘇聯鐵道는 各 NVOCC와의 運賃決濟時 루블로만 수취하였는데 蘇聯의 外換政策의 변화 곧 1990年 10月 26日 蘇聯邦大統領令에 의해 外換에 대한 商業換率⁹⁷⁾을 도입함으로써 루블화에 대한 실질적인 平價切下를 단행하여 美貨 1달러當 公定換率 0.5542루블, 商業換率 1.6626루블, 特別換率 5.542루블로 정하여 1990年 11月 1日부터 시행⁹⁸⁾함에 따라 美달러화를 수취할 가능성이 높아져 의외의 매력적인 운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輸送關聯企業의 자유재량권 확대와 경쟁체제 도입, 독립채산제등으로 급격한 運賃上昇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97) 商業換率은 대표적 財貨와 서비스의 "바스켓"의 國內 및 國外價格의 비율로부터 산정됨
朴濟勳, 蘇聯의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韓國中蘇經濟學會定期學術發表會 및 定期總會, 1991. 3. p. 51.

98) 金仁, 1991년 소련의 外換收支전망, 북방경제(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1. 3, p. 17.

따라서 TKR運賃體系는 TKR輸送을 위한 單一管掌機關이 설립된 경우에 제시되는 運賃은 實際運送人(Actual Carrier)과의 運送契約을 체결하고 歐洲同盟의 運賃水準 및 物動量등을 감안하여 합의된 운임으로 目的地別, 輸送手段別, 콘테이너當料率일 것이다.

TKR輸送業者가 제시하는 Through Rate는 單一管掌機關제시 運賃에다 南北韓, 中國, 蘇聯, 몽골이외의 各地域에서 運送을 담당하는 實際運送人제시 運賃, 附帶費用, 手數料등을 합하여 貨主에게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單一管掌機關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 제시되는 運賃은 南北韓·中國·蘇聯·몽골鐵道管理運營部署 제시운임에다 이외의 各地域에서 運送을 담당하는 實際運送人제시 運賃, 附帶費用, 手數料등을 합하여 貨主에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TKR의 費用構造

우리 나라의 京仁地域에서 獨逸의 프랑크푸르트까지의 Trans-Rail方式에 의한 TKR輸送費用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 ① 콘테이너 賃借料(Container Rental Fee)
- ② 富谷터미널까지의 輸送費
- ③ 富谷터미널에서의 弘益會上車料
- ④ Seal Charge
- ⑤ 北韓接境驛까지의 鐵道運賃
- ⑥ 北韓接境驛에서의 Container Checking Charge, Border Fee
- ⑦ 中國側國境驛 丹東까지의 鐵道運賃
- ⑧ 丹東에서의 Container Checking Charge, Border Fee
- ⑨ 蘇聯國境驛 자바이칼스크까지의 鐵道運賃
- ⑩ 자바이칼스크에서의 Container Checking Charge, 換積料(Container Handling charge), Border Fee
- ⑪ 자바이칼스크/마라세비치까지의 鐵道運賃
- ⑫ 소련서부국경역인 마라세비치에서의 Container Checking Charge, 換積料(Container Handling Charge), Border Fee
- ⑬ 마라세비치/프랑크푸르트간의 구주철도운임(International Charge a Per Tariff)
- ⑭ 프랑크푸르트驛에서의 下車料
- ⑮ 콘테이너 綜合保險料 및 貨物保險料
- ⑯ Partner Co-Ordination Fee

⑰ 空컨테이너의 최초기항지 Depot까지의 반환료

⑱ 複合輸送業者 Profit

TKR輸送業者가 貨主에게 제시하는 Through Rate는 美 달러불인데 TKR關聯國들의 外換制度가 상이함으로 인해 換率이 다르며, 運賃決濟時 自國貨幣 곧 소련은 최근 換率變動에 따라 平價切下된 루블화로 중국은 經濟合同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人民幣로 北韓은 <表 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個의 結제통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13個國通貨를 이용하고 있어 각국과의 원만한 협의에 따라서 의외의 유리한 Rate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表 4-5> 北韓의 對西方 決濟通貨 現況

구 분	국 가 (화 폐)
結 제 通 貨 (4 개)	영국(파운드), 서독(마르크), 프랑스(프랑), 스웨덴(프랑)
보 조 결 제 통 화 (1 3 개)	미국(달러), 일본(엔), 홍콩(달러), 노르웨이(크로네), 덴마크(크로네), 벨기에(프랑), 스웨덴(크로네), 이탈리아(리라), 오지리(실링), 캐나다(달러), 화란(길더), 호주(달러), 싱가포르(달러)
합 계	1 7 개 국

資 料 : <表 3-2>와 同一

5. TKR 輸送上의 問題點

TKR輸送서비스가 개시되면 關係國間의 사전협약이 없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이를 간략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측의 貨車를 계속 이용할 경우의 화차회수와 비용부담문제

우리 나라에서 中·蘇國境驛까지 換積없이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貨車를 계속이용해야 하는데 Westbound와 Eastbound物動量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져 이 경우의 화차회수문제와 비용부담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運送區間에 따른 운임의 정산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사고발생구간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의 運送責任문제

TKR루트를 따라 수송될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당사국의 적용법규가 상이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北韓·中國에 대한 複合운송인의 求償權行使등에 관한 운송책임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複合輸送業者의 對貨主 情報서비스문제

화물수송이 개시되면 화주는 화물 Tracing정보를 조회하여 정확한 수송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현행 TSR서비스보다 관계당사국이 많아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다섯째, 中·蘇國境驛 자바이칼스크의 환적시설

자바이칼스크驛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 적체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V. 要約 및 結論

최근의 世界貿易秩序는 선진각국의 保護主義의 팽배, 公正貿易과 相互主義 확산, 그리고 地域主義의 대두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高賃金, 技術隔差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가격경쟁력이 저하됨으로서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시장구조는 계속해서 美·日 依存度の 深化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수출입국의 지향과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強化와 EC·東歐圈地域등에 대한 市場多邊化政策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3년의 「6.23 外交宣言」, 1988년의 「7.7 特別宣言」으로 北韓은 물론 中國·蘇聯·東歐와 같은 社會主義諸國과 經濟交流를 중심으로하는 非政治分野의 접촉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90년 이들 北方國家들과의 總交易額은 46億3,930萬달러에 달하였고 향후 급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88년 10월부터 '9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南北韓 經濟交流의 實積은 北韓物資의 搬入이 119件에 3,925萬2千달러, 搬出은 3件에 16萬2千달러로 總122件에 3,914萬4千달러에 달하였고 금년들어 8월말까지의 南北物資交易은 1億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소련과의 국교수립을 통한 經協등으로 향후 교역액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져 이에 대한 수송루트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輸出入貨物의 95%가 釜山港을 통하여 輸送되고 있는데 首都圈地域 물동량 집중으로 이의 89%('90年 63%)가 陸上(公路)運送됨으로 인해 京釜高速道路 積체가 심화되어 貨物의 適期人導가 지연되고, 釜山港의 선석부족으로 인한 체선 심화로 막대한 損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자료에 의하면 '90년 도로적체로 1조 2천억원, 항만체선으로 인해 7천억원, 총 2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 한것으로 보고 되었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貨主들은 貨物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輸送費, 金融費用, 在庫管理費 등의 物的流通費(Physical Distribution Cost) 節減을 위해 陸·海·空을 연계 수송하는 광범위한 綜合運送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UR協商이 타결되면 運送서비스 部門의 開放이 필연적인데 이 때 우리 나라 선사나 複合運送業者가 外國 先進 運送業者와의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輸送手段의 새로운 연계방법이 나신루트를 개발하여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京義線을 利用한 國際複合 輸送方法(TKR: Trans Korea Railroad Container Service)이라 생각된다.

유우라시아대륙철도를 이용한 複合輸送으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TSR과 '92年 서비스가 개시될 TCR, TKR 세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겠다.

南北韓鐵道(京義線)와 중국·소련철도를 이용한 수송루트인 TKR은 極東地域 貨物을 一次海上輸送에 의해 우리 나라의 釜山·仁川港등으로 輸送하고 다음으로 南北韓·中國·蘇聯鐵道를 이용하여 歐洲·中東·몽골·아프카니스탄등의 지역으로 輸送하는 것을 말한다.

유우라시아대륙철도를 이용한 複合輸送인 TSR, TCR, TKR에 대한 수송거리와 트랜지트타임(Transit Time), 費用面에 관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송거리에 있어서는 歐洲의 경우 로테르담까지 TSR은 수에즈운하 경유의 해상수송에 비해 약 7,000km 단축할 수 있고, TCR은 仁川港~連雲港港~阿拉山口~쿠이비세프~스몰렌스크 經由의 경우 TSR에 비해 약 1,200km, 極東地域(日本)出發의 경우 약 1,100km 단축된다.

TKR은 日本지역 출발화물의 경우 TSR에 비해 약 950km 단축되며, 京仁地域 出發貨物의 경우 육상구간에서 약 1,040km(서울/부산 444.5km 포함)와 해상구간 약 800km를 합하여 약 1,840km 단축되는 루트로 TCR에 비해 200km 단축된다.

또한 몽골(울란바토르)까지의 수송거리는 TCR의 경우 連雲港港에서 울란바토르까지 2,612km, 해상구간 약 600km로 總 3,212km이나 TKR은 경인지역 출발의 경우 육상구간이 3,177km로 35km 단축되며, 極東(일본)지역출발의 경우 약 290km 단축되는 루트이다.

둘째, 트랜지트 타임에 있어서는 歐洲까지의 海上輸送은 약 30~32일, Trans-Rail방식에 의해 TSR은 26~28일, TCR은 20~22일, TKR은 18~20일이 소요되어 TKR은 TSR에 비해 약 6~10일, TCR에 비해 약 1~4일이 단축된다.

셋째, 비용면에 있어서는 京仁地域出發 獨逸向 전기제품의 경우 40ft當 TCR은 TSR에 비해 약 300달러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TKR은 TSR에 비해 약 770달러(전체의 1/5)정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TKR은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유우라시아 大陸橫斷鐵道를 이용한 어떤 輸送方式보다 유리하며, 京義線 鐵道の 연결을 통해 南北韓 經濟交流가 이루어지면 중국에 가서는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輸出入 이용물동량 만큼 해상수송을 위해 부산항으로의 국내수송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서 경부고속도로의 적체 현상과 부산항 체선심화 현상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그런데 TKR 輸送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의선철도의 연결문제이다. 북한의 모든 계획이 김일성주석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남적화전술을 기본전략으로 南北高位級 會談이나 經濟會談등에 임하고 있어, 정부주도로의 정책추진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에스캅총회에서 제안된 남북한, 중국, 소련, 몽골 5개국의 경제협력사

업을 위한 국제철도연결제안을 근거로 차후에 개최될 남북고위급·경제회담에서 과거 쌍방이 합의한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경의선 연결이 아닌 단지 소련, 동구권을 포함한 歐洲向 貨物輸送과 북한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 東北亞經濟圈 構想에 따른 원자재 등의 화물수송을 위한 경의선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TKR 輸送이 개시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外債償還 압력등에 직면한 상황하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철도 부설 이외에는 별다른 施設投資 없이도 최소한 1TEU當 150달러 정도의 運賃收入과 手數料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측이 현실적인 失益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경의선을 연결하여 TKR 輸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民間團體나 業體 또는 個人에게 全權을 위임해 주어 민간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측과 협의하여 TKR수송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4條의 규정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소 국교수립에 따른 경험차관과 결부하여 소련측에 우리가 TKR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諸般事項에 대해 協助要請을 해야하며, 중국과도 事前協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TKR에 의한 복합수송의 效率化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의 철도 이용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DMZ, 강화지구 등에 南北韓 共同區域 설정을 제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선 TKR 철도 수송을 위한 복합터미널과 産業工團을 연계해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TKR 수송이 개시되면 일본의 輸出入貨物 일부가 이 루트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기 때문에 광양항·부산항 개발시 이점을 고려하여 CY·철도터미널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재 京釜間(부산진/오봉)의 철도컨테이너 수송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運送業體들이 컨테이너의 公路輸送을 더 선호함에 따라 京釜高速道路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철도컨테이너수송에 있어 적절한 요율체계·수송시스템 개선과 아울러 부산·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컨테이너가 바로 鐵道輸送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民間業體가 맡고 있는 부곡터미널의 運營體系를 鐵道廳이 직접맡는 조직의 개편, 중앙집중 제어장치(CTC)등 철도시설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 전국각지역으로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대전, 광주, 대구 등의 각권역별로 철도와 트럭의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CY(CFS)를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TKR서비스가 개시되면 TSR Block Train은 52~55臺車로 104~110TEU를 積載 輸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철도수송은 25~29臺車로 50~58TEU적재 수송가능하기 때문에 시베리아철도 연결시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내·TKR화물수송의 효율화와 對貨主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해 關聯政府機關인 關稅廳, 鐵道廳, 海運港灣廳, 公共團體인 BCTOC, 民間關聯業體間 貨物情報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96년 시행예정으로 있는 KNet(Korea Trade Network)의 수출입승인·수출입검사·보험정보VAN(Value Added Network)과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T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關係當事國과 通過貨物輸送協定을 締結하거나 각 당사국이 참여하는 單一管掌機關을 설립해야만 하며, 이때 만약 각국이 管轄區域만 책임지고 輸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北韓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국가의 승인은 영토의 승인을 포함하므로 우리 憲法 第3條에 위배 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TKR에 의한 複合輸送의 경우 문제가 되는것은 우리나라에서 中·蘇國境驛까지 換積없이 신속하게 輸送하기 위해서는 우리 貨車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비용부담문제, Westbound와 Eastbound물동량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경우의 화차회수문제, 운임의 정산문제, 사고발생구간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 북한, 중국에 대한 複合運送人의 實際運送人에 대한 求償權行使 등에 관한 運送責任問題 등이 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관계 당사국간의 協議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南北韓, 中國 三國의 업계나 관계기관의 合作投資로 企業(公司)을 설립하여 TKR서비스를 실시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TKR 輸送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 밖의 유우라시아 大陸橫斷鐵道輸送루트인 TSR과 TCR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TCR은 歐洲向 輸出入貨物 수송루트일 뿐아니라 TCR통과 루트상에 11個省 自治區를 지내기 때문에 이의 이용시 12億人口를 가진 중국의 潛在市場을 개척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일본이 이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借款提供과 건설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SR은 우리 기업이 시베리아개발참여시 필요한 수송루트이고 또한 TKR수송불능사태 또는 수송적체시 대체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京仁運河計劃時 TCR수송과 京仁間 貨物輸送의 효율화를 위해 Barge船을 이용해 콘테이너를 仁川港으로 輸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 國際民間經濟協議會，1990年 中國의 經濟·社會 發展實績，1991.
- 國土統一院，북괴조약집，1971. 10.
- ，1989年度北韓經濟總合平加，1990.
- 國會圖書館，中共의 經濟法令解說，1982.
- ，中共의 主要經濟法令集，1982.
- 金英南，2000年代에 對備한 港灣開發計劃，海運港灣，1991/봄호.
- 大陸研究所，北韓法令集 第3卷，1990.
- ，北韓法令集 第5卷，1990.
- 東亞日報社，〈原資料로 본〉北韓 1945~1988，新東亞 1989年 1月號 별책부록.
- 朴完信，北韓行政論，喜生出版社，1988.
- 北韓研究所，北韓總覽，1983.
- 徐極性，북한의 경제실상，民族統一中央協議會，1985.
- 李相禹의 6名，북한 40년，乙酉文化社，1989.
- 仁川商工會議所，仁川港振興委員會，仁川港總覽，1986.
- 林熙喆·李浩，北韓의 輸送網과 産業分布의 蘇聯關係分析，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1974.
- KMI，光陽 新港灣開發 基本計劃에 관한 研究，1990.
- ，컨테이너의 港灣/內陸輸送合理化方案，1988.
- 韓國貿易協會，中國經濟關係法令 第4集，1988.
- 韓國컨테이너工業協會，컨테이너의 種類와 貨物積入의 常識，1985.
- 瀋陽大 中蘇研究所，蘇聯의 經濟體制 및 制度分析，1989.
- 黃根植·李源哲，國際複合運送實務，韓國海事問題研究所，1985.
- 海運産業研究院·韓國産業經濟研究院，컨테이너 料率體系개선 및 개발 부두 전용사용 료 산정 등에 관한 연구，1990.
- 해운항만청，부산광역개발기본계획，1989.
- 宮本 敬，SLB運送의 現狀과 問題點，荷主，1982年 겨울號.

- 金明基, 國際法上 北方政策과 北韓의 法的 地位에 관한 研究, 社會科學論叢 (明知大社會科學研究所), 1990.
- 金成勳, 中國의 東北亞經濟圈構想과 戰略, 中蘇經濟研究(韓國中蘇經濟學會), 1989.
- 金 仁, 1991년 소련의 外換收支전망, 북방경제 (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1.
- 朴世勇, 一貫運送體制의 成立의 必要性和 制度의 改善, 荷主, '90/3호.
- 朴濟勳, 蘇聯의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韓國中蘇經濟學會定期學術發表會 및 定期總會, 1991. 3.
- 朴鍾玉, 蘇聯의 海運 및 複合運送現況, Korea Shipping Gazette, May 7, 1990.
- 白種實, 우리 나라 컨테이너 鐵道輸送現況과 改善方向, 海運產業動向, 1990年3月號.
- 崔秀雄, 개방문호 넓히는 中國東北經濟區, 북방경제, IPECK, 1991年 3月號.
- 조선일보 1991. 4. 7.
- Cargo Press社, 貿易運送, 1985年 8月號.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中國經濟統計, 1990.
- BCTOC 統計資料.
- 鐵道廳 統計資料.
- 통계청, 중국주요통계지표, 1991.
- 해운항만청, 해운항만통계년보, 1990.

2. 東洋文獻

- 谷川久・高田四郎・小林友次, 컨테나 B/L, 勁草書房, 1969.
- 松本好雄・宮本 敬・市來清也・富田 功, 最新國際複合輸送의 話, 港運新書, 1985.
- 若林熙・唐笠文男, 資料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資料・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刊行會, 1990.
- NHK取材班, シベリア橫斷鐵道 赤い流星「ロシア號」의 旅, 日本放送出版協會, 1982.
- 外國海事情報, 1989年 10月15日.
- 日本海上컨테나協會, 컨테나리제-쇼-나總覽, 成山堂, 1978.
- 日中經濟協會, 中國行政・經濟關係機關要覽, 1985.
- , 中國의 陸上運輸, 1985.
- 鳥居幸雄, 中國의 港灣と物流, 日本海事新聞社・關西總局, 1987.
- 中尾朔郎・數内宏, 國際컨테나輸送實務指針, 海文堂, 1977.
- 中嶋誠一, 中國의 鐵道と 鐵道輸送, 中國經濟, JETRO, 1989.

- 志村嘉一郎，圖說·最新中國國勢要覽，教育社，1979。
人民交通出版社，全國交通運營線路里程示意圖，1987。
一柱編譯樓，最新分省中國地圖，香港學林書店。
慧峰，1990年的中共交通，中國研究 第25卷 第2期，1991.2.15。

3. 英美文獻

-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August, 1989. .
EIU, China, North Korea Country Profile 1990~91, 1990.
JANE'S Containerization DIRECTORY 1989~90.
JANE'S WORLD RAILWAYS 1988~89.
Reed Business Publishing Ltd., Railway Directory & Year Book, 1989.
SOJUZVNESHTRANS, International Forwarder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 1980.

◆ 國內外 情勢가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에 미친 影響

조 희 선(경성대)

〈要 約 文〉

本 研究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최근 南北對話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會談의 進行과 관련하여 提議의 背景으로부터 豫備會談의 經過 및 本會談의 進展狀況 그리고 이에 임하는 雙方의 立場을 정리해 보고 國內外 情勢가 이 會談의 進展에 미치는 影響을 고찰하여 進展에 障礙가 되고 있는 要因을 극복하고 이에따른 對應策을 모색하고자 비롯되었는 바, 南韓의 한국일보와 北韓의 로동신문을 基礎資料로 택한 후 1989년 9월부터 1991년 2월까지의 記事內容을 중심으로 問題를 인식하고 쟁점화된 主要 要因別로 展開樣相을 서술하고 그 影響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會談의 提議背景과 成事를 보면, ① 開放을 통한 改革이라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과 東歐共產圈의 自由化 開放路線의 산물로서, ② 外債의 누적과 經濟의 破탄 및 住民生活의 궁핍 등 經濟難에 허덕이던 北韓이 人民들의 關心을 統一에의 輿望으로 전환하여 內的 結束을 다지는 돌파구로서, ③ 對南路線의 차원에서 南韓의 國際的 位相을 드높인 서울올림픽의 成果를 회색시키고 平和攻勢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으로서 1988년 11월 北韓에 의해 제의되어 南韓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성사되었다.

그러나 本會談 개최를 위한 豫備會談 초반부터 北韓은 會談場을 政治宣傳場으로 만든 탓에 좀처럼 풀리지 않던 會談霧圍氣가 東歐共產圈의 體制變革과 때를 같이하여 일시적으로 活氣를 띠었다가 다시 냉각된 후, 第一次 韓蘇頂上會

談이 열린 직후부터 가속화되어 급기야 本會談으로 이어졌다. 서울과 平壤을 오가면서 열린 3차례의 會談에서 南北韓은 별다른 合意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相互立場을 확인하고 合意의 도출을 위해 진지한 努力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에 미친 國內外情勢의 影響은 어떠한가?

먼저 國內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과 관련하여 본다면,

첫째, 北韓은 軍縮을 최대 이슈로 등장시키면서 駐韓美軍의 撤收와 팀스피리트 訓練의 中止를 요구하였고, 南韓 역시 이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實踐에 옮긴다는 柔軟性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駐韓美軍이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각종 軍事的 措置를 단행하고 팀스피리트 訓練의 規模를 축소하고 있어 앞으로의 進展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北韓의 對南攻勢에 대한 南韓 내 反政府團體의 呼應이 北韓의 立地를 강화시켜 對話의 進展을 지연시키고 對南攻勢를 더욱 강화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北韓 經濟의 落後와 閉鎖性으로 인해 北韓當局이 北韓社會에 自由·開放思潮가 유입되고 南韓 經濟의 실상이 알려져 체제 전복을 피할까 두려워 對話에 自信心을 가지지 못해 消極的인 姿勢를 취하고 있음을 거론한다.

넷째, 北韓이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해 온 核開發이 國際的 論議에서 國內問題로 이전해 옴에 따라 南北간의 새로운 爭點으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核安全 協定에의 서명 및 核査察의 수락과 관련하여 적잖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國際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과 관련하여 볼 때,

첫째, 共產圈의 體制變革이 南北高位級會談의 背景이 된 반면에 北韓當局으로 하여금 더욱 閉鎖的인 路線을 견지하도록 하는 不安要因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會談의 進展에는 障礙要因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南韓의 北方政策이 共產圈의 體制變革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되어 南韓이 그동안 北韓의 맹방이자 단독 수교국이었던 國家들 중 거의 대부분과 修交關係를 맺게 되었으며, 특히 社會主義의 宗主國이었던 蘇聯과의 급속한 關係改善은 北韓의 國際的 孤立을 더욱 부채질한 데다, 최근 中國마저 對韓接近을 시

도하고 있어 北韓의 立地가 크게 위축된 탓에 會談場으로 北韓을 유도하기는 쉬워졌지만 필연적으로 調整期가 따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北韓은 南北韓 交叉承認의 결과를 두려워했고, UN에 동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일관성 있게 추구해 온 赤化統一路線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體制의 開放化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南韓政府가 제의한 ‘UN 同時加入案’에 대해서 ‘두개 조선 조작의 음모’라는 구실을 내세워 완강히 반대하면서 ‘고려연방 공화국의 단일 국호 아래 한 의석 가입’을 고집해 왔으나, 결국 國際的 壓力에 굴복하여 同時加入을 택했으므로, 앞으로 政府가 對話의 窓口를 UN 쪽에서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北韓의 國際的 獨立脫皮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 일단은 肯定的이다.

넷째, 韓蘇간 國交樹立이 논의될 무렵부터 본 궤도에 오른 日本의 對北接近은 國益의 損傷과 함께 對話의 進展에 惡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共同宣言過程에서 나타난 北韓의 態度나 그 후의 發言과 行動으로 볼 때 확인해진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南北高位級會談이 시작될 때부터 南韓은 비교적 積極性을 띠면서 能動的인 態度를 취한 반면, 北韓은 守勢的 防禦에 몰두하면서 消極性을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立場의 差異는 바로 國內外 情勢의 變化推移와 影響이 南韓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을 가로막는 障礙要因을 극복하고 統一을 향한 진일보한 對話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獨逸式의 ‘일방에 의한 흡수 통합’을 두려워하고 있는 北韓의 立場을 염두에 두고 北韓이 經濟的 落後性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經濟協力을 모색하여 政府간 對話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軍事的인 側面에서 北韓의 核開發計劃을 저지시키고 雙方의 軍備를 축소시키는 努力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議題의 핵심을 ‘軍事的 對決狀態의 解消’ 쪽으로 환기시켜 보는 것도 裨益을 뜻하다.

셋째, 北韓의 國際的 孤立은 體制의 閉鎖性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결국 南北간 對話를 지연시킬 것이므로, 霧圍氣가 성숙된다면 獨立脫皮를 위한 北韓의 外交的 努力을 側面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여간 1991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第四次 本會談에서는 상당한 意見接近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對話의 進展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덧붙이고자 한다.

I. 머리말

東西冷戰의 終熄이란 세계사적 전환 기류 속에서 獨逸이 統一을 맞이하고 蘇聯의 社會主義 體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民族의 宿願인 南北統一問題가 보다 現實性을 띠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에 흥분했다. 여기서 물론 이러한 變革이 體制와 理念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急變의 흐름 속을 貫流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력은 역시 人間의 普遍的 理想과 價値 그리고 日常生活에서 우러 나오는 자연스런 慾求와 所望이라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硬直化된 體制와 敎條的 理念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던 社會主義 體制 아래서도 강력한 抵抗의 彈力性은 짓누르는 멍에의 무게만큼이나 비례해 깊이 엄존하고 있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進退兩難의 국면을 맞고 있는 北韓은 體制維持를 위한 現實的 打開策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南北韓 UN 同時加入, 豆滿江 하구의 經濟特區計劃, 美日과의 修交努力 등을 보면 확연해지지만, 그렇다고 그리 멀지 않는 장래에 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는 樂觀論만을 펼 수 있는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狀況을 훑어 보더라도 實質보다는 形式에 치우치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北韓은 南北對話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南北간에 人的 物的 交流가 활성화될 때 東歐共產圈 및 蘇聯의 경우처럼 自由의 물결이 침투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열어서 기대하도록 유도하고는 統一을 향한 熱氣가 고조될 시점에 이르러 南韓의 內治에서 발생하는 問題를 기화로 다시 빗장을 채우는 등 열듯 열듯 하면서도 열지 않는 蓋然性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現 상황에서 필자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최근 南北對話의 核心으로 부각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이 會談의 進行과 관련하여 提議의 背景으로부터 豫備 會談의 經過 및 本會談의 進展狀況과 아울러 雙方의 立場을 정리해 보고, 國內外 情勢가 이 會談의 進展에 미치는 影響을 고찰하여 進展에 障礙가 되고 있는 要因들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對應策을 모색하고자 本 研究가 비롯되었다.

물론 지금껏 南北高位級會談에 대한 研究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時事的 資料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라, 本研究는 南北韓의 日刊紙 記事에 주로 의존하여 記事內容을 토대로 問題를 인식하고 그 展開樣相을 서술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상이한 南北韓의 言論狀況에 비추어 비교 고찰하고자 하는 基礎資料인 日刊紙가 과연 客觀的 資料로서 信憑性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시 되긴 하지만, 南側의 일간지로서 '한국일보'를 택한 것은 이 신문이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필자의 主觀的 判斷에 기인하였고, 北側의 일간지로서 '로동신문'¹⁾을 택한 것은 로동당 기관지로서의 이 신문이 群衆路線을 견지하고 있는 北韓體制 내에서 黨의 政策方向을 黨員들에게 제시하면서 전체 黨員들에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行動方向을 설정해 주는 言論媒體이기 때문이었다.

其實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에는 여러 要因들이 상호 연관을 가지면서 복잡하게 얽혀 影響을 미치고 있으므로, 本研究는 1989년 9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의 記事內容을 중심으로 쟁점화된 主要 要因別로 나누어 그 影響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지도를 받는 신문이며, 주체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혁명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로동신문 편.

"당은 당보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자기의 정책을 알려주고 행동 방향을 지시하며 신호를 줍니다. 특히 당보의 사설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거기에서 당원들은 일상적인 투쟁 방향과 지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1.

II. 南北高位級會談의 展開와 雙方의 立場

1. 南北高位級會談 以前의 南北對話 成立과 展開²⁾

南北對話는 休戰 직후 失鄉民을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接觸을 필두로 ‘東京올림픽’ 출전 단일팀 구성을 위한 南北體育會談 등 서너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南과 北이 만난 것은 南北韓의 내부 상황과 韓半島 주변 정세의 다극화 등 內外的 環境이 급변하였던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이다. 朴正熙 大統領이 1970년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선언한 ‘平和統一構想’을 배경으로 이듬해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總裁가 제의한 인도적 차원의 ‘南北赤十字會談’을 北韓赤十字會가 수용함으로써 역사적인 서장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은 그 해 8월 20일 南北 쌍방의 赤十字社간 첫 派遣員 接觸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친 接觸과 9월 20일부터 시작된 25차례의 豫備會談 끝에 1972년 8월 30일 비로소 平壤에서 第一次 本會談을 열 수 있었다. 이후 1973년 8월 28일 北韓의 金英柱가 ‘6·23 宣言’을 트집잡아 일방적인 對話拒否聲明을 발표하기까지 7차례 동안 서울과 平壤을 오가면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南北赤十字會談 豫備會談이 진행될 무렵인 1971년 11월 막후에서는 南韓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北韓의 金英柱 黨組織指導部長의 신임장을 지참한 실무자(南側: 鄭洪鎭, 北側: 金德賢)간 접촉이 비밀리에 이루어져 1972년 5월 2일 李 부장이 극비리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金英柱와 連鎖會談을 가졌고, 5월 29일에는 北側의 朴成哲 副首相이 서울을 방문하여 朴 대통령을 예방하고 李 부장과 2차례 會談을 가졌다. 이같은 쌍방간 高位級會談은 ‘7·4 南北共同聲明’과 南北 調節委員會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3차례의 共同委員長會議,

2) 「1990 통일백서」(통일원, 1990), pp. 93-123.

「民族統一로의 前進」(國土統一院, 1989), pp. 147-247.

곽태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정책”, 신정현(편), 「북한의 통일정책」(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347-379.

3차례의 幹事會議, 10차례의 副委員長會議 등에도 불구하고 실속없이 명맥만 유지하다가 1975년 5월 南北直通電話의 단절과 함께 중단되었다.

이외에도 1970년대 말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代表와 北韓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간의 접촉과 南北卓球協會會議 등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合意에 이르지 못한 채 지리멸렬해지고 말았다.

1970년대의 南北對話가 이처럼 對話의 通路를 마련하는 데 그쳤을 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 1980년대에는 이를 토대로 多樣的 接觸과 對話의 通路를 마련한 상징적인 成熟期로 볼 수 있다.

그 시발점은 南北總理會談이었다. 北韓의 李鍾玉 總理는 1980년 1월 11일 申鉉鎬 國務總理에게 서신을 보내 南北政治協商會議와 함께 當局者會議의 개최 容의를 표명해 옴으로써 1월 24일 이를 위한 實務代表의 接觸을 시도하여 10회에 걸쳐 접촉을 가졌으나, 北側은 9월 24일 傳言 放送을 통해 會談中斷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어 1984년 3월 30일 大韓올림픽委員會 鄭周永 委員長이 北韓올림픽委員會 金有順 委員長에게 서한을 보내 '第23回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출전 단일팀 구성을 위한 南北體育會談의 개최를 제의하자 北側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3차례 會談이 진행되었으나, 本質問題를 토의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났다.

또한 1981년 9월 西獨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第84次 國際올림픽委員會(IOC) 總會에서 第24回 國際夏季올림픽의 개최지로서 서울이 확정되자 사마란치 委員長이 南北體育會談을 제의하였고, 南·北韓 모두 이를 수용해 1985년 10월 8일부터 IOC 本部가 소재한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재 아래 비공개로 개최되었으나, 北側이 계속 과도한 種目的 配定을 포함한 '北南共同主催案'을 고집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會談에 앞서 1984년 8월 20일 全斗煥 大統領이 기자회견을 통해 南北간의 和合과 共同繁榮의 方案을 제의하면서 "北韓同胞의 生活向上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技術과 物資의 無償提供" 용의를 천명하자, 이를 비방·거부하던 北韓側이 돌연 9월 8일 태도를 바꾸었는 바, 北韓赤十字會가 서울·京畿 일원의 水災民에게 救護物資를 보내겠다고 통지해 옴으로써 이 物資의 引渡 및 引受를 위한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11월 20일 豫備接觸을 가져 1970년대 南北赤十字會談의 合意事項을 토대로 第8次 本會談의 개최를 논의하여 쉽게 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팀스피리트 85 訓練’을 구실로 北側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되다가 南側의 劉彰順 總裁와 北側의 孫成弼 委員長간의 수차례 상호 연락과 3차례의 연락관 접촉 끝에 1986년 1월 20일 北赤이 全面中斷聲明을 발표하기 전까지 1985년 5월 27일 서울에서의 第8次 本會談, 8월 27일 平壤에서의 第9次 本會談, 12월 3일 서울에서의 第10次 本會談이 각각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이 會談의 結實로서 1985년 9월 20일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團의 同時交換訪問’이 성사되어 分斷 40년만에 일부 離散家族들이 처음으로 南과 北을 방문하여 家族과 親戚들을 상봉하였으며, 서울國立劇場과 平壤大劇場에서 藝術團 公演을 가졌다.

앞서 水災物資의 引渡·引受 이후 南北간에 交流協力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申秉鉉 副總理가 1984년 10월 12일 北韓 政務院 崔英林 副總理에게 서한을 보내 南北간의 交易과 經濟協力を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서 南北韓經濟協力 機構의 설치 의견을 피력하자 北韓의 金煥 副總理가 10월 16일 이에 호응하여 11월 15일 第1次 會談을 필두로 5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1985년 4월 9일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楊亨燮 議長이 蔡汶植 國會議長에게 서한을 보내 南北國會議談을 제의하여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豫備接觸이 7월 5일과 9월 25일 2차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 중단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金在淳 國會議長이 7월 18일 楊 의장에게 國會를 대표하여 ‘서울올림픽大會에의 北韓參加促求決議案’을 전달하면서 이를 위한 準備接觸이 7차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相互立場의 차이가 현격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한편, 第六共和國으로 접어들어 중단되었던 南北赤十字會談의 재개를 위한 實務代表 접촉과 南北體育會談이 번번히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北京亞洲競技大會 이후 南北統一蹴球를 계기로 世界卓球選手圈大會 및 世界青少年蹴球大會 단일팀 구성이 성사된 것 이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南北高位級會談 提議의 背景과 成事

1980년대 초반 美國의 레이건 大統領의 政治路線인 이른바 新데탕트 體制下的

‘레이저노믹스’는 과거 冷戰體制에서의 소극적인 核抑止戰略이나 大量報復戰略 등을 전면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對蘇包圍網의 구축, 즉 同時多發의 核戰爭, 無限의 軍費競爭, 資本과 技術의 封鎖라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油價를 하락시키고 對共產圈 輸出統制品目(COCOM 리스트; 145개 품목의 컴퓨터 및 전자 제품)을 제정하자 蘇聯은 이내 연간 100억 달러의 赤字 속에 超緊縮財政을 꾸려나갈 수 밖에 없어서 美國과의 軍備競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형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蘇聯의 指導者가 된 고르바초프 黨書記長은 궁지에 몰린 蘇聯과 東歐共產圈을 회생시키고자 부득이 美國과 軍備縮小會談과 開放을 통한 改革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 그리고 東歐共產圈의 自由化 開放路線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北韓의 内部事情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外債의 累積과 經濟破綻 및 住民生活의 窮乏 등 經濟難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래서 金日成은 協力을 요청하고자 1984년 蘇聯을 방문하였으나 빈 손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자극을 받아 合營法(合作企業運營法)을 제정하여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수용할 속셈이었으나 이마저도 별다른 成果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미 南韓과의 經濟力 競爭에서 크게 뒤진 데다, 이러한 형세에 처한 北韓이 취할 수 있었던 입장은 緊張緩和를 내세운 南北간 政治軍事會談의 모색이었다. 北韓은 이를 통해 막대한 軍備支出을 지양하고 이를 經濟 쪽으로 돌려 體制의 沒落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³⁾

또한 對南戰略的 次元에서, 北韓은 南韓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즉 國際社會에서 北韓을 유도하여 對話의 場으로 나오게 하고, 國際的 位相定立을 통하여 國威를 선양하여, UN에의 同時加入과 交叉承認 등 현안 문제의 해결에 유리한 展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래의 主義·主張을 더욱 높은 어조로 南韓의 政權擔當者들이 美 帝國主義와 결탁하여 體制를 유지하고 長期執權을 획책하기 위한 방편으로 올림픽을 유치하였다고 黑色宣傳을 하고 이러한 올림픽의 政治道具化를 막아 民族團合과 世界平和를 도모하기 위해서(단지 北側의 主張에 의하면), 1989년 7월 平壤에서 열린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으로 反帝國主義的 連帶鬪爭을 강화하여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회

3) 張和洙, “南北韓 경제교류 現實과 展望”, 『自由公論』, 1990년 7월號, pp. 65-67.

석시키고 平和攻勢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었고,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南韓政府와 公式的인 對話通路을 마련하는 이면에는 6·29 措置 이후 民主化로 한층 더 큰 목소리를 내는 反體制나 反政府團體와의 下層部 對話⁴⁾에 주력하여 南韓의 政治不安을 가중시킴으로써 일련의 協商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다.⁵⁾

더욱이 南北韓 두 체제의 實體認定을 밝힌 1988년 金日成의 新年辭와 이 해 盧泰愚 大統領의 '7·7 特別宣言'이 相互見解差를 좁혀 낙관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이러한 對內外的 環境 속에서 南北高位級會談은 1988년 11월 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의 보도'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北韓側은 이 보도⁶⁾를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 사이의 교류 방안"으로서,

- ① 미군 무력의 단계적 철수
- ② 북남 무력의 단계적 축감
- ③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 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 ④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삼자 회담의 개최

등과 "북과 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적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① 정치적 대결 상태의 완화
- ② 군사적 대결 상태의 완화
- ③ 북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 군사 회담의 개최

등을 제시하였는 바, 당시 政務院 李根模 總理가 이 내용을 담은 서한을 11월 16일

4) 北韓의 對南統一一戰略은 上層部 接近과 下層部 接近으로 양별되는 바, 上層部 接近이란 政府·與黨과의 公式的 通路을 통한 방식이고, 下層部 接近이란 在野·學生團體 등 反體制 및 反政府 단체들과의 非公式的 通路을 통한 방식이다. 이 전략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합 社會科學院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題下의 講義에서 金日成이 제기한 것으로서 政治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上層部 接近을, 政治가 불안정할 때는 下層部 接近을 시도하는 兩面性을 지녀왔다.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新東亞 1989年 1月號 별책부록), pp. 234-240.

5) 金炳元·曹喜善,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 활용", 慶星大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第6輯(1990), pp. 110-111.

6) 로동신문, 1988. 11. 8.

南側에 전달했고, 이를 접수한 姜英勳 國務總理가 12월 2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⁷⁾을 12월 12일자로 새로 발탁된 政務院 延亨默 總理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사되었다.

“南北간의 信賴構築과 緊張緩和問題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제의하는 바, 이의 준비로서 次官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南北 쌍방 각각 5명의 代表로 구성되는 豫備會談을 1989년 2월 초순 板門店 남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이와 아울러 姜 총리는 會談議題로 (i) 상호 비방 및 중상의 중지 문제, (ii) 상호 존중 및 불간섭 문제, (iii) 다각적인 교류 및 협력의 실시 문제, (iv)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v) 남북 정상 회담의 개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北側은 1989년 1월 16일 延 총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쌍방의 總理를 團長으로 하고 軍 實權者를 포함하여 7명의 代表로 구성되는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서울과 平壤에서 개최하자고 응수하면서, 南側이 제안한 豫備會談을 2월 8일에 갖자고 동의해 왔다.

어쨌든 처음부터 議題 및 會談名稱에 있어서 상호 시각 차이가 있었으나, 1월 23일 姜 총리가 對北書翰을 통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일단 會談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3.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의 經過

2월 8일의 第一次 會談은 쌍방이 사전에 제기해 온 議題와 名稱問題 중 어느 하나 손도 대지 못한 채 무위로 끝났다. 北側은 ‘팀스피리트 89 訓練’의 中止를 요구하며 확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會談을 속개하지 않겠다는 ‘先訓練中止 再檢討後 會談展開’를 들고 나왔다. 이에 南側은 팀스피리트 訓練과 이번 會談은 무관하므로 成事를 위한 實質問題를 토론하자고 맞섰으나, 北側은 對話와 軍事的 對決을 양립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⁸⁾ 北側의 태도는 ‘남측은 대결 정책을 버려야 한다’⁹⁾는 다음과 같은 記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7) 한국일보, 1988. 12. 29.

8) 한국일보, 1989. 2. 9.

9) 로동신문, 1989. 2. 9.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면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도 전쟁 연습을 하는 걸 보면 의안이 <힘>의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러한 北側의 태도는 3월 2일의 第二次 會談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北側은 기존 연설을 통해 (i) ‘팀스피리트 89 훈련’의 즉각적인 중지와 이의 공식 발표, (ii) 훈련에 동원된 전투 병력 및 무장 장비의 원대 복귀와 해외에 기동 중인 장비들의 기동 정지, (iii) 군사 훈련을 할 경우 외국군 참여없이 한국군만으로 하며, 규모 축소와 군사 연습의 명칭 변경 등 ‘3개 항의 긴급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팀스피리트 訓練을 “미국의 모험적 야심과 亞·太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훈련의 성격은 바로 사대주의적, 공격적”이라고 규정지음으로써 南側의 “自衛的 性格”을 일축한 채 공전되고 말았다.¹⁰⁾

이 해 가을로 접어들어 10월 12일에 열린 第三次 會談에서도 마찬가지였다. 北側은 초반부터 文益煥 목사·林秀卿 학생·文奎鉉 신부의 拘束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방북은 민족 통일 문제이므로 남조선의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南側과 保安法 對 北韓刑法, 南朝鮮革命戰略 對 滅共統一 등의 문제를 놓고 3시간이나 설전만을 거듭하다가 소득없이 끝났다.¹¹⁾

그러나 11월 15일의 第四次 會談부터 北側의 態度가 변하기 시작했다. 비록 實質的 合意事項은 없었지만, 本會談의 節次問題를 토의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본 셈이었다. 統一을 위한 解決課題의 우선 순위 문제와 관련하여 南側은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相互不信과 誤解가 해소되어야 政治·軍事에서의 對決狀態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北側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況에서 南北交流는 어렵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北側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라는 표현 앞에 “당면한”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함으로써 팀스피리트 訓練의 中止 등 현안 군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本會談의 名稱과 議題와 관련해서도 南側은 포괄적 의미의 ‘高位當局者 會談’으로 명칭을 정하고 ‘多角的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의 解消’를 의제로 삼자고 주장한 반면, 北側은 ‘고위급정치군사회담’으로 명칭을 정하고 의제로서 교류 협력을 제외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로만 국한하자는

10) 한국일보, 1989. 3. 3.

11) 한국일보, 1989. 10. 13.

의견을 피력했다.¹²⁾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20일에 속개된 第五次 豫備會談에서는 회담의 명칭을 ‘南北高位級會談’으로 절충하는 한편, 대표단의 일원으로 軍 代表가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參謀總長級 1명의 포함을 전제로 한 상호 편의에 따른 대표단 구성 방식에 합의하였으며, 團長인 總理를 포함한 長·次官級 7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되 최소한 軍 總參謀總長(군 참모장)級 1명을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쌍방의 隨行員을 각 33명으로 결정하였다.¹³⁾

그러나 1990년 1월 31일에 열린 第六次 豫備會談에서는 北側이 미결 사항인 議題問題는 아예 접어두고,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¹⁴⁾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면서 會談 자체를 交錯狀態로 빠뜨렸다.

“...콩크리트 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의 자유 왕래, 제한없는 접촉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의 협상을 위해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정당 수뇌들의 협상 회의 소집을 제의하며, 각 분야 회담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개월만에 재개된 7월 3일의 第七次 豫備會談에서는 南側이 北側의 주장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本會談의 개최를 위한 節次問題 전반에 대해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타결을 두고 南側은 東歐 등 최근 國際情勢의 變化와 맞물려 韓半島에 對話와 和解의 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다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풀이했지만,¹⁵⁾ 北側은 ‘우리측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이라고 자찬하면서, “제1차 예비회담시 유엔 대책 토의를 정식 제의했으나 팀스피리트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그동안 會談空轉의 책임을 南側으로 돌렸다.¹⁶⁾

하여간 7월 6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實務接觸을 통해 최종 확정된 合意書 文案은 회담 명칭, 회담 날짜, 회담 장소, 회담 의제,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수행원과 취재 기자, 회담 형식, 합의서 채택, 회담 기록, 회담 보도, 회담장 표지 및 시설, 신변 안전 보장,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남북 왕래 절차, 기자의 취재 활동, 체류

12) 한국일보, 1989. 11. 16. 로동신문, 1989. 11. 16.

13) 한국일보, 1989. 12. 21. 로동신문, 1989. 12. 21.

14) 로동신문, 1990. 1. 1.

15) 한국일보, 1990. 7. 4.

16) 로동신문, 1990. 7. 4.

일정, 편의 제공, 직통 전화, 합의서 발표 등 19개 항목에 달했다.

곧이어 열린 7월 26일의 第八次 豫備會談은 이미 완성된 ‘南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를 南側의 宋漢虎 首席代表와 北側의 白南俊 首席代表가 낭독 확인하고 서명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폐막 연설로 이어졌다. 연설을 통해 宋 대표는 “平和統一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는 礎石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白 대표는 “남북관계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¹⁷⁾ 그러나 白 대표는 北側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범민족대회’와 南韓의 UN加入問題를 상기시키면서 “범민족대회에 전민련의 참가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민족의 내부 문제인 통일 문제를 북남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밖으로 들고 다닐 경우에는 본회담 개최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4. 南北高位級會談 本會談의 進展狀況

本會談을 앞두고 北側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는 8월 15일부터 “판문점을 개방하여 북남 접촉을 허용한다”는 7월 3일의 성명을 통해,¹⁸⁾

- ①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은 통일 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 ②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은 사상과 리념, 정견을 달리하는 정당, 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이 차별없이 다같이 동등하게 참가해야 한다.
- ③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 교류는 그 어떤 법률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하며, 구속당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이른바 ‘북남 접촉 3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南側도 盧泰愚 大統領의 ‘7·20 南北韓民族大交流를 위한 特別發表’를 통해 8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民族大交流期間’으로 설정하고, 설·추석 등 名節의 定例訪問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北側의 ‘범민족대회’에 南側 人士들의 참가를 허용하며, 北韓 訪問을 희망하는 자에게 統一院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덧붙여

17) 한국일보, 1990. 7. 27. 로동신문, 1990. 7. 27.

18) 로동신문, 1990. 7. 6.

발표하자,¹⁹⁾ 北側은 돌연 板門店 통과를 거부하고 나섰다.²⁰⁾

北側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南側은 北側이 特定 團體만을 초청한다면 이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는 등²¹⁾ 이즈음 南北간에 일시적인 感情對立이 고조되어 本會談의 개최가 불투명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第一次 本會談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3차례의 責任連絡官 접촉을 통해 이를 떨쳐버릴 수 있었다.

서울에서 역사적인 막이 올랐던 第一次 本會談은 9월 5일과 6일 2차례에 걸쳐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南側은 8개 항의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案)’을 제시하는 한편,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 방안’ 10개 항과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8개 항 그리고 ‘남북간 군비 감축 추진 방안’ 5개 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²⁾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요지

- ①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 ②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③ 상호 의견 대립과 분쟁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④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 행위를 중지한다.
- ⑤ 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며, 사회 개방과 민족적 유대를 회복한다.
- ⑥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감축을 실현한다.
- ⑦ 국제 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⑧ 현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 방안〉

- ① 이산 가족의 자유 방문과 재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60세 이상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을 즉각 실현한다.
- ② 민족 명절과 기념일을 전후하여 민족 대교류를 실현하며, 문화 행사를 교환 개최한다.
- ③ 각 분야별 남북 동포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 실현한다.
- ④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물자를 교류한다.
- ⑤ 자원의 공동 개발 및 합작 투자,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외 진출 및 대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19) 한국일보, 1990. 7. 21.

20) 한국일보, 1990. 7. 27.

21) 한국일보, 1990. 7. 31.

22) 한국일보, 1990. 9. 6.

- ⑥ 관광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관광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 ⑦ 남북간의 철도 및 도로를 복원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 ⑧ 우편물을 교환하고, 전신 및 전화를 개통한다.
- ⑨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 ⑩ 부총리급의 경제 협력 공동 기구를 설치한다.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 ①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의 바탕 위에서 상대방 지명 공격 및 비방 중상 등을 중지한다.
- ② 신문·방송 및 출판물을 상호 개방한다.
- ③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를 설치한다.
- ④ 군 인사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 ⑤ 군사 정보를 상호 공개·교환한다.
- ⑥ 군 부대의 이동과 기동 훈련시 사전 통보하며 상대방을 초청 참관케 한다.
- ⑦ 남측의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 ⑧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이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남북간의 군비 감축 추진 방향〉

- ① 공격형 전력 구조를 방어형 전력 구조로 전환한다.
- ② 상호 동수 보유 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의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③ 상비 전력 감축에 상응하여 예비 전력과 유사 군 조직을 함께 감축한다.
- ④ 합의 사항의 이행 보장을 위한 현장 검증과 감시를 실시한다.
- ⑤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 수준은 통일 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北側은 會談 全過程에서 준수해야 할 '3개 원칙'과 '3개 항의 긴급 문제'의 협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대결 상태 해소 방안' 6개 항과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 방안' 9개 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요지).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 원칙〉

- ① '7·4 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평화 통일·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준수한다.
- ②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 공동의 이익을 우선한다.
- ③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 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3개 항의 긴급 문제〉

- ① 유엔 가입의 논의 문제
- ②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문제
- ③ 방북 인사를 비롯한 구속자 석방 문제

〈정치적 대결 상태 해소 방안〉

- ① 상호 비방 및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 행사를 중지한다.

- ②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한다.
- ③ 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④ 북남 사이를 갈라놓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 ⑤ 각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 대왕과 접촉을 허용한다.
- ⑥ 국제 정치 무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며 상호 협력한다.

〈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 방안〉

- ① 군사 훈련과 연습을 제한한다.
- ②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한다.
- ③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 ④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⑤ 군사 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 ⑥ 군축 정형을 호상 통보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 ⑦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한다.
- ⑧ 조선반도에서 외국군의 철수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⑨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 보장 조치를 강구한다.

以上の南·北側 提案内容에서 알 수 있듯이 南側은 相互體制의 認定과 尊重의 바탕 위에서 交流協力과 軍事的 信賴構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北側은 “조선은 하나”라는 종래 입장에 조금도 수정함이 없이 상시 제안하고 주장하던 바를 그대로 드러내 놓았다. 이러한 태도는 南側의 경우 이 회담 내용을 모든 言論媒體가 한결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北側은 延 총리의 基調發言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면서도 南側 姜 총리의 基調發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南側의 姿勢를 恠評하고 있다.

“우리측 제안에는…련방제 통일을 실현하며 그것을 위해 대화를 성과적으로 촉진시키려는 애국애족적 立場이 넘쳐 흐르고 있다. …남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그 자체가 아전인수격…뒤이어 내놓은 〈다각적인 교류 협력 방안〉…등은…미군과 핵무기 철수 문제, 〈팀스피리트〉합동 군사 연습의 중지 문제, 북을 적대시하고 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문제 등 기본 문제를 외면한 것이었다….”²³⁾

“…조국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는 온거레에서 기쁨 대신 실망의 그늘을 던지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있다.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남측은 통일 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우롱하는 나쁜 버릇을 버리고 다음 회담에 성실하게 나와야

23) 로동신문, 1990. 9. 6.

할 것이다.”²⁴⁾

아무튼 南北의 總理가 分斷 45년만에 처음 대좌한 第一次 本會談은 相互立場을 확인하고 合意를 도출시키기 위해 진지한 努力을 기울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을 뿐이었다.

第二次 本會談은 1990년 10월 1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平壤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北側은 第一次 本會談 때 南側이 제안한 基本合意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이라면서 ‘북남 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을 채택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南側은 基本合意書의 前文에 北側이 제기한 3개항의 會談原則을 수용한 修正案을 제시하고, 이미 제안한 交流協力方案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方案²⁵⁾을 제시하였다.

이튿날 南側은 전날의 不可侵宣言 내용을 또다시 수용한 ‘南北간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共同宣言(案)’을 제시했지만, 北側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에서 相互不信이 짝트는 만큼 不可侵宣言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²⁶⁾

결국 쌍방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인 합의에 접근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北側은 이를 두고 “...불가침 선언을 하자는 데 기어코 이를 반대하는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 문제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²⁷⁾고 보도했다.

第三次 本會談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 앞서 3차례 實務接觸을 가졌으나, 南側의 ‘先 기본 합의서 채택, 後 불가침 문제 협의 해결’의 입장과 北側의 ‘先 불가침 문제 해결’의 태도가 맞서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南側은 이 第三次 本會談에서 不可侵宣言問題와 관련하여 그 實效性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i) 쌍방간에 不可侵 약속 이행의 확고한 實踐意志가 필요하며, (ii) 相對方의 體制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政策이나 態度를 포기해야 하고, (iii) 不可侵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裝置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南側이 不可侵에 관한 合意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설명한 후 基本

24) 로동신문, 1990. 9. 7.

25) “南北通行에 관한 方案, 南北通信에 관한 方案, 南北經濟交流協力에 관한 方案”

26) 로동신문, 1990. 10. 19.

27) 한국일보, 1990. 10. 18·19.

合意書 채택 이후 1개월 이내에 구성되는 政治軍事分科委員會에서 협의 체결해야 할 8개 항의 不可侵方案을 제시하였지만, 北側은 不可侵宣言을 서두르는 意圖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南側의 北方政策 및 유엔加入에의 努力, 汎民族聯合 결성 관련 拘束者의 釋放問題를 들추어 南側의 確答을 요구했다.

또한 北側은 그들의 ‘불가침 선언’ 초안과 第二次 本會談 때 南側이 제기한 ‘화해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 초안을 혼합한 ‘북남 불가침과 화해 협력에 관한 선언’을 제시하였고, 南側은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5개 분야, 즉 “(i) 1991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남북간의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ii) 남북 이산 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iii)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실현하고 (iv)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강구하며, (v) 남북 총리간 직통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는 實踐方案을 제시하고 北側의 호응을 촉구했다.²⁸⁾

결국 이 회담도 아무런 성과없이 第四次 本會談을 1991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平壤에서 개최하기로 한 채 종료되고 말았다. 北側은 이 회담을 두고,

“남측의 기본 발언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총방어적인 자세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불가침선언을 회피하는 것은 위험한 전쟁 문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둘째 일관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²⁹⁾

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해를 넘기고 第四次 本會談의 날짜가 임박하자 北側은 ‘팀스피리트 91 訓練’을 구실로 무기 연기하였고, 다시 南側의 ‘콜레라 전염 확산’을 구실로 10월 하순으로 연기해 버렸던 것이다.

28) 한국일보, 1990. 12. 12·13·14.

29) 로동신문, 1990. 12. 14.

Ⅲ. 南北高位級會談 進展에 미친 國內外 情勢의 影響

1. 國內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

(1) 南北韓간의 軍縮論議와 駐韓美軍의 動向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하기 위해서 南北韓간에 해결해야 할 주요한 현안 문제는 軍事的 對峙 및 敵對關係를 해소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軍事問題로서,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 쌍방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다.

南北高位級會談이 진행되면서부터 北韓은 軍縮을 최대 이슈로 등장시키면서 駐韓美軍의 撤收와 팀스피리트 訓練의 中止를 주장하였고, 南韓 역시 이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實踐에 옮긴다는 柔軟性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지금까지 實質的인 側面에서 진전된 바는 없으나, 妥協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韓간 '군사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經濟力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南韓과 軍備競爭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이미 南韓의 國防豫算이 1991년도 한 해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北韓의 두 배가 넘고³⁰⁾ 量的 優勢를 보이고 있는 北韓의 武器體系가 대부분 낡은 데다, 質的으로 南韓에 훨씬 뒤진다는 점에서 비롯된다.³¹⁾

그렇지만 南韓은 北韓이 이러한 軍縮을 거론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속셈이 숨어 있을 지 모른다고 憂慮와 함께 好戰性을 의심하고 있으며,³²⁾ 休戰 이후 北韓에 의한

30) 統一院의 분석에 따르면, 南韓의 國防豫算이 109억 달러로서 北韓의 國防豫算 53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일보, 1991. 4. 13.

31) 「自由公論」 1990年 3月號에 게재된 “駐韓美軍의 위상변화를 말한다”라는 座談에서 軍事專門家 洪聖杓의 발언.

32) 北韓은 1970년대 南北對話에 호감을 갖고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으나 微笑의 이면에는 ‘땅굴’이 감추어져 있었고, 최근 南北高位級會談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4땅굴이 발견됨과 아울러 韓半島 전역 및 日本 南部까지도 강타할 수 있는 위력의 新型 미사일 ‘로동 1호’를 개발하였다.

한국일보, 1990. 3. 4. 및 11. 14.

全面戰의 억제와 南韓의 防衛能力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줌으로써 安保環境에 대한 心理的 不安感을 떨쳐버리는 데 크게 기여한 駐韓美軍의 撤收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또한 南北高位級會談 進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訓練에 대해서 北韓은 “공격적 전쟁 연습”으로 규정지어 매년 2월이면 으레 ‘인민무력부 보도’로 北韓 전역에 “전시 상황 돌입 명령”을 하달하면서 이를 구실로 모든 南北간 對話를 일시 중단시키지만, 南韓은 이 혼련이야말로 “수세적 방어 목적”임을 강조하고 정녕 訓練의 性格이 의심적일 경우 참관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이 南北高位及會談 本會談에서 제시한 軍縮提案은 “남북간의 신뢰 조성, 북남 무력의 감축, 외국군 무력의 감축, 군축과 그 이후 평화 보장”의 4가지 방안으로서, 軍備統制라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軍縮이라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色彩가 여전하고, 奇襲攻擊과 偶發的인 戰爭勃發의 가능성을 줄이는 위기 감소 조치의 내용이 빈약하며, 軍縮實現의 단계를 협의 후 3-4년 이내로 잡아 너무 짧고, 戰力의 최종 유지 수준을 10만 명으로 정한 戰略的 根據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北韓은 南北간 不可侵條約 대신 宣言을 고집하는 것도 무리인 것이다.

반면, 南韓의 軍備統制方案은 “先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後 군비 감축”이라는 段階的 方式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信賴構築의 조치가 선행된 뒤에 攻擊型 戰力 構造를 防禦型으로 전환하고 相互同數保有原則에 입각하여 전력을 같은 수로 균형있게 감축하면 실질적인 軍備減縮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방안은 國際的 慣行이나 歷史的 前例에 미루어 합리적이며, 軍備統制 시행 기술상의 구체화는 일단 雙方간의 協議次元으로 미루고 포괄적인 一般原則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기 감소 조치 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北側과 南側의 두 가지 軍縮方案이 기본 개념과 일반 원칙의 측면에서 거의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雙方의 意志如何에 따라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³³⁾

33) 韓國發展研究院이 1990년 10월 25일 개최한 ‘南北韓 關係改善과 軍備統制 심포지움’에서 행한 柳在甲 教授의 “南北軍備統制의 可能性과 問題點” 요지.

한국일보, 1990. 10. 26.

軍縮論議와 함께 國防費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美國은 北韓의 對南攻勢의 軸을 무력화시키고 太平洋地域의 美軍兵力을 감축시키는 計劃의 일환으로 大邱·光州·水原의 空軍基地를 烏山과 群山의 두 곳으로 통합³⁴⁾하는 한편, 龍山基地의 이전을 확정하였으며, 停戰委員會 UN軍 首席代表를 南韓 將星으로 대체하고³⁵⁾ 韓美聯合司令部의 指揮權을 이양할 계획이다. 팀스피리트 訓練과 관련해서도 規模縮小 등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北韓이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군 철수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北韓의 對南攻勢에 대한 南韓 내 反政府團體의 呼應

北韓의 對南攻勢에 대한 南韓 내 反政府團體의 呼應이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이에 앞서 北韓이 韓半島의 統一과 관련하여 표명한 立場에 있어서의 繼續성과 變化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韓半島 전역의 社會主義 革命의 완성을 기도해 온 北韓은 南韓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霧圍氣³⁶⁾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統一의 전제 조건으로서 ‘남조선의 민주화,’ 즉 ‘일반적인 의미의 民主化’ ‘보다는 共產主義者들을 포함한 모든 團體들과 個人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政治的, 法律的, 社會的 霧圍氣를 조성할 수 있는 南韓 내 ‘特別한 意味로서의 民主化’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國際機關이나 強大國의 介入이 완전히 배제되고 駐韓美軍이 철수된 상태에서 南北韓 당사자끼리 協商을 벌여 統一로 나아가는 ‘자주 통일’의 지향이다.

셋째, 駐韓美軍이 철수하게 되면 南韓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安定이 무너지고, 그럴 경우 이를 발판으로 삼고 있던 政府가 붕괴될 것이므로, 이 때 소위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인사’들이 집권하여(집권하지 못하더라도 나약한 政府는 이들의 要求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視角도 포함) 北韓의 統一方案을 수용해 주는 방향이다.

넷째, 國家機關이나 政府機關과의 對話보다는 政黨·社會團體·民間人을 중심

34) 한국일보, 1990. 1. 30.

35) 한국일보, 1991. 3. 26.

36) B. C. Koh, “Unification Policy and North-South Relation,” pp. 300-306., 金學俊,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추세,” 李相禹 外 6人 共著, 「북한 40년」(서울: 乙酉文化社, 1989), pp. 573-575.

으로 한 連席會議나 大同集會를 열어 南北對話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다섯째,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체제가 서로 다른 南北韓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政治制度로서는 일단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國際社會의 조심스런 反應과 더불어 南韓의 일각에서도 이러한 認識이 팽배해 있다는 判斷 아래 駐韓美軍의 철수와 南韓의 反共體제의 해체 등을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는 聯邦制의 요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北韓이 南北高位級會談에 임한 이후 취한, 종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투적인 攻勢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南韓 내 ‘특별한 의미의 民主化’와 ‘非國家的 機關이나 非政府的 機關 중심의 連席會議 및 大同集會’와 연관되는 것은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및 本會談時 거의 매번 國家保安法과 思想의 自由, 反共國是의 폐기 등을 거론하고, 密入北者들을 統一의 英雄인 양 강조하면서 이들의 釋放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北韓은 國家保安法이 폐기되어 南韓의 體制나 政府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많이 출현하여 北韓의 立場을 대변 내지 옹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統一論議에 있어서도 각계각층 다방면으로 활성화되어 黨의 指示나 政策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北韓 내의 여러 社會團體, 바꾸어 말해 필요에 의해서 조직된 官製團體들과 활발히 소통되어 南韓政府의 統一政策을 무색하게 만들고 北韓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北韓은 政府 對 政府의 協商을 위해 南北高位級會談을 제의해 진행시키지만, 이보다는 이면에서의 多方面 對話에 더 강한 意志를 표출시키고 있으니, 政府간 對話에서 현실적으로 短期間 내 수용하기 힘든 問題를 제의하여 機先을 장악한 후 이를 南韓政府의 “통일 의지 미약”으로 주지 확인시키면서 非國家機關 및 非政府機關과의 協商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對南攻勢는 다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편지〉 “대망의 90년대 우리 청년 학생들은 기어이 조국 땅에 통일 조국을 일떠 세우기 위해 투쟁의 선두에서 계속 달리고 또 달려 가자…… 굳건한 강철 대오로 결속한 남녘의 백만 학도들에게 승리가 있으라!”³⁷⁾

37) 조선학생위원회가 1990년 5월 20일 ‘全大協 第4期 出帆式’에 즈음하여 발송한 축하 편지.
로동신문, 1990. 5. 21.

〈호소〉 “① 우리 자신들이 통일 주체임을 깨닫고 성스러운 민족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애국적 통일 운동에 적극 떨쳐 나아가자.

②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광범히 만나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③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며, 모두 다 통일 대화에 적극 참여하자.

④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 민족적 통일 노선을 구축하자.”³⁸⁾

〈보고〉 “8·15 범민족대회는 통일 운동사에 민족 주체·민간 주체의 통일 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통일 협상이었으며, 조국 통일 위업을 전 민족적 위업으로 전면시키는 데 기여한 특기할 만한 사변이었습니다.”³⁹⁾

〈사설〉 “오늘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고위급회담의 진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민간인들 사이의 대화까지도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다. 《대화창구일원화》의 구실 밑에 통일 논의를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화 요구를 가로 막는 것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범죄 행위이다.”⁴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全大協 등 反政府團體에서 ‘金日成主體思想’을 탐독하며 階級鬭爭을 선동하고 北韓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호응하는 동향이라든가, 密入北者들이 平壤에서 北韓體制를 옹호하는 發言을 서슴지 않는 행위 등은 北韓으로 하여금 내부 결속을 다지게 하여 體制開放을 늦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南北高位級會談 등 일련의 南北對話 진전을 지연시키고 對南攻勢를 더욱 강화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뿐이다.

(3) 北韓經濟의 落後와 閉鎖性

南北高位級會談의 의제 중에서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 방안’을 두고 南側이 이 의제를 南北間 懸案問題 해결의 제1순위로 내놓자, 北側이 ‘정치 군사 문제의 우선 해결’이라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이를 안중에도 두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經濟力이 뒷받침된 南側은 北側의 開放과 改革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를 자신있게 거론하였지만, 北側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北側은 經濟交流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뒤따를 開放과 改革으로 자칫 政治體制의

38) ‘공화국 북반부 제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로동신문, 1990. 6. 5.

39) ‘공화국 창건 42돐 중앙보고대회’에서 北側이 特定 團體만을 선별 초청한 ‘8·15 범민족대회’의 성과에 대해 언급한 延亨默 總理의 보고.

로동신문, 1990. 9. 10.

40) 로동신문, 1991. 1. 3.

變化가 수반되지만 않을까를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東歐 및 蘇聯의 變革과 관련하여 사실 보도를 극력 삼가한 채 人民들의 思想敎養에 가일층 주력함으로써 外來思潮의 波及影響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작금의 北韓 실상을 經濟的 社會的 側面에서 논한다면, 열악한 構造 속에서 外風에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우리 식대로 살자”는 主體思想으로 고무된 閉鎖的인 路線을 견지하고 있다고 일축할 수 있다.

北韓은 1987~93년에 걸쳐 第3次 經濟7個年計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서는 기본 과업으로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物質 및 技術的 土臺를 튼튼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工場 및 企業所의 技術改造를 촉진하여 生産能力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한편, 새로운 現代的인 工場 및 企業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1980년 10월 第6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이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人民生活의 向上에 주력하여 계획기간 내 住民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토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의식한 北韓은 政權樹立 이래 최대 규모의 國際行事인 1989년 7월의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을 올림픽에 버금가도록 성사시키기 위해 너무나 엄청난 財源을 쏟아부었다. 새 首都建設事業과 관련하여 ‘기념비적 대건축물’ 특히 그들의 주장과도 같이 “전례없는 대사업”인 각종 超現代式 競技場과 주요 對象建物 그리고 2만호 住宅建設計劃의 일환인 고층살림집 건설로 平壤市를 현대식 도시로 전면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人民들에게 自矜心을 고취시켜 結束을 다지는 한편, 建設現場에서 이를 독려하고 현장 지도를 한 金正日의 指導力을 널리 찬양함으로써 그의 탁월한 力量誇示와 함께 世襲基盤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약 40~45억 달러라는 엄청난 財源을 소모시킴으로써⁴¹⁾ 經濟難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外債 또한 1989년 말 현재로 67억 8천만 달러에 달함으로써⁴²⁾ 經濟規模로 모아 이미 償還能力을 상실한 상태인 데다, 최대의 보루였던

41) 金光洙, “北韓의 경제개혁과 限界,” 「自由公論」 1990年 1月號, p. 223.

42) 「統一問答」(동일연수원, 1991), p. 261.

蘇聯·中國마저도 原油代金 등을 종래와 같이 구상 무역이 아닌 硬貨支拂方式을 요구했으니,⁴³⁾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危機를 맞고 있는 셈이다. 經濟難局의 이 같은 심화로 수반되는 것은 人民生活의 궁핍이다. 이미 83년부터 <8·3 인민소비품>生産運動을 대대적으로 양양해 온 北韓當局이 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黨의 輕工業 革命方針을 받들어 人民生活水準의 새로운 轉換을 꾀하는 것을 보면⁴⁴⁾ 이를 역력히 읽을 수 있다.

閉鎖的인 社會構造 속에서 이러한 經濟的 危機는 人民들의 不滿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人民들로 하여금 外來文物과의 직접 접촉을 허용한 平壤祝典으로 말미암은 自由·開放思潮의 침습과⁴⁵⁾ 東歐 및 蘇聯 등지에 돌아온 留學生들로부터 전파된 외부 소식 등이 융합되어 젊은 세대에 自由·開放風潮가 확산되는가 하면,⁴⁶⁾ 人民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慾求增大가 점차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變化에 당혹한 나머지 89년 연말부터 思想教養教育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해 12월 6일자 로동신문에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연설’인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필두로 思想武裝의 강화를 다룬 演說 및 資料들을 시리즈로 게재하기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1990년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도 더욱 두드러진다.⁴⁷⁾

또한 東歐의 變革이 국내에 미칠 여과를 우려하여 在蘇 留學生들을 전원 철수시켰으며,⁴⁸⁾ 會寧 등지의 초대형 收容所 12곳에 政治犯 15만 2천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⁴⁹⁾ 91년 5월 平壤에서 열린 世界議員聯盟(IPU) 總會에서 “人權彈壓”이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⁵⁰⁾

43) 한국일보, 1990. 8. 29. 및 1991. 5. 17.

44) 로동신문, 1989. 1. 1. ‘김일성 신년사’.

45) 李大雨, “金日成의 리더십 移轉에 관한 연구,” 慶星大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第5輯(1990), p. 28.

46) 1990년 가을 日本의 재즈 音樂團이 사상 최초의 平壤公演에서 靑少年들로부터 선풍적인 人氣를 모은 것만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47) 金日成은 1990년 신년사에서 전례없이 紙面의 3분의 2를 社會主義 優越性的의 강조에 할애하였다. 로동신문, 1990. 1. 1.

48) 한국일보, 1990. 11. 30.

49) 한국일보, 1990. 1. 18.

50) IPU 總會에서 壤의 勸導 團長이 이 문제를 人權彈壓과 결부시켜 國際輿論을 환기시킨 바 있다. 한국일보, 1991. 5. 4.

物資不足으로 인한 騷擾나 犯罪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⁵¹⁾ 金策製鐵所·海州製鐵所의 근로자 소요 및 金剛山地域 군인들의 元山 근교 협동 농장 습격 사건,⁵²⁾ 新義州의 인민 폭동⁵³⁾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自由民主主義 思想과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바탕인 개인주의, 특히 南韓의 經濟力 실상의 北韓 유입이 무엇보다도 두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南北交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體制 내부의 苦悶으로 말미암아 北側은 회담에 임하는 척하지만 自信心을 가지지 못하는 탓에 積極性을 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4) 北韓의 核開發

그동안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던 北韓의 核開發問題가 1991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第四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그동안 國際社會에서 논의되던 北韓의 核開發問題가 국내 문제로 이전되었음을 뜻한다.

北韓의 核開發問題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거론되어 오다가 北韓-日本간의 關係改善에 즈음하여 수면 위로 부상한 이슈로서 北韓의 核安全協定과 核査察問題가 國際原子力機構(IAEA)에서 강력한 논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는데, 北韓에서 이미 완공 가동되고 있는 平北 寧邊 핵 단지의 反應爐는 北韓側이 주장하고 있는 研究用으로 보기에 너무 큰 30MT급으로서 第1核工場의 우라늄 연료에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第2核工場이 건설 중이므로, 3-4년 이내 戰術核武器의 製造가 가능하고⁵⁴⁾ 核實驗의 전 단계로 보이는 高爆發實驗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⁵⁵⁾

核安全協定 및 核査察과 관련하여 1991년 5월 빈 駐在 國際機構 전인천 新任 大使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데 대하여 IAEA의 한스 블릭스 事務總長을

51) 金善日, "불자부족에 의한 구조적 범죄환경," 「北韓 그 충격의 실상」(月刊 朝鮮 1991년 新年號 별책부록), pp. 138-143.

52) 한국일보, 1990. 12. 20. '統一日報 보도 인용'.

53) 1991년 8월에 이어 9월에도 발생하였다.
한국일보, 1991. 9. 29.

54) 한국일보, 1991. 3. 22.

55) 한국일보, 1991. 6. 27.

방문하고 核安全協定の 서명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⁵⁶⁾ 6월에는 北韓 特使인 陳忠國 巡廻大使가 IAEA 事務總長을 방문하여 IAEA가 제시한 核安全協定에 北韓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⁵⁷⁾

이와 때를 같이하여 金日成은 日本 교도通信과의 회견에서 北韓이 核武器를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핵 사찰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남조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니,⁵⁸⁾ 北韓 로동당 金容淳 國際部長이 2월 日本의 나카야마 外相에게 피력한 ‘南北韓의 核 동시 사찰’ 고집⁵⁹⁾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9월 28일 美國의 부시 大統領이 蘇聯에 제의한 戰略·戰術 核武器의 감축 및 海外로부터의 철수 문제와 관련한 聲明으로 말미암아 駐韓美軍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戰術核武器의 철수가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北韓이 내세운 核査察 거부 의 명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對南攻勢의 第一義의 方便으로 부르짖어온 北韓의 態度가 이제 核査察과 관련하여 자못 주시되는 바이며, 아울러 第四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런지가 기대되고 있다.

2. 國際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

(1) 共產圈의 體制變革

鄧小平 및 고르바초프 政權의 經濟體制改革으로부터 조심스레 타진된 變革은 共產圈의 改革·開放으로 나타나는 정세의 급변으로 변질 확대되었다. 美蘇冷戰 體制의 붕괴로 새로운 和解構圖가 조성되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이카와 新思考에 입각한 일련의 政策展開에 기인한 이러한 開放과 民主改革은 1989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점화되었던 것이다.

第二次 世界大戰 이후 蘇聯軍의 점령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共產圈에 편입되었던 東歐共產圈 國家들에서 국민 내부로부터의 民主化와 經濟的 繁榮을 위한 욕구가

56) 한국일보, 1991. 5. 30.

57) 한국일보, 1991. 6. 9.

58) 한국일보, 1991. 6. 4.

59) 한국일보, 1991. 3. 22.

폭발되어 이 지역을 휩쓸고, 급기야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이로 말미암아 스탈린식 一黨共產獨裁體制가 붕괴되고 多黨制가 허용되어 자유 총선거에 의한 大統領直選制를 추진하는 등 政治的 民主化를 위한 일련의 制度的 改革이 진행되었으며, 中央集權的 經濟管理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변모했고, 그동안 지배력의 원천이 되었던 社會統制裝置가 완화 내지 폐지되어 人間尊嚴性이 더욱 고양되기에 이르렀다.

헝가리가 民主社會主義로 전환하고 混合市場經濟를 지향한 지 두 달도 못돼 곧바로 共產統治의 종식으로 이어졌고, 東獨의 호네커가 民主化 示威에 “개혁 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꼬를 텄 시위는 東西베를린障壁을 허물게 하여 결국 東·西獨의 早期統一을 앞당겼으며, 유고·체코·폴란드·루마니아 나아가 東歐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던 알바니아의 共產體制마저도 이러한 추세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1990년 상반기에는 蒙古가 열리고, 中國에서 ‘6·4 天安門事態’로 발전되었는가 하면, 1991년 여름에는 保守로 회귀하려는 蘇聯의 쿠데타에 일침을 가하고, 蘇聯의 體制變革을 가속화하는 盤石을 놓았다.

이를 두고 ‘和平演變’⁶⁰⁾이라 했던가!

北韓은 東歐共產圈 體制的 崩壞過程을 보고,

“로므니아의 류혈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며, 정상화를 위한 로므니아 인민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는 外交部 代辯人의 聲明⁶¹⁾을 제외하고는 人民들에게 情勢變化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한 채 개방한 共產圈 國家의 실상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등⁶²⁾ 體制維持에 급급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그 까닭은 北韓이 이 變革의 影響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體制變質의 原因이 北韓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60) 北京의 外信記者클럽에서 생겨난 新助語. ‘資本主義 國家들이 戰爭 한 번 치르지 않고 차례로 社會主義 國家들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도미노 理論’에 비견된 말. 최근 世界 흐름을 보는 잣대라 하겠다.

61) 로동신문, 1989. 12. 27.

62) 그 예로써 蘇聯의 ‘네젤라’誌 보도를 인용한 記事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蘇聯이 개방된 이후 “사회에 방랑자가 차 넘치고” “민족간 분쟁이 요란”해졌으며, “알콜과 마약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사생활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로동신문, 1991. 1. 20.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⁶³⁾

첫째, 共產主義 體制의 한 특징인 強制動員方式은 초기 공업화 단계에서는 효율적이지만,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大衆疏外와 極端的 不均衡의 招來 및 創造的 意慾의 抹殺이라는 엄청난 결함을 노출하고 만다. 이러한 위기에서 스스로 體制內的 變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北韓體制가 바로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맞고 있는 것이다.

둘째, 歴史的으로 後進國에서의 共產主義 革命은 근대화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파악될 수 있었으므로, 共產主義 體制는 근대화 체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때 近代化의 완결을 위하여 共產主義 方式을 폐기하고 市場經濟의 效率性에 토대하는 새로운 산업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바, 共產主義者들이 주목을 받게 된 제도가 바로 資本主義 體制라는 점이다.

셋째, 共產主義 政權은 통치 방식에 있어서 스탈린式 全體主義 모델을 모방하였지만 經濟發展을 비롯한 社會의 進歩에 부작용이 터무니없이 커, 부득이 統治方式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바, 이것이 共產圈의 變質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共產圈의 變質이 北韓에 과급되고 있지는 못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統治體制나 指導構造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과정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속 사정을 지닌 만큼 北韓當局은 南北高位級會談이 급진전되어 南北간의 人的 物的 交流가 실현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體制不安要素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調整期를 거친 다음에야 옹할 것으로 보여, 급격한 共產圈의 體制變革이 南北高位級會談의 背景이 된 반면에, 北韓當局으로 하여금 더욱 閉鎖的인 路線을 견지하도록 하는 不安要因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會談의 進展에는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南韓의 北方政策

北方政策은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는 情勢에 부응하여 政治的으로 南北關係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北韓을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北韓社會를 개방시킴으로써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켜 統一의 實現을 도모하는

63) 朴奉植, “韓半島의 국제환경과 南北韓關係의 將來,” 「自由公論」 1989年 8月號, pp. 140-141.

民族共同體意識을 진작시키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⁶⁴⁾ 經濟的으로는 우리 經濟가 사회 전반적인 民主化 추세와 상승작용을 하여 經濟開發段階에서 억제되었던 分配에 대한 參與意識이 폭발되면서 賃金上昇要因을 증폭시킴으로써 國際競爭力의 弱화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保護貿易主義 性向을 표출시키고 있는 西方先進國들의 關稅障壁·市場開放·換率引上 등 무역마찰로 이들과 전면적인 競爭關係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러한 대내외적 挑戰을 극복하고 先進經濟로의 진입을 위한 획기적인 經濟的 動因으로서 취해진 정책이었다.⁶⁵⁾

이러한 北方政策은 共產圈 變革에 편승하여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으니, 1989년 9월 서울올림픽 기념 1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國際學術會議 참석차 내한한 蘇聯의 카피차 前外務次官이 經濟協力期待의 의사표현과 함께 韓蘇修交를 희망하여 이 해 12월 領事關係를 수립했다. 이미 헝가리·폴란드와 修交關係를 맺은 南韓은 유고와의 修交를 계기로 1990년으로 접어들자마자 알제리·루마니아·체코·불가리아·몽고·나미비아·남예멘 등 그동안 北韓의 주요 盟邦이자 單獨修交國이었던 이들 국가와 차례로 大使級 修交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무렵 北韓은 南韓의 일사불란한 北方政策의 추진을 크게 못마땅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⁶⁶⁾

“《북방정책》은 북쪽의 사회주의 나라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체육·문화·경제교류의 단계를 거쳐 국교 수립에까지 나간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교차승인》《유엔가입》을 통해 《두개 조선》조작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1973년 《6·23 특별성명》에서 출발한 《북방정책》은 박정희나 전두환의 《장기적인 과제》였지만, 로태우○○은 《집권임기》내에 추진시켜야 할 《당면외교과제》라고 하면서 더욱 집요하게 분별없이 몰아치고 있다.”

더구나 3월 民自黨의 金泳三 代表最高委員이 蘇聯을 방문하여 야코블레드 國際擔當 政治局員과 國交樹立 및 양국간의 經濟協力方案을 논의한 후 고르바초프 와도 면담함으로써 修交가 앞당겨질 듯한 기미가 보이자, 北韓은 이 때부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64) 「統一問答」(통일연수원, 1991), p. 162.

65) 尹炳益, “韓半島 주변정세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통일연수원, 1989), p. 121.

66) 로동신문, 1989. 9. 18.

“김영삼이 모스크바로 찾아간 기본 목적이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두개 조선>의 존재를 합법화함으로써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는 데 있다. 소련에 접근하여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를 집요하게 졸라대고 있는 것이며, 북을 <개방>시키는 데 <협력>해 달라고 떠벌인 것도…….”⁶⁷⁾

라고 兩國 모두를 비난하면서 蘇聯과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韓蘇關係는 北韓이 우려한 것 이상으로 급진전되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상 최초로 盧-고르바초프간의 頂上會談이 열려 양국 정상의 交換訪問과 韓蘇간의 조속한 修交 그리고 韓半島의 냉전 종식을 위한 平和構築方案 등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에 충격을 받은 北韓은 재빨리 南北高位級會談에 박차를 가해 南韓에 蘇聯보다 北韓이 더 가까이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韓蘇關係正常化의 파장을 극소화시키고, ‘범민족대회’에 즈음하여 南側에 일방적인 板門店 개방을 통보하여 在野 및 學生團體들의 統一論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南韓의 政局不安을 꺾하고자 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결국 韓蘇關係는 9월 30일 UN 安全保障理事會 議長室에서 崔浩中 外務長官과 세바르드나제 外務長官간의 역사적인 修交署名으로 이어졌고, 12월 13일 盧 대통령이 蘇聯을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大統領과 함께 ‘모스크바 宣言’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天安門事態’ 이후 보수 일로를 걷고 있는 中國 또한 實利外交를 추구하여 對韓接近을 시도하고 있는 바, 1990년 10월 領事機能의 貿易代表部를 개설한⁶⁸⁾ 이래 1991년 5월 北韓을 방문한 李鵬 總理가 외견상 同志的 紐帶를 강조하여 北韓의 立場을 지지하면서 韓半島 平衡外交의 개막을 시사하였고,⁶⁹⁾ 南北韓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것과 때를 같이한 10월 李相玉 外務長官과 錢其琛 外交部長이 UN 本部에서 회동하여 가능한 한 早速한 時日 내에 兩國간 外交關係를 수립하자는데 합의하였다.⁶⁹⁾

이로써 한때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 다니며 實利를 추구하던 北韓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잃게 됨으로써 立地가 더욱 좁아져 앞으로 진전될 南北高位級會談에서

67) 로동신문, 1990. 4. 6.

68) 한국일보, 1991. 5. 7.

69) 한국일보, 1991. 10. 4.

당분간은 억지 논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處世를 도모할 것이다.

(3) 南北韓의 UN 同時加入

北韓은 南韓政府가 제안한 ‘UN 同時加入案’에 대해서 그동안 “두개 조선 조장의 음모”라는 구실로 완강히 반대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안’만을 고집해 왔다. 北韓이 이처럼 同時加入案을 반대해 온 이유는, 첫째 南北韓 交叉承認의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둘째 UN에 동시 가입할 경우 赤化統一路線을 포기해야만 되는 데다, 體制의 開放化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⁷⁰⁾

이러한 北韓의 立場에도 아랑곳없이 冷戰體制의 붕괴에 편승한 第六共和國의 北方外交는 동서 화합의 한마당이 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對東歐圈 및 蘇聯과의 關係正常化 노력이 現實로 다가서기 시작하였고, 이에 南韓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좌절되었던 UN 加入을 다시 서두르기에 이르렀다.

1989년 9월 盧 대통령의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이 발표되고, 韓蘇關係의 改善方向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입 시도가 불붙게 되었다.⁷¹⁾ 이에 북한은 ‘공화국 창건 41돐에 즈음한 중앙보고대회’에서 李鍾玉 副主席이 보고⁷²⁾를 통해,

“외세의 부추김 앞에 <유엔동시가입>로의 변종인 <유엔단독가입>론을 떠벌리면서…… 이러한 시도는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로 보나, 민족 자결의 원칙으로 보나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라고 싸잡아 비난하였는가 하면,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범민족적 책동으로서 분열 책동을 감싸기 위한 궤변”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⁷³⁾

해를 넘긴 1990년 2월 南韓政府는 “年内 기어코 UN 加入案을 제출하겠다”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자⁷⁴⁾ 5월의 最高人民會議 第9期 1次 會議에서 金日成은 이러한 종래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하여 ‘남북한의 단일 의식 공동 가입안’이라는 실현성 없는 방안을 변칙적으로 제안하였고,⁷⁵⁾ 韓蘇修交와 獨逸統一과 함께 ‘UN 加入

70) 李慶淑, “외교: ‘혁명환경’ 조성을 위한 총력전,” 李相禹 外 6人 共著, 上揭書, pp. 492-493.

申正鉉, “남북한 교차 승인과 유엔동시가입방안의 재조명,” 金甲喆 外 9人 共著, 「統一論議의 諸問題」 (서울: 乙酉文化社, 1988), pp. 232-233.

71) 한국일보, 1989. 9. 12 · 13 · 16.

72) 로동신문, 1989. 9. 10.

73) 로동신문, 1989. 9. 17.

74) 한국일보, 1990. 2. 26.

75) 한국일보, 1990. 5. 26. 및 로동신문, 1990. 5. 26.

南側案'이 71개 國家로부터 支持를 받게 되자⁷⁶⁾ 北韓의 駐유엔代表部 朴吉淵 大使가 “단일 의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立場을 표명함으로써⁷⁷⁾ 南北韓의 UN 加入 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또한 이즈음 北韓은 南韓의 單獨加入을 지연·저지시키기 위해 南北高位級會談 本會談에도 적극성을 띠었으니, ‘북과 남이 유엔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제3차 대표접촉’이란 표현⁷⁸⁾만을 보더라도 北韓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민감한 反應을 보였던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그러나 蘇聯이 南韓政府의 UN 加入立場을 인정하고⁷⁹⁾ 中國 또한 拒否權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강력히 시사하자,⁸⁰⁾ 北韓은 國際的 孤立과 壓力을 의식한 나머지 政策路線의 수정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⁸¹⁾ 급기야 1991년 5월 27일 金永南 外交部長이 南韓의 UN 同時加入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⁸²⁾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 北韓이 1990년 하반기에 南北高位級會談 1·2·3次 本會談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北韓에 유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상황이 급변하여 北側에 지나치게 불리해진 1991년 상반기에 이 회담을 계속 연기하다가 끝내 同時加入案에 白旗를 든 것은 더 이상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차라리 國際的 輿論에 부응하여 동시 가입한 후 UN을 통한 外交로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여 實利를 추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判斷 아래 취한 選擇이었다고 풀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4) 日本의 對北接近

佛蘭西의 ‘렉스프레스’誌의 “韓半島의 統一을 원하는 周邊國은 없다”란 보도처럼 新데탕트로 東西가 화합했음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의 주변 강대국들은 저마다 持續的인 實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76) 한국일보, 1990. 10. 13.

77) 한국일보, 1990. 10. 5.

78) 로동신문, 1990. 11. 10.

79) 한국일보, 1991. 1. 8.

80) 한국일보, 1991. 4. 9.

81) 한국일보, 1991. 5. 11.

82) 한국일보, 1991. 5. 29.

특히, 최근 日本이 무절제하고 과속적으로 北韓과의 關係正常化를 도모하고 있어 우리의 國益을 크게 손상시키고 南北對話의 진전에도 惡影響을 미칠 危險性을 내포하고 있는 바 日本의 對北接近, 北韓의 對日接近은 韓蘇간 國交樹立이 논의될 무렵부터 본 궤도에 올랐다.

1989년 韓蘇領事關係가 수립되자, 가이후 總理는 1990년 1월로 접어들자마자 곧바로 “亞·太地域의 安定과 繁榮을 위해 北韓과 政府간 직접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고,⁸³⁾ 이에 政府는 5월의 韓日頂上會談을 통해 對北接觸時 사전에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先決條件으로서 核安全協定 서명과 南北對話 재개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韓蘇頂上會談이 열리자 크게 당황한 나카야마 外相은 이 회담이 日本에 사전 통고하지 않고 열렸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日朝修交’ 용의와 함께 “모든 것을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積極性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표명하였다.⁸⁴⁾

9월에는 自民黨의 가네마루 일행이 방북하여 妙香山 別莊에서 金日成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가네마루는 가이후 總理의 親書를 전달하고 자신도 謝罪發言을 하였으며, 金日成도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第18 富士丸號의 船員들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北日간의 早期修交를 다짐했다.⁸⁵⁾

그 이튿날 UN 本部에서 韓蘇外務長官이 만나 修交協定을 체결하자, 金日成은 크게 자극을 받은 듯 “6개월 내 수교 강행”을 지시하여⁸⁶⁾ 北京에서 일련의 회담을 진행시켰으나 日本의 要求를 전격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한 韓蘇頂上이 ‘모스크바 宣言’이 발표될 무렵인 연말에는 修交進展을 목적으로 北韓의 거물급 人士들이 대거 日本을 방문하였으며,⁸⁷⁾ 1991년 2월에는 羅東당의 金容淳 國際部長이 金日成의 親書를 가이후 總理에게 전달하고 北日關係 개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⁸⁸⁾

83) 한국일보, 1990. 1. 11.

84) 한국일보, 1990. 6. 6.

85) 한국일보, 1990. 9. 28·29.

86) 한국일보, 1990. 10. 5.

87) 한국일보, 1990. 12. 15.

88) 한국일보, 1991. 2. 23.

그 후 별 진전이 없다가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을 계기로 日本은 北韓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北韓과 日本이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國交正常化를 서두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北韓은 蘇聯·東歐圈과의 經濟協力關係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經濟的 難局을 타개하기 위해서 西方國家들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필요한데,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도모하자니, 美國이 “先 남북 관계 개선, 後 회담 착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우선 1차적으로 손쉬운 상대로서 日本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國際的 孤立을 벗어나려는 外交的 側面도 가미되어 있다.⁸⁹⁾

日本 또한 韓半島가 통일되어 막강한 軍事力을 보유하게 될 경우 潛在的인 威脅이 될 것이라는 判斷 아래 南北韓의 現狀固着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韓半島를 大陸과의 완충 지역으로 삼아 영원히 자기네들의 影響圈에 묶어 두려는 계산 속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北韓을 승인하고 國交를 정상화할 경우 北韓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北韓側이 最少 50억 달러 이상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賠償金 중 상당액을 債權額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效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北日간의 利益一致로 인한 國交正常化는 南北韓 交叉承認과 직결되어 北韓이 南韓體制를 인정하고 平和共存을 통한 統一을 지향한다면 韓半島의 平和 定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共同宣言過程에서 나타난 北韓의 태도나 그 후의 發言과 行動을 볼 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北日간의 交渉은 한 마디로 南北對話에 惡影響을 미칠 공산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北韓은 北日간 交渉의 進行速度 및 內容水準에 따라 南北高位級 會談에 임하는 誠實性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進展도 緩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89) 金鴻洛, “日·北韓 國교정상화 쉽지않다,” 「한국논단」 1990年 11月號, p. 184

IV. 맺음말; 會談進展의 障礙要因과 對應策

南北高位級會談이 시작될 때부터 南韓은 비교적 積極性을 띠면서 能動的인 態度를 취한 반면, 北韓은 守勢的 防禦에 몰두하면서 消極性을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立場의 差異는 바로 國內外 情勢의 變化推移와 그 影響에서 비롯된 것이다.

經濟的 落後로 인한 상대적 劣等感, 開放·自由思潮의 유입을 우려한 閉鎖性의 강화, 獨自的인 核開發의 강행으로 태동한 國際的 輿論의 악화와 압력, 共產圈 國家들의 잇단 體制變革과 南韓의 北方政策 산물로 단정지을 수 있는 國際的 孤立的 가속화, 그리고 政權樹立 이후 꾸준히 추구해 온 政治·外交路線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南北韓의 UN 同時加入 등이 北韓을 ‘四面楚歌의 危機’로 몰아 넣었고, 北韓으로 하여금 ‘守勢的 防禦’ 자세를 취하게끔 이끌었다.

한편, 이처럼 좁아진 北韓當局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南韓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要因이 되었다. 그렇다고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과 관련하여 北韓의 消極性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일이다. ‘民主化 措置’ 이후 學生圈 및 在野圈 등 反體制·反政府團體들의 더욱 격화된 攻勢, 統治力 강화의 일환이었던 公安政局의 지속, 政策不在와 國民意識의 미흡으로 야기된 經濟基盤의 약화 조짐, 그리고 舊 時代를 답습하며 無事安逸的인 思考에 젖어있는 政治圈의 政治道德的 墮落相 노출 등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을 가로막는 이러한 障礙要因을 극복하고 統一을 향한 진일보한 對話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獨逸式의 ‘일방에 의한 흡수 통합’을 두려워 하는 北韓의 立場을 염두에 두고 北韓이 經濟的 落後性을 벗고 開放·改革路線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南韓이 北韓의 4대 교역 대상으로 부각된 만큼 南韓의 資本과 技術을 北韓의 풍부한 勞動力과 접목시켜서 최근 北韓이 서두르고 있는 ‘輸出經濟의 育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이는 南北韓 모두의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異質感을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政府간의 對話를 보다 실질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軍事的인 側面에서 北韓의 核開發을 저지시키고 雙方의 軍備를 감축시키는 努力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北韓이 작금에 國際的 壓力과 非難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同時 핵사찰을 구실로 核安全協定의 서명이나 核査察을 거부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핵무기 철수 및 폐기선언으로 인해, 북한이 이같은 거부 명분도 조만간 실효성을 상실할 것이 확실해졌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推移를 주지시켜 核開發에 대한 노력의 포기를 종용함과, 아울러 雙方의 軍備를 축소시켜 이 財源을 經濟活性化 쪽으로 돌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蘇聯으로부터 이미 技術援助가 단절된 상태인 데다, 北韓의 武器體系가 질적인 차원에서 날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威力이 감퇴되고 있어 軍備縮小에 관한 한 北韓의 입장이 南韓보다 더 절박할 것이므로,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과 관련하여 '多角的인 交流協力'에서 나아가 의제 핵심의 축을 '軍事的 對峙狀況의 緩和'로 환기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셋째, 北韓의 유일한 友邦으로 남아 있던 中國마저도 南韓과의 修交를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北韓이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여 몇몇이 國際社會의 일원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北韓에 대해 柔和的 姿勢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南韓은 北方政策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다, 共產圈의 體制變革까지 가세되어 外交的 側面에서는 北韓에 대해 '큰 형으로서의 몫'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餘力이 생겼다. 이러한 現實을 감안하여 종래 死力을 다해 消耗戰을 벌였던 자세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北韓의 國際的 孤立을 방지하는 데 神經을 쓸 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國際的 孤立은 곧바로 體制의 閉鎖性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南北간 對話를 지연시키고 결국 그 만큼 統一時機를 늦출 것이므로,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美日과의 交渉을 측면에서 지원하여 南韓이 추진해 온 北方政策의 實體를 명확히 심어주고 交叉承認으로 발전시켜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키며, 이러한 平和定着의 기반 위에서 相互對話로써 統一로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여간 1991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南北高位級會談 第四次 本會談'에서는 南北 쌍방간에 상당한 意見接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南北韓이 UN에 동시 가입한 상황에서 北韓이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 온 政策路線을 이제 수정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고, 中國마저 對韓接近을 시도 했다는 현실에 수긍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러나 北韓이 이를 외면하고 종래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진전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서두르거나 비난하지 말고 北韓 스스로가 용해될 때까지 인내해야 할 것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競走의 大勢가 판가름난 마당에서는 走者의 골인만 기다리면 되니까.

參 考 文 獻

- 곽태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정책,” 신정현(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金光洙, “北韓의 경제개혁과 限界,” 「自由公論」, 1990年 1月號.
- 金炳元·曹喜善,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의 활용,” 慶星大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第6輯, 1990.
- 金善日, “물자부족에 의한 구조적 범죄환경,” 「北韓 그 충격의 실상」, 月刊朝鮮 1991년 新年號 별책부록.
- 金學俊,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추세,” 李相禹 外 6人 共著, 「북한 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9.
- 金鴻洛, “日·北韓 국교정상화 쉽지 않다,” 「한국논단」, 1990年 10月號.
- 朴奉植, “韓半島의 국제환경과 南北韓關係의 장래,” 「自由公論」, 1989年 10月號.
- 申正鉉,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 방안,” 金甲喆 外 9人 共著, 「統一論議의 諸問題」, 서울: 乙酉文化社, 1988.
- 尹炳益, “韓半島 주변정세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 통일연수원, 1989.
- 李慶淑, “외교: ‘혁명환경’ 조성을 위한 총력전,” 李相禹 外 6人 共著, 「북한 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9.
- 李大雨, “金日成의 리더쉽 移轉에 관한 研究,” 慶星大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第5輯, 1989.
- 張和洙, “南北韓 경제교류 現況과 展望,” 「自由公論」, 1990年 7月號.
- 「김일성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民族統一로의 前進」, 국토통일원, 1989.
- 「백과전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1990 통일백서」, 통일원, 1990.
- 「통일문답」, 통일연수원, 1989 및 1991.
-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新東亞 1989年 1月號 별책부록.
- 「自由公論」, 1990年 3月號.
- 「한국일보」, 「로동신문」.

◇ 집필자 소개 (계재순)

- **홍승기**
 - 동국대학교 조교수(경상대 무역학과)
 -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덴비대 대학원 경제학과(국제경제학 박사)
 - 한은 조사1부, 동국대 이부학과장
 - 연구실적 : 경제성장과 대외채무, 개방경제체제와 한국경제, 경제발전과 불교, 남북한 경제 협력과 대외합작투자 방안 등
- **윤용만**
 - 인천대학교 조교수(경제학과)
- < **이갑영**
 - 인천대 강사(경제학 박사)>
 -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 워싱턴 대학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연구실적 : International Trade, Capital Mobility and Growth, 美·日통상마찰과 한국경제,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방안, 대미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산업정책 등
- **황선대**
 - 건국대학교 조교수(무역학과)
 - 연세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 조지아주립대(경영학 박사)
 - 연구실적 : 미국의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 관한 연구, 3상 무역 동기에 관한 연구 등
- **김강현**
 - 한국방송통신대학 조교수(전산학과)
 - 고려대 수학교육과 및 동 대학원(이학박사)
 - 고려대, 강원대 강사 및 대전공대 조교수 역임
 - 연구실적 : 분산모델링을 위한 방법론과 이론에 관한 연구, 정보처리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연구 등

- **제성호**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대 및 동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육사,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홍익대 강사 및 수원대학 조교수(법정대) 역임
 - 연구실적 : 국제기구 및 조약관련연구, 한국군의 작전권 환원문제, 북한의 국제법 인식체계와 사례연구, 신좌경사상 비판, 항공기 테러와 국제법, UN의 국제법 주체성 등 저서 및 논문
- **차중근**
- 명지대학교 강사(부역학과)
 - 명지대 및 동 대학원 무역학과(경영학 박사)
 - 연구실적 : 랜드브리지 체제 활용, 우리나라 물적유통체제의 개선 비교연구, 한국 기업의 대 아세안 직접 투자에 관한 연구 등
- **조희선**
- 경성대학교 강사
 - 경성대 및 동 대학원 행정학과
 - 동래여자전문대 강사 및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간사
 - 연구실적 : 중공의 실용주의 경제정책 분석,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 활용 등

北韓 · 統一 研究 論文集(Ⅱ)

- 南北交流協力 分野 -

1991년 12월 10일 인쇄

1991년 12월 13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인쇄처 정문사문화(주)
